

수사경찰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

《研究陣》

연구위원 :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택수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박노섭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동희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영돈 (용인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정)

목 차

[요 약 문]

제1장 서 언 [이동희]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방법 및 장의 구성	2
제2장 한국 수사경찰의 실태진단 [김택수]	4
제1절 인력관리의 실태	4
1. 수사경찰의 선발과정의 문제점	4
2. 수사경과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6
3. 수사전문화 교육의 실태	7
4. 수사요원에 대한 인사관리시스템의 부실	12
5. 수사경찰의 인력구조 문제점	13
6. 근무평가의 객관성 확보 문제	15
제2절 조직구조상의 실태	18
1. 본청 수사조직 구조의 문제점	18
2. 지방청 수사조직 구조의 문제점	20
3. 경찰서 수사조직 구조의 문제점	23
4. 국과수 이전문제와 유전자은행의 문제	25

제3절 운영상의 실태	26
1. 공조수사체제의 문제	26
2. 수사절차상 피해자 등 인권보호의 문제	27
3. 피의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문제	28
4. 강제수사의 자의적 행사로 인한 불공정성의 문제	29
제3장 선진외국의 수사경찰	31
제1절 독일의 수사경찰 [박노섭]	31
1. 독일 수사경찰의 현주소	31
2. 독일의 경찰조직과 수사	32
3. 자치경찰기관	42
4. NRW 주 경찰조직개혁과 그 시사점	46
5. 수사경찰의 선발과 교육	52
6. 실무상 수사경찰의 지위와 역할(검찰과의 관계중심으로)	64
제2절 프랑스의 수사경찰 [김택수]	74
1. 수사경찰의 조직	74
2. 수사경찰의 인력관리	96
제3절 미국의 수사경찰 [이영돈]	103
1. 서론	103
2. 수사 경찰의 조직	103
3. 수사경찰의 인력관리	109
4. 수사경찰 선발 및 교육	111

5. 수사요원 관리	127
6. 결 론	141
제4절 캐나다의 수사경찰 [임준태]	143
1. 캐나다 경찰 개요	143
2. 수사경찰조직과 기능	153
3. 수사전문화 교육동향	164
4. 소 결	185
제5절 일본의 수사경찰 [이동희]	186
1. 서	186
2. 수사경찰의 개혁과 발전과정	187
3. 수사기관의 종류 및 수사경찰의 지위·역할	196
4. 수사경찰의 조직체계	202
5. 수사경찰의 인사관리 및 교육	209
6. 주요 제도 및 시책	215
제4장 수사경찰의 발전방안 제시 [박노섭·이동희·김택수]	224
제1절 수사경찰의 전문성 제고방안	224
1. 수사경찰의 조직체계 개선방안	224
2. 수사경찰의 인력관리 개선방안	228
3. 수사경찰의 교육체계 개선방안	231

제2절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233
1. 수사경찰의 외부적 독립성	233
2. 경찰수사관의 내부적 업무독립성 확보	242
3. 경찰수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제도의 확충	248
제3절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시론	249
1. 수사상 인권보호를 위한 규칙제정 및 기구신설 등	250
2. 피의자 조사과정상 인권보장	252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방안	258
4. 기타 인권보장을 위한 시책 등	264
제5장 결론 및 제언 [김택수]	266

< 표 차 례 >

<표 1> 2005년도 수사보안연수소 계급별 교육이수 현황	10
<표 2> 2006 수사직무과정 교육 현황(총 36개 과정 5,719명)	11
<표 3> 3단계교육체계	12
<표 4> 2004년 수사경과제 신청자 현황	14
<표 5> 수사경과자 인원 현황('05. 11. 30 기준)	15
<표 6> 수사경찰관 수사경력 현황('04. 6. 기준)	15
<표 7> 공적별 특진현황(2005. 7. 31일 현재)	16
<표 8>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검찰관련 주요 인권침해사건 결정현황	28
<표 9> 체 포 현 황	30
<표 10> 구 속 현 황	30

<표 11> 학기별 수업내용	55
<표 12> 2003년도 고급간부 수사관련 직무교육	56
<표 13> 연방수사경찰(gehobener Dienst)	58
<표 14> 수사경찰 인력구조	102
<표 15> 캐나다 각주별 인구, 면적 및 경찰관수	145
<표 16> 2001년도 범죄발생동향	146
<표 17> 최근 수년간 경찰력추이	146
<표 18> 경찰관 1명당 범죄발생건수	147
<표 19> 형사사법기관간 예산규모 비교	147
<표 20> 캐나다에서 규모가 큰 경찰조직들	150
<표 21> 캐나다의 대규모 지방자치경찰관서들	152
<표 22> 벤쿠버경찰의 계급별 경찰관수 및 비율	158
<표 23> 벤쿠버경찰청 과학수사부서 “A”경찰관 근무사례	161
<표 24> 연방경찰 순경급 기본교육내용	167
<표 25> 캐나다 연방경찰의 법의감식전문가 양성과정(48개월)	172
<표 26> 캐나다 벤쿠버경찰청 순경급 기본교육내용	178
<표 27> 캐나다 벤쿠버경찰청 순경급 기본교육 상세내용 및 수업시간	179
<표 28> 경찰관의 계급별 정원비율(한일비교)	198
<표 29> 수사주체별 수사권한의 비교	199

< 그림 차례 >

<그림 1> 경찰서 팀장 보직 대비 경위급 예상누적 총원	15
<그림 2>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조직도	19
<그림 3> 서울·부산·경기지방청광역수사대 조직도	20
<그림 4> 연방수사국 조직	37

<그림 5> 주수사국의 조직	43
<그림 6> 연방경찰대학 교육과정	59
<그림 7> 중앙수사국의 편제 및 지방수사국의 관계도	75
<그림 8> 파리 지방수사국의 편제	84
<그림 9> 파리 광역수사대의 위치 및 관할	90
<그림 10> 인구 15만명 이상의 경찰서 편제	95
<그림 11> 캐나다 연방공안 및 비상기획부 조직도	148
<그림 12> 캐나다 연방수사경찰조직	155
<그림 13> 밴쿠버경찰청 조직(수사경찰)	157
<그림 14> 국가경찰(경찰청)의 조직도	203
<그림 15>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의 조직도	205
<그림 16> 자치경찰의 광역수사조직 (예 : 경시청)	207
<그림 17> 광역수사대 발전모델(서울)	226

[요약 문]

한국 수사경찰은 수사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고 진정한 국가수사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도약할 시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수사경찰은 인력, 조직, 운영, 인권보호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어 수사경찰의 쇄신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수사경찰이 간부중심의 인력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중앙수사국체제를 채택하여 본청과 지방청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서의 경우 민생범죄 수사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권보호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술녹화제를 실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함께 수사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수사교육과 수사요원이 선발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 수사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수사인력 관리와 관련하여 수사부서 기피현상에 따른 유능한 수사인력의 유출의 방지와 최종별 전문수사팀제를 골자로 한 수사경과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사요원 선발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수사경과제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경위 근속승진에 따라 장차 경위계급의 인력이 많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수사간부화라는 장기적 목표아래 관리자가 아닌 수사실무가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수사간부에 대한 양성 및 전문화교육이 현재와 달리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수사간부연수소를 수사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교수인력을 확충하고 시설을 보강하여 수사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하겠다. 이외에도 특진제도와 시험승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심사승진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근무평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겠다.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재의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제는 범죄의 광역화, 지능화 추세에 대처하는데 부적합하다. 따라서 경찰서 일부인력과 지방청내의 수사인력을 흡수, 통합하여 광역수사대를 광역수사단으로 확대함으로써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청과 지방청 중심의 광역수사체제를 구축해야 하겠다. 광역수사체제를 통하여 범죄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기능을 활성화하고 범죄분석팀을 설치하여 범죄 프로파일링과 함께 연쇄성, 광역성에 대한 판단을 담당하게 하여 지방청의 주도하에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겠다. 현재 경찰서 단위에 적용되는 최종별 업무분장의 방식은 수사팀간의 업무량의 차이와 기획수사의 약화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 수사인력이 많은 지방청단위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청 단위의 수사부서를 최종 또는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전문화하고 경찰서는 중요사건수사보다는 민생범죄에 치중함으로써 방법활동과 수사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수사경찰의 운영면에서 수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먼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건의 접수, 배당, 관련인의 조사, 강제수사의 여부, 수사관의 검토의견, 송치결과 등이 공개되어 민원인들이 사건의 진행상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찰내부 차원의 시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의 통지를 SMS 문자서비스나 E-mail을 통하여 자동화하거나 간소화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청의 이의사건 전담조사팀으로 하여금 재수사하도록 해야 하겠다. 아울러 구속 등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의 권한남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찰관서장에 의한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면지휘에 의하도록 하고 팀별 책임수사체제에 따라 팀장이 중심이 되어 사건지휘 및 사건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피의자신문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 성폭력피해자와 장애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술녹화를 의무화하고 피의자에 대하여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하겠다. 또한 피의자신문에 있어 밤샘수사 등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고 신문조서상에 신문시작시간, 종료시간, 휴식시간, 진료요청여부 및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수사과정의 피의사실공포,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의 노출, 언론보도, 조사과정의 2차 피해 등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청에 인권보호팀을 설치하여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직접 개입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 전담 여성수사관을 대폭 증원하여 수사(형사)과내에 또는 여성청소년계에 배치하여 성폭력 범죄 등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진술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수사경찰의 쇄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수사경찰의 개혁에 대한 동참의식과 과거의 수사관행에 대한 단절의지가 절실하다. 이와 같은 수사경찰의 쇄신이 가미될 때 수사구조개혁 논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제1장 서 언

제1절 문제제기

광복 이후 정부 수립에 앞서 1945년 10월 미군정청 경무국으로 출발한 경찰이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였다. 미군정청 경무국 수사과의 1과 체제의 수사조직으로서 출범했던 한국의 수사경찰은 현재 경찰청 수사국 산하 5과 2센타 20계와 14개 지방청 및 233개 경찰서에 각급 수사부서의 체제로 확대되었다. 수사부서 전종인력이 18,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형사사건의 약 97%를 담당하고 있다.¹⁾ 한편 2005년 1월에는 수사경찰의 전문화를 위해 수사경찰의 채용, 승진, 인사를 타 경찰기능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소위 수사경과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간 조직규모나 인력자원 면에서 꾸준히 확대·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경찰은 창경 이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이나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사회적인 큰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다. 알려진 여론조사 등에 의하면 전문가 집단이나 국민 다수가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수사구조개혁의 정당성이나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음은 물론, 21세기형 선진사법제도의 구현하기 위해 현행 검찰주도적 수사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져 수사의 독자성이 확보될 경우,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또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한 검찰측에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를 통제

1)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현재 10,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담당하는 형사사건은 전체의 약1%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경찰수사의 부담비율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반대론이 설득력 있게 과급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우려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비롯하여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의 수준 등에 대하여 국민 다수가 만족할만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경찰이 수사현실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는 새로운 수사환경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충실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선진적인 조직체계와 인사운영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및 장의 구성

본고는 이상의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궁극적으로 한국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및 수사절차상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론을 취하고자 한다.

첫째, 실태분석 연구방법이다. 현재 한국경찰의 수사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함은 물론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수사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교경찰제도론적 연구방법이다. 선진외국의 수사경찰의 조직과 인사·교육시스템을 우리나라 수사경찰의 그것과 비교 검토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수사경찰의 객관적인 현 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우리나라 수사경찰의 개선방안으로 모색함에 있어 도입 가능한 비교경찰법제적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장별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서론 이하 우선 제2장에서는 한국 수사경찰이 걸어온 발자취를 개관해보고, 수사경찰의 조직과 인사 및 교육 시스템을 점검해 봄으로써 수사경찰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수사경찰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모델로서 선진외국의 수사경찰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현제도에 대한 실태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제4장에서는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아울러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한국 수사경찰의 실태진단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와 경찰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범죄수사는 경찰의 본질적인 임무의 하나이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범죄수사가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의 정서 또한 범죄의 예방활동과 범죄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조자라는 소송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경찰은 명실상부한 국가 수사기관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듯 수사경찰이 안고 있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흉포화, 광역화, 전문화, 지능화되는 범죄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피의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의 요청이 가중되고 있다. 수사경찰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의 전문화와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수사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동안 수사의 전문성 향상과 신뢰성 내지 공정성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수사권독립²⁾ 교육³⁾, 인사 등 제한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전체적인 수사경찰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수사경찰의 인력관리, 조직구조 및 운영구조라는 전체적이면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사경찰의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수사경찰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 보겠다.

제1절 인력관리의 실태

1. 수사경찰의 선발과정의 문제점

2005. 4. 1.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수사경찰관의 자질 향

2)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 방안, 서보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용역보고서 2004-22 ; 경찰 수사권 체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 2000-02, 치안연구소

3) 수사요원 전문화 방안, 연구보고서 96-10, 치안연구소

상'은 수사권조정 및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수사관들이 전문성도 없으며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수사경찰의 효율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수사관의 자질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현 수사경찰의 인사 및 관리체계를 분석하면 선발, 교육, 운용, 사기관리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된다.

수사관의 자질향상은 우선적으로는 수사관련 분야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특히 법집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습득한 우수한 수사인력의 선발이 전제돼야 하며 그 방식에는 경찰관의 채용단계에서 수사요원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과 일반 경찰관과 동일한 채용과정을 거치도록 한 후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교육과 연계하여 고찰돼야 한다. 여기에는 네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수사경찰관을 별도로 채용하여 실무교육을 시키는 방법, 일반경찰과 동일한 채용과정을 통하여 신입교육과정에서 수사경찰이 되고자 하는 경찰관을 별도의 추가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 또는 일반 경찰관 중에서 수사경찰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일단 수사부서에 배치한 후 나중에 수사교육을 실시하는 방법과 수사부서 배치예정자를 미리 선정하여 수사교육을 이수토록 한 후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수사요원의 선발절차는 사이버수사요원, 범죄분석요원⁴⁾, 법의조사관, 아동상담관 등 특수분야를 제외하고 대개의 경우 일반 경찰관들 중에서 수사경찰관을 선발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지구대 또는 본서 내근부서에서 2-3년간의 근무를 한 후 본인이 직접 수사부서의 근무를 희망하거나 본서 형사들 또는 간부들이 독려하는 형식을 통하여 선발하고 경찰종합학교의 수사요원양성과정(교육인원 연 : 1,000명, 대상 : 수사요원으로 선발된 자, 수사·형사부서 근무 1년 미만자로 동 과정 미이수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부서 적격자에 대한 선발이 교육성적⁵⁾, 적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상사 또는 동료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적격자의 선발과 부적격자의 퇴출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4) 2005년 7월 처음으로 16명을 경장계급으로 특채하였다.

5) 참고로 2005년 경찰수사보안연수소에 입교한 경찰관 중 미수료자는 4명에 불과하다.

2. 수사경과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경찰청이 수사의 전문성 향상과 수사관의 사기를 고양함으로써 수사력을 강화시키고자 2005년 1월 1일자로 수사경과제를 시행하였다. 수사경과제의 골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요원들에게 수사경과를 부여하여 선발, 교육, 보직관리를 체계화하고 타부서 경찰관들과의 일률적인 경쟁을 통한 승진이 아닌 자체 승진인원을 배정하여 수사요원들의 승진기회를 높이고 단서별 수사체제가 아닌 최종별 수사체제로 전환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수사부서 기피현상에 따른 수사인력의 유출을 막아보자는 취지가 더 강하게 작용한 면이 없지 않다. 수사경과제의 도입은 우수인력의 선발을 도모하고 수사인력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었으나 시행과정상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첫째, 시행당시 수사경과의 적용범위를 본청에서는 수사국소속, 지방청에서는 수사과 형사과소속, 경찰서에서는 수사과와 형사과에 소속된 경찰관들로 한정시킴으로써 여타의 보안, 외사, 여성청소년, 교통사고조사 등의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을 배제시켰다. 반면에 경찰서의 경우 수사과 소속이기는 하지만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유치장 근무자들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부여함으로써 내부적인 비관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형사과와 수사과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외사수사, 여성청소년계, 교통사고조사계, 지하철수사대까지 수사경과를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수사경과제가 수사국산하의 부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안전국이나 경비교통국의 수사부서들을 포함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예방업무와 수사업무가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을 재확인하고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둘째, ‘수사경과제’의 주된 내용은 수사인력의 타 경과로의 유출과 역으로 타 경과로부터의 유입을 억제하여 전문화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사경과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우수인력의 확보를 통한 수사의 전문화 강화인지 아니면 열악한 근무여건에 따른 수사인력의 누수를 방지하자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 우수인력의 확보를 통한 수사의 전문화는 결국 초기 시행단계에서부터 우수한 수사인력의 수

사부서배치가 전제돼야 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수사의 전문화라는 상위목표보다는 수사부서 근무기피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우세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시행 초기단계에서 수사경과를 신청하는 경찰관들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개방하고 반대로 기존에 수사부서에 근무하지만 능력부족이나 부적격자에 대한 퇴출이 용이해야 하나, 엄격한 선발절차 없이 기존의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수사경과제가 전면 시행됨으로써 상당기간동안 비적격자의 퇴출 및 적격자의 선발이 제한을 받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경과제의 전면적 실시보다는 수사관 자격인증제 등의 제도와 결합하여 인증된 수사관에 대하여만 수사경과를 부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인사교류를 자유롭게 하는 점진적인 수사경과제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수사경과제의 골자가 우수한 인력을 수사부서에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수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전문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나 이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현재의 근무현실이나 수사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즉, 수사는 이미 3D 업종으로 알려져 있어 수사부서 근무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승진이나 보수에 있어서의 약간의 혜택은 수사부서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입과 전출이 자유롭지 못한 수사경과는 오히려 업무스트레스의 가중, 매너리즘 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수사경과를 신청하지 않는 경찰관들은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다양한 경찰분야에서의 능력발휘를 선호하고 있다. 단적으로 수사부서에 주로 근무하면서 승진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몇 년에 한 번씩 타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재충전의 기회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평생수사관제’가 표방하듯이 15-20년을 수사부서에서 전종하도록 하는 체제는 과도한 업무량, 건강문제, 지속적인 민원인들과의 접촉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감수하기 힘든 면이 있다.

3. 수사전문화 교육의 실태

수사경찰의 전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는 수사요원들의 근무경력뿐만 아니라 전문화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질적 수준이 될 것이다. 전문화교육은 새로운 범죄양상에 대응

하고 기존의 축적된 수사기법을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전문화교육의 실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⁶⁾.

수사요원으로 선발된 자는 경위 이하인 경우에 경찰종합학교에서 3주간의 수사요원 양성과정(105시간)을 이수하게 되며 강력(폭력)범죄수사팀 또는 지능(경제)범죄수사팀에서 2년 또는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수사요원들은 수사보안연수소에 개설된 16개 과정의 2주 또는 3주간의 전문화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수사지휘관이 될 경우⁷⁾, 경감, 경정의 수사간부들은 12주의 강도 높은 수사지휘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즉 경찰청은 수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체계를 수사요원양성과정, 전문화과정, 수사지휘과정으로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면 이러한 3단계 교육체계가 수사관의 선발과 함께 이들을 양성하고 전문화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지휘까지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형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경찰청이 제시하는 양성과정 → 전문화과정 → 수사지휘과정의 단계별 교육은 수사요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는 현재의 경찰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입직경로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즉 교육과정이 간부급보다는 비간부급들의 수사요원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간부로서 경위로 승진하거나 아니면 신입경위 중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3단계의 도식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⁸⁾. 실제로 종합학교에서 실시되는 2005년도 수사요원양성과정(3주간) 교육수료현황을 보면 958명의 수료자 중 경위는 57명(5.9%)에 불과하여 비간부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입순경과 신입경위를 동일한 교육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입직 경로 및 계급에 따른 차별적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경위, 경감급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실시되다 2005년에 폐지된 12주간의 조사간부과정 또는 조사관리자연수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간부급에 대한 수사요원양성교육이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사경찰의 발전이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수사요원의 간부화’의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간부급들에 대한 양성교육의 강화가 절실하

6) 자료는 경찰청 발간 2005 및 2006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을 참조하였음.

7) 수사경과제의 시행과 함께 경위팀장이 팀을 지휘하는 체제로 바뀐에 따라 경위도 수사지휘과정의 교육대상에 포함되었다.

8) 반면에 경찰대학 또는 간부후보생 교육을 수사요원양성과정을 대체시킨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⁹⁾. 또한 수사경과제와 맞물려 경위로 승진한 경우 일반경과로의 진출에 따른 인력감소를 보충하고 경찰대학 졸업생과 간부후보생 출신들에 대한 수사경과부여가 일정부분 인정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위급 수사요원들에 대한 별도의 수사교육과정의 신설 또는 수사요원양성과정의 입교강제가 필요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연 1,000명의 수사요원양성은 수사경과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해마다 신입 수사경과부여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의 내실화차원에서 교육인원을 감축하고 대신에 경위급들에 대한 교육인원을 늘리며 기간도 현재 3주에서 대폭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겠다.

둘째, 간부급의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문제는 수사요원양성과정뿐만 아니라 전문화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단계별 교육체계는 비간부급 수사요원의 승진체계에 맞춰 편성되어 있어 간부급에 대한 전문화교육이 미흡하다. 16개의 교육과정 중 마약¹⁰⁾과 사이버수사과정¹¹⁾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위이하가 교육대상이 되고 있어 수사팀장으로서 직접수사를 담당해야할 경감은 원칙적으로 전문화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005년도 교육수료현황을 보면 수사지휘과정을 제외한 전체 교육인원 3,524명(보안수사분야 포함) 중 경위급 313명(8.9%)이 전문화교육을 받아 2005년 11월 기준 수사경과자 중 경위가 차지하는 비율 13.5%에 못 미치고 있다. 반면 비간부급들에 대한 전문화교육이 전체 3,524명 중 3,192명(90.5%)을 차지하는 것과는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수사팀장 또는 수사(형사)과장의 직책을 담당하는 경감, 경정들은 경위계급에서 전문화교육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곧바로 수사지휘과정으로 들어간다. 수사지휘과정은 교육기간이 12주로서 기간과 내용면에서 전문화과정이 통합된 형태로도 볼 수 있으나 2005년도 경감, 경정급 교육수료인원이 91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전체 수사경과자 893명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수치(약10%)이다.

결론적으로 수사보안연수소에서 이뤄지는 전문화교육은 비간부급들을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최종별팀제에 따른 팀장의 직접수사라는 역할수행과 부합되지 않으며, 간부급들에 대한 전문화 교육의 부재는 일선에서의 간부들의 현장지휘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9) 경위, 경감급을 대상으로 한 조사관리자연수과정(총8주)은 2005년부터 폐지되었다. 대신 수사지휘과정에 경위가 포함되었다.

10) 경정이하가 교육대상임.

11) 경감이하가 교육대상임.

〈표 1〉 2005년도 수사보안연수소 계급별 교육이수 현황

교육과정 \ 계급	총 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수사지휘과정	178	13	78	87			
전문화과정 (1주포함)		7	19	313	1,083	1,540	569

넷째, 총경급 수사지휘관들에 대한 수사교육의 부재이다. 현 수사체제가 경찰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서장은 사실상 수사지휘선상의 최정점에 위치하고 있어 경찰서단위의 수사인력의 운용뿐만 아니라 수사지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휘력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현재처럼 수사경과를 경정까지만 부여하고 총경부터는 누구든지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의 수사부서 과장과 경찰서장의 보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수사경과자로서 수사부서에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지휘관이 수사본부장이 되거나 또는 까다로운 사건들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수사경과자 출신과 비수사경과자 출신사이에 지휘능력의 현격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실제 2005년도 7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경찰서장 중 수사경력 2년 미만자가 16명(전체의 51%)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수사경력의 부재 또는 결여로 인한 수사지휘는 수사경찰에 대한 통솔력의 약화와 부당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19개 과정 총 3,450명의 교육을 전담하는 수사보안연수소의 교육여건이 뒷받침이 되지 못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수사보안연수소 발전방안’의 교수요원 증원에 대한 계획에 따라 경제 및 사이버범죄 분야의 교수요원 2명을 보강하여 5명의 교수요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대폭적인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수사교육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편성이나 강사선정에 있어서 수사보안연수소가 주축이 되기보다는 본청의 해당 수사과가 교육프로그램의 편성, 강사선정, 교육대상자의 지정하는 위탁교육체제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표 2> 2006 수사직무과정 교육 현황(총 36개 과정 5,719명)

구분	직무교육과정				타기관 위탁교육				
	기능	과정명	대상	인원	비고 (’05대비)	과정명	대상	인원	교육기관
계		22개과정		1,520	+260	14개 과정		150	
양성 (종합 학교)	공통	수사요원양성(3주)	경위 이하	1,000					
		인권강사양성(2주)	경정 이하	300					
		피해자서포터전문(1주)	경위 이하	240					
전문 (수보 연)	지능	금융경제범죄수사(3주)	경위 이하	320		지식재산권지도요원(1주)	경감 이하	120	특허청
		공공지능범죄수사(3주)	"	320		야생동물보호반(1주)	경위 이하	26	국립환경 연구원
		선거범죄수사(2주)	"	80		오수·축산폐수관리반(1주)	"	30	
		보건환경범죄수사(3주)	"	120		폐기물관리반(1주)	"	30	
		총기범죄수사(2주)	"	40		배출시설관리반(2주)	"	20	
	강력범죄수사(3주)	"	560		경·검법령연수과정(1주)	경감 이하	66		
	강력	조직폭력범죄수사(2주)	"	120		대기측정검사반(1주)	경위 이하	3	손보험
		화재수사(2주)	"	80	-40	수질측정검사반(1주)	"	6	
		테러인질범죄수사(2주)	"	80		보험범죄아카데미(1주)	경위 이하	240	
	마약	마약류범죄수사(2주)	경정 이하	240	3주→2주	전기화재감식(1주)	"	40	손보험
	과학 수사	현장감식전문(3주)	경위 이하	120		가스화재감식(1주)	"	40	
		범죄분석전문(3주)	"	30		범죄면수사관(1주)	"	28	대한법 률면학회
	사이 버	사이버범죄수사(3주)	경감 이하	160					
		디지털증거분석(3주)	"	80					
	공통	진술녹화조사기법(2주)	경위 이하	350	신설				
		과학수사기법(2주)	"	160					
정보통신기기추적기법(1주)		"	240	신설					
범죄정보시스템분석(1주)		"	150	-50					
지휘 (수보 연)	공통	수사지휘(12주)	경정 ~ 경위	200		화재전문화(4주)	경위 이하	30	국과수
						계좌추적·회계장부분석(3주)	"	50	삼일회계

<표 3> 3단계교육체계

구 분	계	직 무 교 육		위 탁 교 육
		수사과정	인권과정	
계	36개 과정 5,719명	20개과정 4,450명	2개과정 540명	14개과정 729명
양성과정 (수사관 양성)	2개 과정 1,300명	1,000명 (종합학교, 3주)	300명 (종합,2주, 인권강사)	-
전문과정 (전문수사관 인증)	33개 과정 4,219명	18개과정 3,250명 (수보연, 2~3주)	240 (종합, 1주, 서포터요원)	14개과정 729명 (특허청등, 1~4주)
지휘과정 (팀장 보임)	1개 과정 200명	200명 (수보연, 12주)		-

4. 수사요원에 대한 인사관리시스템의 부실

수사경과제 시행이전의 수사인력의 관리문제는 전적으로 일선 경찰서 단위로 이뤄졌으나 수사경과제 시행으로 수사부서의 배치 및 진출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수사관의 선발과 교육 등에 대하여 수사경과제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어 비위경찰관에 대한 징계권을 제외한 인사권의 자의적 행사가 견제될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수사관을 선발하고 특정교육을 이수하도록 결정하는 인사관리의 주무부서는 경찰서의 경무과가 아닌 지방경찰청 수사과(형사과)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4년 수사경과제의 신청과 선발절차를 보더라도 경찰서 단위의 경우 위원장을 경찰서 과장으로 하고 경정, 경감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타부서로부터 수사경과를 신청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온정주의에 이끌려 기존의 수사관들이 신청하는 경우 그대로 받아주는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수사관들이 배치된 경찰서에서 지휘관이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하기란 어려우며 지방청 단위에서 수사요원에 대한 인사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수사경찰의 인력구조 문제점

수사경과제의 도입이 결정된 2004년 7월 경찰청의 ‘수사경찰 운용 개선계획’에 의하면 수사경찰관의 수사경력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수사경력 5년 미만이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3년 미만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수사부서 근무 기피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수사경찰의 전문성이 결여문제는 수사경과제의 도입이유가 되었으며 앞으로 진출의 억제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수사경력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경찰관들의 계급구성에 있어서도 주류가 순경, 경장, 경사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법경찰관인 경위, 경감, 경정은 18%에 불과하여 수사의 중심주체가 근무경력이 짧은 사법경찰관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¹²⁾. 더욱이 수사부서 근무자에 대한 학력별 현황을 보면 2005년 6월말 현재 총 17,637명의 수사부서 근무자 중 고졸이하가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4년제 대졸이상은 32.3%를 차지하고 있다.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들은 수사팀장 또는 수사(형사)과장으로서 직접 수사보다는 수사서류의 검토 및 결재, 중요사건 지휘의 역할에 중점두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검사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검찰수사와 대비되어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불신 내지 낮은 신뢰를 받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에 최종별팀제의 실시로 이와 같은 기존의 사법경찰관의 위상과 인력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즉 수사경과제가 최종별 책임수사체제를 골격으로 팀장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직접수사의 역할도 담당토록 함으로써 팀장인 경위, 경감들이 과거에 비해 위상이 약화되고 직접 수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수사경력이 짧은 팀장들은 수사서류의 작성, 범인검거활동에 있어 오히려 팀원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곧 팀장들의 지휘권약화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특히 경감급 팀장의 경우 경위급 팀장과의 차별화가 미흡하고 경찰서 실정 및 수사(형사)과장의 업무역량에 따라 역할이 유동적임에 따라 권한 및 업무의 한계에 대한 뚜렷한 기준제시가 없이 운용되고 있다.

12)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3.12.31 현재 총 92,165명의 재직 경찰관 중 실무자(사법경찰관)로 분류되는 경사, 경장, 순경이 78,325명으로 전체의 84.98%를 차지하고 있다(경찰백서, 경찰청 2004). 또한 수사경찰관의 계급별 인력현황을 보면 2004년 7월 현재 총 16,477명중에서 간부인 경위급 이상은 2,882명, 경사 이하는 13,595명으로 비간부가 전체의 82.5%를 차지하고 있다.

경위, 경감급 팀장의 역할변화에 따른 문제점은 2006. 4월 실시된 경위 근속승진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수사인력 중에서 경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 수사팀 중에서 경감급 팀장이 배치된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을 전부 경위팀장으로 보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1,200명에서 1,300명의 경위들이 팀원으로 근무해야하므로 과거에 반장 또는 팀장의 역할을 기대하였던 수사요원들이 경감팀장 내지 같은 계급의 팀장 밑에서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위화감의 발생내지 갈등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비하여 경찰청에서는 수사팀장 자격제를 골자로 한 ‘수사팀 역량 강화 방안’을 2006. 3월 말 마련하였다. 즉, 경위팀장의 증가에 따라 수사경력이 많고 수사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능력있는 경위를 팀장으로 보하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위들은 팀원으로 잔류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의 성공여부는 엄격한 선발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수사요원을 팀장으로 배치하는 것이며 선발절차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사경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위급 및 더 나아가 전체 수사경찰의 역량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표 4> 2004년 수사경과제 신청자 현황

구 분	정 원	현 원	신 청			수사부서 미신청
			계	수사부서	타부서	
계	16,919	16,876	19,361 (100%)	14,337 (74.1%)	5,024 (25.9%)	2,539
경 정	264	267	332	247 (74.4%)	85 (25.6%)	20
경 감	473	472	770	407 (52.9%)	363 (47.1%)	65
경 위	2,159	2,178	2,156	1,662 (77.1%)	494 (22.9%)	516
경 사	3,717	4,855	5,577	4,408 (79.0%)	1,169 (21.0%)	447
경 장	8,006	7,070	7,842	5,986 (76.3%)	1,856 (23.7%)	1,084
순 경	2,300	2,034	2,684	1,627 (60.6%)	1,057 (39.4%)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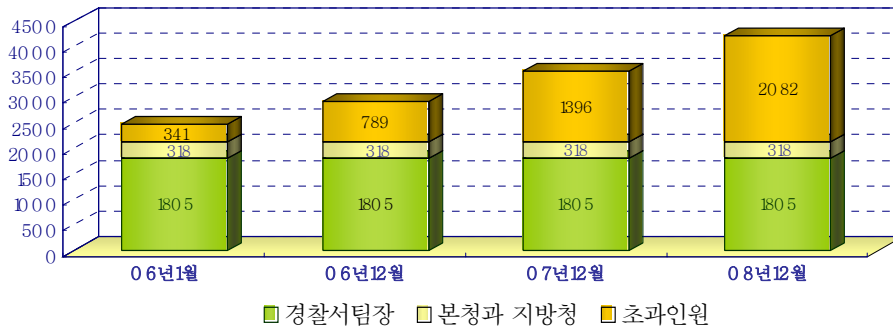
<표 5> 수사경과자 인원 현황('05. 11. 30 기준)

계급	총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인원(명)	16,552	297	596	2,238	5,377	6,664	1,380

<표 6> 수사경찰관 수사경력 현황('04. 6. 기준)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2,722 (16.8%)	3,421 (21.1%)	3,422 (21.1%)	2,345 (14.5%)	1,776 (10.9%)	2,525 (15.6%)

<그림 1> 경찰서 팀장 보직 대비 경위급 예상누적 총원



6. 근무평가의 객관성 확보문제

수사경과제가 시행되기 이전 수사경찰관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반경과자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승진을 함으로써 전체 경찰인력점유율 17.6%에 비하여 2003

년도 수사경찰 승진 비율은 16.3%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다. 수사경과제의 시행은 수사경과자끼리 경쟁, 승진토록 함으로써 불합리성을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승진체계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즉 경과내 자체승진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특별승진, 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방식이 병존함으로써 경과내에서의 과열경쟁체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 이뤄지고 있는 승진방식에 의하면 특별승진은 계급별로 차등을 두어 경감은 전체 승진예정인원의 0.5할, 경위는 1.5할, 경사이하는 각 2할 이내에서 인원을 책정하여¹³⁾ 범인검거유공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근속승진자를 뺀 전체 승진인원 중에서 절반씩을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승진체계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2004년도부터 특별승진자의 인원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언론 등에 보도된 중요범인 등을 검거하는 경우에 바로 승진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는 수사관 개개인에게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도록 하는 사명의식과 충성심을 통하여 검거성과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 수사의 어려움, 개인의 희생정도, 공조수사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검거라는 결과를 우선시함으로써 공조수사체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표 7> 공적별 특진현황(2005. 7. 31일 현재)

구 분	합 계	형사활동 우수	강력사범 검 거	지능사범 검 거	마약사범 검 거	사이버사범 검 거	기타범인 검거유공
05. 1. -7. 31	259	30	181	2	15	5	26
2004년도	662	83	360	44	19	7	149
2003년도	183	31	96	10	4	5	37
2002년도	119	16	76	3	1	5	18
2001년도	204	23	105	16	3	11	46
2000년도	273	44	155	18	4	4	48

1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 제4항

둘째, 근속승진인원을 뺀 나머지 승진인원의 절반을 시험승진에 할애하는 것은 수사력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요원들은 일반경과에 속한 경찰관들과 비교할 때 불규칙한 근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시험승진을 준비할 시간적, 정신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수사부서내에서도 업무량이 많지 않은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요원들은 시험승진에 유리하게 되어 본연의 수사업무에 충실한 경찰관이 오히려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근무보다는 승진에 치중하도록 함으로써 수사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의 비율을 절반씩 부여하는 것보다는 수사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험승진의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심사승진자의 선정에 있어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005년 총 1,529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BSC)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현재의 평가·보상체계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대다수가 ‘평가자의 주관 개입으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45.9%)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특히, 실제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단위에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평가·보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통합평가체계(BSC)¹⁴⁾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사국에서도 수사경과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직무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결국 상급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에 의한 평가방식보다는 객관적인 세부 평가항목 등을 마련하고 지휘관의 평가와 동료들의 평가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겠다. 여기에는 개인이 처리한 업무량(사건처리건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참고인진술조서작성건수 등), 업무수행능력(범인검거건수, 사건의 난이도, 공조수사여부, 피해자구호), 근무태도, 민원발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14) BSC성과관리시스템에 기초한 일선 지능범죄수사요원 근무평정 기준, 2005년 과제연구보고서, 제33편, 수사보안연주소, 325면 이하 참조

제2절 조직구조상의 실태

1. 본청 수사조직 구조의 문제점

본청 단위의 수사기능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국단위에서 수사국과 외사국이 분리되어 있다. 과거 외사국이 대외형사공조업무에 치중하였던 것과 달리 현재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불법 체류자 등이 국내에 상당수 거주하면서 마약밀반입과 불법송금 등의 범죄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아지고 내국인이 이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와 내국인이 저지른 범죄를 구별하여 수사할 실익이 있는지가 의문이다. 수사국과 외사국의 분리운영은 국제공조에 있어서 기능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며 업무의 중복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외사수사 및 국제공고기능을 수사국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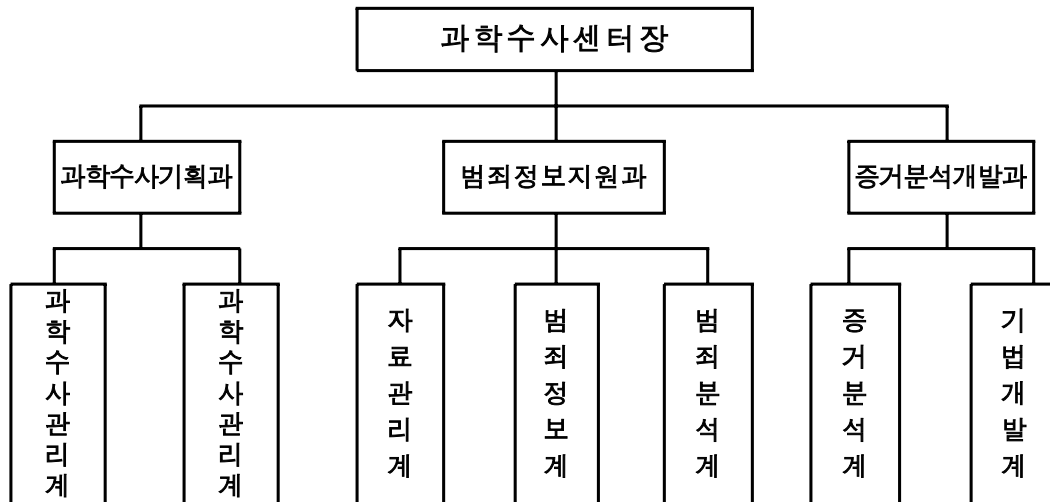
수사국 자체의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수사과, 특수수사과, 형사과, 마약수사과, 지능범죄수사과, 과학수사센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인권센터 등 총 8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특수수사과와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직접 수사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기획, 관리, 조정,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⁵⁾. 수사과의 경우에는 수사인력의 조정, 수사시스템의 개선, 수사경과제의 운영 등 각종의 기획업무와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전의 지능, 경제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건지도, 지휘는 지능범죄수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능범죄수사과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선거사범, 총기사건, 위조지폐 사건 등의 특수사건에 대한 지도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총 9명에 불과하여 강력사건에 비해 그 업무의 중요성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금융질서교란사범, 부동산투기, 증권사범, 보험사범, 보건사범, 환경사범, 건축사범, 식품위생사범, 신용카드사범, 공직자비리사범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 및 지휘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지능범죄들에 대한 수사들은 대부분 각종의 관계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거

15) 외사, 보안사범은 청에서 수사

래관계, 자금흐름 추적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수사관 또는 전문가가 배치돼야한다. 따라서 지능범죄수사과의 경우에도 형사과와 마찬가지로 살인, 강도, 도범, 화제, 폭력 등 분야별 세분화가 이뤄지도록 현재의 지능1계와 지능2계의 인력규모를 더욱 확충해야 하겠다. 아울러 본청 단위에서는 범죄첩보에 대한 빠른 수집과 분석 및 수사에 대한 기획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본청 수사국 법제연구팀¹⁶⁾ 및 범죄정보팀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기존의 수사과 산하의 범죄분석실(CIMS운용)을 과학수사센터로 통합한 것은 범죄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과학수사과의 범죄정보와 연계성을 높인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그림 2>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조직도



16) 앞으로 수사권 조정이 되면 사건에 대한 개별적 지휘가 팀장급, 과장급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법률적용 및 해석부분이 부족한 현실은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 경악할 만함. 수사권 조정이후 법률지원은 법률자문같은 수동적 행정적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간 검찰에 미루어왔던 법률지원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방법론에 있어 대검찰청 연구관과 같이 중요사건의 경우 해당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 적법절차, 업무처리메뉴얼 등 검색하고 적용여부를 분석하는 등 일선의 업무처리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를 지방청이나 경찰청 단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연구관 배치기준은 승진후 일정기간 최일선 중간관리자로서의 경험을 쌓은 자를 필수자격요건으로 하여 일선에서 쌓은 경험을 전문분야별로 나눠 활용함은 물론 연구논문제출 및 수사기법교육 등 중앙과 일선엿 경험을 공유함은 물론 경찰수사의 질적 능력을 드높여야 할 것임(경찰대학 116기 액션러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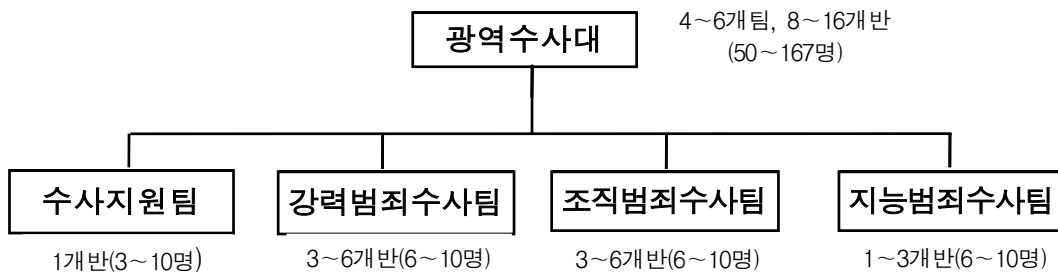
2. 지방청 수사조직 구조의 문제점

지방청의 수사조직은 수사부장 또는 차장(2부장) 또는 수사부장 밑에 수사과장과 형사과장을 두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사과와 형사과에서는 일선 경찰서에 대한 수사 지도 및 기획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청에 따라 수사계와 폭력계 등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기도 한다. 이와는 별도로 마약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지하철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특별수사조직을 두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사경찰의 조직구조의 큰 변화는 일선서 중심으로 이뤄지던 마약수사와 사이버수사업무가 지방청에 마약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의 신설을 통하여 흡수되었으며 2004. 10. 1일 과거 기동수사대의 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광역수사대를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광역화, 기동화되는 범죄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수사체계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한다.

반면에 광역수사대의 위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립 3> 서울·부산·경기지방청 광역수사대 조직도



첫째, 기능의 중복성으로 인한 문제점이다. 지방청내에 이미 직접 수사기능을 보유한 경우에 광역수사대와 지방청내 수사과 및 형사과간의 사건관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능의 중복성은 부서간 경쟁관계를 유도하여 많은 실적을 거양토록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업무협조나 공조체제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기능중복의 문제는 수사기능뿐만 아니라 행정기능에서도 나타난다. 광역수사대

는 자체의 수사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어 지방청내의 수사과 또는 형사과의 지원업무와 중복되고 있어 효율적인 수사계획의 수립, 예산·인력의 편성, 범죄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행정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

둘째, 지휘체계의 비통일성(중복성)의 문제점이다. 현재는 형사과장 밑에 광역수사대를 두고 광역수사대장을 경정으로 보하고 있으나 광역수사대의 담당 사건 중에는 일반 강력사건외에도 수사과의 사무분장에 포함되는 각종 건축사범, 부동산사기사범, 신용카드사범 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수사과장의 지휘를 받기 어렵고 더 나아가 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과의 지휘관계도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광역수사대장의 과다한 인력관리의 문제이다. 서울청의 경우 광역수사대장은 현재 경정으로서 수사지원팀, 강력범죄수사팀, 조직범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총 4개 팀 17개반 146명의 인원을 지휘, 관리하고 있다. 경찰서 관할조정 이전을 기준으로 형사인원(형사과 소속)이 가장 많은 강남경찰서의 경우 형사과장(경정)이 총 78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남용의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청의 수사기능의 강화 및 전문화를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조직구성을 위하여 지방청 내의 주무부서내에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것과 아니면 일종의 독립된 형태로 광역수사대를 운영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후자를 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차 지방청의 수사부서를 광역수사대로 이전시켜(또는 반대로 광역수사대를 지방청내로 흡수시켜) 수사과장 및 형사과장의 지휘를 각각 받도록 하는 체제가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본다. 즉, 가능한 조직모델은 지방청장-수사부장-형사과장과 수사과장 - 주무계의 피라미드모델이다. 또는 광역수사대를 지방청내에 중앙수사대를 설치하여 기획수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지방청관할구역을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수사대를 설치하는 프랑스 파리수사국과 같은 절충모델도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경찰청도 2005년 경찰서 수사인력 일부를 광역수사대에 흡수하여 광역수사단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서울의 경우에 중앙수사대와 강남, 강북 등의 지역수사대를 설치하는 계획이 마련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검토과제로 남아있다.

넷째, 광역수사대 내지 지방청 수사부서의 비전문화 문제이다. 광역수사대는 현재 지능, 강력, 조직범죄수사팀으로 중분류 되어 있으며 그 밑에 3-4개의 반을 두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반별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도 광역수사대의 전신인 기동수사대의 '기동출동' 내지 '위세적 수사'의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다섯째, 현재의 광역수사대의 수사방식은 기획수사 내지 인지수사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 또는 지방청의 수사2계 또는 수사3계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사건은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이것은 수사경과제와 함께 추진되는 단서별 수사체제가 아닌 죄종별 수사체제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여섯째, 수사본부와 광역수사대의 위상문제이다. 경찰청 예규인 수사본부운영규칙(2002. 6. 20.개정)에 의하면 수사본부는 살인 등 기타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그리고 수사본부의 설치권자는 본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그 외에 지방경찰청장은 지방청의 수사과장, 형사과장 또는 사건 발생지의 경찰서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책임수사의 원칙에 따라 사건발생지 경찰서장이 통상 수사본부장이 되어 수사본부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2004. 10. 1일에 확대개편된 광역수사대의의 운영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한 중요한 광역사건(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동종 또는 유사사건)과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 수사를 광역수사대가 담당하게 되며, 제8조 1항에 의하여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본부장을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하고 광역수사대장이 전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두개의 운영규칙을 살펴보면 수사운영규칙보다 나중에 개정된 광역수사대운영규칙이 기존의 수사본부의 운영규칙의 상당부분을 사실상 수정하고 있다. 즉, 경찰서장이 수사본부장이 되고 통상 형사과장이 전임관으로서 수사지휘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청 수사과장이 본부장이 되고 광역수사대장이 전담수사를 하는 체제로 중요범죄수사에 대한 체계모니를 경찰서에서 지방청 광역수사대로 이전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제8조 2항 이하에서는 사건 관할경찰서장은 광역수사대장의 요청에 따라 인력·장비·장소 제공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경찰서 강력반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수사대장은 파견된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서장은 광역수사대 전담 수사사건에 대한 첩보 입수시 반드시 광역수사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이론적 타당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존의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책임수사체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음으로써 그 실효성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제는 범죄첩보의 수집과 분석, 전파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무동기 연쇄살인사건 등과 같이 범죄 프로파일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경찰서보다는 관할범위가 넓은 지방청 단위에서 각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취합하여 범죄발생의 추이를 분석하고 연쇄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바이캣(Vicat)에 대한 내실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3. 경찰서 수사조직 구조의 문제점

경찰서의 수사조직도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과거 형사과와 수사과로 구분되어 형사과장-형사계장-강력반, 형사반과 수사과-조사계장-조사반원의 형태는 형사과장-형사계장, 강력계장-강력반 또는 폭력반에서 최종별 팀제의 시행으로 형사과장-강력팀장, 폭력팀장-팀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화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는 것은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제이다. 2005년 6. 30현재 전체 17,637명의 수사인력 중 지방청 수사인력은 총 1,699명이며 경찰서 수사인력은 총 15,938명에 이른다. 경찰서 인력이 지방청 인력의 9배가 넘고 있다. 이러한 수사조직 편성은 범죄의 광역화와 지능화 경향에 비추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의 전문화에 대처하고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경과제와 최종별 팀제의 운영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 경찰서 중심 수사체제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첫째, 경찰서 단위의 최종별 팀제를 통한 전문화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한 해 많

은 양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의 일부서(강남, 서초 등)를 제외하고 수사관의 인원이 적고 범죄사건 발생량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서에서는 최종별 팀제를 통한 전문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무에 있어서는 형사과의 경우 겨우 강력팀(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마약사범 등 강력범수사)과 폭력팀(일반 폭력사범 수사)으로 수사과의 경우에는 지능팀(집회, 시위, 선거, 공무원, 사이버관련 범죄수사, 보건, 환경사범 등 특별법범수사)과 경제팀(사기, 횡령, 배임 수사)으로 구분하는 수준이며 더 이상의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종별 팀제 이전에 존재했던 마약전담반은 최종별팀제로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수사 단서별이 아닌 최종별 업무분장은 최종에 따른 범죄발생량이 달라 경찰서 단위의 팀제에 적용하는 경우 업무량의 편차와 근무방식의 변화를 초래하여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되기 어렵다.

둘째, 최종별 팀제는 전문화를 통한 수사역량의 강화보다는 오히려 수사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이다. 과거 단서별 수사체제에서는 폭력반이 일반 당직사건을 처리하고 강력반의 경우에는 인지수사 및 기획수사 위주의 형사활동을 하였으나 최종별 수사원칙에 의하여 발생일자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이 명백한 고소 및 고발사건을 강력팀이 처리하게 됨으로써 적극적인 범죄인지 활동을 해야 하는 강력팀의 내근화를 초래한다. 즉, 기존의 조사계의 수사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인지수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셋째, 형사과장 수사과장이 지휘능력의 한계문제이다. 종전에 형사계장 또는 조사계장을 통하여 사건의 배당,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검토, 중요 사건에 대한 사건지휘 등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과 총괄하는 과장과의 중간 통로로서 감독 및 지휘의 중요 기능을 수행하던 계장이 팀장으로 바뀌므로써 형사과장 또는 수사과장 1인이 전체 과원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살인사건 등 수사본부 설치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형사(강력)계장이 실질적인 수사를 주도하였다면 현재의 팀제에서는 이를 수행할 지휘자가 애매해질 뿐만 아니라 소속이 다른 팀원들에 대한 장악력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넷째, 광역수사대와 경찰서간의 관할사건의 불명확으로 업무의 중복문제와 공조수사의 문제가 있다.

4. 국과수 이전문제와 유전자은행의 문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955년 3월 25일 내무부 치안국(현 경찰청)의 지원·감독을 받는 내무부 소속기관으로 발족하였다 1991년 8월 이후 치안본부의 경찰청 승격시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을 추진하였으나, 감정의 독립성 및 신뢰성 등을 이유로 내무부(현 행자부)소속기관으로 잔류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1994년 3월에도 경찰청에서 과학수사체제 강화를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소이후 현재 1본소 4분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과수는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2004년 기준으로 총 220,698건의 감정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변시체부검·검안 4,728건, 유전자분석 12,698건, 마약류 31,134건, 혈중알콜 68,717건, 화재·폭발관련 3,032건 필적·인영 등 문서 8,892건 영상분석 2,204건, 토양·환경·중금속 등 화학적 분석 7,096건 등이다¹⁷⁾.

의뢰기관별 감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이 210,588건으로 전체처리건수의 9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경 2,522건으로 1.1%, 법원 824건으로 0.4%, 검찰 4,596건으로 2.1%, 군 582건으로 0.3%, 기타 1,586건으로 0.7%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국과수는 경찰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그 소속이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으면서 운영에 대한 감독은 경찰청장이 행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인하여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수사경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지방청 및 경찰서의 초동수사와 국과수 증거감정과의 유기적 공조체제로 사건, 사고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소속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고려돼야 할 것이 유전자은행의 설치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특정 범죄의 피의자 또는 형확정자에 대한 유전자 지문화일을 구축하여 범인발

17) 경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 경찰수사와의 관계, 윤대표, 참여식 전문직무교육 강의모음집, 제11기 치안정책과정, 경찰대학, 113면 이하

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유전자은행의 설치와 관련한 법무부, 검찰,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¹⁸⁾

제3절 운영상의 실태

1. 공조수사체제의 문제

공조수사라 함은 경찰관서 상호간에 자료수집, 수배, 통보, 조회, 촉탁 등을 함으로써 범인, 여죄 특정인의 범죄경력, 신원 불상자(변사체 포함)의 신원을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 조사, 구금하기 위한 종합적인 일련의 조직 수사활동을 말한다. 공조수사는 수사인력의 조직적 활용과 수사자료의 공유활용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는데¹⁹⁾ 지금의 현실은 전산화된 수사자료²⁰⁾의 수집과 배포, 그리고 중요 범죄사건발생 통보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할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관서가 협력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수집 활동을 하는 수사인력의 조직적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수사 공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동일범에 의하여 관할을 달리하여 수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범죄장소와 범인의 소재지가 달라 범인을 추적해야 하는 경우, 범인의 주변인물 조사와 증거 및 자료수집 활동이 필요한 경우로 크게 나뉘볼 수 있다. 이러한 공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타 관할 발생사건에 대한 무관심이 작용하고, 둘째,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사사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범죄분석이 상급관서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고, 셋째, 중요범인검

18) 다만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19) 장용락, 현행 공조수사체제와 운용방법,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1996. 7.

20) 전산화를 통한 자료공유는 경찰청이 운용중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과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거에 따른 특진 및 포상 등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수사요원간, 팀간, 서간, 지방청간에서 서로 범인을 먼저 검거하겠다는 공명심으로 공조수사를 기피하는 데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²¹⁾. 즉, 범인을 잡기만 하면 되며 그 과정 또는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조수사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제로 인한 광역수사체제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2. 수사절차상 피해자 등 인권보호의 문제

경찰수사의 신뢰성이 문제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들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수사에 있어 일선 수사요원들은 범죄피해자, 여성, 장애인,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보다는 범인검거에 치중하여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항시 안고 있다.

최근에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가 수사국 산하에 설치가 되고 피해자 보호와 기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례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발표하였으나 더욱 근본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먼저, 상급부서의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일선서의 수사관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탁상공론적인 전시행정 차원의 대안들의 양산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전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아동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비디오녹화제도의 도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를 관장하는 경찰청의 생활안전국의 여성청소년계와 실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국의 형사과와의 이원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밀양성폭력 사건의 경우 불필요한 신문, 공개수사, 대질수사 등으로 2차 피해를 주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찰청에서는 이를 계기로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여성의 요청여부를 불문하고 여경이 수사토록 하고, 조사시 가족 등이 입회, 장애인, 13

21) 이상원, 형사사법 체계상에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 치안연구소, 2002-2, p. 129.

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진술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표 8>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검찰관련 주요 인권침해사건 결정현황

구분 순위	인용사례(총52건 중)		기각사례(총 8건 중)	
	1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13	인격침해 미해당
2	적법절차위반	13	입증자료 부족	2
3	시설 및 처우	8	사실이 아닌 내용 진정	1
4	기타(부작위, 부당 불심검문 등)	7	유치장 흡연	1
5	집회 및 시위관련	4	기타 (검찰민원 관련)	1
6	사생활비밀 및 인권침해관련	4		
7	피해자 등 보호조치 소홀	3		

3. 피의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문제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달리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서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됨으로써 피의자신문단계에서의 자백을 받아내려는 경향이 상존한다. 또한 해당사건에 대한 자백뿐만 아니라 여죄에 대한 무리한 추궁이 가해지는 경향이 있어 자칫 고문 또는 가혹행위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의자의 장시간 대기, 반말의 사용, 위압적인 태도, 성적 차별과 관련된 질문, 사생활에 대한 간섭, 합의의 종용, 식사시간의 미부여, 불친절 등 광의적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급박하지 않은 밤샘수사, 진료요청에 대한 미조치, 구속의 위협 또는 협박, 부당한 면회의 제한 등은 공공연한 밀행 수사기법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즉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없이 손쉽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은 수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대로 피의자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순순히 자백을 하였으나 검찰 또는 공판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어 경찰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동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녹화제의 실시와 함께 중요 범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과정의 녹음녹화방안은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좋은 도구로서 평가된다. 또한 1999년부터 검찰보다 앞서 경찰이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2006년 4월 경찰청이 주관한 학술세미나 등을 통하여 제시된 피내사자와 중요참고인 등의 조사과정에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고무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다.

4. 강제수사의 자의적 행사로 인한 불공정성의 문제

체포 및 구속 등의 강제수사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신구속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법률상 사전 또는 사후의 사법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명확한 기준없이 수사관 개인의 판단 또는 상사의 지시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대상자의 생계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변호사 선임에 따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수사관 또는 감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건수를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특별수사기간 등을 통하여 관서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수사경찰의 운용상의 구조적 문제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영장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영장기각률도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반면에 2005년도는 영장신청건수가 2004년 102,055건에서 70,823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영장기각률도 19.2%에서 16.9%으로 같이 감소하였으나, 2002년도, 2003년도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경찰 자체의 인권보호노력과 함께 검찰과 법원의 구속억제를 위한 통제강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신구속의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신구속의 남용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구속기준의 명확한 지침 마련과 수사관개인의 판단에 의한 구속영장신청이 아닌 팀장 또는 수사(형사)과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별도의 영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9> 체 포 현 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체포영장	긴급체포	체포영장	긴급체포	체포영장	긴급체포	체포영장	긴급체포
영장신청	2,846	52,221	4,030	48,702	13,991	40,553	11,305	27,209
기각 (기각률)	324 (11.4)	7,628 (14.6)	587 (14.6)	7,284 (15.0)	2,287 (16.3)	7,356 (18.1)	1,769 (15.6)	3,902 (14.3)

<표 10> 구 속 현 황

	2002	2003	2004	2005
영장신청	99,898	100,221	102,055	70,823
기각계 (기각률)	13,377 (13.4)	14,725 (14.7)	19,625 (19.2)	11,978 (16.9)
검사불청구 (불청구율)	8,178 (8.2)	8,559 (8.5)	11,066 (10.8)	6,511 (9.2)
판사기각 (판사기각률)	5,199 (5.2)	6,166 (6.2)	8,559 (8.4)	5,467 (7.7)

제3장 선진외국의 수사경찰

제1절 독일의 수사경찰

1. 독일 수사경찰의 현주소

유럽공동체는 1992년 Maastricht협약을 기점으로 유럽연합으로 전환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경제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국경개방에 따른 범죄의 다국적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각국의 형사법의 통합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²²⁾ 독일경찰은 이러한 유럽 내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독일경찰은 기존의 3단계 {비간부급(mittler Dienst), 간부급(gehobener Dienst), 고급간부급(Hoherer Dienst)} 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던 계급체계에서 비간부급(mittler Dienst)을 없애는 2단계 계급체계로 전환하여 수사경찰(Kriminal Polizei)의 간부화를 추진하고 있다.²³⁾ 범죄수사에 있어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행하여야 하는 경찰의 주요위치는 바로 현장이라는 관점 하에서 현장 활동자를 전원 간부화하여 책임과 권한 그리고 판단능력을 향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둘째 독일은 전국적으로 수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연방수사국(BKA)과 각주 직속의 주수사국(LKA)을 설치하여 수사인력과 장비를 집중화함으로써 중앙과 각 지방의 수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독일에

22) 이러한 차원의 일환으로서 유럽연합은 1994년 EUROPOL을 창설하여 각국의 형사업무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23) 특히, Hessen주의 경우에는 예방경찰까지도 비간부입직경로를 없애고 기존의 비간부도 일정한 기간동안의 교육을 통하여 전원 간부로 승진시켰다. 따라서 최하위계급이 경위급간부(Kommissar)다. 이에 반하여 바이에른 주의 경우 수사경찰은 대부분이 경위급 이상의 간부이나 비간부급중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찰관은 수사경찰로 활동할 수 있다. 바이에른주 경찰이 기존의 계급체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경찰이 되고자 하는 주시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바이에른주 주수사국(LKA)의 조직범죄부장 Geissdoerfer 씨와 인터뷰내용)

서 수사인력의 집중화는 연방 및 주수사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각 주는 지방경찰청 산하에 일반 경찰서와는 별도로 수사경찰서(Kriminalpolizeidirektion)를 설치함으로써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경찰서에서 담당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건(예를 들어 구속을 요하지 않는 사건) 일선 경찰서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각 경찰서는 인신구속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²⁴⁾ 셋째 수사구조개혁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사경찰의 선발과 교육이다. 독일경찰의 경우 특히 신입경찰에 대한 교육기간이 비교적 길다. 이는 경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고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구성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독일수사경찰의 개혁방향 중 독일 수사구조와 최근 구조개혁방향 및 독일 수사경찰의 선발과 교육제도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 후 수사경찰의 활동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 독일의 경찰조직과 수사

1) 경찰의 사물관할과 수사의 권한

우리나라가 수사구조개혁을 목적으로 독일 수사경찰제도를 모델로 삼을 경우 주의깊게 고려해야 할 점은 헌법상 독일경찰의 임무가 지방(주)사무에 속한다는 것이다.²⁵⁾ 이에 의하면 지방경찰에 소속된 모든 경찰은 경찰의 기본임무중의 하나인 수사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수사의 권한은 헌법상 지방사무로 규정된 경찰의 임무에 기속되게 된다. 그러나 수사는 사물의 성질상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해당되어 국가에서 법률을 정하고 경찰의 고유임무인 집행은 지방 주정부에서 실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수사업무의 성격상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지방경찰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이거나 특정지방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경찰기관의 능

24) 이 방안은 최근 수사권조정논쟁과 관련하여 검사가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여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용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장소 감찰제도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5) 독일헌법 제30조: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적 과제의 수행은 이 기본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의 사항이다.

력 등을 볼 때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만 국가경찰기관인 연방수사국에서 직접 담당한다.²⁶⁾ 따라서 독일 경찰의 권한은 독일 헌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지방의 권한으로부터 국가로 권한의 일부를 이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사무라는 경찰임무의 본질은 연방수사국과 주수사국간 지휘관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 경찰체제가 우리나라가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려는 자치경찰제의 기본방향과 반대적인 입장에 서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 수사경찰조직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2) 독일의 연방경찰

가. 연방경찰의 수사권확대

2차 대전 패전직후 각 주단위로 주수사국(LKA)을 설치하여 대범죄 투쟁을 벌여왔던 독일은 범죄가 점차 광역화·기동화됨에 따라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를 초월하는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1951년 연방수사국(BKA)를 창설하게 되었다. 창설초기 연방수사국(BKA)은 처음부터 수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각 주에 대한 수사정보 분석 및 교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었으며, 직접적인 수사 활동은 주 내무부장관 직속인 지방수사국(LKA)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극심해진 테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방수사국의 기능을 확대하면서부터 수사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으며, 1997년 개정된 『연방수사국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독일 내에서 수사기관의 중심체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나. 연방수사국(BKA)의 임무

독일연방수사국은 연방내무부(Innenministerium)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역경찰, 연방의 다른 경찰 및 외국경찰과 협력하여 독일의 치안질서유지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26) 『연방수사국에관한법』은 연방헌법 제73조 제10호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연방수사국의 임무는 연방수사국법(BKAG)에 근거하고 있다. 연방수사국은 독일대범죄 투쟁의 통합시스템으로서 1개주를 초월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수사함에 있어서 연방 경찰 및 주경찰을 지원 및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연방 16개주에 기속되어 있는 경찰권의 다양성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함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연방수사국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정보 및 경찰수사의 공조체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그밖에 연방수사국은 범죄행위 혹은 범죄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있으며, 항상 최상의 학문과 과학기술에 근거한 새로운 범죄대응책을 연구·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방수사국의 주요임무는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²⁷⁾

(1) 중앙기구(Zentralstelle)로서의 기능

연방수사국은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연방수사국은 범죄정보와 정보수집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단시간 내에 수사, 수배 및 국제공조에 개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지역적인 성격의 범죄 및 범죄인에 대한 정보라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는 곧바로 연방수사국으로 통보되어 분석된다. 연방수사국에 제공된 자료는 정보시스템에 저장되며, 여기에 정보보호에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둘째 연방수사국은 경찰전자정보시스템(INPOL)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조여권 혹은 여권분실 등에 대비하여 혐의자의 지문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개인식별을 위한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INPOL에는 약 89만2천여 건의 인물수배자료와 범죄 관련 약 870만 건의 물건수배가 입력되어 있으며 Schengen협약²⁸⁾으로 국경통제가 없어진 이후 유럽지역 내 약 30000개소의 단말기로 즉시조회가 가능하게 하였다.²⁹⁾

셋째 연방수사국에 부여되어 있는 중앙기구로서의 임무에는 과학수사에 관한 설비

27) www.bka.de, 아래 내용은 연방수사국이 제공하고 있는 기본업무에 관한 소개를 요약한 것이다.

28) 1997년 유럽연합간 체결된 조약으로 정보교환 및 국경통제폐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9) 이성용, 비교경찰론, 197면.

및 데이터 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수사국의 실험실에는 최신과학기술을 습득한 과학자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DNA분석기법이 더욱 정밀화됨에 따라 수사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연방수사국은 범죄기법 내지 범죄학연구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곳에서 경찰의 각종 범죄통계(PKS)를 분석해내고 있으며, 또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넷째 연방수사국은 감식과 관련하여 경찰 및 사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를 발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행정자치부에 속해있는 것과는 달리 범죄연구소는 연방수사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과학적인 검증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 수사기능

연방수사국은 연방수사국에만 부여되어 있는 고유영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혹은 연방검사(또는 주검사)의 위탁(Auftrag)에 근거하여 수사한다. 연방수사국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유영역은 아래와 같이 주로 국제범죄 및 중범죄와 관련된다.

- 마약, 무기밀매등 국제적인 조직범죄수사
- 위조통화제조 및 유통에 관한 국제범죄수사
- 자금세탁과 관련된 국제조직범죄수사
- 국제테러조직수사
- 컴퓨터장애에 관한 중요범죄
- 해외에서의 인질범죄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연방수사국은 연방검사 또는 주검사가 위탁(Auftrag)한 수사를 담당한다. 따라서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사건은 독일의 경우 연방수사국이 담당한다.

(3) 국제공조기능

연방수사국은 독일 수사경찰의 중심기구로서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는 연방수사국의 주요업무에 해당된다. 최근 유럽연합 내에 국경통제가 Schengen협약을 통해 폐지됨에 따라 지명수배대상자에 대한 국제공조가 더욱 긴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방수사국의 국제공조기능은 더욱 확대되었다. 현재 연방수사국의 국제공조파트너로서는 현재 유럽 내 15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로폴(Europol)과 세계 184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인터폴이 있다. 연방수사국은 현재 국제공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45개국 48개소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범죄수사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처하고 있다.³⁰⁾

(4) 요인경호 및 예방기능

연방헌법기관의 중요요인 및 외국의 국빈에 대한 경호업무는 연방수사국 소관이다. 또한 연방수사국은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건에 대한 중요 증인에 대한 보호업무도 담당한다.

최근 연방수사국은 요인경호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후에 수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범죄예방업무는 범죄기회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예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개발·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내에 ‘전기출발장애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나 ‘주거침입방지장치’를 개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5) 행정기능

연방수사국은 총포소지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30) 이성용, 비교경찰론,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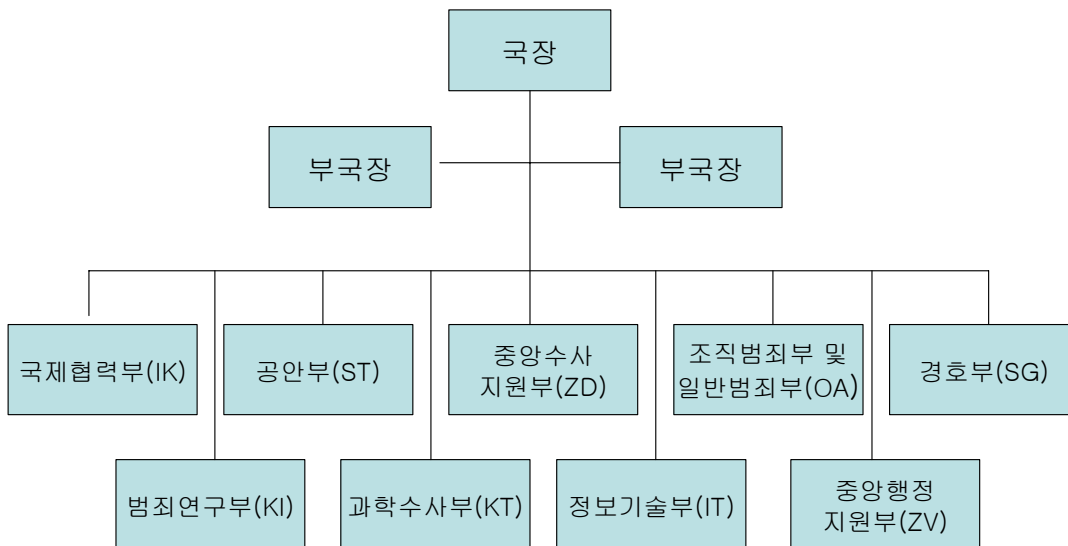
밖에 『총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총기 등 그 대상물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고 특별허가서를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연방수사국의 구성원

연방수사국은 2005년 현재 약 5500여명의 직원이 3개 권역 즉, Wiesbaden, Berlin 그리고 Meckenheim지역으로 분산되어 일하고 있다. 연방수사국 근무직원은 자신의 영역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범죄학, 자연과학, 경제, 사회학 및 정보학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중 거의 반 수 이상이 약 70개의 직업군에서 속하는 전문교육을 받은 수사경찰이다. 전체직원의 약 1/3정도가 고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11%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라. 연방수사국조직

<그림 4> 연방수사국 조직



(1) 국제협력부(Abteilung IK: Internationale Koordinierung)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가공할 만한 위협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의 국제화로 인하여 세계각국경찰의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연방수사국은 2005년 1월1일부터 국제협력부를 신설하였다. 지금까지는 여러 과에 분산되어 처리하던 국제협력업무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다. 국제협력부는 전략발전팀(Strategieentwicklung und Strategische Frühaufklärung)과 국제지원팀(Internationale Unterstützung)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발전팀은 가능한 최신범죄기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연방수사국과 다른 안전청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 포진해 있는 연락관이 정보수집 및 교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³¹⁾ 특히 이들은 국제조직범죄 및 마약수사와 관련된 전략정보수집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전략발전팀은 인터폴뿐만 아니라 유럽경찰(EUROPOL)을 통한 국제협력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요임무중 하나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제협력업무를 위한 유럽의회(EU-Gremien)의 회의 및 주요결정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한편 국제지원팀은 세계 각국의 파트너와 지속적인 업무접촉을 하며 연방수사국이 국제협력을 위해 관여하는 국외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 공안부(Abteilung ST: Polizeilicher Staatschutz)

공안부는 정치적 동기범죄에 대한 투쟁을 그 중요임무로 하고 있다. 극우단체 및 테러조직의 범죄행위가 대표적인 정치적 동기범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투쟁임무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국제무역센터 테러 및 2004년 3월 11일 마드리드의 국제테러를 기점으로 연방수사국의 중요임무로 부여되었다.

공안부는 첫째로 이러한 정치적인 동기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둘째로 공안부는 형법 제129조a 와 제129조b의 범죄단체

31) 현재 45개국 48개소에 연방수사국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조직죄와 관련된 범죄수사를 담당한다. 셋째로 헌법기관의 주요요인 및 외국의 국민에 대한 정치적인 범죄수사도公安부의 주요임무이다. 넷째로 외국에서의 인질범문제해결을公安부가 담당한다.

국가보호 특히 대테러투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양한 경찰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는 임무이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4년 12월 대테러 공동기구(Gemeinsamen Terroismusabwehrzentrum)가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헌법수호청, 연방정보국, 주수사국 및 연방수사국 직원이 파견되어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조직범죄 및 일반범죄부(Abteilung OA: Organisierte und Allgemeine Kriminalität)

조직범죄수사부는 특히 국제적인 마약범죄, 경제범죄 및 국제인신매매범죄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방수사국 조직범죄부의 수사는 고유한 수사업무뿐만 아니라 주수사경찰의 위탁에 의해서도 진행된다. 조직범죄수사부의 임무를 좀 더 세분해보면,

첫째로 고유한 수사업무에는 국제조직적인 마약, 무기, 폭발물 및 통화위조범죄에 대한 수사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범죄가 연방수사국의 조직범죄수사부의 고유임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국과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이는 독일과 외국간의 범죄정보의 교류의 중심점이 연방수사국이기 때문이다. 조직범죄수사부는 여러 수사기관이 동일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각각 압수 수색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둘째로 조직범죄수사부에는 불법자금유통 및 비밀수사에 대한 특별수사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 수사기구는 범죄수사를 위한 금융분석 및 지원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조직의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연방수사국과 관세청(ZKA)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합동금융수사부(GFG)부터 밀수범죄전담분석팀(GASS)등 다양한 합동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셋째로 조직범죄수사부는 최근 급속히 증가한 정보 및 통신범죄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조직범죄수사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조정하고 주수사경찰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특히 컴퓨터범죄에 대하여서는 조직범죄수사부에서 직접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연방수사국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아동포르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으며, 조직범죄수사부는 아동포르노 제작자 및 유포자 및 희생자 등 매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범죄자와 희생자를 확인하고 있다.

넷째로 조직범죄수사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원확인부서(IDKO)가 속해 있다. 신원확인부서는 현재 100여명의 전문가와 30여명의 외부참가자(법의학자, 치과의사 및 부검보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70년대 이후부터 여객기추락참사 및 동아시아의 해일피해지역에서의 참사자의 신원확인을 지원하고 있다.

(4) 경호부(Abteilung SG: Sicherungsgruppe)

헌법기관의 요인보호는 연방수사국에 부여된 법적인 임무이다. 경호부는 연방대통령, 연방상하원의원 등 헌법기관의 요인보호측, 뿐만 아니라 외국국빈보호임무를 담당한다. 요인보호임무를 담당하는 경호부는 연방경찰, 주경찰 및 기타 안전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5) 중앙수사지원부(Abteilung ZD: Zentrale kriminalpolizeiliche Dienste)

중앙수사경찰센터는 크게 상황유지실(Praesenzdienste), 신원확인실(Erkennungsdienst) 및 상황대책실(Operativen Einheiten)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상황유지실은 대부분의 사건발생시 최초로 사건과 접촉하는 장소이다. 이 때문에 상황유지실은 긴급경보체제가 기타관련 부서와 구축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 역시 중요사안발생과 관련된 조치요령 및 기타부서의 업무의 특성을 파악함이 필수적이다. 상황유지실에는 유럽연합전역을 관장하는 지명수배시스템(Schengener Informationssystem-SIS)이 구축되어 있어 독일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에서 발생하는 지명수배자에 대한 조치가 이곳에서 통제되고 있다.

둘째로 범인과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가 신원확인실의 주요업무이다. 신원확인실은 수많은 범죄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진자료 및 범인의 신상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역 3백만명분의 지문과 80만 명분의 손바닥 지문이 AFIS에 저장되어 있고, DNA분석데이터를 통해 신원확인방법을 보완하고 있다. 여기에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의 형상을 구현해내는 몽타주실(Phantombilderstellung)을 갖추고 있다.

셋째로 상황대책실(Operativen Dienst)은 실제 범죄상황에 직접 투입되는 부서이다. 이 때문에 범인의 신속한 검거내지 범죄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기동타격대 (Mobile Einsatzkommando)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필요시에는 폭발물, 방화물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기술을 연마한 전문가그룹이 현장에 직접 투입된다. 전문가 그룹에는 인질범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협상전문팀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 그룹은 피해자를 포함한 중요증인의 보호업무 담당하면서 증인의 증언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증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6) 범죄연구소(Abteilung KI- Kriminalistisches Institut)

연방수사국내의 범죄연구소는 독일수사경찰을 위한 연구기관이자 정책조언기관이라 할 수 있다. 범죄연구소는 연방경찰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에게도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대범죄투쟁을 위한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① 범죄학 및 범죄연구
- ② 범죄수사기법연구
- ③ 수사교육

범죄연구소는 대범죄투쟁을 위한 연구활동과 이를 통한 최신범죄수사기법의 활용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범죄연구소는 새로운 수사방법을 도입할 때 이에 대한 조언적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사건분석도 담당한다.

또한 범죄연구소는 경찰활동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3. 자치경찰기관

가. 자치경찰개관

지방경찰조직은 각주 공히 주내무부에 소속되어 주내무부장관 (Innenminister)의 지휘를 받고 있다. 내무부 소속의 경찰관청은 구조적으로는 주수사경찰국, 도단위의 지방경찰청, 주 기동경찰대, 주경찰학교, 수상경찰로 구분된다. 주내무부에는 경찰담당국이 설치되어 있으나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으며, 하급 경찰관서에 대한 인사, 예산, 지원, 감독, 통제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주수사국 (LKA)과 지방경찰청은 그 상호관계에 있어서 상급관청과 하급관청의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주 수사경찰국(LKA)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정보와 첩보의 수집, 범죄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각 주에서 일어나는 주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 업무로 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경찰청은 우리나라의 지방경찰청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여기에는 행정지원, 경비, 교통, 수사, 방범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주수사국과 지방경찰청 간의 행정적인 업무협조는 내부부산하에 경찰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한 주수사국과 지방경찰청산하 수사담당부서 간에는 수사업무의 경중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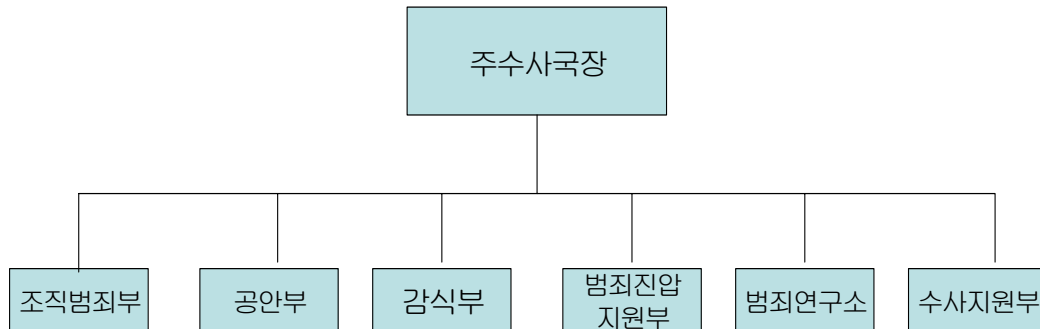
아래에서는 독일 16개주 중의 하나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주의 주수사국과 바이에른(Bayern)주의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수사와 관련된 자치경찰조직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 주수사국(LKA)

주수사국(LKA)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정보와 첩보의 수집, 범죄수사기법의 연구, 개발 및 각 주에서 일어나는 주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 업무로 하고 있다. 주수국의 조직구조와 그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수사국의 조직

<그림 5> 주수사국의 조직



(2) 임 무

(가) 제1부(조직범죄수사 및 정보분석: Ermittlungen, Auswertung und Analyse OK)

주수사국 제1부는 NRW의 경찰조직법(POG) 제13조³²⁾에 의해 부여된 사물관할에 있는 형사사건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직범죄수사
- 경제범죄 및 컴퓨터범죄수사
- 부정부패 및 환경사범수사
- 법무부의 동의하에 내무부가 지정한 사건수사
- 법무부와 내무부가 합의한 지침에 의거한 법원 또는 검찰의 촉탁사건수사

특히 주수사국 제1부는 NRW주경찰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세무관련 중심수사기관으로서 자금세탁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금세탁방지법(Geldwaeschegesetz)에 따라 불법자금을 회수하거나 사건수사를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제1부는 경제 범죄수사에 주도적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도 담당하고 있다.

32) NW주 경찰조직법 제13조(주수사국의 사물관할)는 제1항을 통해 주수사국을 중추적인 수사기구로 규정하고, 제2하에 그 구체적인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제2부(주공안부: Staatsschutz)

NRW주의 공안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는 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과(Ermittlung Staatsschutz)는

- 정치적인 동기에 기인한 범죄(형법 제129조, 129조a, 129조b에 해당되는 범죄)
- 주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형법 제93조 이하규정)
- 극우주의자에 의한 폭력(형법 제211조)
- 기타 국제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제2과(Fahndungsgruppe Staatsschutz)는 제1과가 담당하는 범죄수배업무를 전담하며, 제3과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발생하는 범죄분석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제2부는 우선적으로 NRW주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며 연방수사국과 다른 주수사국과 정보교환 등 상호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제2부는 NRW주 경찰법 제13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1개주를 넘어서는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다) 제3부(감식, 지명수배 및 예방부: Kriminalitätsauswertung, Fahndung, Vorbeugung)

제3부는 4개과 즉, 범죄분석과(Kriminalitätsauswertung), 감식과(Erkennungsdienst), 지명수배과(Fahndung) 및 청소년범죄등담당과(Vorbeugung/Jugendkriminalität/Auswertung Rauschgift)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제3부는 2005년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제2과업무인 감식업무를 제5부로 이관하여, 범죄학및 범죄수사기법을 분석 및 평가하는 연구중심과로 전환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라) 제4부(범죄진압지원부: Einsatzunterstützung)

주수사국의 임무가 항상 업무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24시간 대기체

체를 확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4부이다. 제4부는 24시간 정보수집체제 및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제4부는 연방수사국 및 인접하고 있는 주수사경찰과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주를 넘어서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제4부는 전문업무지원팀을 보유하고 있어 중요범죄가 발생할 경우(예를 들어 은행강도가 은행원 및 고객들을 인질로 삼고 있을 때 등) 현장수사지휘관에 전문적인 조언을 하거나 인질범설득작업 등에 투입된다.

(마) 제5부(범죄연구소: Kriminalwissenschaftliches und -techn. Institut)

주범죄수사국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바로 범죄수사를 위한 학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임무규정은 NRW주 경찰법 제 1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다. 제5부의 임무는 수사영역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의 범죄학적인 검사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제5부에는 현재 180여명의 생물학, 화학, 물리학, 공학 등 전문인력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제5부는 검찰 또는 법원의 의뢰가 있을 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서 내지 감정서(Gutachten)를 작성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바) 제6부(수사지원부: Ermittlungsunterstützung)

1993년에 신설된 주수사국 제6부는 수사지원부서로서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폭발물제거팀, 정보통신지원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요범죄발생시 모든 사건수사를 측면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 바이에른주 경찰조직

인구 천만의 바이에른 주에는 2만 6000명의 경찰관과 6000 여명의 일반 공무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중에 4500명 정도가 수사경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 내

부부 산하에는 경찰행정부 (Polizeiliche Verwaltungsamt)가 설치되어 모든 경찰행정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³³⁾ 또한 실질적인 경찰기관으로서 주수사국 (LKA)와 총 7개의 지방경찰청(Polizeipräsidium)과 경찰예비대(Bereitschaftspolizei))가 있다. 아래에서는 지방경찰청 중의 하나인 뮌헨지방경찰청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인구가 130만의 독일에서 3번째 큰 도시인 뮌헨(Muenchen)의 경찰청에는 근무경찰관이 7000 명정도이며 이중에서 1100명 정도가 수사경찰(Kriminalpolizei)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경찰청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경찰청(Polizeipräsidium) 산하에는 10개의 경찰서(Polizeidirektion)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조직은 크게 일반예방경찰과, 수사경찰과 행정지원부 3개의 과로 구성된다. 그러나 모든 경찰서(Direktion)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경찰이 눈여겨 볼만한 것은 뮌헨 경찰청은 소속 내에 교통경찰서뿐만 아니라 4개의 수사경찰서(Kriminalpolizeidirektion)가 설치되어있다는 점이다. 수사경찰서에는 직속으로 수사광역지구대 (Kriminalpolizeiinspektion)가 설치되어 있어 뮌헨시내의 경제사범 등 일반경찰서보다는 비교적 비중있는 범죄수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색으로 인하여 일반 경찰서가 검사와 합동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검사는 수시로 수사경찰서 소속의 수사광역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찰의 수사업무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4. NRW 주 경찰조직개혁과 그 시사점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중앙수사국의 설치와 더불어 고려해야할 부분이 지방경찰청 직속의 지방수사국의 설치문제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각주에 주범죄수사국(LKA)가 설치되어 있어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정보와 첩보의 수집, 범죄수사기법의 연구, 개발 및 각 주에서 일어나는 주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해당 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뮌헨 지방경찰청은 지방 수사인력을 지방수사국에 통합하면서도 원거리 지역에 신속한 범죄

33) 바이에른 주 내무부에는 현재 이 부서에는 110명정도가 일하고 있으며 모두가 경찰인 것은 아니다.

대응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 수사국산하에 수사전담경찰서를 설치함으로써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³⁴⁾ 이와는 반대로 현재 21개의 지방경찰청(Polizeipräsidium)과 29개의 지역경찰청(Landratbehörde)을 보유하고 있는 NRW주는 지나치게 분권화된 경찰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경찰구조개혁방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수사활동이 경찰서단위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계층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NRW주의 경찰구조개혁은 그 시사하는 점은 크다 하겠다.³⁵⁾ 아래에서는 NRW주의 경찰구조개혁노력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수사구조개혁의 기준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1) 경찰구조개혁의 전개

2003년 10월15일 NRW(Nordrhein-Westfalen)주의회(Landtag)는 경찰, 경제학 등 학자들로 구성되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조직의 최적화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주정부에 요구하였다. 그 목적은 최상의 현대화된 기술도입과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통하여 보다 완벽하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치안체제를 구축함에 있었다. 그 세부목표는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의 수를 늘이고, 경찰의 핵심업무에 대한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며, 또한 경찰기관의 독자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에 있었다. 위원회는 우선 현 경찰조직을 분석하고 시민 및 내부직원들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하여 인적 및 조직심사를 실시하여 그 가치를 진단하였다. 위원회는 5가지 기준, 즉 고객지향성(Kundenorientierung), 진행효율성(Prozesseffizienz), 조직원의 수인성(Mitarbeiterakzeptanz), 경제성(Wirtschaftlichkeit), 구조개혁비용(Umsetzungsaufwand)을 중심으로 경찰조직을 진단하였다.³⁶⁾ 위원회는

34) 그러나 수사경찰서를 설치할 경우 경찰의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진압활동인 수사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경찰서에서 일정한 수사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35) 이러한 조직구조 아래에서는 업무의 하달과 보고를 위해 그리고 하급부서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한 수사인력을 필요로 하고 경찰서간의 수사업무갈등현상이 발생한다.

36) 다음내용은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항목이다.

1. 고객지향성

- 시민의 객관적인 안정성(위험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경찰업무수행능력의 질적가치)
- 시민의 주관적인 안정성(경찰관서와의 근접성, 문의내용에 대한 결과등)

NRW주 뿐만 아니라 독일연방내 다른 주 및 네델란드, 벨기에 등 인접국가의 많은 경찰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여 각 경찰조직 및 개혁노력의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형상을 만들어 갔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NRW주에 적합한 경찰조직모형을 만들고 쾰른과 아헨지방청을 시범경찰청으로 지정하여 시범실시하였다.

아래 내용은 위원회가 NRW주의 경찰조직을 분석하고 제시했던 제안내용을 수사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³⁷⁾

2) NRW주 경찰조직 진단

가. NRW주 경찰조직 외관

영국경찰을 모델로 탄생한 NRW주 경찰은 1953년 8월 제정된 『경찰의조직과권한에 관한법률(POG)』 제1조에 의거하여 3단계 조직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첫째로 최하위조

-
- 지역공동체와의 협력관계
 - 사법기관과의 협력(특히 수사업무)
 - 2. 업무수행의 효율성
 - 자원활용의 효율성(특히, 중복업무의 방지 및 불필요한 협의)
 - 유연성
 - 책임의 명확성 및 업무영역의 명확화
 - 업무수행결과의 평가 및 측정가능성
 - 지휘가능성, 복잡성의 감소
 - 3. 구성원의 수인성
 - 당해업무영역의 수행정도
 - 구성원의 계발가능성
 - 참여 및 동기유발의 강도
 - 4. 경제성
 - 실질적인 비용절감효과
 - 5. 구조개혁비용
 -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구성원의 수와 관련정도
 - 현조직문화와 현존하는 능력과 일치정도
 - 정치적으로 수용가능성
 - 교육 및 조직재편성에 대한 투자요구정도

37) NRW주 의회 위원회보고서, Neuorganisation der Polizeibörden, 2004.

직으로서 지역경찰(Kreispolizeibehörde)이 있다.³⁸⁾ 현재 NRW주내에는 21개의 지방경찰청(Polizeipräsidium)과 29개의 지역경찰청(Landratbehörde)이 있다. 이들 경찰기관은 그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쾰른(Köln)지방경찰청(Polizeipräsidium)은 지역인구 약 1백만 명에 약 3500여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지역경찰청(Landratbehörde) 올페(Olpe)의 경우에는 인구 약 14만 명에 경찰관이 약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50개의 지역경찰조직 중에서 현재 16개의 지방경찰청이 『수사경찰기관지정예관규정(KHStVO)』 제2조에 의해 수사경찰의 주요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이 지방경찰청들은 다른 지역경찰을 위해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경찰기관지정예관규정』 제4조는 6개의 지방경찰청에 인질범 등 강력범죄를 전담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지역경찰의 상급기관으로서 5개지역의 주경찰기관(Landespolizeibehörde)이 있다.(Anrsberg, Detmold, Duesseldorf, Koeln, Muenster) 주 경찰기관은 50개의 지역경찰에 대한 감독임무를 수행한다.

셋째로 최상급관청으로서 주 내무부장관이 있다. 주 내무부장관은 경찰에 대한 최상급 감독관청이다. 주내무부장관 직속으로 주수사국(LKA)이 있다.

나. 경찰조직내부현황

NRW주의 지역경찰은 1962년부터 예방경찰, 수사경찰 그리고 행정부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방경찰은 점차 대범죄투쟁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예방경찰은 초기에는 교통사고사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다고 점차 차량절도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면서 점차 길거리범죄에 대한 수사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 예방경찰의 영역확대와 기초자치영역에서의 예방경찰과 수사경찰은 단일지도체제하에서 두어야하고 또한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대범죄투쟁은 최대한 지역

38) 지역경찰은 지방경찰청(Polizeipraesidium), 경찰서(Polizeidirektion), 파출소(Polizeiamt)로 구분된다.

경찰화가 도모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NRW주로 하여금 예방경찰과 수사경찰의 엄격한 분리를 점차 완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예방경찰과 수사경찰사이에 나타나는 이중임무는 경찰임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라 1992년 대부분의 지역경찰은 ‘예방 및 수사부서’와 ‘행정 및 지원부서’로 재편되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예방경찰과 수사경찰의 통합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구조직(Altstruktur)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도하였다.

다. 현 경찰조직의 장점과 단점

(1) 장 점

NRW주의 현 경찰조직구조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유지에 적합한 구조이며, 시청 등 다른 자치조직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이러한 인적조직의 연결은 예를 들어 예방경찰과 지역에서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합동근무 등을 통한 많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2) 단 점

현 조직구조는 지나친 계층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첫째로 세분화된 계층적 경찰조직은 각 조직마다 참모진을 구성하고 있어, 인력사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무와 책임의 분산으로 업무마찰 혹은 시간 지연 등 다양한 업무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NRW주의 경찰기관을 분석한 결과 행정부서의 조직원은 6.83%에서 15.91%까지 운용되고 있었으며, 지휘부는 0.8%에서 22.81%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참모진 또한 차지하는 비율이 2.96%에서 11.0%까지 었다.

둘째로 지역경찰의 다양한 조직구조는 통일적인 업무수행과 유연한 인력투입을 어렵게 한다. 각 지역마다 상이한 조직구성으로 인하여 기관간에 업무협조부서선정이 원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알맞은 경찰력의 투입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현 경찰조

직은 안고 있다.

셋째로 현 NRW주의 경찰조직은 비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성원에 대한 전문적인 재교육이 장소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는 자격을 갖추고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구성원을 확보에 유리해야한다는 점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은 동일한 여건에서 일하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NRW주의 경찰조직은 개인별 직업경험을 축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라. 위원회의 개혁안

위에서 언급한 현 조직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크게 경찰조직의 숫자를 줄여 확대개편하고, 단일화된 업무중심으로 조직체를 재구성함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조직크기를 동일화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1) 새로운 조직체의 재편성

위원회는 조직크기와 관련된 여러 모델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현재 50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지역경찰조직을 16개의 지방청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에는 위에서 제시했던 5가지의 기준뿐만 아니라 현재 16개의 지방청은 범죄수사를 그 기본업무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그 밖에 지역경계, 교통시설, 범죄여건 및 사법관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조직규모의 확장은 고객지향적인 경찰조직체와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경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과로서 보다 큰 경찰조직으로 확대·재편성하는 것은 경찰기관이 위치한 지역에만 치안업무를 집중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위원회는 큰 조직으로 경찰조직을 집권화하는 것은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경찰의 업무가 핵심적인 영역에서 줄어들지 않고 동시에 조직구성원의 만족감과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경우에만 타당하다는 점을 조직재편성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2) 주경찰기관의 폐지(Landespolizeibehoerde)

위원회는 지역경찰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주경찰기관(Landespolizeibehoerde)을 폐지하여 3단계 조직구조를 2단계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주경찰기관의 임무를 새로 재편성되는 16개의 지방경찰청의 역할강화로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 주경찰기관의 폐지는 계층구조의 완화를 가져와 신속한 업무연락, 비용절감 등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16개 지방경찰청에 대한 감독업무는 주내무부에서 직접 관장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 내부구조개혁

위원회는 경찰서(Polizeidirektion)와 광역지구대(Polizeiinspektion)에 대한 구조와 임무를 집권화원칙에 부합하게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광역지구대는 경미한 사건을 위주로 담당하고,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는 중앙부서(경찰서 이상의 조직)로 이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지구대가 경찰서(Polizeidirektion) 산하에 두는 대신 지방경찰청 직속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경찰조직의 계층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경찰서내의 예방경찰과 수사경찰을 하나의 부서로 묶음으로서 실질적으로 다시 하부구조를 구성했던 체제를 재편성하여 2개의 참모부서로 구분하여 계층적 구조를 없앨 것을 제안했다.

5. 수사경찰의 선발과 교육

1) 예방경찰과 수사경찰

독일 대부분의 州경찰에서는 일반예방경찰(Schutzpolizei)과 수사경찰 (Kriminalpolizei)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분리(警科制)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경과에 소속되면 승진을 비롯한 인사이동은 경과내로 제한된다. 일반예방경찰 중에서 수사경찰을 지망하는 경찰관은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배치된다. 그

러나 바이에른주의 경우는 일반예방경찰은 6주정도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사경찰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발요건이 까다롭다. 간부가 되기 위한 경찰대학과정에서부터 수사부서 지원자와 일반부서 지원자를 별도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베를린시의 경우 3학기부터 분리교육을 실시한다. 일반예방경찰보다 수사경찰은 간부경찰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승진기회가 많아 일반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수사분야 근무가 선호되고 있다.

2) 수사의 전문화와 독일 수사경찰교육제도

오늘날 수사경찰의 위상은 일반인도 쉽게 범죄의 시종을 이해할 수 있는 단순 명료한 민생범죄해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제범죄, 환경범죄 그리고 조직범죄 등 새롭고 복잡 난해한 범법 행위에 의해 정립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범죄의 다양화·복잡화는 범죄해결의 어려움을 과증시키고 있어 수사절차(Ermittlungsverfahren)가 고전적인 의미 속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³⁹⁾ 더구나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수집되는 물적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 목격자 증언 혹은 피의자자백 등 인적증거확보에 전력을 투구하던 수사방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수사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범죄양상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범죄수사기법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축적이 수사경찰에게는 필수가 되었다. 모든 조직의 발전의 원동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은 실무와 이론이 균형 있게 짜여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독일 수사교육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함은 우리나라 수사교육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사교육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독일수사경찰교육

독일경찰은 조직형태에 따라 연방경찰교육기관과 지방경찰교육기관을 갖추고 있다.

39) 독일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는 검사가 예외적으로 중요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경찰의 수사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실무현실은 범죄해결에 있어서 수사경찰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영역을 부여하고 있다.

각 교육기관은 그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수사경찰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사경찰양성교육제도와 수사경찰 직무교육을 교육기관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연방경찰대학원(Polizeifuehrungsakademie)

유럽통합화에 대한 역작용으로 나타난 범죄의 기동성과 광역성은 독일 수사경찰의 대범죄 투쟁여건을 급속히 악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특별 범죄대책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수사경찰(Landeskriminalpolizei)간, 특히 고급간부급의 상호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증가 시켰고, 또한 컴퓨터 영역, 심지어 핵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복잡한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수사경찰 간부를 필요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원은 수사경찰간부 중 자체 승진자뿐만 아니라 사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충원되는 고급간부과정학생들에게 범죄학과 수사지휘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운영하고 있다.⁴⁰⁾

(1) 고급간부양성교육(Ausbildung der hoeherer Dienst)

경찰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2년 과정의 고급간부 양성교육은 그 교육목표를 졸업 후 바로 별다른 보수교육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시켜 수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전체 2년의 대학원 교육과정 중 1년은 주 수사경찰국 내지 연방수사국에서 실무실습을 하게 되고 나머지 1년은 연방 대학원에서 범죄학(Kriminalistik), 범죄기법(Kriminaltechnik)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중점을 두는 고급수사간부교육과정을 밟게 된다. 대학원 교과과정은 수사지휘론, 경찰관리론 그리고 일반법학으로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1년의 교육과정은 다시 2학기로 나누어진다. 제 1학기 동안 총 771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3개 교과과정으로 나누어 보면 수사지휘관련 분야 100시간, 경찰관리272시간 그리고 법학 및 사회학 354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다. 이 중 총 65시간의 수사지휘론은 다시 인력지휘론 42시간, 지휘력관리 14시간, 의사소통실습 4시간 그리고

40) 고급수사간부교육은 1972년 연방(Bund)과 지방(Land)간에 체결된 협약에 의해 연방경찰대학원에서 통일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생선정과제 5시간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또한 경찰력관리 분야는 시간관리와 인적자원 협동방안 및 조직편성 등으로 다시 세분되고 수업은 회의 및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1> 학기별 수업내용

전문분야(Fachbereich)	전문영역(Fachgebiet)	시 간(1학기)	2학기
지휘론(Fuehrung)	지 휘 론	65	96
	조 직 론	25	55
	경 제 학	10	21
경 찰 관 리	작전론(Einsatzlehre)	101	216
	범죄수사학(Kriminalistik)	55	128
	범죄학(Kriminologie)	56	56
	교통론	60	73
	경찰기법	-	5
법학 및 사회학	법 학	280	84
	사회학 및 윤리	74	150
실 습 (Ausbildungsstationen)	기 법(Technik)	30	
	연방수사국(BKA)	15	
	국경수비대(BGS)	탄력적	
총 계		771	884

제 2학기는 1학기과 동일한 3개분야 884시간으로 구성되나 배정시간을 1학기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교목인 법학과 사회학은 230시간으로 배정시간을 줄인 대신, 범죄수사학(Kriminalistik), 범죄학 (Kriminologie) 등 수사지휘는 총 172시간으로 늘여서 배정하고 있다. 그 중에 수사학분야(Kriminalistik)는 범죄수사전략이 39시간, 마약범죄 10시간, 일반민생범죄 15시간, 조직범죄 15시간, 국가법익침해범죄 8시간, 범죄기법 18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테마별 집중탐구에 배분하고 있다. 또한 범죄학분야(Kriminologie)는 범죄통제 8시간, 범죄설명론 10시간, 범죄예방 11시간, 피해자학 4시간, 개별범죄 16시

간 기타 5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2) 고급간부 직무교육(Fortbildung der hoeherer Dienst)

고급수사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그 교육심화정도에 따라 2일부터 2주정도의 기간으로 진행된다. 이 교육에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관련분야 판사, 검사등 타 부처공무원도 참여함으로써, 경찰대학원이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상호 협조체제마련을 위한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12> 2003년도 고급간부 수사관련 직무교육

기 간	직무과정	참여대상
1.15 - 17	범죄통제기획과정(개선된 범죄분석기법 교육)	수사기획부서 지휘관
5.19 - 21	조직범죄대책 직무과정	조직범죄직무관련 수사지휘관, 검사, 판사
6.23 - 25	수사기법 및 작전지휘과정	과학수사업무관련 지휘관
9.24 - 26	효과적인 범죄통제를 위한 국제공조 직무교육	외사관련 수사지휘관, 검사, 판사
10.08 - 10	대테러방지대책관련 국제동향	정보수사지휘관, 국가정보국
10.13 - 15	마약범죄관련 직무과정	마약관련부서 수사지휘관, 관세청 마약관련 부서의 장
11.05 - 07	환경범죄, 식품 및 의약품관련 직무과정	조직범죄관련부서의 수사지휘관, 판사, 검사
2주간의 정기직무교육(6회)	일반직무교육과정(수사 및 일반예방분야 공통)	1995년도 이전에 경찰대학원졸업자 대상

나. 연방경찰대학(Fachhochschule des Bundes fuer oeffentliche Verwaltung)

1951년 창설된 연방수사경찰국(BKA)의 임무는 1997년 공포된 ‘범죄관련업무에 있어서 주경찰과 연방경찰의 공동업무 및 연방수사국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명문화 되었다. 이 법률은 주(Land)를 초월하거나 국제적인 범죄 혹은 국가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물론 범죄기법연구와 범죄수사기법분석을 위한 인적·물적자원 및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연방수사국(BKA)의 역할을 강조하였다.⁴¹⁾ 이러한 연방수사국의 전문수사관을 양성하는 곳이 바로 연방경찰대학이다.

(1) 연방수사경찰양성교육(gehobener Kriminaldienst des Bundes)

연방수사경찰양성교육의 장인 연방경찰대학은 연방행정대학(Fachhochschule des Bundes fuer oeffentliche Verwaltung)의 전문부속기관(Abteilung Kriminalpolizei)인 동시에 연방수사국산하에 있다. 이곳의 교육생선발 및 입학과정은 다른 주의 경찰대학선발과정과 유사하다.⁴²⁾

연방경찰대학에 선발된 교육생은 쾰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행정대학(Fachhochschule des Bundes fuer oeffentliche Verwaltung)에서 6개월간 기본법학과목을 기본교육과정으로 이수하게 된다. 이 과정 이수 후에 비스바덴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수사국(BKA)내의 경찰대학으로 옮겨 3개월간의 본과정 I 및 12개월간의 주경찰국(LKA)의 범죄수사 분야에서 실무수습과정 등의 순으로 총 36개월간의 수사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연방경찰대학의 전문수사교육과정은 범죄학부, 법학부 그리고 실무학부 등 3개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 범죄학부(Fachbereich Kriminalwissenschaften)는 심리학을 포함한 범죄학(Kriminologie), 사회학, 범죄수사학(Kriminalistik), 범죄수사기법(Kriminaltechnik), 수사지휘론(Fuehrung- und Einsatzlehre)을 담당하고 있다. 이 교과과정에서는 매년 연방수사국에서 중점을 두는 기획테마를 선정하여 교육생에게 교육

41) BGBl. I 1650면 (Lisken/Denniger, Handbuch des Polizeirecht, 43면에서 발췌)

42) 자세한 내용은 수사연구 2000년 1월호(임준태, 독일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참고할 것.

시킴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는 동유럽국 이민자에 의한 마약범죄실태를 테마로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4개의 모듈(Modulen)(수사자료표등 경찰수사자료평가, 주 수사경찰, 국경수비대 세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기타 자료분석, 마약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접목시켜 연방수사국이 수립한 마약범죄대책을 평가하도록 하였다.⁴³⁾ 두 번째, 법학부(Fachbereich Rechtswissenschaft)는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헌법등 법학분야를 담당한다. 세 번째, 실무학부(Fachpraktika)는 연방경찰국(BKA)과 주경찰국(LKA)의 범죄수사부서에서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실시되는 1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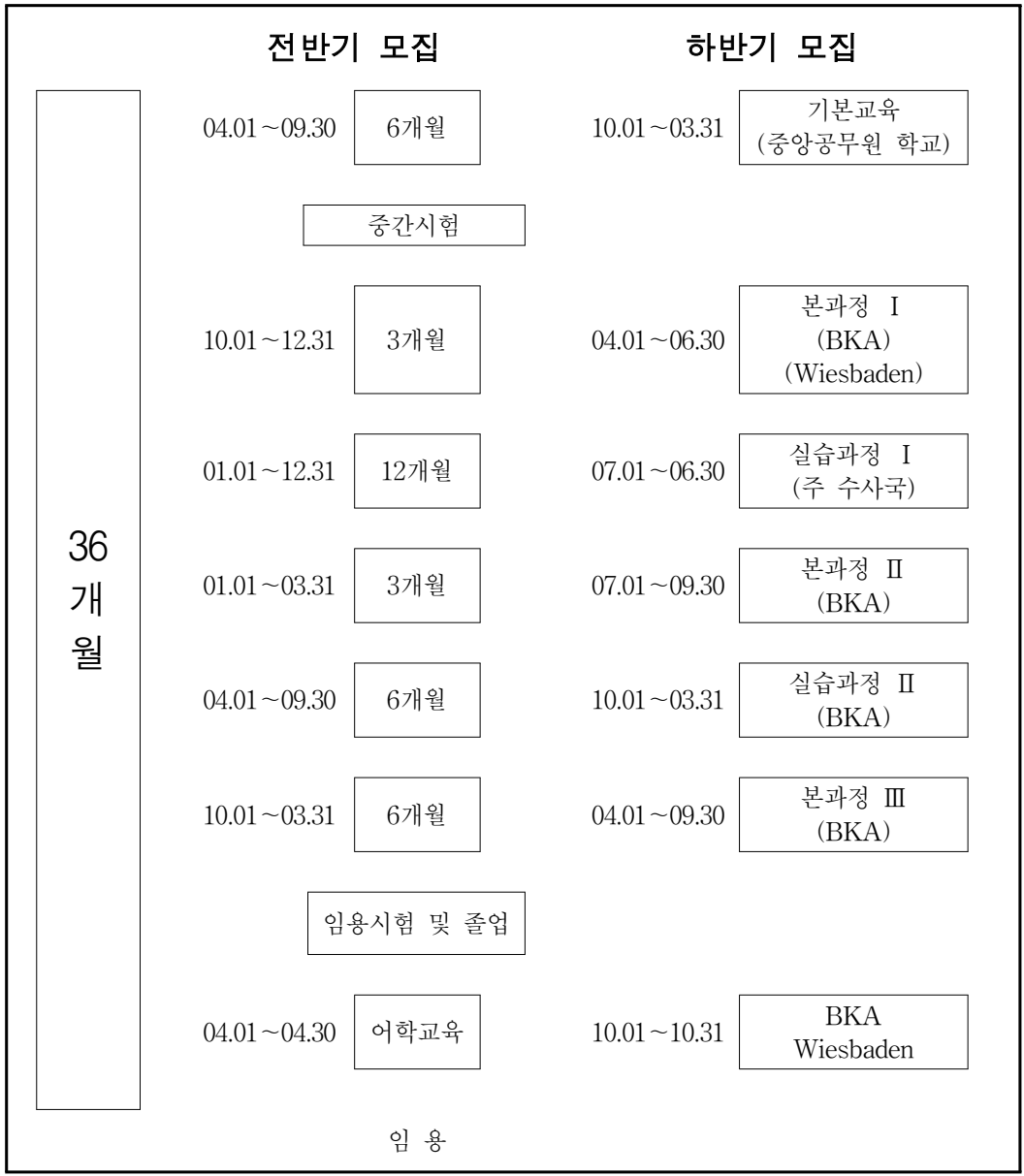
<표 13> 연방수사경찰(gehobener Dienst)

교육 과정 기 수	학 생 수	교육 기 간
제 42기 교육과정	31	2001.04.01 - 2004.03.31
제 43기 교육과정	27	2001.10.01 - 2004.09.30
제 44기 교육과정	38	2002.04.01 - 2005.03.31
제 45기 교육과정	110	2002.09.01 - 2005.09.30
제 46기 교육과정	73	2003.04.01 - 2006.03.31
제 47기 교육과정	107	2003.10.01 - 2006.09.30

연방경찰대학은 교육생을 연 2회에 걸쳐 모집하는데 최근 들어 모집인원수가 연 200명 정도로(평년도는 40명전후) 증가하였다. 이는 범죄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방수사국의 기구확장과 관련되어 있다.

43) 연방경찰대학 2002년도 보고서

<그림 6> 연방경찰대학 교육과정



(2) 연방대학원 교육생 수사실습

또한 앞에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연방경찰대학원의 교육생은 2년의 교과과정 중 1년은 연방경찰국의 경찰대학에서 이수하게 된다. 연방경찰대학에서 주관하는 수사경찰의 고급간부교육과정은 입직경로에 따라 다르게 편성·진행된다. 예를 들어 2002년 연방수사국에 6명의 자체 승진자가 고급간부교육과정에 입교하였는데, 이들은 경찰대학원 입교 전 1년 교육과정으로 수사학(Rethorik), 대화론, 갈등해결론등을 연방경찰학교 또는 헤센주의 경찰학교에서 이수했다. 반면 신규임용된 사범고시합격자 5명은 1개월간 연방수사국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9개월의 주수사경찰국 실습과 1개월의 전문이론·세미나 등으로 약 1년 동안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했다.⁴⁴⁾

(3) 직무교육(Fortbildung)

연방수사경찰의 직무교육 역시 연방경찰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교육은 현재 한국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수사전문화 교육과 유사한데 즉, 수사기법, 총기, 폭발물, 필체(Handschrift), 문서 및 지문채취법등 전문교육과 마약, 조직범죄 및 잠입수사 등 각 분야 전문가초빙교육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 지방경찰교육제도

독일의 주경찰(Landespolizei)은 각기 고유한 경찰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적인 경찰교육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APOgPol)⁴⁵⁾, 대부분의 주들은 경찰간부양성기간인 경찰대학(Polizeifachhochschule)과 비간부(Polizeischule)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학교를 갖추고 있다. 또한 바이에른(Bayern)주와 같이 경찰관직무교육장(Fortbildungsinstitut)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주도 있다.

44) 연방경찰대학 2002년도 보고서

45) Verordnung ueber die Ausbildung und die Pruefung fuer den gehobenen Polizeivollzugsdienst

(1) 수사경찰양성교육

최근 들어 수사경찰의 간부화계획으로 수사경찰양성교육은 Polizeihochschule에서만 담당하는 주가 증가하였다.⁴⁶⁾ 독일 각주의 경찰간부양성기관인 경찰대학에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이미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사·예방 비간부급 경찰들도 입학할 수 있다. 즉, 수사경찰로 근무했던 비간부급 경찰관은 경찰대학을 입학하여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후 졸업하면 계속 수사경찰간부(gehobener Dienst)로 근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예방경찰관 및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경찰대학에 입학하여 수사경찰이 되고자 할 경우, 각 주(Land)는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바덴비텐베르크주의 경우, 4학기까지는 예방경찰과 수사경찰지원자는 공통의 과목을 이수하게 되나, 5학기부터 전공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수사경찰지원자는 수사기법론, 감식업무, 범죄정보처리등 별도의 교육을 예방경찰지원자에 비해 더 받게 된다.⁴⁷⁾ 바이에른주의 경우, 학과구분 없이 졸업 때 까지 공통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졸업 후 예방경찰로 임용된 경찰이 수사경찰로 임무를 전환하기를 원할 경우 6주간의 별도의 교육과정(Kriminal-Basis-Seminar)을 이수하면 수사경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2005년부터 기본과정이수후에 반드시 구술시험을 통과해야만 수사경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규정을 개정했다.⁴⁸⁾

바이에른 주의 경찰대학교육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⁴⁹⁾ 바이에른 주경찰대학교육은 3학기의 강의과정과 3학기의 실습과정으로 구성된다.(APOgPI 제 2조) 기성경찰관의 경우 이중 3학기의 강의 과정은 그대로 적용되나 실습과정은 1학기로 단축 적용된다.(APOgPol 제 5조). 3학기로 구성되는 강의과정은 경찰업무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상의 능력을 함양함에 그 목적을 두고 총 2000시간 32개의 교과목으

46) Hilse, Polizeiorganisation in Deutschland, 45면(Lisken/Denniger, Handbuch des Polizeirecht); 주석 5) 참고할 것.

47) 바덴비텐베르크주의 자세한 교육내용은 임준태, 수사연구 2000년 2월호 참조할 것; 베를린시의 경우에는 3학기부터 분리교육을 실시한다. - Berlin주 APOgDPol 제 5조

48) 바이에른 주에서는 아직 수사경찰 전원이 경위이상의 간부는 아니다. 따라서 비간부 중 수사경찰로 업무를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6주간의 수사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수사경찰로 근무할 수 있다.

49) 바이에른주 경찰청 수사교육제도는 저자가 바이에른 주 경찰청에서의 실습 중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로 구성된다(APogPol 제 3조). 이 중에서 범죄수사학(Kriminalistik)120시간, 수사기법 80시간, 범죄학(Kriminologie) 35시간, 형사법 175시간 등 수사관련 교과목은 전체수업 중 20%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과정을 주제별로 나눠보면, 타수사부서와의 합동근무방안, 수사경찰작전론, 흔적 채취기법, 인적증거수집방법, 사체검안, 방화, 성범죄, 수사방법론, 지명수배 그리고 마약범죄사범 등으로 이루어 진다.

(2) 직무교육(Fortbildung)

바이에른주의 직무교육은 Ainring에 위치하고 있는 직무교육장(Fortbildungsinstitut)에서 총괄하여 편성한다. 2004년도 바이에른 경찰관의 직무교육과정은 Workshop을 포함하여 총 280개의 직무과정이 있다. 그 중에서 수사교육관련 직무교육은 조직범죄대처방안 등 47개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⁵⁰⁾ 경찰관은 매년 초에 자신이 원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2일에서부터 6주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각 부서의 전문가가 교수로 초빙되어 직무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5) 독일 수사경찰교육제도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

수사관은 전문적이고 사안에 적합한 수사활동을 수행할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또한 검사와 판사에 대응하여 자신이 도출해낸 수사결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사의 모든 시점에서 올바른 판단과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치에 수사관은 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사관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것이 수사경찰 직무교육이다. 직무교육은 오늘날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이 실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보다는 명목상의 직무교육이수라는 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독일 수사경찰협회의회(BDK)는 현재의 수사교육체제는 최근 급변하는 범죄양상에 적응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 독일 경찰대학의

50) 2004년 바이에른 주경찰 직무교육과정표

교육과정은 졸업생이 곧바로 수사업무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굳이 평가하자면 예방경찰업무수행에 적합한 정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더구나 일반 예방경찰이 수사경찰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받게 되는 4내지 6주간의 기본교육도 수사업무수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짧은 기간 동안 습득된 지식의 실무적용의 불완전성과 효과적인 수사활동을 위한 수사업무계획수립능력의 부족 그리고 전문수사기법의 효과적인 운용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다년간의 일반경찰로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루틴화(routine)는 수사경찰로 전환할 시점에서는 교육기간 중 습득한 수사업무에 관한 지식을 오히려 퇴색시키게 된다.⁵¹⁾ 이 협의회는 예방경찰관과 수사경찰관을 분리 채용하여 경찰학교에서는 범죄수사학과 범죄학에 중점을 두는 전문수사교육교과과정을 편성하고 또한 예방경찰이 수사경찰로 업무전환 시 6개월간의 이론교육과 6개월간의 실습과정으로 편성되는 전문교육과정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⁵²⁾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효과적인 직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직무교육은 모든 경찰관의 직무장소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둘째, 직무교육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무의 여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셋째, 직무교육은 기존의 양성교육과 이미 희미해진 과거의 직무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직무부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비교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프로파일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 직무부서에서의 직무교육수요분석은 수사관의 필수적인 자질분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이러한 수요와 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경찰학교에서의 교육과 현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직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⁵³⁾ 직무교육의 수행은 교육기관의 몫이다. 그러나 경찰청 혹은 지방경찰청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51)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경우에는 모든 경찰대학졸업생은 최소 2년간의 기동경찰대에 근무하게 되어있다. 이 기간 동안 광범위한 직무교육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습득한 지식은 막상 수사경찰로 들어설 즈음에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52) Bdk-duesseldorf.de

53) Heiner Waldheim, Quo vadis Fortbildung in Brandenburg? Die criminal Polizei 2003년 3월호

6. 실무상 수사경찰의 지위와 역할(검찰과의 관계중심으로)

1) 최근경향

경찰과 검찰의 권한 배분문제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얼마 전 록신교수 등이 중심이 된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의 유명교수들이 제안한 형사소송법중 수사단계에 관한 입법초안(Alternativ Entwurf zum Ermittlungsverfahren)의 내용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의 중심된다는 법률적인 의미는 살리되 중요범죄를 제외하고 경찰에게 사실상의 수사권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과 사실간의 괴리를 좁히고자 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1994년 유럽경찰(EUROPOL)을 창설하여 각국의 형사업무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⁵⁴⁾ 이에 상응하는 사법공조체제로 유럽사법부(EUROJUST)를 설립하여 범인인도에 관한 업무협조 등 유럽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한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유럽연합 내의 다른 어느 국가에서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럽검찰제도의 창설을 위한연구를 시작했다. 이는 영국 등 영미법이 주도하는 국가를 포괄하여 적용될 제도에 대한 구상이어서 대륙법과 영미법을 통합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 실무상 수사경찰의 활동⁵⁵⁾

가. 경제사건관련 수사경찰의 역할⁵⁶⁾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주요 경제사건은 경찰과 검사는 상당히 밀접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⁵⁷⁾ 아래에서는 경제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활동을 수사절

54) EUROPOL의 활동은 비교적 제한된 형사관련 업무이기는하나 검사의 지휘에서 벗어나 있다.

55) 아래 내용은 필자가 독일에 체류시 뮌헨검찰청과 경찰청을 실습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56) Muechen Staatsanwaltschaft I, Abteilung XI Wirtschaft) - Geschaeftsordnung der StA Muechen I vom 01. Jan. 2003. 제 4조

57) 필자가 방문한 뮌헨 검찰청 경제부는 국가 전복에 관련죄, 대형 경제적인 사건, 컴퓨터 관련범죄 등을

차의 흐름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내 사

사건을 자체 인지하여 경찰이 자체 내사를 벌여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후에 검사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내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컴퓨터에 입력 (Polizei Aufgabe Gesetz 제 30조 등)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하며 내사기록은 경중에 따라 연수를 달리하여 별도로 경찰관서에 보관하다가 폐기하게 된다.

(2) 사건의 접수

경찰관서 내지 검찰청에 사건신고가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담당검사 1명과 해당 경찰관 1명이 선정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검찰청에 사건이 직접 접수된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해당 관서 장에게 사건접수내용을 알리고 담당 경찰관 선정을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정하는가는 해당 관서 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검사가 사건 내용을 최초로 경찰관에게 인계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건서류 일체가 일단 검찰청으로 접수됨으로 인하여 공문의 형식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관서인 Polizeiinspektion으로 요청(Ersuchen)하게 된다. 반면에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를 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의 경중에 따라 중할 경우 검찰청에 통보를 하면 해당검사가 지정되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이 경우 사건에 경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직접 견학한 사건의 경우는 해당경찰관이 2명이 선정되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 주업무로 하고 있다. 경제부에는 현재 10명의 검사가 각자의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없는 검사실은 그 크기가 2평 남짓하며 1명 이상이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었다. 또한 검사 개인소속 사무원은 별도로 없고 서류처리를 담당하는 사무직 공무원이 한 사무실에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3) 수사의 개시

① 압수 수색

금융사건(경제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담당경찰은 검사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실시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

기업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개시 후 회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된 서류를 압수하게 된다. 형소법(제98조~110조)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압수, 수색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사가 직접 참여 하여 실시하거나 경찰관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검사의 참여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즉, 검사는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형소법 110조 1항에 의하면 압수된 장부에 대한 검열은 검사만 가능하고 다만110조 2항에 의해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은 소유자(Inhaber)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수사관은 봉인하여 검사에게 인도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압수 수색의 집행으로 인해 수집된 수사자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너무나 방대하여 1~2평 남짓한 검사실에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찰관서에 보관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는 검사의 참여없이 경찰관이 장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수사상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필자가 직접 참관한 사건에 대한 장부는 500여개 정도의 파일로 전담경찰관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장소 부족으로 인해 경찰서 창고에 나머지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② 피의자 신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사절차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다. 그러나 독일 형소법에 의하면 경찰이 작성한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직접 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게 위탁을 하고 경제범죄등 복잡하거나 중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단독 또는 경찰과 합동으로 신문을 한다. 공동으로 신문을 할 경우 수집된 수사서류가 대부분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중요 피의자 신문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독일검사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독일형소법 제 133조, 134조 및 제 161조a 참조) 가지고 있다. 효과적인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검사는 피의자 내지 참고인을 경찰서로 직접 소환하고 자신도 경찰과 합동으로 신문에 참여하는 방식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신문시 우리나라와는 달리 통상적으로 경찰관 1인이 담당한다. 신문조서 작성권자가 반드시 경찰간부일 필요가 없다. 긴급한 경우 검찰청에서 행하여지는 신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⁸⁾

우선 검사가 직접 행하는 신문은 검사 1인이 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신이 직접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신문내용을 녹음기로 녹음하는 경우도 있다. 신문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신문내용이 녹음된다는 내용의 서류를 먼저 작성한 다음 행하게 된다. 녹음된 기록은 나중에 검찰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문조서의 형식으로 다시 기록하게 되며 내용의 정확성은 다시 한번 신문 검사에 의해 확인(날인) 받은 후에 그 내용의 진정의 확인을 위해 추후에 피신문자에게 송부되게 된다.

둘째로 긴급체포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곧바로 검찰청으로 호송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체포한 경찰관이 검사의 입회하에 검찰청사에서도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검사가 직접 행할 수 있다.

만약 검사 1인이 피의자 내지는 증인(참고인)을 조사한 경우에는 그 신문조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송부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담당검사의 재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사안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여 계속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수 없으므로 신문조서를 경찰서로 송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58) 독일의 경우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실무를 형성하고 있다. 만약 검사가 피의자를 단독으로 직접 신문한 경우 공소제기이후에는 검사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검사가 경찰관없이 단독으로 신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③ 경찰의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 참여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직접 행하는 피의자 심문의 경우에는 변호인은 출석할 권리를 갖는 반면 수사경찰이 행하는 심문의 경우에는 변호인은 참석할 권한을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경찰의 경우도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심문 전에 필히 고지하게 되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피의자 신문조서시 독일에서도 163조와 136조 a에 따른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신문조서에 기록한다) 또한 변호인이 불참할 경우 피의자가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묵비권으로 인한 심문지연을 막고자함에 그 이유가 있다. 견학시 해당 피의자도 변호인과 같이 신문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일일이 교정하여 조언하고 있었으며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은 바로 개입하여 못하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제 화합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 독일 내에서의 다수의견이다. 이는 피의자 심문이 사실상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함에 근본이유가 있다

④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시 관련된 서류(증거물 제외)는 2부씩 복사되어 원본은 검찰청으로 송부되고 사본은 경찰서에서 보관하게 된다. 이는 수사의 종결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일반사건 관련 경찰활동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건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행한다.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수사종결보고와 함께 일체의 서류를 검찰로 송치하게 된다. 이때 우리나라와는 달리

경찰이 기소, 불기소등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수사결과에 대해서만 송치시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검사는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검사가 판단하게 되면 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다시 경찰에게 돌려보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법률규정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행위이다. 또한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의 사실확인에 대한 수사전문가가 아니므로 이러한 업무는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따라서 검찰의 일반업무 담당부서는 사안에 대한 인지는 통상적으로 경찰의 송치 이후에나 가능하다.

일반사건의 경우 사건의 신고접수는 경찰관서나 검찰청중 어디라도 상관없다. 다만 검찰청이 사건을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사안을 검토한뒤 사건의 내용을 경찰에게 이첩하게 된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변호인이 직접 피의자와 함께 신문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신문후 변호인은 작성 조서를 복사할 수 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경찰신문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변호인은 증거서류에 관해서는 경찰에게 복사를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모든 관련 서류는 검찰로 이송된 이후에 형소법 14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관련서류열람신청(Akteneinsicht)을 통하여 사안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학계에서는 논란이 많다. 왜냐하면 검사는 서류열람신청을 예외적으로만 거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사항이 관례로 되어있어 사실상 변호인은 피의자변호를 위한 정작 중요한 서류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로 최근에는 Roxin 교수 등을 중심으로 법률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 결과를 관련당사자에게 통보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권한은 전적으로 검사의 권한이다. 왜냐하면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 수사서류에 나타난 수사지휘방법

통상적으로 수사지휘방법에 대한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검사

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 팩스등을 통해서 지휘하기도 한다.

그러나 검사직속의 검찰관이 없다는 점은 수사지휘라는 개념을 검사로 하여금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하고 경찰의 고유의 업무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본고는 독일에서 최근에 발생한 영화 배급(Kinowelt)과 관련된 대형 사기사건의 담당검사 Kamann씨와 함께 뮌헨 경찰청 산하에 있는 Polizeidirektion (Neuperlach에 소재)을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 Mohr씨가 진행하는 피의자 신문과정을 견학하였다. 당일 경찰서에서 실시한 피의자 신문은 전담 경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검사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간 중간에 필요한 질문을 검사가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경찰관이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수사상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경우 사건에 대한 서면 지시내지는 담당경찰관을 소환하여 지시하는 방식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검사가 직접 해당 경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는 것이 이채로웠다. 이러한 검사의 전담경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는 방식은 경제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방법이며 그 이유는 관련 서류 일체가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을 호출,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한 접촉으로는 업무의 진행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어 검사가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사건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적이목을 집중시키는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사나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임대하여 전담검사(통상적으로 2명이상)와 필요한 수의 경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같이 합동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을 높인다.

라. 검경 합동수사팀의 구성

대형 금융사건발생시 특별수사팀이 설정되는 경우가 최근 독일에서 빈번해지고 있다. 특별수사팀설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건발생시 검찰청의 해당부서의 장과 사건발생 경찰서의 장이 사전에 협의한 후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검사, 경찰, 기타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수사팀을 구성하게 된다. 팀구성시 흔히 경찰관의 수사팀장으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검사와 갈등이 예견된다. 왜냐하면 경찰관으로서 Polizeirat에 해당하는 계급부터는 검사의 협력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사의 역할은 수사의 진행사항 파악과 그에 따른 법률적인 검토가 주목적이고 검사가 개별적으로 경찰관 개인에게 지시하는 경우는 없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의 수집은 경찰팀장과 협의하게 되며 그 수사방법에 대한 결정은 경찰관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합동수사팀의 구성은 구조상의 검사가 경찰의 상부구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 협력관계로서 나타난다고 볼수 있다.⁵⁹⁾

마. 주 범죄수사국(LKA)과 검찰

(1) 주범죄수사국 불법자금 수사부(GFG)

필자가 직접 견학한 주범죄수사국의 불법자금수사부(GFG)는 업무의 성격상 수사범위가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경찰관과 세관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부서로서 주임무가 조직범죄 등 불법으로 획득된 자금의 회수가 목적이다. 따라서 수사상 은행계좌에 대한 조회 및 압수수색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빈번히 실시되어 짐으로 인해 검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는 않는다.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입금되어 은행등으로 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당해 부서에서 그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는 처음부터 검사가 개입하여 압수수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가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전문가인 경찰의 의견을 존중한다.⁶⁰⁾ 왜냐하면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경찰이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활용할 능력은 검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Eckert 씨의 설명에 따르면 불법자금의 추적에 대한 방법은 전적으로 수사전문가인 경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며 검사는 이러한 과정이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러한 권한분립을 통하여 경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검사의 독단에 의한 일방적인 수사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59) 이 내용은 당시 필자에게 뮌헨검찰청을 소개해주었던 Eckert 부장검사의 설명내용이다.

60) Eckert 부장검사의 보충설명

(2) 주범죄수사국 마약범죄반

이부서는 마약관련사범을 전담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같은 사무실에서 세관직원과 합동근무를 하고 있다. 이부서도 앞에서 설명한 부서와 같이 압수수색 (Durchsuchung), 감청(Ueberwachung)등 검사의 영장을 신청을 통하지 않으면 안되는 업무성격상 검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인터뷰한 담당자는 독일 법률상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계급에 해당하였다.⁶¹⁾

그러나 사전에 국제 마약밀매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면 해당지휘관은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 검찰청 마약담당 부장 검사와 수사에 대해 상의를 한다고 한다. 또한 반대로 직접 검사가 경찰 청사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검사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사는 수사진행상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전권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수사방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는 마약관련 수사업무중 특기할 만한 것은 비밀요원을 마약조직에 잠입시키거나 해당 범죄 조직원을 첩보원으로 활용하는 업무이다. 비밀수사관(VE)는 일반 경찰관이 담당하며 이들은 철저히 신분을 숨기며 수사활동을 한다. 수사요원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선발된 경찰관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검찰청에 인적사항이 통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는 법원에 다시 비밀요원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임명된 VE는 후에 법정에서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정보원(VP)는 일반경찰관이 아닌 대개는 범죄관련 전과자들이 직접 신청하거나 혹은 수사대상자 중에서 경찰에 협조가능한자 중에서 선발한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경찰관이 직접 행하나 사전에 검찰과 법원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처럼 경찰의 모든 업무는 검찰청의 통제하에서 행하여지고 있고 검사 또한 자체인력이 없는 관계로 경찰의 협조없이 어떠한 업무도 행할 수가 없는 상호 협조관계에 놓여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독일 검사와 경찰은 상호 갈등보다는 서로의 업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61) 독일형사법에 의하면 경찰관 계급중 Erster Hauptkommissar 까지만 검사의 Hilfsbeamter로 되어 있다. 당시 만난 경찰관은 Kriminal Oberrat에 해당되는 계급이었다.

바. 영장실질심사와 검사의 경찰청방문

독일형사소송법에 의하면(형소법 제 128조제 1항) 판사는 모든 검거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행한다. 경찰은 영장없이 체포된 혐의자는 24시간이내에 심문하여 그 혐의유무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은 단독으로 혐의자를 석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실무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사는 조사내용을 검토한 후 실질심사신청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검사는 경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피의자에 대해 실질심사를 신청하거나 혹은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뮌헨 지방경찰청 내에 지방법원지원(Amtgericht)소속 영장전담판사(Ermittlungsrichter)가 상주하고 있고 또한 바로 맞은편에 검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으며 그 옆에 유치장이 위치해 있다. 뮌헨 지방검찰청(Staatsanwaltschaft MuenschenI)소속 검사는 이 때문에 직접 경찰청로 매일 순번제로 출근하여 피의자의 구속여부에 대한 실질심사 신청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일 영장실질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경찰관은 검사가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와서 피의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실질영장심사신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처럼 독일 뮌헨시의 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호협조함으로써 인신구속결정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검사가 유치장이 있는 경찰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일을 처리함으로써 혐의자호송시 나타날 수 있는 제반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검사가 직접 담당경찰관의 의견을 들을 수있음으로 해서 실질심사의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경찰과 검찰은 상호 신뢰감을 유지할 수 있다.

3) 소결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사절차는 더 이상의 공판의 준비단계로서만 머무르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상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더구나 이러한 현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기본방향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절차상 사안에

대한 진실발견에 주도적인 역할의 수행을 더욱 강화시켜 법원은 수사기관에 의해 제시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판결하게되는 소위 “왜곡된 제 3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형사소송상 사안에 대한 진실발견을 위한 활동의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될 일이다. 따라서 공판절차가 단순히 수사결과에 대한 확인 도장만 찍는 위치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형사소송법상 공정한 제3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절차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강화와 내적인 권한 분립을 통한 수사절차의 객관화가 필연적이라 하겠다.

제2절 프랑스의 수사경찰

1. 수사경찰의 조직

‘수사경찰’ 또는 ‘사법경찰’⁶²⁾이라고 하는 경우에 경찰청 소속의 중앙수사국(Direction Centrale de la Police Judiciaire)뿐만 아니라 12개의 지역수사국, 즉 9개의 광역수사국과 파리를 포함한 3개의 지방수사국이 망라된 전체 4,395명(2004. 9. 23. 기준)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 수사경찰의 활동범위는 일개 법원의 관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관할 또는 국토 전체에 미친다⁶³⁾.

1) 중앙수사국의 조직구조와 임무

가. 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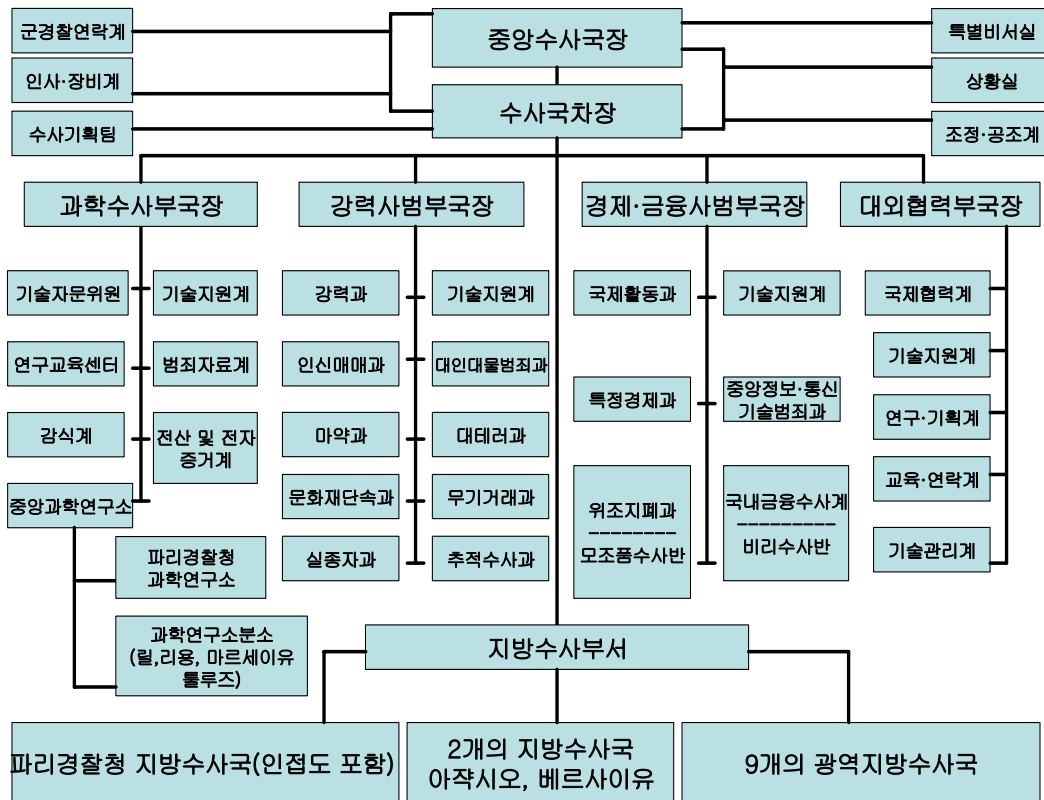
파리에 위치한 경찰청의 중앙수사국은 파리경찰청 지방수사국과 공조 및 전 국토를 커

62) 여기서 사용된 사법경찰이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리를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부서를 지칭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Police Judiciaire’ 또는 더욱 간단히 P.J.라고 표기한다.

63) <http://www.interieur.gouv.fr>

버하는 2개의 지방수사국(Direction régionale de la police judiciaire)⁶⁴과 9개의 광역지방 수사국(Direction interrégionales de la police judiciaire)⁶⁵에 대한 지휘를 맡고 있다. 경찰청 중앙수사국의 각 부서들은 기술, 장비지원의 기능 또는 직접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각 부서는 중앙수사국장의 지휘를 받으며 1,000명(경찰관 65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중앙수사국의 편제와 지방수사국과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7> 중앙수사국의 편제 및 지방수사국의 관계도



64) Versailles와 Ajaccio에 소재한다.

65) Antilles-Guyane, Bordeaux, Dijon, Lille, Lyon, Marseille, Orléans, Rennes, Strasbourg

나. 중앙수사국의 여러 부국(sous-directions)

(1) 강력사범부국(sous-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경제범죄를 제외한 조직범죄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이 부국은 다음과 같은 부서들로 편성되어 있다.

- 업무지원부(division de la logistique opérationnelle DLO) : 여기에는 특히 중앙기술지원계(section centrale opérationnelle d'assistance technique SCOAT)가 있다.
- 강력과(office central pour la répression du banditisme OCRB) : 여러 형태의 조직화된 폭력범죄(범죄단체결성, 무장 또는 폭력이 수반된 절도, 채권추심)에 대처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 인신매매과(office central pour la répression de la traite des êtres humains OCRETH) : 매춘업과 관련되는 모든 범죄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매춘사업을 위한 인신매매사범의 적발을 위한 정보를 취합한다. 전 국토상에서 이뤄지는 인신매매의 처벌을 위한 모든 수사의 조정업무를 맡는다. 수사부서로서 특히 인신매매 조직망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 국내 및 국제 매춘업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 대인·대물범죄부(division nationale pour la répression des atteintes aux personnes et aux biens DNRAPD) : 살인,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절도, 차량밀매 및 위조문서 유통 등의 수사를 담당한다. 대인범죄에 관하여는 모든 형태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일반수사팀이 있다. 전문수사팀으로는 특히 아동성폭력 및 아동포르노그래피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청소년수사팀과 전 국토 상에서 발생하는 살인, 절도, 성폭력사건들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특수 행동유형의 감지 및 분석에 활용되는 범죄분석시스템(Système d'analyse des Liens de la Violence Associée aux Crimes SALVAC)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 및 군경찰 합동팀이 있다. 대물범죄에 대하여는 국내 또는 국제 절도차량의 유통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팀과 위조행정문서의 제작 본거지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팀을 별도로 두

고 있다.

- 문화재밀거래사범과(office central de lutte contre le trafic des biens culturels OCBC) : 문화재 절도 및 장물사건을 담당한다. 이 부서는 군경찰, 관세청, 문화재청, 법무부, 외무부와 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운영된다. 또한 수사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한 자문역할과 함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에도 참여를 한다. 이 외에도 대외교육과 도난 및 불법유통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영상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수행한다.
- 대테러부(division nationale anti-terroriste DNAT) : 테러범들의 활동을 감지하고 수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영토상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공격행위의 주동자와 원조자들의 신원을 알아내고, 위치를 추적하여 검거하는 타 수사부서들의 활동을 조정한다.

이 대테러부는 국제 테러리즘 및 극렬 분리주의와 관련된 사건분야에 전문화된 두 개의 계(sec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러리즘을 “위협 또는 공포에 의하여 공공질서를 심히 혼란케 하려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기도”로 정의하고 있는 1986년 9월 9일 반테러특별법률⁶⁶⁾에 근거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 마약과(office central pour la répression du trafic illicite des stupéfiants OCRTIS) :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관련한 범죄들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고 관련 수사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수사부서는 단독 또는 다른 수사부서들과 함께 수사를 하며 마약류분야에서 이들 부서들의 수사활동을 지도한다. 중앙행정조직으로서 마약류의 유통과 관련하여 경찰부서의 일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국내 또는 국제기구의 특별모임에서 수사경찰을 대표한다.

경찰청 마약과의 부처간 임무는 마약류 불법유통에 공동 대처하는 모든 행정청들의 업무조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군경찰의 장교와 관세청의 조사관이 상황실에 파견되어 부서간의 최상의 협력을 도모하고 수사(répression)에 있어

66) 이 법률은 또한 테러범죄의 수사, 소추 및 재판을 중앙(파리)으로 집중시켰다.

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마약과는 매년 마약사범국가전산시스템(Ficher National des Auteurs d'infractions à la Législation sur les Stupéfiants FNAIS)을 통하여 모든 수사부서들로부터 압수된 마약류의 국내통계를 작성한다.

- 무기거래과(office central pour la répression du trafic des armes, explosifs et matières sensibles OCRTAEMS) : 조직범죄, 테러리즘, 민감한 지역에서의 범죄이든 아니든 그 분야를 불문하고 무기, 화약, 폭발물과 원자 또는 생화학 물질들의 제조, 소지, 매매 및 불법 사용대응을 위한 지도,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폭발물 전문가와 탄도전문가(balistique)가 있다. 수사자료 및 통계자료분야에서 이 부서는 경찰과 군경찰, 세관이 사건취급과 관련하여 수거, 도난, 압수 또는 거명된 모든 무기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한다.
- 실종자과(office central chargé des disparitions inquiétantes de personnes OCPD) : 긴급국내전과 및 수배서 작성을 통하여 국내차원에서의 실종자발견을 지도하고 조정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공조차원에서 외국에까지 진출하여 실종자를 발견하고 프랑스 영토내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실종자발견요청을 취합하기도 한다. 단독으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경찰 또는 군경찰의 부서들에 대하여 지원을 하기도 한다. 관련 행정청 소속 인력 및 일반인들에 대하여 실종현상에 관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 사회단체의 중재로 이뤄지기도 한다. 실종자과는 중앙 방범국과 군경찰의 지방 연락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수사상의 협력을 위하여 국가중앙접촉소(연락소)(point de contact central national)를 두고 있다.
- 추적과(Office Central chargé des Personnes Recherchées ou en Fuite OCPRF) : 군경찰 소속의 인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발견 및 체포를 임무로 하고 있다.
 - 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용의자, 불출석 또는 중요 참고인
 - 영장의 발부된 자
 - 사범당국으로부터 수배되거나 또는 판결법원에 의해서 집행유예 없는 자유형이 선고된 사람

· 탈옥한 사람

추적과는 국내수준에서 위에 열거된 사람들에 대한 발견을 지도하고 조정한다. 또한 경찰 및 군경찰의 부서들을 지원하며 사법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수사부서와 연계하여 모든 수사를 한다. 이 추적과는 국제교류에 있어서 프랑스 중앙연락(point central)가 된다. 외국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발견요청을 취합하며 발견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얻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특수부서들 및 국제기구와 연계를 유지한다. 국내에서는 대내뿐만 아니라 이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회의의 준비작업을 지도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2) 경제·금융사범부국(La sous-direction des affaires économiques et financières)

- 업무지원부(division de la logistique opérationnelle DLO) : 관리, 조정, 연락, 지원 및 교육을 담당한다.
- 금융수사부(division nationale d'investigations financières DNIF) : 상사형법(droit pénal des affaires)에 대한 위반행위들을 수사한다.
- 대부정부패중앙수사반(brigade centrale de lutte contre la corruption BCLC)는 금융수사부내에 속하며 특히 부정부패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한다.
- 국립경제조사반(brigade nationale d'enquêtes économique BNEE)는 중앙수사국의 모든 경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조세범죄들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재경부의 공무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 특정경제사범중앙수사과(office central pour la répression de la grande délinquance financière OCRGDF)는 불법행위들로부터 생기는 자금의 세탁을 다룬다. 이 부서는 특별수사문서계(section de documentation opérationnelle spécialisée), 대자금세탁계(section anti-blanchiment), 모조 및 사기계(section des fraudes et escroqueries), 테러자금지원대처실(cellule de lutte contre le financement du terrorisme)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금융수사반(BRIFN)이 있으며 경제금융사범

부국에서 국내사무소(BCN)와의 유일한 연결창구인 정보분석 및 국제협력반(brigade d'analyse du renseignement et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BARRI)도 있다.

- 중앙정보통신기술범죄과(office central de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liée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OCLCTIC)는 1994년 중앙수사국 산하에 설립된 '중앙정보통신범죄진압반(BCRCI)'의 후신으로 2002년 5월 15일 공동부령에 의해 창설됐다. 이 부서는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3명의 군경찰관, 2명의 세관공무원,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전 국토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주 임무는 국내수준에서 실행상 및 기술상의 지도와 조정을 담당한다. 또한 여타의 경찰, 군경찰, 공정거래위원회(경쟁, 소비, 위조분야) 등 여러 부서들의 지원을 받아 모든 수사행위와 수사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이버범죄분야의 전문조사관(ESCI)에 의해 이뤄진다. 이 전문조사관은 광역지방수사국(DIPJ)과 지방수사국(SRPJ)에 분산 배치된다. 이 부서는 지불카드위조중앙대응반(BCRCCP), 수사문서계(section de documentation opérationnelle), 조사계(조사1팀에서 3팀), 기술계(section technique)로 구성되어 있다.
- 화폐위조과(office central pour la répression du faux monnayage OCRFM)는 산하에 모조상품 및 예술품중앙수사반(brigade centrale pour la répression des contrefaçons industrielles et artistiques)을 두고 있다.
- 국제활동과(mission d'action internationale)는 수사부국차원에서의 특히 전략적 서류들의 전달과 국제협력차원에서 이뤄지는 중앙수사국의 경제 및 금융수사부서들에 대한 전체교육활동들의 사후관리를 맡고 있다.

(3) 과학수사부국(sous-direction de la police technique et scientifique)

범인발견을 위한 다양한 과학수사부서를 통합하여 1985년에 중앙수사국에 설치하였다. 범죄수사과정에서 범인색출, 범적신원조회, 감정, 등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범죄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리용(Lyon) 근처의 에컬리(Ecully)에 자리잡고 있는 과학수사부국은 모두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 업무지원부(division de la logistique opérationnelle)는 일반예산의 수립 및 집행, 인력 관리, 시설보안 및 시설유지 등을 통하여 부국내에서 획적임무를 수행한다. 업무지원부의 주요부서는 다음과 같다.
- 범죄자료과(service central de documentation criminelle SCDC) : 범죄자료는 경찰관에게 최단 시간내에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조하고, 식별하도록 하며 도피중인 범인과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수배가 가능하게 한다. 범죄자료는 또한 소송서류의 처리 및 전파를 신속히 하는 목적도 있다. 이 부서는 또한 과거의 수사자료들을 축적하여 국립경찰 전체를 위한 여러 개의 수사지원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배자화일(Fichier des personnes recherchées FPR), 도난차량화일(Fichier des véhicules volés), 범죄정보관리시스템(Système de Traitement des infractions constatées STIC), 수사서류작성프로그램(LRP)이 있다. 범죄자료과는 이 외에도 중앙화일(Fichier centrale)을 구성하는 수사자료의 관리 및 조회를 담당하고 있다.
- 중앙감식계(service central de l'identité judiciaire SCIJ)는 기능면에서 전 국토에 분산 배치된 감식계 소속 전체 1,250명의 특별인력(수사관, 과학자, 행정직)과 기초 감식교육을 이수한 6,000명의 “다기능” 경찰관들의 감식활동을 조직하고 통제한다. 이 부서는 국립연구·문서·교육센터(CNRDF)에 의해 이뤄지는 특별교육의 내용을 결정한다. 여기에는 사법관 또는 지역수사부서 등의 요청에 의해 개입하는 출동(현장)팀(unité d'intervention)이 있어 범죄현장에서 물적 증거들을 찾고 특별감식팀 또는 국립과학연구소에서의 확인을 위한 채취를 한다. 중앙감식계에는 또한 재난피해자식별팀(unité police d'identification de victimes de catastrophes UPIVC)이 있다. 중앙감식계는 지문전산화일(FAED)의 적용(application)에 대한 지휘를 맡고 있는데 지문전산화일의 자료는 경찰과 군경찰을 포함하여 2003년 10월 1일 현재 중죄와 경죄의 피의자 1,717,000명 이상의 십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분야에서 중앙감식계는 지문채취 분야에 특별히 전문화되어 있다. 또한 탄도학(balistique), 문서, 필적, 흔적학(tracéologie), 냄새학(ordorologie)과 같은 다른 분야에도 관여한다.
- 중앙과학연구소(service central des laboratoires SCL) :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해당한다. 1910년부터 순차적으로 설립된 5개의 과학연구소는 릴, 리용, 마르

세이유, 파리, 툴루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감정위임 또는 전문가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예심법원, 검사, 국립경찰 또는 군경찰 소속의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요구된 모든 과학적, 기술적 실험과 분석을 실시한다. 중앙과학연구소는 2개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연구소들의 예산, 인력 등을 관리하며 이 부서들의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조정을 담당한다. 또한 국립유전자지문전산화일(Fichier nationale automatisé des empreintes génétiques)의 관리를 맡고 있다.

- 국립연구·문서·교육센터(Centre national de recherche, de documentation et de formation CNRDF)는 1996년 9월 파리과학수사계가 현재의 에컬리(Ecully)에 이전할 때 분산된 교육실을 연합하고 항구적인 교육팀들로 하여금 과학수사교육을 맡기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교육, 문서, 연락의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formation)은 신입교육의 전체와 감식, 전산, 연구실, 범죄자료 등의 일부를 담당한다. 문서(documentation)와 관련하여 과학수사문서팀의 활동은 문서통제, 자료수집과 특별문서들을 경찰부서의 요원들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나뉜다. 연락(communication)과 관련하여 이 부서는 대내외적인 활동과 중앙수사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정보통신장치를 통하여 과학수사요원들의 활동을 발굴하고 알리는 업무를 맡고 있다.
- 전산·기술증거과(service de l'informatique et des traces technologiques SITT) : 2001년 11월 15일 설립된 전산·기술증거과는 기호분석처리연구소(laboratoire d'analyse et de traitement du signal)와 전산계(section informatique)를 통합하였다. 기호분석처리연구소는 검찰 또는 수사부서들의 요청 또는 수사관사의 감정위임명령에 따라 녹음, 전자칩 또는 휴대폰, 영상물, 정보기억장치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전산계는 과학수사부국의 전산을 관리한다. 지방에도 모든 광역지방 수사국이 전산·기술증거과(SITT)를 두고 있다.

(4) 대외협력부국(sous-direction des liaisons extérieures)

대외협력부국은 다음과 같은 부서들을 두고 있다.

- 업무지원부(division de la logistique opérationnelle)은 부국장을 보조하고 부국내에서

횡적연결을 조정한다.

- 연구기획부(division des études et de la prospective)는 법률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전체 국토상에서의 범죄현황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제공하기 위한 경찰과 군경찰의 범죄 통계수집 및 처리를 담당한다.
- 국제협력부(division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는 인터폴, 쟁겐, 유러폴과 같은 국제협력의 장치를 관리한다. 이 세 가지 통로는 장차 중앙경찰공조센터(Section centrale de coopération opérationnelle de police SCCOPOL)로 불리는 단일한 플랫폼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 기술통제부(division du contrôle technique DCT)는 지방수사부서들에 대한 내부적 진단장치로서 그리고 전체 수사부서들의 정책실(bureau organisation et méthodes)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중앙수사국의 내적 평가도구의 합치성(cohérence)을 감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석업무를 수행하며 중앙수사국장에게 조직구조, 절차, 운용(fonctionnement)과 관련한 제안을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부서는 중앙수사국과 감찰국(inspection générale de la police nationale)과의 기술적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한다.
- 교육연락계(division de la 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DFC)는 교육 및 내부연락 분야에서 수사부서들과 다른 내부주체(교육국, 경찰학교 등등) 및 외부주체들(국립사법관학교, 법무부장관, 군경찰총국, 도청, 국제기구, 대학 등등)간의 조화된 관계를 형성한다.

2) 지방수사국의 조직구조와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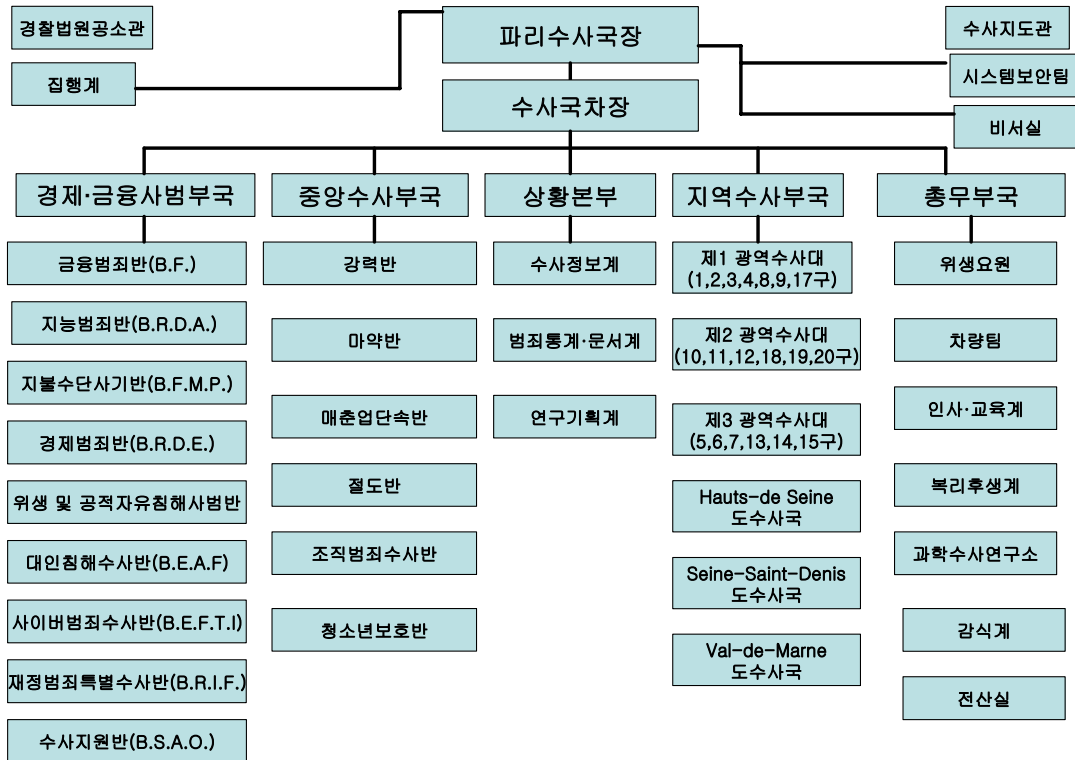
가. 파리 수사국 (La direction régionale de la police judiciaire de Paris : (D.R.P.J.)

파리와 주변의 3개 도(Seine-Saint-Denis, Haute-de-Seine, Val-de-Marne)에서 발생

하는 범죄를 수사하며 2,359명이 근무하고 있다. 파리수사국의 임무는 조직범죄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과학수사, 감식, 전산장비, 수사자료 등의 실행 및 통제이다. 일반 강도범죄와 같이 경미한 지역적 사건들은 각 구에 위치한 인접도시경찰국 (Direction de la Police Urbaine de Proximité)소속의 중앙경찰서(commissariat central)가 담당한다.

파리지방수사국이 현재와 같은 조직체계의 정비는 1999년 봄에 이뤄진 인접도시경찰국(Direction de la Police Urbaine de Proximité : DPUP)과 공공질서·교통국(Direction de l'Ordre Public et de la Circulation DOPC)의 신설 및 지역수준에서의 수사국의 재조직⁶⁷⁾이라는 개혁에 이어 2000년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림 8> 파리 지방수사국의 편제



67) 1999년 개혁으로 6개의 광역수사대(division de police judiciaire)가 3개로 개편되었다.

(1) 수사지원부서

① 상황본부(L'Etat-Major)

상황본부(L'Etat-Major)는 파리수사국이 3개의 광역수사대로 조직개편이 된 후 수사 상황에 대한 항구적인 관리, 파리경찰청 전체부서들에 의해 작성된 수사서류의 통계분석 및 처리, 연구 및 기획을 맡는다. 상황본부는 인접도시경찰국과 보충적 관계를 유지하고 중앙수사국, 인터폴 및 유럽폴 국내사무소와 이 부서들을 통하여 생켄조약가입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사법당국과는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② 총무부국(Sous-Direction des Ressources Humaines et de la logistique)

인사 및 장비관리에 있어서 최대한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사국은 과거의 “총무과(Services Généraux)” 대신에 총무부국을 창설하였다. 현대적이고, 완벽하며 새로운 기술발달에 적합한 총무부국은 기술분야 및 과학분야에서의 수사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새로운 교육 목표에 충실한 신입 및 직무교육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역할도 맡고 있다.

파리지방 감식계는 취급된 사건의 규모면에서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감식부서로 꼽힌다. 이들의 활동은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파리경찰청 관할내(인접도 포함)에서 과학수사의 임무를 맡고 있으며, 파리 및 인접도에서 생산되는 증거물과 문서들의 대다수를 집중관리하면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감식계에는 개혁이후에도 현장업무와 증거활용을 가능케 하는 중대한 기반시설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은 지문화일, 신체측정사진화일, 디지털지문화일, 영상연구실, 특수감식실 등이다. 이것들은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체부서에서 활용가능하며 사법당국도 마찬가지다.

(2) 파리수사국의 수사부서

① 중앙수사부국(Sous-Direction des brigades centrales)

- 강력반(brigade criminelle)은 중죄, 금품을 요구하는 약취·유인사건, 방화 및 파괴사건 등을 담당한다. 이 강력반은 다수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추리소설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여 유명해졌다.
- 마약반(brigade des stupéfiants)은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매년 수 천톤의 다양한 마약을 압수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팀들을 두고 있다. 순수한 수사활동 외에도 마약반은 마약의 유통, 판매, 투약과 관련한 분야에서 파리 및 인접도의 전체부서들의 수사를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 조직범죄수사반(brigade de recherche et d'investigation)은 대마피아반(brigade antigang)으로 불려지기도 하며 인질과 같은 중대한 강력사건에 손을 대는 범죄조직들을 수사한다. 조직범죄수사반은 장기간의 세심한 감시를 통하여 현행범으로 개입하게 된다. 첨단 기기를 보유하여 강력범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 청소년보호반(brigade de protection des mineurs)은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담당한다. 청소년보호반은 특히 성폭력범죄, 학대 및 기타의 폭력사건들을 수사한다. 또한 정신적인 위협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들의 보호를 수행하는데도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범주안에서 청소년보호반은 공공장소 또는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에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실종된 미성년자들의 발견도 담당한다.
- 절도반(brigade de répression du banditisme)은 무장절도, 위계절도, 침입절도 및 예술품절도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다. 날치기 및 도난차량유통 또한 이들의 임무에 속한다.
- 매춘업단속반(brigade de répression du proxénétisme)은 1989년부터 매춘장소, 주류판매업소, 카바레, 공연시설 또는 오락시설들을 감시하고 있다. 매춘업단속반은 불법적이든,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든, 인터넷과 같은 전산망을 통하여 이뤄지든 간에 이러

한 활동분야와 연결된 범죄들을 색출한다.

② 경제·금융사범부국

- 금융반(brigade financière)은 특히 은행 및 증권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 기관차원에서 일어나는 자금세탁, 집단사기, 사기업과 관련된 범죄를 담당한다.
- 지능범죄반(brigade de répression de la délinquance astucieuse)은 횡령, 사기, 필적위조, 증명서 및 서류위조 등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 지불수단사기반(brigade des fraudes aux moyens de paiement)은 지불수단의 도용, 위조 및 불법사용과 국내외의 위변조 행정서류사용을 특히 담당하고 있다.
- 경제범죄반(brigade de répression de la délinquance économique)은 소비, 공정거래, 특수직종, 부동산분야 및 부정부패와 그 유사범죄, 조세범 사건을 담당한다.
- 위생 및 공적자유침해사범반(brigade des affaires sanitaires et des libertés publiques)은 특히 공적 기본권, 주민등록, 언론, 인종차별, 단체(associations), 사법 또는 법률서비스업, 사법권침해, 통신비밀, 공중위생, 권리침해 및 사이버종교 분야의 범죄를 담당한다.
- 대인침해수사반(brigade d'enquete sur les atteintes aux personnes)은 대인보호, 성년자의 범죄관련 실종사건, 변사자 식별, 재난, 노동법, 운송관련분야에 개입한다.
 - ※ 2004년 10월 위생 및 공적자유침해사범반과 대인침해수사반이 통합되어 대인범죄대응반(brigade de répression de la délinquance contre la personne)으로 변경되었다.
- 사이버범죄수사반(brigade d'enquete sur les fraudes aux technologie de l'information)은 전산분야(불법복제, 해킹 등)의 여러 범죄들을 담당한다.
- 금융범죄특별수사반(brigade de recherche et d'investigations financières)은 돈세탁, 경제 및 금융분야의 인지수사, 모든 형태의 조직적 범죄에 걸친 금융수사 및 위조화폐

에 대한 분야에 개입한다.

- 수사지원반(brigade de soutien à l'activité opérationnelle)은 타 수사반에 대한 전산지원 및 서류지원을 맡고 있다.

③ 지역수사부국

지역수사부서들은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들 부서들은 전문부서들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며 지리적 공간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수사경찰의 균형 및 효율성에 기여한다.

지역수사부서들은 수개의 구(arrondissement)를 관할하는 3개의 광역수사대(division de police judiciaire)와 파리를 둘러싼 3개의 도수사국(services départementaux de police judiciaire)으로 구성된다. 1999년 4월 18일의 개혁이전에는 총 6개의 광역수사대가 있었으나 3개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역범죄의 대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부서 및 지역부서 소속의 경찰관들을 마약, 강력범죄, 일반범죄, 경제범죄분야별로 전문화시켰으며, 금융경제범죄를 특히나 고려하였다. 또한 인지수사의 비중을 높였다.

둘째, 인접도시경찰국과의 보충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각 광역수사대에 인접도시경찰국의 산하의 경찰서에 소속된 연락관(officiers de liaison)을 두어 연락종합팀(groupe de liaison et synthèses)의 일원으로 근무하게 한다. 이 연락관은 인접도시경찰국과 수사국사이의 상호 정보교환을 책임지며 두 국 상호간에 권한조정에 관한협약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공동업무의 수립에도 참여한다.

파리광역수사대의 운영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파리 제1지구 광역수사대는 제1, 2, 3, 4, 8, 9, 16, 17구를 관할로 하고 있으며 수사대가 위치하는 곳은 제17구 베시에르(Bessières)거리 46번지에 있는 경찰센터이다. 여기에는 제1 도시경찰지구대(secteur)와 제1 공공질서 및 교통지구대(district)의 본부가 동시에 위치하고 있어 상호간의 유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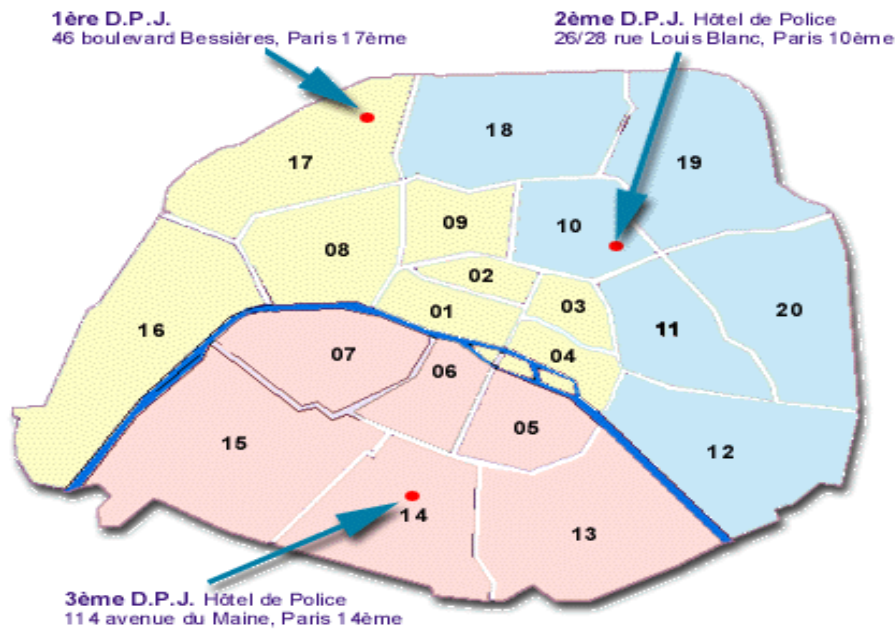
인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파리수사국의 지역수준에서 제1지구 광역수사대는 지리적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조직범죄대처를 위한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제1지구 광역수사대의 주요 부서를 보면, 상황본부(Etat-major)와 강력계(section criminelle et de répression banditisme), 인지·마약계(section initiatives et stupéfiants)가 있다. 이곳의 상황본부는 파리수사국의 상황본부의 지시들을 적용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사건들의 진행과 인사관리를 담당한다. 여기에는 특히 인접도시경찰국 제1, 2지구대 및 경찰서와 일상적인 연락체계를 맡고 있는 연락관(officiers de liaison)이 있으며 일반수사계(section des d'enquetes générales)는 허위명의에 의한 절도, 소매치기 사건을 담당한다. 또한 경제·금융팀(groupe des affaires économiques et financières)은 부정카드의 사용, 차명개좌의 개설 등과 같은 사건을 처리하며 순수 일반수사팀(groupe des enquetes générales proprement dites)은 중요 강도사건, 폭력을 수반한 연쇄절도 등의 사건을 처리한다.

인지·마약계(section initiatives et stupéfiants)는 인지수사와 마약거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파리경찰청의 인접도시경찰국과 수사국 사이의 협의의정서(protocole d'accord)의 범주내에서 조직범죄분야에서 심도있는 조사를 담당하는 광역수사대(division)는 인접도시경찰국의 경찰서에서 취급되는 사건들과 고소장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야 한다. 역으로 인접도시경찰국의 지구대(secteur)와 경찰서들은 지역적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국의 부서들이 직접 접수한 사건들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구대와 지구광역수사대의 관할이 일정부분 겹치도록 하는 방식에 의한 공조체제와 함께 수사국과 인접도시경찰국간의 협의의정서에 의해 가능해지는데 협의의정서는 사법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이 두 부서간의 권한의 분배, 보충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호간의 권한에 따라 전달되어야 할 사건들에 대한 정보의 교환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9> 파리 광역수사대의 위치 및 관할

- 제1지구 광역수사대 : 1, 2, 3, 4, 8, 9, 16, 17 구(arrondissement)
- 제2지구 광역수사대 : 10, 11, 12, 18, 19, 20 구
- 제3지구 광역수사대 : 5, 6, 7, 13, 14, 15 구



나. 지방 수사국 (Les services régionaux de police judiciaire : (S.R.P.J.)

파리 지방수사국을 제외한 지방에는 4,395(경찰관 3,085명)명이 수사업무에 전종하고 있다⁶⁸⁾. 종전에 19개의 지방수사국(SRPJ)이 있었으나 2003년 4월 24일 국사원령에 의하

68) <http://www.interieur.gouv.fr>

여 2-3개의 지방수사국을 묶는 9개의 광역지방수사국⁶⁹⁾이 창설됐으며 3개의 지방수사국⁷⁰⁾이 존속하고 있다. 각 지방수사국은 두 개 또는 세 개의 고등법원 관할을 담당한다. 지리적, 범죄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형사분실 또는 파견이 결정된다⁷¹⁾. 지방 수사국장은 일반적으로 총경(commisnaire divisionnaire)이다. 지방 수사국의 토지관할은 통상 2-8개의 도에 미친다. 각 지방수사국은 조직범죄나 특수 범죄수사를 위한 중앙 수사국의 활동에 긴밀히 참가하며 다양한 사법경찰임무에 상응하는 특별한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범죄조회, 수배과일, 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부(Division technique), 일반범죄, 마약, 강도 등 중앙수사국의 조직에 대응하는 일반범죄부(Division criminelle)와 경제·금융부(Division économique et financière)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광역지방수사국은 중앙수사국에 속한 강력과(O.C.R.B)의 연장선상에서 전국토를 관할로 하는 조직폭력수사반(brigade de recherches et d'intervention)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 조직은 지방 수사국의 소재지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곳에 수 개의 분실(antenne)과 분소(détachement)를 갖고 있다. 이외에도 베르사이유에 소재한 지방수사국과 릴, 헨느, 아자크시오, 스트라스부르그에 소재한 4개의 광역지방수사국은 타 경찰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전문화된 방법을 통하여 도시형의 집단 폭력형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협력반(Brigades de recherches et de coordination)을 두고 있다.

다. 지역합동수사반(Les Groupes d'Intervention Régionaux GIR)

2002년 5월 22일의 장관공동지침(circulaire interministérielle)에 따라 지역합동수사반이 지하경제에 대처하고 다수의 민감한 구역에서 치안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파괴의 원천이었던 여러 형태의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행정지역(région), 도(département) 및 도서지역에 설치됐다. 프랑스 본토에 29개의 합동수사반이 존재하는

69) Bordeaux, Dijon, Lille, Lyon, Marseille, Orléans, Rennes, Strasbourg, Pointe-à-Pitre

70) Paris, Versailles, Ajaccio

71) Le droit de la police, p. 137

데 21개는 각 지역에 8개는 파리지역에 속한다. 이 수사반들은 새로운 수사부서로 여겨지지 않으며 광역지방수사국에 부속되거나(19개), 군경찰의 수사대(10개)에 부속된다.

총 287명이 지역합동수사반에 설치된 조직 및 지휘팀에서 매일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 군경찰 및 여러 행정기관으로부터 1,400여명의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앙수사국 산하에 설치된 한 개의 실(cellule)은 국립경찰의 지휘하에 지역합동수사반의 업무를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역합동수사반은 조직범죄와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행정청들의 권한과 능력을 공동화 하였다. 세관, 국세청, 노동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참여와 전통적인 국립경찰과 군경찰의 사법경찰권을 결합하여, 마약유통, 장물 또는 도난차량유통, 집단폭력 등에 대처한다.

3) 방법(생활안전)국의 수사기능

방법국의 수사기능은 매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전체 중죄와 경죄의 2/3에 해당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주로 경미하고 일반적인 범죄를 처리하고 특수범죄나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다. 방법국은 전체 업무량의 40% 정도를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방법국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은 광범위한데 단순한 절도사건에서부터 살인, 사기, 횡령, 과속, 강도, 음주운전, 마약유통 등등이다. 총 67,000명의 경찰관 및 12,000명의 공익요원(프랑스는 실업대책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으로 경찰보조원을 채용하여 교통보조, 순찰 등 업무에 투입)이 근무하고 있다. 지방조직으로는 각 도마다 도방법국(Direction départementale de sécurité publique)이 있으며, 각 도는 사정에 따라 여러 부서를 두고 있는데 통상 방법기획과, 인접경찰과, 수사과, 경비교통과가 있다. 또한 도시폭력, 공도로상의 범죄(털이범, 자동차절도, 채물손괴 등), 약물중독, 마약거래, 불법이민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의 도는 1996년부터 도안전부(Sureté départementale)⁷²⁾를 설치하였다.

72) 총 14개의 도안전부가 있다. 여기에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7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출처 : 프랑스 2003년 예산안 편성관련 하원 보고서

여기에는 청소년반(brigade des mineurs), 마약반(brigade des stupéfiants), 도시폭력반(brigade de sureté urbaine), 과학수사팀(groupe technique) 등이 있다. 한 개의 도는 다시 수개의 경찰서관할로 나뉘지며 여기에는 파출소 등이 있다.

4) 경찰서의 수사기능

가. 개 관

경찰서에서도 수사기능이 있으나 그 소속은 중앙수사국이 아니라 경찰청 중앙방범국(생활안전국)이다. 방범국의 주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199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도시 주변의 범죄에 대비하여 내무부의 중요정책으로 인접경찰(police de proximite-지역 또는 근린경찰로 해석가능)을 추진하고 있다. 인접경찰은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공공 서비스의 향상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1999년에 계획되어 2000년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데, 군인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파리와 더불어 전 국토를 465개의 구역으로 나뉘, 3천만 명의 국민이 이와 같은 인접경찰의 혜택을 받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매일 6,000여건의 신고 전화를 접수하고 있으며, 구역 담당제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특히 150여 개소에 900명의 경찰관이 참여하는 청소년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여 이제까지 95,0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1999년 시행된 파리경찰청의 개혁으로 기존에 파리수사국이 담당하였던 수사기능의 일부는 인접(지역)경찰의 수사부서에게 이양되고 파리수사국은 아주 복잡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되었다.

나. 수사과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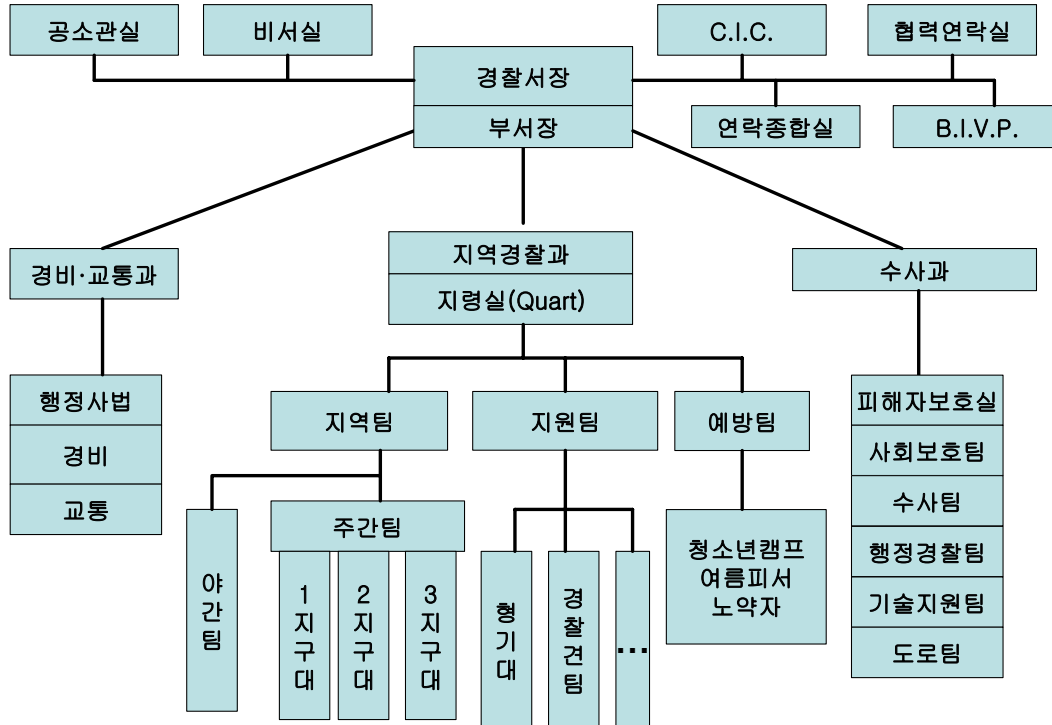
경찰서편제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경찰서처럼 모든 기능이 집약된 형태가 아니라 관

할구역내의 질서유지, 방범기능과 함께 민생치안사범에 대한 수사기능만을 포함하여 방범과 수사기능의 연계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서 내 수사과에서는 일상적이며 경미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서는 소규모로 1999년 개혁이전에는 경비교통과와 수사과만이 있었으나 인접(지역)경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인접)경찰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인접경찰과(service de police de proximité : SPP)는 관할구역으로 구분되는 수개의 지역팀(지구대)과 지원팀, 예방팀 및 지령실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팀(지구대)는 주로 순찰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일정한 유대를 형성하여 지역경찰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한 개의 경찰서는 통상 3-4개의 지구로 나뉘져 주간에는 지구대의 인력이 순찰을 하며, 야간에는 야간팀이 운용된다. 지구대의 방범활동과 관련하여 경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형기대와 경찰견팀이 지원한다. 형기대는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활동과 함께 현행범체포를 주임무로 하고 있다. 주간, 야간팀이 있으며 주간팀은 경찰서단위에서 운용되며 야간팀은 도방법국단위에서 운용된다. 경찰서의 지령실은 지역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지휘와 조정을 맡고 있다. 수사과(service d'investigation et de recherches : SIR)는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역의 범죄상황에 따라 수개의 특별팀으로 구성된다. 경비교통과(service d'ordre public et de sécurité routière : SOPSR)는 인접경찰 및 수사과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질서, 도로안전, 사범 및 행정의 보조라는 전통적 임무를 담당한다.

이상의 경찰서 조직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인구 15만명 이상의 경찰서 편제



수사과(le service d'investigation et de recherche (S.I.R))의 기능을 살펴보면, 수사과장은 사법활동의 조종자로서 인접경찰의 지구(secteur)와 지령실의 장은 수사과장에게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수사과장은 다른 과에서 처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과의 지원팀(Les unites de soutien)으로는 관리계(le secretariat operationnel), 연락, 정보, 통합팀(l'unite de liaison, d'information et de synthese judiciaire (ULISJ)), 기술지원팀(l'unite technique)이 있으며, 작전팀으로는(Les unites operationnelles) 수사팀(l'unite de recherches judiciaires), 사회보호팀(unite de protection sociale), 행정경찰팀(unite de police administrative), 도로팀(le groupe de voie publique)이 있다.

인접경찰(police de proximite)의 사법경찰 임무는 종전에 사법경찰활동은 중심경찰서 구조상 전문화된 인력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장차 인접경찰이 최전방에서 경미범죄와 중간범죄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사법경찰의 임무를 맡게 된다. 주민들의 삶과 관계되는 일상적인 범죄를 인접경찰이 담당하는데 여기에는 전체 위경죄와 개인들간의 폭력과 재물손괴의 경죄들이 포함된다. 반면에 대인에 대한 중대한 침해사범이나, 미성년 피해자 사건, 풍속사범, 경제사범, 도시폭력사범, 공무원 모욕 또는 공무원행방해사범 등은 이러한 범주에서 제외되며 사건이 복잡, 민감하고 장기간의 수사를 요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인접경찰은 경미범죄와 중간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섹터(지구)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목격자 등의 진술을 수집하고, 탐문수사를 하며 범인을 검거한다. 나머지 가택수색,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는 경찰서의 타수사부서 특히 수사과(S.I.R.)에 넘겨진다.

위에 열거된 일반적인 원칙들 외에도 사건발생량이 많거나 반복적인 범죄들에 대하여도 인접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즉, 폭력,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가정사건과 인피를 동반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처리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대부분을 처리해야 한다. 인접경찰의 수사업무는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중요범죄에 관한 검사의 지휘는 따라야 한다.

2. 수사경찰의 인력관리

1) 선발과 교육

가. 단일 입직경로

과학수사분야를 제외하고 일반 경찰관들과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요원간에 입직경로상의 차이가 없다. 즉, 프랑스는 집행직군(비간부급), 통솔직군(간부급), 지휘직군(지휘관급)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다. 집행직군은 순경, 경장, 경사계급에 해당하는 비

간부급으로서 자격요건은 대학입학자격을 수여받은 모든 고졸출신자들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형사법분야와 기본권분야에 대한 필기 및 이론시험과 건강검진, 체력검사를 통과하여 국립경찰학교 등에서 12개월간의 이론교육과 실습과정을 이수한 후에 정식으로 임용된다.

통솔직군의 경위, 경감보, 경감에 해당하는 계급으로서 선발은 외부고시 60%, 내부고시 30%, 심사승진 10%로 할당하고 있다. 즉 대학의 3년 과정을 이수하면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내부고시는 비간부급들 중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들을 상대로 치뤄진다. 따라서 계급에 상관없이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경위계급을 수여받게 된다. 심사승진은 경사급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경위로 선발된 자는 국립고등경찰간부학교에서 18개월의 이론 및 실습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지휘직군은 경정부터 치안감에 해당하는 계급으로서 통솔직군의 선발과정과 유사하게 외부고시 60%, 내부고시 30%, 심사승진 10%로 할당하고 있다. 외부고시는 대학 4년 과정을 이수한 자(석사학위자)가 자격요건이 되며 내부고시는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가 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심사승진은 경감급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교육은 리용근교에 위치한 국립고등경찰학교(ENSP)에서 2년에 걸친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는다.

나. 일반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⁷³⁾

(1) 신임교육(La formation initiale)

신임순경은 과거 전국에 있는 11개의 국립경찰학교와 12개의 경찰교육센터 중에서 8개월의 이론교육과 3개월의 경찰서 실습을 하였으나⁷⁴⁾ 2005년 2월부터는 7개월의 이론교육과 3개월의 실습과정이 종료하여 졸업시험을 치르고 이때 성적에 따라 근무할 부서를 신청하며 부서가 결정되면 나머지 1개월간의 전문화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도록

73) 참 조 : http://www.interieur.gouv.fr/rubriques/c/c3_police_nationale/c33_organisation/dcpj_la_formation_des_personnels_de_police_judiciaire

74) 김성수,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318면

하고 있다.

경위계급으로 임용된 경찰관은 18개월의 교육을 칸느-에끌뤼즈(Cannes-Ecluse)에 있는 국립고등경찰간부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officiers de police : ENSOP)에서 이론교육과 경찰관서 등에서 실습하게 된다. 정식 임용시 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국립고등경찰간부학교는 217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95명은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들이다. 매년 1월 시작하여 이듬해 6월까지 실시되는 교육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모듈(Module)로 구분된다.

적응모듈 : 새로운 환경에 통합되는 과정으로서 교육의 방향을 이해하고 실습을 준비한다. 각 기수별로 4주간의 학교교육과 입직경로별로 생활안전국 소속의 경찰서에서 실습을 한다.

사범모듈 : 범죄수사와 경찰윤리를 준수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의 활동과 책임에 대하여 교육한다. 14주간의 학교교육과 6주간의 생활안전국 소속의 경찰서에서 실습을 한다.

일반 행정경찰모듈 : 행정경찰, 정보, 도로교통, 도시폭력 및 시위진압에 대한 교육을 한다. 4주간의 학교교육과 2주간에 걸친 도시폭력 및 시위진압 실습을 한다.

지휘모듈 : 지역경찰상의 간부의 활동과 책임에 대하여 교육한다. 16주간의 학교교육과 13주간의 실습으로 구성된다.

전문육체활동모듈 : 실제 상황훈련, 사격, 무기사용, 신체방어, 전문 달리기, 인명구조, 스포츠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최초 보직모듈 : 희망근무부서를 선택하고 나서 시보경위들은 학교 또는 기능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최초보직을 준비하기 위한 4주간의 적응 및 수행실습을 한다.

(2) 사법경찰관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시험

1998년 11월 18일 법률은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지정한 형사소송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비간부들에게 기술시험(examen technique)을 통과하는 경우에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간부급의 경찰관으로서 사법경찰관이 되고자 희망하는 자는 14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형법, 형사소송법 또는 헌법의 개념들에 관한 필기시험(3시간), 범죄 사례에 대한 수사서류작성 필기시험(4시간), 헌법과 형사소송에 관한 구두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공개채용된 신입경위들은 경찰학교에서 18개월간의 교육과정 종료시에 임용을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이 시험은 사법경찰관이 되기 위한 기술시험(examen technique)을 대체한다. 신입순경도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12개월의 신입교육기간 중 기술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만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임용이 안 되며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직무교육(La formation permanente)

직무교육은 중앙수사국 소속의 수사관과 다른 국(Direction)에 소속된 수사관을 구별하여 이뤄진다. 중앙수사국 소속의 수사관은 중앙수사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기타의 수사관은 교육국에서 담당한다.

집단범죄나 테러리즘, 강력범죄, 마약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전문화의 필요성에 따라 경찰관들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활동은 수사부서에 의해 기획, 편성되며 기본적으로 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유익해야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약계(l'office central pour la répression du trafic illicite des stupéfiants)는 교육팀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경제금융사범부국은 특히 금융분야와 관련한 교육을 담당할 부(une division)를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앙 신원계(S.C.I.J)는 국립신원센터(le centre national de l'identité judiciaire)를 통하여 신원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 설치된 국립과학수사연구·교육센터(le 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et de formation de la police technique et scientifique)가 수사국 산하의 과학수사부국에서 설

치되어 있다.

2) 승진체계

승진(avancement)은 두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한 계급내에서 호봉(échelon)의 상승과 계급(grade)간의 상승이다⁷⁵⁾.

가. 호봉의 상승(avancement d'échelon)

우리의 경우 호봉이 1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1단계씩 올라가나 프랑스에서는 호봉산정이 근무연한과 근무평가를 혼합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호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에 의한 근무평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봉은 우리처럼 보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호봉의 상승은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나. 계급의 상승(avancement de grade)

(1) 일반승진

일반 공무원의 승진자수는 원칙적으로 계급별 정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1984년 1월 11일 법률 제58조는 세 가지 승진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의 심사승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마다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비례행정위원회(CAP)⁷⁶⁾의 의견을 받아 승진예정자 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승진하는 경우,

75) 1984년 1월 11일 법률 제56조

76) Commission administrative paritaire(CAP)는 부서의 장들과 이와 동시인 동일 계급의 노조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진과 징계분야에 참가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둘째는 승진시험을 거친 후 CAP(비례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승진예정자 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승진하는 경우,

셋째는 내부임용고시를 통한 선발이다.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1997년 5월 31일 국사원령이 제정됨으로써 시험에 의한 승진방식을 없앴다. 단, 순경(Gardien de la Paix)에서 경장(Brigadier)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승진 예정자 명부작성의 절차>

1. 행정청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여 선발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승진 대상인원을 정하는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3. CAP는 승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동 계급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상급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4. CAP는 대상자의 근무성과 부서장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에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고 인사권자는 최종 결정을 한다.⁷⁷⁾
1995년 5월 9일 영 제17조에 의하면 승진 예정자 명부작성을 위한 부서장의 평가에는 근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교육과 근무경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2) 특별승진

1995년 5월 9일 국사원령 제36조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용감한 행동을 한 경우에 호봉을 올리거나 계급을 올릴 수 있다. 만약 여기에 더하여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휘관급이나 지휘자급으로 승격될 수도 있다.

77) CAP가 제청한 승진 대상자를 행정청이 승진대상명부 등록을 2년에 걸쳐 거절하는 경우 대상자는 국가공무원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무수행 중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호봉을 올리거나 계급을 올릴 수 있다.

3) 수사경찰의 구성

프랑스 수사경찰의 인력구조에 관하여 우선 계급별 구성을 살펴보면,

<표 14> 수사경찰 인력구조

계급 \ 인원	고급간부 (경정이상)	경위, 경감급	비간부	행정직	과학자	기타
총계 (파리수사국)	303 (84)	2,956 (1,142)	1,769 (717)	1,286 (247)	338 (118)	51

앞에서 우리나라 수사경찰의 인력구조와 비교할 때 계급별 구성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직 및 과학자 등을 제외한 순수 경찰관들을 놓고 봤을 때 중앙수사국 소속의 순수 정예수사관 5천여 명 중 간부는 3,300명에 달하고 비간부는 1,700여명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경찰입직경로를 살펴보면 고급간부인 경정급(commisnaire)은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초급간부인 경위(lieutenant)는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순경(gardien de la paix)의 경우에는 대학입학자격시험(baccalauréat)에 통과해야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같이 고려하면 경위 이상의 간부들은 대부분이 학사학위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제3절 미국의 수사경찰

1. 서론

미국은 연방정부 및 50개 주 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주 정부는 모두가 독자적인 형사법과 형사사법조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서로 다른 52개의 법역(法域, jurisdiction)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경찰조직 역시 국가경찰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경찰제도와 달리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찰은 크게 도시(city)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경찰(police), county(군)단위로 설치된 보안관(sheriff), 주경찰(state police), FBI와 같은 연방경찰 등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조직별, 지역별로 다양하다. 미국의 수사경찰 역시 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수사경찰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미국의 수사경찰은 이러한 독자적인 수사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수사관행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의 경찰과 가장 유사한 미국의 도시경찰서 수사경찰의 조직, 인력 관리 등을 살펴보고 우리 수사경찰의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수사경찰의 조직

1) 수사부서 연혁

미국의 범죄수사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필요와 영국의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였다.⁷⁸⁾ 미국에서 최초로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관을 임명한 것은 정확하지 않으나,

78) 영국에서는 1750년 경에 런던 치안판사(Magistrate)인 Henry Fielding이 수사조직인 Bow Street Runners 또는 Thief Takers라고 불리는 조직을 만들었다.

1789년에 연방 Revenue Cutter Service(관세청)에서 밀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관을 임명하였고 1829년에는 연방 Postal Service(체신청)에서 우편사기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을 임명하였다.

지방도시에서는 1846년에 Boston 경찰국에서 3명의 형사를 임명하였다. 이들이 1850년에 16,000달러 상당의 도난물품을 회수하면서 이들의 업무도 경찰국의 필수적인 업무가 되었다. 1857년에 뉴욕시경은 20명의 형사를 임명하였다. 이들은 세부적인 범죄별 수사부서에 배치되었으며, 각각의 수사부서는 체포와 고발(complaint)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였다. 모든 형사들은 담당사건에 대해 수사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매일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뉴욕시경은 1882년에 입법에 의해 형사국(detective bureau)을 설치하였고, 필라델피아(1859)와 시카고(1860) 등 다른 도시 경찰국에서도 수사 진담부서를 신설하였다.⁷⁹⁾

2) 대도시 경찰의 수사조직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국의 경찰조직은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경찰조직과 인력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 지방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파출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찰과 달리 모든 미국의 도시 경찰서는 police department(경찰국 내지 경찰서)로 표시되는데, 뉴욕이나 LA같은 대도시의 경찰은 경찰국(police department) 산하에 우리의 경찰서와 유사한 하부 지역 조직(police station)을 두고 있다. 미국의 대도시 경찰서의 수사조직은 수사과와 형사과 또는 수사과만을 두고 있는 우리의 경찰서 수사조직과 달리 지역별로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도시인 뉴욕과 비교적 규모가 큰 달라스시 경찰국의 조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뉴욕시 경찰국

뉴욕시경은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우리나라의 서울지방경찰청과 비슷하다고 할

79) Michael J. Palmiotto, Criminal Investigation(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1994), pp.5-6.

수 있다. 먼저 뉴욕시경 수사조직으로는 크게 본부(경찰국)와 지역 수사경찰로 나눌 수 있다. 뉴욕시경(NYPD)은 수사조직(detective bureau)으로 4개의 광역 지구대(Brooklyn, Bronx, Manhattan, Queens)와 산하에 73개 지역수사대가 있다. 4개의 지구대는 뉴욕시경 관할을 크게 4개소로 구분하여 광역수사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광역지구대 산하에 73개의 지역 수사대가 있다. 지역 수사대는 우리의 경찰서와 비슷한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순찰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뉴욕시경 본부의 수사조직으로는 지역수사대의 수사지원 및 지도를 담당하는 형사국(detective bureau)에 중앙수사정보부(central investigation and resource division), 법과학실(forensic investigation division), 범인추적실(fugitive enforcement division), 특별수사부(special investigation division) 등의 조직이 있다. 중앙수사정보부에는 살인범죄분석실, 인질협상팀, 범인사진자료관리팀, 범죄피해자 보호팀 등이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팀에는 숙련된 여자형사를 배치하여 24시간 성범죄신고에 대한 상담을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수수사부에는 중범죄수사팀(major case squad), 특수사기수사팀(special fraud squad), 실종자수사팀, 폭발물수사팀, 방화수사팀, 컴퓨터범죄수사팀, 마약수사팀, 중요범죄대책실, 자동차범죄실 등 범죄별로 수사조직을 두고 있다.⁸⁰⁾ 뉴욕시경 본부에는 형사국 이외에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범죄수사부(organized crime investigation division)를 두고 있다.

나. 달라스시 경찰국

텍사스 주 Dallas 경찰국은 경찰관이 약 3000여 명으로 우리의 인천지방경찰청과 규모가 비슷하다. Dallas 경찰국의 수사조직은 본부의 조직과 6개의 경찰서(광역 순찰지구대, operation division)에 수사과(investigative unit)가 있다. 6개의 경찰서에는 100명에서 300명 정도의 경찰관들이 근무하는데, 수사과의 형사는 10명에서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서의 수사과에서는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한

80) www.nyc.gov/html/ypd/html/db/organ.html.

수사를 주로 담당한다. Dallas 경찰국 본부의 수사조직으로는 수사국(investigative bureau) 산하에 범죄정보과(criminal intelligence unit), 시민청렴과(public integrity unit), 대인범죄과(crime against persons division), 살인범죄수사과, 강도수사과, 폭력과, 성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팀(financial crime squad), 아동학대수사팀(child abuse squad), 가족폭력수사과, 실종대책과, 차량절도수사과, 문서위조수사팀(forgery unit), 사기범죄수사팀(swindle unit), 범죄피해자대책팀(crime victim's compensation) 등이 있다. 범죄정보의 수집·평가·전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범죄정보분석실에는 대테러팀, 절도범죄수사팀, 중대범죄팀, crime stopper팀 등이 있다. 그밖에도 마약범죄수사팀이 별도로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텍사스 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범죄피해자보상 프로그램에 의해 법규위반자들로부터 받은 범칙금을 기금으로 하여 살인, 강도, 유괴, 폭력, 성범죄 등 특정 범죄의 직접 피해자 및 가족과 범죄피해 구조자 등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Dallas 경찰국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다.

3) 소도시 지역 경찰서

우리의 3급지 경찰서와 규모가 비슷한 소규모의 경찰서(100인 이내)이면서 미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서에서는 수사부서로서 일반범죄 수사과, 특수범죄수사과로 마약, 컴퓨터 범죄수사과를 두고 있으며, 수사지원팀으로 과학수사반, 범죄피해자 팀을 두고 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청소년범죄수사부를 별도로 두기도 한다.

4) 범죄별 전문 수사팀 설치에 대한 논의

근래 들어 미국의 경찰서 수사부서는 범죄의 전문화 및 신종범죄의 등장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범죄의 증가 및 신종범죄에 대응하여 수사부서를 지나치게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작은 경찰관서

에서도 범죄별로 세분화된 조직을 두고 있으며, 신종범죄의 등장 등 범죄 경향이 변화할 때마다 경찰서에서는 새로운 범죄에 대응한 새로운 부서를 신설을 해야만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전문화가 어느 정도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도, 절도, 살인, 폭력 등 전통적인 일반적 범죄에는 오히려 덜 효과적이고 인력 부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즉, 통상적인 범죄분야의 수사인력은 미국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전문수사팀이 증가하는 것은 병원의 전문의가 증가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도시 경찰서의 경우는 수사인력이 많기 때문에 전문수사팀의 설치에 대해서 큰 반대는 없으나, 수사요원이 10명 전후, 또는 30명 이내인 중소규모 경찰서에서의 전문수사팀 설치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다.

수사조직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문화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원칙은 가능한 적은 전문화된 조직을,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수사부서의 전문화는 지리적인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관할이 작은 경찰서에서는 지리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소규모 경찰관서에서는 특정 지역만을 담당하는 지역별 수사부서를 두지 않고 모든 수사인력은 동일한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왜냐하면 관할이 넓지 않기 때문에 출동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관할 구역이 넓은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역별 광역수사대를 두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수사조직의 전문성은 기능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소규모 경찰서에서는 일반범죄의 수사부서에 소속된 형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모든 범죄를 처리한다. 반면 대규모 경찰서에서는 최종별 전문화가 가능하다. 최종별 수사 전문화는 대개 재산범죄수사팀(강도, 절도, 차량절도), 대인범죄수사팀(살인, 강간, 강도, 기타 성범죄), 일반범죄수사팀(수표범죄, 위조, con games) 등으로 분류된다.

수사팀의 전문화를 찬성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의 지능화, 전문화에 대한 대비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는 동일한 범죄의 반복을 통하여 자신의 범죄실행을 지능화, 전문화하면서 보다 더 완벽한 범

죄를 계획한다. 특히, 범죄를 한 번 성공하면 범죄자들은 계속적으로 그 범죄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성공한 강도범이 갑자기 차량절도범으로 전환하지 않고, 위조범이 강도로 전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범죄의 전문화, 지능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사관들도 보다 더 범죄에 전문화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정 범죄만을 전담하는 수사관은 전문수사관이 되기가 용이하고, 전문수사관은 해당 범죄의 범죄특성 및 범죄자들과 매우 친숙해져 범죄 정보의 수집도 수월해진다. 그 결과 전문수사관은 그들 나름의 범죄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범죄발생시 관련 범죄자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문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강조한다. 먼저, 전문화는 엘리트적 우월주의 태도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전문수사관들은 그들 자신을 매우 똑똑하고, 일반 수사관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태도는 수사부서의 전체의 분위기나 사기 등에 영향을 미쳐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화는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수사영역 이외의 분야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일부 전문수사관은 자신의 분야에만 몰입하여 다른 분야의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어 전체적인 수사 대응능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이는 전문수사관이 순찰부서나 다른 부서로 전보되거나 승진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비록, 최적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사관의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찰수사관은 일반적인 범죄수사를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약수사관의 경우, 아무리 유능한 마약 수사관이라 하더라도 살인이나 강도사건 등 다른 범죄의 수사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화는 업무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부서가 범죄의 유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문화되면 전문수사관은 부서의 범죄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일반 수사부서 수사관은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넷째, 전문화는 종종 전문수사관의 경력관리를 어렵게 한다. 이는 전문수사관이 해당 분야에 아주 뛰어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수사관이 해당 직무에 출중

한 능력을 갖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그 분야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으로 인해 승진이나 경력관리를 위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에서 소외된다. 미국에서는 여성이나, 소수인종들의 차별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여성 또는 소수인종 수사관이 자신의 경력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더 활동 폭이 넓고 승진가능성이 많은 일반 수사부서 등 주류적인 부서로의 전보가 필요한데도 계속적으로 그 부서에 잔류시키는 불이익을 당한다. 이는 특정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문수사관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인식은 그것이 정확하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수사관 조차도 일을 태만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수사팀의 찬반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 신원도용범죄(identity crime), 통화범죄 등 새로운 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수사팀 설치에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찬반 논의와는 별개로 전문수사팀 설치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수사부서간 업무량의 형평성 문제이다. 왜냐하면 수사부서간 업무량이 불공정하게 배당되면 전문수사팀의 설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된 수사관의 업무가 다른 전문부서의 수사관의 업무량보다 상당히 많으면 즉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화와 관계 없이 모든 수사관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다른 수사관을 지원해야 한다. 중요범죄가 발생하면 다른 수사부서의 수사관이 배치될 수 있다. 위조수표를 조사하는 수사관이 필요시 살인사건 조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수사관도 일반범죄의 수사기법 등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수사경찰 인력

1) 수사경찰 인력 현황

미국 경찰의 조직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수사경찰 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사경찰 인력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나 대략 전체 경찰 인력의 10-15%로 정도로 추산된다. 미국의 지방경찰(local police) 인력이 대략 50만 명으로 보았을 때 수사요원은 5만 명에서 7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오레곤 주 포틀랜드 경찰서의 경우는 전체 수사인력이 89명이며, 인구 10만명 기준 16.32명이다. 이와 비슷한 플로리다주 잭슨빌(Jacksonville) 경찰서는 인구 10만명 당 15.71명이다. 그러나 워싱턴 D. C 경찰국은 10만 명 당 61명, 시애틀경찰국은 33명으로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수사요원 1인당 연간 처리건수도 차이가 있어 위의 포틀랜드 경찰서는 500건, 시애틀은 300건, 덴버경찰서는 175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⁸¹⁾

2) 수사경찰 인력 배분 논의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전체 경찰인력 중에 수사부서 인력을 얼마나 배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없다. 수사인력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즉 하나는 전통적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총가용인력(manpower utilization)에 의한 방법이 있다.

전통적인 방법은 전체 선서경찰관의 10-15%를 수사부서에 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자는 좀더 복잡하지만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수사부서의 인력배정을 실제 업무량에 근거하는 것으로 전체 업무량을 고려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한 인력을 배정한다. 이 방법은 6단계 절차로 진행된다.⁸²⁾

1단계는 연간 전체 사건처리 건 수(배당건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수사, 피의자 환경조사 등 수사에 부가되는 조사도 포함된다. 또한 타 기관에 대한 조사요청, 기타 예상 문제점 등도 고려된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81) www. oregonia. com. "Unsolved crimes go up as number of detectives goes down" 2005,7)

82) Daniel S. McDevitt, Managing the Investigative Unit(Springfield,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2005), pp. 23-25.

문제들이 모두 고려되어 전체적인 업무량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는 전체 사건처리 건수를 평균 소요시간으로 곱하는 것이다. 소요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여러 주가 걸릴 수 있다. 반면 간단한 사건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 소요된다. 따라서 평균 소요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서도 중요하다.

3단계는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시간을 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표지검사, 장비유지, 훈련, 법정출석, 다른 행정업무 등이 포함된다. 수사관은 수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 개인적 장비검사, 다른 직무 등도 수행한다. 법정출석시간을 계산할 때는 법정 증언을 위한 대기시간도 포함시킨다. 정확한 직무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간과 요인을 고려하여 공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필수적인 행정업무를 더하여야 한다.

4단계는 3단계에서 나온 시간을 경찰서의 업무/가용한 요인으로 곱하여야 한다.

5단계: 이 위의 숫자를 한사람의 1년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6단계: 5단계에서 나온 최종 숫자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사요원이다.

이러한 방법의 최대 단점은 반드시 정확한 자료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에 소요되는 정확한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록유지가 정확하고 완결적이어야 한다. 부정확하거나 미완성된 시간기록은 계산을 무의미하게 한다.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렵고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경찰관은 서류처리 시간을 실험하기 때문에 이를 잘 설명해야 한다. 시간소요 양식을 사용할 경우 가능한 단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칸을 채우는 것이 서술식 보다 타당하다.

4. 수사경찰의 선발 및 교육

1) 수사요원의 선발

가. 수사요원 선발의 고려 요인

우수한 수사요원 선발은 수사부서의 성공과 직결된다. 수사요원의 후보자(풀)는 대개 순찰부서 경찰관이다. 수사요원 후보자 선발에 있어 1차적 단계는 수사요원과 순찰요원의 역할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순찰부서 경찰관은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질서유지 및 일반적 서비스 제공에 투입하는데 비해, 수사관은 범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수사요원의 자격은 순찰부서 경찰관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수사요원의 자격에는 정보수집 능력, 범죄현장운영능력, 의사소통능력, 유죄율, 개인기록 등이 포함된다. 수사업무에 가장 적합한 경찰관을 선발하는 것이 수사부서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수사요원 선발이 신임 경찰관 선발과 같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사요원의 자격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정보수집 능력과 범죄현장 운영능력

먼저 정보수집 능력이 수사관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데에는 의심이 없다. 정보는 여러 유형의 자료에서 나온다. 따라서 수사관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출처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현장은 정보의 보고이므로 효율적인 범죄현장관리 능력은 정보수집능력을 평가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범죄현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i) 현장의 잠재적인 물질적 증거의 보존
- (ii) 잠재적 증인을 현장 또는 가까운 장소에서의 조사
- (iii) 범죄현장 또는 의료시설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조사

범죄현장운영 능력은 경찰관의 순찰기법 및 관련지식을 통해서 입증된다. 경찰관이

용의자를 오랫동안 특정장소에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체력과 의지는 현장운영능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순찰근무와 달리, 수사업무는 8시간 또는 12시간의 규칙적인 일이 아니다. 수사관은 자주 증거를 수집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사건의 경우 계속근무가 많다.

정보수집능력과 관련해서는 순찰경찰관이 일정지역의 범죄 유형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또한 범죄 정보를 잘 수집할 수 있는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순찰부서 경찰관이 중요한 범죄자와 접촉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일부의 순찰경찰관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회를 갖으나 일부는 전혀 갖지를 못한다.

(2) 의사소통 능력

수사요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증인이나 참고인 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므로 수사관을 희망하는 순찰 부서 경찰관의 의사소통능력 또한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요원 심사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i) 경찰관이 구술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
- (ii) 경찰관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청취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 (iii) 청취자가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하는가?
- (iv) 필요하다면, 경찰관이 증인, 피해자, 기타의 사람들과 성공적인 면접을 할 수 있는가?

위의 요소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수사관으로서의 성공을 위한 요건이다. 면담의 성공은 종종 수사관의 구술적인 의사소통기술에 의존하고 증거수집절차를 통한 순수한 감각과 관심의 표시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구술적 의사소통 이외에 전문적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찰관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순찰부서 경찰관에 의한 작성되는 보고서는 앞면에 괄호를 채우고 뒷면에는 간단한 서술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수사관에 의한 보고서의 형식은 대부분 완전한 서술식으로 되

어있다. 따라서 수사관이 되려는 순찰경찰관은 서술식 서면 보고서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잠재성을 서술적 보고서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 결과는 수사의 성패가 수사관의 읽기 쉽고, 간결하며, 정확하고, 종합적 완결 보고서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검사는 유죄판결을 얻기 위해 서면보고서를 이용하지만, 간결·정확·완전한 보고서를 쓸 수 없는 수사관의 수사 보고서는 기소단계에서 많이 이용되지 않는다.

탁월한 의사소통능력은, 특히 긴장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중요한 성공지표이다. 따라서 수사요원 선발과정에서 면접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을 잘 본 경찰관 중에는 의사소통능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는 필기시험에 약한 사람이 있다.

(3) 유죄(판결)율(conviction rates)

체포는 물론 체포피의자의 유죄(판결)율도 면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순찰 경찰관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때 단순한 체포의 양 뿐만 아니라 질(quality)도 평가되어야 한다. 체포의 건수 자체만으로는 경찰관의 업무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체포 건수가 유일한 고려요소라고 하면 체포가 필요하지 않는 범죄를 잘 처리한 경찰관은 전혀 가점이 없게 된다. 체포대신 다른 대안을 행하는 것이 현명한 경우는 아주 많다. 이러한 상황을 구별할 줄 알고 적절히 대처한 경찰관의 노력은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체포의 건수가 질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다면, 현명한 대처를 한 경찰관은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실상 체포 건수는 양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체포의 유죄율이 질(quality)을 나타낸다. 최근 연구(법과사회연구소)에 의하면 유죄율의 적절한 감시 및 측정이 경찰관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죄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유죄율= 유죄로 끝난 체포/ 전체 체포

미국의 7개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10,200명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

로 12%의 경찰관이 50% 이상의 유죄율을 보였으며, 22%는 조사기간 동안 한 건의 유죄율도 기록하지 못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⁸³⁾

- (i) 유죄율이 높은 경찰관이 서비스 요청 전화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범죄 현장을 관리하며, 증인을 찾고, 질문하는데 더 능숙하다.
- (ii) 유죄율이 높은 경찰관이 범죄자의 추적,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보전에 보다 더 실질적인 노력을 한다.
- (iii) 또한 철저하게 이웃 조사를 하고, 증인을 찾는데 시간을 쓴다.
- (iv) 면담 및 신문에 있어서 보다 뛰어난 기법을 보이면서 심리적인 기법보다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한다.

결국 요점은 수사요원을 선발할 때 순찰경찰관의 단순한 체포건수가 아니라, 유죄판결율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개인기록

수사관 선발시 대상 경찰관의 개인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를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개인의 일상적인 직업수행 능력, 즉 수사관으로서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야 한다. 결론, 병가, 이의신청(Complain), 수상경력 등이 중요한 지표이다. 시간준수, 안전운전, 예의바름, 무기의 적절한 사용, 무기사용의 자제, 체력, 친밀성 등은 수사요원으로서 성공을 위한 중요 특성이다. 수사요원의 선발은 가급적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순찰경찰관이 시간을 잘 안 지키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병가를 남용하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나타났을 경우 이러한 자가 수사관으로 선발된다면 수사부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똑같이 지각하고, 이의신청을 많이 받고, 병가를 남용하는 수사관이 될 것이다. 유일한 차이는 수사관은 이러한 행위를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83) Daniel S. McDevitt, *ibid.*, p. 38.

훈련교육과 관련해서, 전임부서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후임부서에서의 훈련상 불만의 전조가 된다. 시민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지 않고서는 직무를 하지 못하는 경찰관이 수사관으로 배치되면 수사 업무 역시 잘하지 못할 것이다. 그밖에, 상사의 직무수행평가와 같은 주관적 자료 또한 수사요원 선발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을 액면 그대로 고려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인 편견, 불공정한 평가, 기타 다른 주관적인 특성이 정확한 수행평가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기, 안정성, 상식, 인내, 지적능력, 판단, 팀워크, 신뢰성, 헌신도와 같은 특성을 평가하는 평가수단은 매우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 중에 동기(motivation)는 수사관으로서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경찰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범집행 노력을 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이끌렸는가?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경찰관은 그들의 직무에 흥미와 자부심을 갖고, 범죄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통해 만족을 얻는다.

(5) 다른 요건(Qualifications)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수사관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격요건으로 대학졸업(학사학위) 또는 일정한 훈련프로그램의 수료 등을 요구한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수사관 선발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다만 필기시험이 선발절차에서 유일한 결정요인인 경우 수사관으로서의 다른 성공적인 요인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한 가지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기시험에 의하여 체포행위, 수사기법, 증거수집, 범죄현장관리와 같이 수사요원으로서 중요한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게다가, 필기시험은 종종 짧은 시간에 평가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치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수사관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에는 장점이 있다. 시험에 의하여, 수사관 지원자가 읽어야 될 목록이 주어지고, 이는 그 자체로 지원자가 얼마나 수사관이 되고 싶어 하고, 또 스스로 얼마나 준비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나. 수사요원 선발 전략 및 절차

수사관 선발시에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수사요원을 선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선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다수 경찰서에서 수사요원 선발에 관한 규칙이나 서면 규정이 거의 없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또는 어떠한 종류의 특별서비스나 공적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순찰부서 경찰관을 수사관으로 전보 또는 승진시킨다. 하지만 수사부서에 근무하고자 하는 이유가 순찰부서보다 많은 자유시간과 자유로운 근무환경에 있어서는 안된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종종 사격과 관련된 것을 수사관이 되는 기준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사격을 잘하고 총격전에서 생존한 경찰관이라는 것이 수사관 선발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경찰서는 선발 후보자를 제한하는데, 예를 들면 경찰 노동조합과 협의에 의해 수사관이 될 자의 연령 등을 제한한다. 그러나 수사관 선발시 엄격하게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분명 단점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연령을 고려하여 선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관의 직책은 연장자(또는 선임자) 순서로 자동적으로 배치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다. 연령에 의하여 배치할 경우 일시적 또는 순환근무절차를 수사 일부부서에서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모든 수사관 선발 전략에 있어서 반드시 회피해야 할 하나의 문제가 있다. 선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거나, 내정하였으면서도, 단지 경찰서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선발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형식적인 선발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형식적 선발절차는 선발과정의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한다. 신뢰성의 상실은 수사관 선발절차 뿐만 아니라 경찰서의 다른 모든 절차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경찰관은 세상에서 속이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경찰관은 의심이 많기 때문이다. 경찰관은 누군가가 자신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말하는 어떤 것도 믿으려하지 않는다.

수사관 선발 전략에는 구조적 유형, 비구조적 유형, 반구조적 유형이 있다.

(1) 비구조적 유형(Unstructured style)

이는 수사관 선발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완전히 재량적인 요소들, 즉 자주 변경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기준에 기초하는 선발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임 경찰서장 또는 수사부서 책임자와 술친구이거나, 골프친구라서 선발된 경우이다. 또 다른 예는 서장, 서장의 부인 등 인사권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로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요소가 선발과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비구조적 유형에서는 겉으로는 그럴 듯 하나 매우 불투명하고, 주관적인 요소, 즉 과거 경험이나 직무의 질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선발하는 자의 자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비구조적 유형에서는, 선발대상자의 개인기록에 대한 조사, 평가를 선발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가 하는 전형적인 기준이 없다.

(2) 반구조적 유형(Semi-Structured Style)

이는 사전 규정되고 유형화된 일반적 선발절차가 있으나 이 절차가 사실상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각 절차의 요소에 대한 배점이 평가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다. 이런 유형은 보통 직무수행평가의 최소 평점과 직근 상급자의 추천을 필요로 한다. 후보자는 면접에 응해야 하고, 면접에서의 질문은 종종 일관성이 없다. 이 유형에서는 개인 기록의 객관적 자료를 조사한다. 그러나 그 자료에 대한 평가 역시 일관성이 없으며, 비구조적 유형과 유사하게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3) 구조적 유형(Structured Style)

이는 전체적인 선발 기준, 요건, 절차 등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자료의 평가 및 적격성 심사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별로 없다.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자의 재량은 대폭 축소된다. 이러한 절차를 갖는 경우에는 선발절차의 개시,

적용, 시험 등에 관한 매우 확고한 기준이 있다. 구조적 유형에서는 동료의 평가, 직원 평가, 면접 등도 사용된다. 이러한 항목에 대한 평점은 명확하게 미리 고지된다. 또한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전체적인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구조적인 유형의 선발전략은 수사 부서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록,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되지만 분명한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유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구조적인 선발전략은 경찰서 전체의 사기(morale)에도 도움이 된다. 경찰관이 선발절차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경찰서의 책임자나 행정관리자가 이야기하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구조적이 유형의 선발전략이 분명히 바람직하다.

다. 선발절차⁸⁴⁾

다음 절차는 구조적 유형에 의한 선발절차이다.

(1) 직위공고

수사요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모든 경찰관은 수사관 직위공모에 대해서 동시에 고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일부 한정된 자에게만 고지하거나 사전결정의 인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고지는 전체직원이 집합한 자리에서 구두로 하거나 개인적인 이메일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순찰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누구도 직위 공고를 알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선발공고에는 가급적 선발직위에 관한 정보, 직무, 근무시간, 근무지, 기타 특수업무 내지 필요요건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고에는 절차 게시일자, 면접 등의 일시를 명시해야 한다.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 일정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 (i) 공고일: 공고가 모든 가능한 후보자에게 도달하는 날자

84) Daniel S. McDevitt, *ibid.*, pp. 44-45.

- (ii) 신청마감일; 직위공모의 홍보 및 신청서를 작성할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 (iii) 선발절차 마감일: 모든 후보자에게 이 날자를 고지해야 한다.

(2) 후보자 신청

후보자의 신청서는 표준화된 신청양식을 이용해야 한다. 단순히 이력서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격은 그들의 경험, 교육, 훈련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고, 이력서에 나타난 것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표준화된 신청서는 모든 지원자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도록 하며 다음의 정보를 가장 잘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 (i) 현재 경찰관서에서의 법집행 경험 및 다른 경험
- (ii) 현 경찰관서에서의 수사 경험 및 다른 경험
- (iii) 수사교육
- (iv) 순찰부서 근무 중 수행한 수사 중 가장 잘된 두 가지 사례
- (iv) 수사관으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특수한 기술 내지 자격증

(3) 후보자 면접

후보자 면접은 수사간부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찰관 이외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사전결정 내지 편에 의혹을 제거함으로써 선발절차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외부전문가의 참여에는 참여자들에 대한 점심식사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이 소요된다. 면접 이전에 패널은 개개 후보자가 제출한 사례보고서를 포함한 지원서를 받게된다. 이는 패널들이 지원자와 보다 친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면접 이전에는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이는 패널들이 면접 중에 후보자에 대한 선입관을 가져 면접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들은 지원서 제출시 자기가 수행한 수사 사례 중 가장 잘된 것 두 가지 사례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초동수사 보고서가 포함된다. 지원서가 접수된 이후에 지원자가 작성한 두 개의 현장보고서(field report)를 검토한다. 이들 보고서는 후보자의 일상 업무 수행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후보자가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후보자에게는 면접을 위한 시간을 주고, 면접 15분 이전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15분을 요구하는 이유는 후보자에게 범죄사건 시나리오가 주어지고 이를 검토한 후 면접에서 그 시나리오를 토론할 것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사건을 검토하고 처리절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면접 이전의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들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 물론, 면접 시간 15분전 이후에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15분보다 적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클 것이다. 사례(시나리오)를 활용하는 것은 지원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을 때 도착하여 지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면접 15분 이전에 도착하도록 고지가 되었는데, 면접 시간 2분 전에 도착한 후보자가 있다면, 그는 사실상 사례를 읽어보고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이 면접에 응하여야 한다.

일정표에 따라 후보자는 패널 앞에 호출이 된다. 면접의 첫 번째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검토하는 것이다. 패널들은 이를 사전에 검토하였기 때문에 훈련이나 배경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사건보고서에 대해서도 토론을 한다. 지원서에 대한 검토에 이어서 표준화된 면접질문이 행해진다. 면접 후에, 제시된 범죄사건 시나리오에 대한 그의 처리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다. 지원서 검토 및 면접 이후에 범죄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패널들은 후보자가 어떻게 사건을 분석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패널에 의해 진행되는 후보자 면접은 표준화된 질문으로 구성된다. 패널들은 이 표준화된 질문에 자신의 질문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질문은 동일한 패널이 후보자 각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행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패널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i) 왜 수사관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후보자가 수사관이 되려는 실질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대답이 제복을 벗고 싶어 하거나 근무교대로부터 탈피

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면 그 지원자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ii) 수사관의 일상 활동을 어떻게 보는가? 이 질문은 후보자가 수사관의 실질적인 일상 활동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관 직위공고에 수사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후보자의 대답은 직위공고에서 읽은 내용과 그들이 평소 생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iii) 수사관의 선발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 질문은 후보자가 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skill)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iv) 수사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가장 강점은 무엇인가? 이는 후보자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다. 만약 후보자가 그 자신을 패널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피의자에게 협조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어필할 수 없을 것이다.

(v) 보다 나은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후보자 자신에게 어떠한 기술(skill)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후보자의 단점을 묻는 것으로 이는 후보자가 장래에 희망하는 교육훈련이나 그 경찰서에서 그의 장래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

수사관 선발과정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상적인 질문에는 수사관 선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이는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자경찰관에게 그녀의 어린 자녀로 인해 긴급출동지시에 대응하는 능력을 저하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남자경찰관을 포함하여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 된다. 부적절한 질문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일한 패널이 각각의 후보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패널이 질문을 문자대로 읽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질문은 1-3점으로 모든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1은 약한 대답, 3은 강한 대답). 각각의 면접관은 그들의 점수를 합산하고 5개의 평가는 통합해서 지원자의 면접 점수로 계산되어야 한다. 면접개시 이전에 패널들은 사례에 대응한 적절한 초동수사조치(후보자가 그의 발표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받는다. 후보자의 사례 보고는 다

음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 (i) 사례분석의 철저성
- (ii) 제안된 수사단계의 논리적 연속성
- (iii) 사례와 관련된 법에 관한 지식
- (iv) 증거가치 및 절차에 대한 지식
- (v) 제시된 수사기법의 독창성
- (vi) 제시된 안의 강점 및 약점
- (vii) 제시된 수사단계의 완벽성(thoroughness)

각각의 기준은 모든 면접관에 의해 1-3점으로 평가된다. 역시 모든 면접관들은 전체 점수를 합산하고, 다른 면접관의 점수와 합산하면 이것이 후보자의 점수가 된다. 지원서, 면접질문, 사례 평가 이외에 패널에 의해 후보자 개인별로 다음 기준에 의해 전문적 수행능력의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i) 시간 준수성
- (ii) 전문적 외모 및 행위(demeanor)
- (iii) 구술에 의한 의사소통능력
- (iv) 지시에 따를 능력

지시에 따르는 후보자의 능력에 관한 질문은 선발과정에서 지원자의 여러 면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대규모 경찰서에서 수사요원을 선발하면서, 수사요원의 필요조건으로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경우에, 어떤 후보자가 자신은 대학을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2개국어를 할 수 있어 그 요건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원한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수사관 직위공고에는 학력을 대체하는 언어

능력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는 직위 공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이는 그가 수사관이 되어서 중요한 수사지시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각각의 기준은 1-3점으로 평가된다. 동일하게 모든 면접관은 각각의 점수와 합산하여 다른 면접관의 점수와 합산하면 후보자의 종합점수가 된다.(부록 5참조).

- (i) 면접질문
- (ii) 범죄사례 분석
- (iii) 지원서
- (iv) 전문적 기술(professional skill)

평가결과는 개개 후보자별로 합산된다. 각 각의 점수는 합산이 되고 그 결과는 개개 후보자의 전체적인 점수가 된다. 이 절차는 번거로운 절차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되지만 이를 활용하면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 비판하지만 심지어 가장 아쉽게 탈락한 후보자에게도 이 절차는 매우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탈락한 후보자로부터도 공정한 절차였다고 믿어질 때 신뢰성이 확보된다.

2) 수사요원의 교육

새롭게 선발된 수사관은 일정한 수사교육이 요구된다. 수사요원의 교육에는 공식적인 교육훈련과 비공식적 교육훈련이 있다. 수사부서 책임자들은 교육훈련을 시킬 예산이나 인력의 여유가 없다고 불평하는 경향이 있다.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1차적으로 인력 손실 및 비용이 수반되나 단기적인 비용 때문에 수사요원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

새로운 수사관의 능력 개발은 정규 훈련과 함께 시작된다. 상당한 수의 수사부서 책임자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관을 받게 되면 즉시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신규 수사요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 같으나, 수사를 진행하다보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수사관들은 종종 실수를 통해서 업무를 배운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관을 교육훈련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많은 경찰서에서의 교육 훈련은 OJT(on the job training)을 의미한다. OJT는 임시적으로 배정된 경험이 풍부한 수사경찰관에 의해 60-90일간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너무 단기간으로 이 보다는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순찰경찰관이 2개월 내지 1년(경찰서 또는 주 법률에 따라 다름)의 신입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순찰부서에서 수사부서로 전보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정규적인 수사교육이 필요하다.

가. 정규 교육훈련의 장점

수사관에 대한 정규교육훈련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정규훈련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새로 배치된 수사요원에게 수사 직무는 전적으로 새롭다. 실제로, 순찰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다. 또한 순찰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뿐 아니라 비밀정보를 수집하여 수사하거나, 잠복 또는 감시를 할 기회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신입 수사관의 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질문은 이러한 수사관의 직무를 정규훈련프로그램이나 또는 OJT를 통해서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신입수사관을 정규훈련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실패할 위험이 있다.

둘째, 정규훈련은 순찰부서에서 수사부서로 이동하였다는 것이 단지 명목상으로만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찰관에게 마음에 새기게 만든다. 순찰경찰관과 수사관의 직무는 유사한 것도 많이 있지만, 수사관 직무는 다른 특성이 있다. 수사직무의 특성에 따른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수사관이 수사직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수사관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그 직책에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과 비례한다. 교육훈련의 목표는 신입 수사관에게 순찰경찰관 이상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마음을 불어넣는 것이다. 수사교육을 통하여 수사관은 업무과정에서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즉,

수사교육은 자신감을 불어넣고, 새로운 직무에서의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새로운 수사관이 보충될 때까지 인력의 부족을 느끼는 수사부서 책임자는 지금 너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수사학교에 교육을 보낼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범죄의 경향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교육훈련은 필요하다. 일단 최초의 교육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의 변경, 새로운 기법 등을 교육시키려면 최신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근에 신원도용 범죄(identity theft crime)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의 수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규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훈련은 새로운 수사관의 사기를 높인다. 완전히 새로운 직무, 특히 수사부서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의 기존 수사관들은 신입 수사관이 처음 배치되어서 실수를 하거나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는다. 정규훈련을 받은 수사관은 사실상 직무를 어떻게 하는 가를 알기 때문에 이런 희생을 피할 수 있다.

나. 정규 교육훈련의 내용

수사관의 정규 교육훈련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i) 수사보고서 작성, 참고인 면담 및 피의자 신문 - 순찰경찰관은 경찰학교에서 간단한 훈련을 받으나 장기 면담은 교육받지 않는다.
- (ii) 감시기법 - 교육 훈련을 통해 감시기법을 배움으로서 실제 감시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 (iii) 공적기금의 사용- 이 분야에서의 잠재적 문제점 때문에 관서의 공금정책 및 절차를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iv) 급습 및 체포기법- 신체적인 급습의 측면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측면, 즉 운영 계획발전, 안전고려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 (v) 비밀 정보의 사용에 관한 관서의 정책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수사요원의 교육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특수 프로그램에는 성범죄, 마약, 차량절도, 강도, 신원도용 범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수사요원 관리

1) 수사요원 전종 논의(수사 경과제 운영 논의)

우리 경찰은 2005년부터 수사경과제에 의해 수사인력을 선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와 같은 수사경과제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으나 순찰요원과 수사요원간의 전보를 완전히 허용할 것인가 또는 수사요원을 전종화하여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경찰관서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먼저 수사요원을 순찰부서의 경찰관과 분리하여 전종으로 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형사(detective) 내지는 수사관(investigator)의 직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형사(detective)는 일반적으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다. 형사는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직책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계급의 성격도 있다. 즉 detective 자체가 계급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수사부서의 최하위계급이면서 순찰경찰관(순경, police officer) 보다는 높은 계급의 의미를 갖는다. 즉 미국에서는 형사가 되려면 순찰경찰관을 최소 1년에서 5년 정도 근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순찰경찰관에서 수사부서의 형사로 전보하는 것 자체가 승진의 의미도 있다. 결론적으로 형사(detective)는 수사부서의 최하위 계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간부는 sergeant(경사) 내지는 Lieutenant(경위) 계급을 부여받는다.

가. 순찰부서와 수사부서의 보수 등 비교

수사요원의 전종문제는 순찰부서와 수사부서의 보수 등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많은 경찰서에서 수사부서 근무자에게

순찰부서에 비해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 몇몇 경찰서에서는 수사관이 구입해야만 하는 의류 비용도 보조해 준다. 이러한 차이는 야간, 주말, 휴일에도 부정기적으로 근무 하여야만 하는 수사요원의 근무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사부서 근무를 위해서는 순찰부서와 비교하여 보다 상위의 교육이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러한 차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찰부서 근무 경찰관은 고교졸업 자격만을 요구하면서 수사관은 학사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급여의 차이는 이러한 교육적 요구와도 관련된 것으로 수사부서와 순찰부서의 급여차이는 정당화된다.

이와 같은 수사부서와 순찰부서의 보수차이는 동일한 경찰서 내에서의 수사요원과 순찰요원의 전보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즉, 수사부서 근무자를 전종으로 할 경우 수사부서 근무자가 받은 보수는 영구적인 보수로 인식되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수사요원이 순찰부서로 전보되면 급여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해당 경찰관을 이를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누구나 급여상 이익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전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수사요원과 순찰요원의 보수를 동일하게 하면 근무 부서에 따른 보수의 차이가 없어 상호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사관에게 순찰부서와 비교하여 약간의 급여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급여 등의 차이의 이유와 기간을 반드시 명확하고 신중하게, 가급적 서면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수당이 직무상 필요한 옷의 구입, 또는 대기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이는 경찰서와 수사요원 모두에 의해서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수사관으로서의 직무가 종료되면, 급여차이도 함께 종료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이 이해된다면 수사요원과 순찰요원과의 보수 등의 차이에 따른 문제는 없다. 새로운 수사관이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는 직무 거절할 수 있다.

나. 수사요원 전종에 대한 논의

경찰 수사관의 전종 여부는 수사부서의 운영에 큰 영향을 준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 문제는 수사부서의 책임자의 권한 밖의 것으로 경찰서의 정책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약

또는 주법에 의해 결정된다. 수사요원 전종화는 수사요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사요원 전종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논의 되는 수사요원의 전종화의 문제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수사요원의 전종화는 경찰서장 등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크게 제약하여, 심지어는 문제가 있는 수사요원에 대한 순찰부서로의 전보도 어렵게 만든다. 즉, 수사관을 영구적인 계급 또는 직책으로 만들 경우에는 수사관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만약 수사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순찰부서 등으로 전보하는 경우 법적 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⁸⁵⁾ 예들 들면, 영구적인 형사 직책을 가진 자가 보고서작성, 신문기법 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전체적인 부서의 분위기를 떨어뜨릴 경우에 다른 순찰부서로 전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사 직책의 항구성이 보장되는 자를 순찰부서로 전보시 이는 그 개인의 봉급삭감이 수반될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강등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수사관의 직무수행 상의 문제점 등이 세밀히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계약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해당 경찰관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형사직책을 경과제와 유사하게 영구적인 직책으로 운영하게 되면 미국의 상황에서는 많은 문제가 따를 수 있어 기본적으로 수사관을 영구적인 직책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집행기관 인증위원회(CALEA)(Commission on Accreditation for Law Enforcement Agencies)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하고 경찰서에서 이를 준수하는지를 조사하였다. CALEA는 “범죄수사부서의 선서직책은 순찰부서의 계급, 보수체계를 위한 선서직책과 동일하다. 그리고 관서내에서 어떠한 특별한 계급이나 계급체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즉, CALEA는 순찰부서에서 수사부서로의 계급의 고려 없이 전보가 가능한 (수사부서에서 순찰부서로도 가능) 것으로 보고 있다. CALEA는 수사관 직책을 항구적인 계급이나 직책으로 하는 것은 경찰서장 등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였다.⁸⁶⁾

둘째, 우리의 수사경과제와 같이 수사관의 직책을 영구적인 직책으로 운영하는 것은,

85) Daniel S. McDevitt, *ibid.*, p.30.

86) Daniel S. McDevitt, *ibid.*, p.31.

특히 소규모 경찰서에서, 새로운 수사인력을 수사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크게 제한 한다. 중소규모 경찰관서에서는 수사관이 소수이다. 예를 들어, 100명 내외의 경찰관서에서는 수사요원이 10~15명 정도이고, 이들이 수사관으로서 영구적인 직책을 받으면 퇴직 또는 승진이 되지 않는 한 사실상 새로운 사람이 수사부서에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들 소수의 수사관 중 일부가 불성실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수사관의 직책을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능력있는 순찰경찰관의 의지나 의욕을 좌절시킨다. 순찰부서 경찰관에게 수사부서에 근무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 자신 뿐만 아니라 전체 경찰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수사요원의 전종화에 따른 영구적 수사직책은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요원 전종화는 유능하지 않은 수사관들에게 영구적인 직책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한다. 영구적인 직책이라는 관념은 종종 수사관이 그들의 직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이들은 책상공간을 차지하는 것 이외에는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수사관들이 많아지면 강력사건 등 해결이 힘든 사건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논의는 우리 수사경과제의 운영에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수사요원 시보제도 운영 논의⁸⁷⁾

미국에서 순찰경찰관은 대개 18개월에서 2년의 시보기간을 거친다. 이에 따라 수사요원도 일종의 시보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 신입 순찰경찰관과 신입 수사관(몇 년의 경험이 있는 베테랑 순찰경찰관이라도)은 큰 차이가 있다. 신입수사관에 대한 시보기간 설정은 경찰서는 물론 수사관 개인에게도 매우 도움이 된다. 시보기간을 두는 것이 수사관 개인에게 주는 장점은 수사관이 실질적으로 매일 무엇을

87) Daniel S. McDevitt, *ibid.*, p.54.

하는 가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신입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관 직무 기술조사에 의하면 실제 수사관이 수행하는 직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직책을 매력적인 직무로 보는 시각에는 매일 매일의 수색영장집행, 인질상황, 총격전, 추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수사 현실은 보다 더 조용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 있다는 것을 신입수사관은 알아야 한다.

수사관 시보제도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순찰경찰관이 그의 적극적이고, 뛰어난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수사부서에 배치되었다. 그는 마약사범단속을 하게 되면서,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꼼꼼히 메모를 하고, 단속 중에는 훌륭하게 일을 처리를 했다. 그는 처음에는 수사직무에 매우 흥분되어 진작에 수사부서에 근무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으나 일주일 이후에는 일이 많고, 특히 수사 서류 작성이 많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 후 수사부서에 대한 흥미를 잃고 순찰부서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만약 이 경찰서에서 수사관의 시보기간을 두지 않아 순찰부서로 이동할 수 없다면 그는 계속적으로 불만불평을 토로할 것이고, 이는 본인은 물론 경찰서 전체적으로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시보기간을 두고 순찰경찰관 스스로 자신의 적성이 수사직무에 맞는지를 체험하고 계속적으로 근무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보기간제도가 필요하다.

수사요원에 대한 시보제도는 경찰서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수사책임자는 신입수사관이 수사직무에 적합한지를 테스트할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찰서에서는 신입수사관의 기술과 능력은 객관적으로 관찰, 평가될 수 있다. 비록, 종합적인 선발과정에서 그러한 기술과 능력을 검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검증절차는 완벽할 수 없다. 시보기간은 신입 수사요원의 개인들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훈련을 부과하거나 그에게 더 적합한 부서로 배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수사요원에게도 시보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으나 시보기간이 모든 경찰관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입수사관의 시보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이 있다. 순찰경찰관의 직무는

매우 고독하고, 특히 1인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는 경우에 그렇다. 반면, 수사관의 직무는 보통 다른 수사관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낸다. 수사관은 자주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며, 이 경우 적극적으로 동료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시보기간은 신입수사관이 다른 동료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3) 순찰부서 경찰관의 수사부서 체험(단기 파견) 프로그램

미국에서도 수사부서에 배당되는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사요원을 둔 경찰서는 거의 없다. 또한 수사부서와 순찰부서간에는 약간의 긴장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수사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수사부서의 범죄대응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는 것이 순찰부서 경찰관의 수사부서 체험(단기 파견) 프로그램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찰관 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도움이 된다. 단기 파견근무는 순찰경찰관을 1달에서 1년간 수사부서에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이다. 이는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가급적 순찰경찰관에게 수사부서의 참여기회를 주는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단기 파견근무를 하는 순찰경찰관은 단순히 수사관과 함께 일하면서 수사업무를 보고 배우게 된다.

이러한 단기 체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먼저 단기간 수사부서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는 경찰관은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 또한 파견근무 종료 후 순찰부서에 복귀해서 순찰경찰관은 초동수사를 더 잘 수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수사부서를 근무하면서 순찰경찰관의 철저하고 전문적인 초동수사가 형사들의 추가적(계속)수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목격함으로써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을 직접 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

단기파견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은 순찰부서 경찰관과 수사부서 경찰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찰경찰관은 수사부서를 경험함으로써 수사부서를 이해하게 되고, 수사요원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결과

적으로 순환근무 프로그램은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일부 순찰경찰관은 수사관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냉소적인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주 수사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데, 수사관이 매일 청바지에 T셔츠를 입으면서도 의복구입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다. 또한 수사관의 차량에 몇 개의 골프클럽과 피크닉 가방이 있을까에 대한 농담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이들 순찰경찰관이 90일의 수사부서 순환근무 프로그램의 체험을 통해 수사부서의 업무를 이해하게 되는데, 특히 수사요원들이 얼마나 바쁜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면 수사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상당히 바뀔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기 파견 프로그램은 순찰요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순찰차를 20-25년간 운행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매우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다. 단기적인 수사부서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지루함을 느끼는 순찰경찰관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적으로 환영을 받는다. 일시적 파견근무를 통해 얻은 경험은 확실히 순찰경찰관이 순찰부서로 돌아갔을 때 도움이 된다. 순찰요원과 수사요원의 우호관계는 수사요원뿐만 아니라 순찰요원들이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즉, 새로운 충전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단기 수사부서 파견은 순찰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대한 소속감을 고양시켜 사기를 높일 것이다.⁸⁸⁾

4) 수사부서 순환근무 프로그램

수사부서 순환근무 프로그램은 수사 부서의 일정 자리를 비워두어 순찰경찰관이 대개 2-3년 정도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6명의 수사관 자리가 있는 경우, 2-3개 자리는 순환보직으로 둘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경찰서에 따라 논란이 있다. 먼저 어떤 경찰관을 수사부서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순환보직이라는 점이 명백하여야 하고, 이는 노동조합에서 논의할 만큼 충분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순

88) Daniel S. McDevitt, *ibid.*, p.56.

환프로그램은 단점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 수사부서에 배치되는 순환보직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 (i) 활력과 새로운 직장분위기를 가져온다.
- (ii) 열심히 하지 않는 수사관은 열성적인 새로운 직원에 의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더 열심히 한다.
- (iii) 기존직원들을 분발시키고, 미해결사건 등이 새로운 직원에 의해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순환근무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사관 선발절차와 유사한 몇몇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가장 적합한 사람의 선발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순찰경찰관이 수사부서에 배치될 때 기본적인 수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마약사범 수사, 차량절도 수사 등 특수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등도 필요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순찰경찰관이 수사관과 같은 대우를 받고, 완전한 신분증, 복장, 차량 및 장비를 지급 받고,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도 순찰요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중요하다.

다만 순환근무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보직에 해당하는 직책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관에 대한 영향이다. 만약 현재 근무하는 수사관이 순찰경찰관에게 자리를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다른 부서로 간다면 그는 나쁜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수사관이 수사직책에서 물러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법적인 소송제기가 예상된다. 특히 수사요원을 영구적인 전종요원으로 한 경우는 소송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순환근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부서의 한 자리를 순찰경찰관에게 할당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수사관이 퇴직 또는 승진한 경우에 그의 자리를 순환근무 직책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결과적으로 순환보직 근무자와 순환되지 않는 고정근무자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나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순환근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⁸⁹⁾

89) Daniel S. McDevitt, *ibid.*, p.59.

(i) 몇 명의 수사관을 순환할 것인가? 이는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하는 범죄, 계속수사로 이어지는 범죄의 빈도, 수사관의 직무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몇몇 관서는 3-5년 단위로 모든 수사관을 순환시킨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경험있는 수사관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일부 경찰서에서는 몇몇 자리만을 한정하여 순환직책으로 하여 경험 많은 수사관을 일정하게 확보한다. 수사부서의 필요와 순찰경찰관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려는 순환근무 프로그램과 조화시켜야 하는데, 예를 들어 6명이 근무하는 일반 수사부서에서는 2-3명 정도를 순환직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

(ii) 얼마동안 순환할 것인가? 이것 또한 어려운 문제이다. 1년 단위의 단기 순환은 신입수사관이 막 일을 배우려할 때 순찰부서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2년 순환근무는 1년 순환근무 보다는 낮지만 역시 생산성의 문제를 유발한다. 순찰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업무를 편안하게 하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 뒤 1년은 열심히 수사업무를 하고, 마지막 6개월은 나머지 일을 정리하고, 순찰부서로 돌아갈 것을 준비할 것이다. 따라서 순환근무는 3년이 이상적이다. 3년 순환근무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제한을 하지는 않으면서 사실상 2년 정도의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한다. 3년 순환근무 프로그램이 그 참여자들에게 이후의 경찰 기간동안 수행할 경험과 기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한다.

(iii) 경험의 손실은 없는가? 이는 순환근무자가 충분히 순환 직책을 수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력하는 기존 수사관과 순찰부서에서 새로이 들어온 직원의 조화는 수사부서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여러 개의 순환직책이 있다면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은 배정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 경찰관은 올해, 다른 경찰관은 다음 해, 또 다른 경찰관은 그 이듬해,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배치하면 수사부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한꺼번에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iv) 순찰경찰관이 순환근무시 수사관으로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순환근무자가 수사부서에 부적합한 자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수행의 결점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경찰서의 어떤 직책도 특정인에 의한 영구적인 직책으로 인식되어서는 아니 된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자리

에 배치를 받는다.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항상 직원이 좋아하는 자리만을 배치할 수 없다. 순환보직으로 인해 대신 순찰부서로 간 수사요원의 경우에도 종종 훌륭하게 순찰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가 경찰서에서 가장 행복한 경찰관은 아니지만 그의 개인적 자부심, 헌신, 동료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자극한다.

경우에 따라, 순환근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종 수사관 직책을 잃는 수사요원에게도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다. 좋은 수행태도와 말끔한 끝마무리로 순찰부서로 돌아가는 경찰관은 아주 훌륭한 경찰관으로서 그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특성을 평가할 때 그가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가 아니라 그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v) 만약 순환근무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문책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순환 수사부서 직책은 다른 직책과 동일한 시보직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들은 수사관들로부터 현장교육 등 훈련을 받아야 한다. 결국 추가적인 훈련은 특히 3년의 순환근무에 있어 유용할 것이다. 수사부서의 책임자나 교육담당자는 순환근무를 수행하는 순찰경찰관이 적합한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그를 순찰부서로 복귀시키고, 다음 대기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 수사요원과 순찰요원과의 협력

미국의 일부 소규모경찰서에서는 초동수사는 물론 계속수사도 순찰경찰관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정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는 75명 이상인 경찰서에서는 전담 형사요원을 지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⁹⁰⁾ 일부 대규모 경찰서에도 초동수사는 순찰경찰관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순찰부서는 연중 24시간 항시 운영되나 수사부서는 그렇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제일 처음 도착하는 순찰부서에 의한

90) James N. Gilbert, *Criminal Investigation*(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93), p.58.

초동수사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이 형사가 내사하여 범죄인지한 경우가 아니면 초동수사는 일반적으로 순찰경찰관이 담당한다.

초동수사에서는 최초 범죄현장 도착시간이 문제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범죄현장 보존이 초동수사담당자의 첫 번째 임무인데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순찰경찰관이 범죄현장 보존 장비를 이용하여 범죄현장 보존조치를 취하고 최초 도착하는 형사에게 수사책임 을 넘긴다. 초동수사의 내용으로는 i) 범인체포(가능한 경우), ii) 범죄발생 여부결정, iii) 범죄현장보존, iv) 피해자·증인 확보 및 진술 청취 등이다.

증인, 용의자 및 용의 차량에 대한 정보, 도난 재물 목록 등 사건해결요소(solvability factors)는 범인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추정하는 단서가 되고, 사건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초동 수사관은 면밀하게 범죄·증거와 관련된 해결요소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형사사건이 동일한 수사적 노력이 행하여져야 하나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일선 형사인력은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건해결가능성을 수사단계의 초기에 판단하여 계속수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사건해결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사를 조기 종결시키는 비율은 경찰서마다 다르지만 중죄 사건의 경우에는 종결비율이 매우 낮다.

한편, 초동수사가 주로 순찰부서에 수행되고 있지만 계속수사는 수사과에서 이루어지면서 순찰부서 경찰관과 수사부서 경찰관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범죄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양부서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수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초동수사의 수준을 제고하고 수사과와 순찰부서와의 협력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부 경찰서에서는 범죄분석회보(crime analysis bulletin)를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한다. 이 회보에는 순찰부서에서 알아야 할 사건수사 진행현황을 일, 주, 월 단위로 순찰과에 통지하는데 이는 순찰과와 수사과의 갈등을 해소함을 물론 경찰서단위의 범죄예방이나 범죄수사에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¹⁾

91) James N. Gilbert, *op.cit.*, p.61.

6) 수사요원의 근무 감독

가. 수사요원 근무 감독의 특수성

초임 수사간부가 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수사경력 없이 갑자기 수사부서에 배치되는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관리의 원칙이나 감독기법은 비슷하나 근무특성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순찰경찰관과 비교하여 수사관들은 근무특성이나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수사관들은 수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안다고 확신하면서 순찰경찰관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비록 이것이 완전하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는 수사관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새로운 수사책임자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순찰부서의 간부나 감독자들은 순찰요원에 대하여 주어진 근무시간에 대한 감독으로 족하다. 왜냐하면 순찰요원은 주어진 근무시간만 근무하고 끝나면 집으로 가기 때문이다.

순찰경찰관의 근무에 대해서는 항상 어디에 있는지 기록하고, 세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순찰차 밖으로 나오면 식사, 화장실을 포함해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감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순찰요원에 대한 감독은 획일적이고 단순한 시스템이다. 문제는 새로 부임한 수사감독자가 이러한 고정되고, 획일적인 감독스타일을 수사부서에 시도하려는 경우이다. 수사관들은, 필요에 의해서, 보다 많은 자율성이 요구된다. 그들은 꼭 짜여진 환경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증거수집을 위해서 수사관은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 유연한 조직구조에서 보다 더 잘 움직이는 수사요원의 특성은 수사관 선발과정에서도 보다 더 자율적이면서 창의성을 소유한 후보자를 선발한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수사요원에 대한 과도한 감독은 종종 창의력과, 상상력을 억압하여 업무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방임형의 감독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사관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나. 수사요원의 책임성 확보

수사요원은 최소한의 감독으로도 진실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수사요원에

게 많은 시간적 자유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수사관은 그들의 행동이나 움직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수사관의 어디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확인이나 감독이 순찰경찰관에 비해 어렵지만 수사관의 무엇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수사관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⁹²⁾

(i) 적정한 책임성이 확보되면 수사요원이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수사경찰관은 순찰경찰관에 비해서 활동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수사관은 순찰경찰관처럼 그들의 근무시간 중 모든 행위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수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시스템이 없거나 수사관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확인하는 어떠한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시작된다.

(ii) 적정한 책임성이 직무수행의 평가를 쉽게 한다. 대부분의 직무수행 평가수단은 시간관리를 포함한다. 효율적 시간관리는 가장 중요한 수사관의 자질 중 하나이다. 시간관리를 잘못하는 수사관은 분명히 자신들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과 행동에 대한 책임성을 유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이면서 또한 전체적인 직무수행을 평가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iii) 적정한 책임성은 훌륭한 관리수단이 된다. 책임성 통제는 관리연구, 범죄분석, 계획, 예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장비, 훈련, 추가적인 인력과 같은 것을 요구할 때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감독자가 어떤 것을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긴축예산과 작은 예산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는 감독자는 그들의 요구를 정당화해야 한다. 수사관의 활동에 대한 적정한 책임성은 이러한 정당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수사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반드시 의무적이면서 단순해야 한다. 이는 팔호 안을 채우는 보고서와 같이 단순하거나 컴퓨터에 의한 세련된 것 이어야 한다. 어떠한 형식이든지 필요한 것은 사건번호, 범죄부호, 행위코드, 시간, 자료, 수사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2) Daniel S. McDevitt, *ibid.*, p.63.

수사관이 자신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고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경찰서에서는 수사관이 매일 매일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고하도록 하는가 하면, 어떤 경찰서에서는 이것이 너무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아 대신에 1주일 단위로 보고를 하게 한다. 어떤 경찰서는 월 단위 보고를 한다. 각 각의 유형에는 문제가 있다. 일부 수사관들은 매일 보고가 수사관의 직무특성에 따르는 자율과 자유의 수준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월 단위 업무 보고는 너무 오래 동안 기다렸다 하고, 또한 이를 30분 만에 재구성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주 단위 형식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지 단순하고 종국적으로 수사관의 일상적인 부분에 포함된다면 보다 정확하다.

다. 통솔의 범위

경찰감독자의 통솔범위에 대해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부하의 범위는 8-10명이라고 본다. 이러한 통솔범위는 어느 정도 순찰부서에는 적합하다. 그러나 수사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통솔범위가 과도할 수 있다. 통솔 범위는 부하의 직무가 될 복잡할수록 넓어진다. 순찰부서가 반드시 수사업무보다 더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복잡하지 않다. 직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수사부서는 5-7명이 보다 적합하고 현실적이다. 보다 좁은 통솔범위는 부하직원의 감독, 행위의 책임성, 업적평가 등에 있어 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솔범위를 결정할 때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나는 특수직무의 수이다. 비록 감독자가 수사요원에 부과한 특수직무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감독자가 각각의 특수직무의 지식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 부하직원의 직무가 특수할수록 감독자의 통솔범위는 좁아진다. 특수직무가 과도하면 아주 유능한 감독자라도 과중한 업무를 초래할 수 있다.

수사요원의 통솔범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수사관의 위치이다.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수사관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감독자는 이동시간 때문에 통솔범위가 줄어들어야 한다. 이는 직무나 감독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동에 따른 것으로 낭비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6. 결 론

연방제국가인 미국은 연방정부 및 50개 주 정부가 독자적인 법제도와 형사사법조직을 갖고 있고, 동일한 주 내에서도 다양한 법집행기관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우리와 같은 단일한 국가경찰조직이 아닌 다양한 경찰조직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사경찰을 단정적으로, 이렇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하면서 미국의 수사경찰의 모습을 우리의 수사경찰과 비교하여 우리 수사경찰이 참고하였으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본고를 맺고자 한다.

첫째, 경찰서의 수사조직은 우리와 달리 다양하다. 뉴욕이나 시카고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방청 중심으로 수사조직을 두고, 우리의 경찰서와 같은 조직에는 순찰지구대와 초동수사단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수사부서를 두고 있다. 중소규모의 경찰서에서의 수사조직 역시 우리와 같은 획일적인 조직을 두지 않고 일반적 수사부서로서 재산범죄, 대인범죄 수사팀을 두고, 최근에는 사이버범죄, 가정폭력, 청소년범죄, 범죄피해자보호팀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 신종범죄에 대응하는 전문수사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지나치게 세부적인 전문수사팀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수사경찰 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경찰관서에 따라 전체 선서경찰관의 10-15%를 수사부서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1인당 평균처리 건수 내지는 인구 10만명당 형사 수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건 처리 평균시간, 전체 사건 수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을 전제로 적정한 수사인력이 산출되어 이를 기초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수사요원의 선발 역시 지역별, 관서별 차이가 있다. 수사요원의 자질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서장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특정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순찰요원을 수사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소규모 경찰서에서는 수사요원 선발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갖고 있지 않다. 반면 최근에는 수사요원 선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사요원 선발절차로서 직위공고, 후보자 신청, 후보자 면접 등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요원의 면접에 있어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다. 우리 경찰도 수사경과제 이후 수사요원 전문성을 기초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사요원 개개인에 대한 면접 내지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수사요원의 전종에 대하여 우리와 같은 수사경과제가 시행되지는 않으나 수사요원 전종에 대한 논의가 있다. 수사요원의 전종은 수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사요원과 순찰요원의 인사이동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수사요원, 형사는 하나의 직책이면서 계급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순찰요원에 비해 각종 수당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 수사요원을 전종으로 하는 경우 순찰부서로 전보시 법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수사요원 전종은 소규모 경찰서에서 불성실한 수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능력있는 순찰경찰관의 의욕을 좌절시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사요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수사경과제를 시행하는 우리 경찰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수사요원의 풀을 상대적으로 넓게 하여 수사요원의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미국의 경찰은 통상 18개월에서 2년의 시보기간을 거치는데 우리 경찰의 1년보다는 길게 운영한다. 수사요원에 대해서는 시보기간을 일반적으로 두지는 않으나 수사요원에 대해서도 시보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시보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신입 수사요원이 수사직무에 적합한지를 테스트 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수사직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찰관을 조기에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으므로 우리 경찰에서도 수사요원에 대한 시보제도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우리 경찰에서도 수사부서 직원과 지구대, 파출소의 외근 직원간에 약간의 불신이나 갈등이 존재한다. 미국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데, 수사요원과 순찰요원 상호간에 상대방의 직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갈등이 존재한다. 순찰요원과 수사요원과의 갈등은 결국 범죄수사 등 경찰 업무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데, 이에 따라 수사요원과 순찰요원간의 원만한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고려되고 있다. 그 예가 순찰요원 수사부서 단기 체험프로그램, 순환근무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는 순찰요원이 단기(6개월 이내) 또는 장기(1년에서 3년)간 수사부서에 파견되어 수사요원과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순찰요원은 수사부서의 업무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순찰요원과 수사요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확보할 수 있고 순찰요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우리 수사경찰에 도입을 검토할 만 하다.

제4절 캐나다의 수사경찰

1. 캐나다 경찰 개요

1) 일반현황 및 치안여건

가. 일반현황

캐나다는 舊소련 붕괴이후 국토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부상하였다. 전체 면적은 9,984,670km²(한반도 면적의 50배)이며, 13개 州(10개의 州와 3개의 準州) 정착민들이 산재해 있는 거대한 북극 인접지역에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 이르기까지 환경적 다양성이야말로 다양한 지역공동체에 경찰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끊임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Multi-Cultural)을 증진시키는 것은 경

찰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언어권도 매우 다양하다.⁹³⁾ 범죄투쟁의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구성원들에 민감할 수 있는 경찰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영국경찰의 전통을 강하게 받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특히 연방제국가로서 영국경찰적 특징과⁹⁴⁾ 이웃한 미국의 경찰적 특징을⁹⁵⁾ 함께 지니고 있다. 지방분권화된 경찰제도이면서, 연방경찰(RCMP)이⁹⁶⁾ 지방자치 단체(City or Municipal Government)와 계약(Contract)을 맺고 연방경찰관을 파견하여 지역경찰(City Police)로서 근무토록 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州단위(Province) 및 자치행정권은 완전히 분권화되어 있으면서도, 경찰작용은 연방에 위탁한 특이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州(8개 州, 3개 準州)들이⁹⁷⁾ 州경찰을 유지하지 않고, 연방경찰에 州경찰 및 지방자치경찰사무를 위탁한 형태이다. 경찰사무를 계약에 의하여 위탁하다보니,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의 한 축으로서 민간경비(Private Security Industry)에 대해서는 매우 개방적이고, 관련 산업이 매우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⁹⁸⁾

대체로 규모가 큰 도시나 지역에서는 고유한 자치체 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자치단체들은 이른 바, “계약을 맺고 연방경찰을 구매”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책임과 권한 그리고 경찰활동의 제공 대상인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관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로 운영되다보니, 경찰조직간의 공조·광역수사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개별 자치단체 경찰조직들은 규모가 큰 감정시설이나 과학수사실험실을 자체적으로 보유·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

93) 2001년 전체 인구 29,639,035명중에서 영어 사용자 60%(17,352,315명), 프랑스어 22.3%(6,703,325명), 중국어 2.8%(853,755명), 이태리 46.9만명, 독일어 43.8만명, 인도(편잡어) 27.1만, 스페인어 24.5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94) 식민개척 초기 및 이민 역사가 시작되면서, 프랑스경찰의 영향도 받았지만, 영국 경찰적 전통에 익숙해져 있다.

95) 연방제국가로서 경찰권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역시 강한 지방분권적 특징을 갖고 있다.

96) Royale Canadian Mounted Police 의 약어임.

97) 프랑스의 전통이 강한 동부의 2개주인 Quebec州, Ontario州는 자체 州경찰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방경찰 대신에 州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을 파견 근무시키고 있다.

98) Dantzker/Mitchell, Understanding Today's Police(Prentice Hall Canada Career & Technology: Scarborough, Ontario, 1998), p. 26.

고 전문적인 감정대상물은 대부분 연방경찰의 관련기관에 이송하고 있다. 또한 수사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역시 연방경찰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치안여건

2002년 10월 현재, 인구는 31,485,623명이다.⁹⁹⁾ 각주별 거주인구, 면적 및 경찰관 숫자는 다음 (표: 15)과 같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몬트리얼(3,549,000명), 토론토(5,030,000명), 광역벤쿠버(2,136,000), 오타와(862,000), 켈거리(993,000), 에드먼튼(967,000), 위니펙(685,000), 해밀턴(686,900), 케백시(697,700) 등 대도시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¹⁰⁰⁾

치안수요 판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간 범죄발생동향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2,664,49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표: 16).¹⁰¹⁾ 그리고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관찰인구의 크기인 경찰밀도는 약 1: 538이며(표: 17), 개별경찰관들의 범죄발생건수별 직무부담은 1인당 연간 42건 정도에 이른다(표: 18).¹⁰²⁾

<표 15> 캐나다 각주별 인구, 면적 및 경찰관수

州 및 準州	인 구(2002년)	면 적	경찰관(2002년)
Newfoundland and Labrador	531,600명	405,212km ²	779명
Prince Edward Island,	139,900명	5,660km ²	214명
Nova Scotia	944,800명	55,284km ²	1592명
New Brunswick	756,700명	72,908km ²	1306명
Quebec	7,455,200명	1,542,056km ²	14,428명
Ontario	12,068,300명	1,076,395km ²	22,627명
Manitoba	1,150,800명	647,797km ²	2,219명
Saskatchewan	1,011,800명	651,036km ²	2,008명

99) in: <http://www.statcan.ca/english/pgdb/demo02.htm>

100)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12.

101)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Canadian Crime Statistics 2001, 2002, p. 11 & p. 45.

102) in: <http://www.statcan.ca/english/Pgdb/legal15.htm>

州 및 準州	인 구(2002년)	면 적	경찰관(2002년)
Alberta	3,113,600명	661,848km ²	4,884명
British Columbia	4,141,300명	944,735km ²	6,958명
Yukon Territory	29,900명	482,443km ²	126명
Northwest Territories	41,400명	1,346,106km ²	160명
Nunavut	28,700명	2,093,190km ²	111명
총 계	31,414,000명	9,984,670km²	*58,414

*: RCMP본부 및 同경찰학교 교육생 등 1,002명이 포함되었다.

<표 16> 2001년도 범죄발생동향

폭력범죄 309,101건	재산범죄 1,257,729건	기타형사범 841,191건	마약범죄 91,920건	교통(사고)범죄 126,298건	기타 연방법 위반	
살인 554	재물손괴등 282,512	경 범 338,425	대마사범 70,624	사망사고 284	38,257건	
살인미수 721	자동차절도 170,213	통화위조 37,771	코카인사범 12,233	부상사고 1,755		
폭행 239,163	중절도 21,146	보석위반 91,249	헤로인 965건	음주측정거부등 4,856		
성폭행 24,419	경절도 등 665,961	평화교란 88,729	기타약물 8,098	위험한 운전 등		
기타性범죄 3,026	장물죄 등 29,565	공격적무기 17,456				
유괴 713건	사기 88,332	매 춘 5103				
강도 27,414		방 화 14513				
기 타		기 타 247,945				
총 범죄발생건수: 2,664,496건						

<표 17> 최근 수년간 경찰력추이

	2000년	2001년	2002년
정규경찰관	55,954명	57,076명	58,414명
일반직	19,909명	19,998명	20,760명
합 계	75,863명	77074명	79174명
경찰밀도	1: 550.3	1:545.1	1:537.8

<표 18> 경찰관 1명당 범죄발생건수

	2000년	2001년	2002년
경찰관 1명당 연간 범죄발생건수*	42.0	42.2
* 교통사고건수는 제외된 수치임.			

전체 경찰예산은 2001년의 경우, 73억 달러였으며, 전년도(2000년, 69억 달러)에 비하여 6.9% 증가한 수준이었다.¹⁰³⁾ 특히 캐나다 국민 1인당 234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2000년에는 1인당 221달러). 경찰과 다른 형사사법기관간의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경찰·교정·법원(검찰)순으로 나타났다(표: 19).¹⁰⁴⁾

<표 19> 형사사법기관간 예산규모 비교

연도 기관	1992-1993년	1997-1998년	1998-1999년
경찰	5,716,833,000달러	5,989,000,000달러	6,209,800,000달러
법원	867,006,000달러		925,000,000달러
검찰			278,000,000달러
법률원조	603,434,000달러	454,600,000달러	494,000,000달러
소년교도소	487,900,000달러	490,200,000달러	497,400,000달러
성인교도소	1,894,482,000달러	2,077,400,000달러	2,257,000,000달러

2) 연방경찰조직(RCMP)과 역할

캐나다 경찰의 관할권과 구조는 연방정부(federal), 州정부(Provincial 혹은 準州)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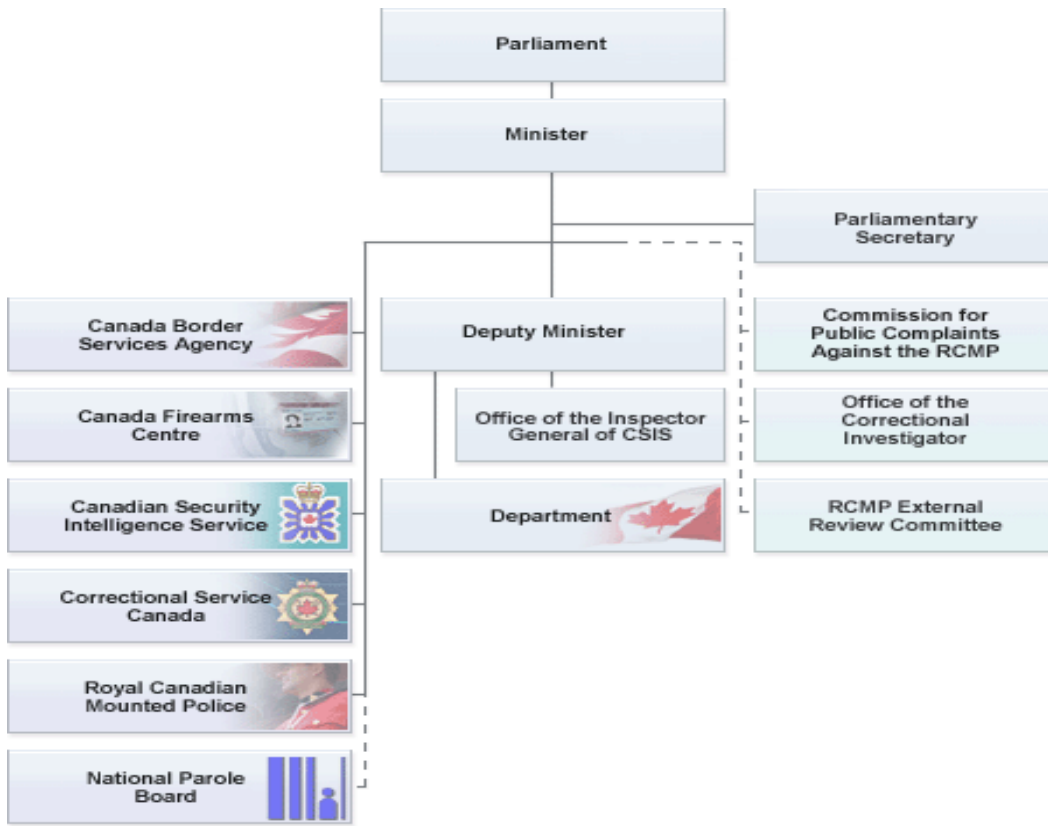
103)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15.

104) in: <http://www.statcan.ca/english/Pgdb/legal13.htm>; Dantzker/Mitchell, 1998, p. 19.

리고 지방자치체(Municipal) 사이에서 분화되어 다양하다.¹⁰⁵⁾ 경찰활동에 대한 책임을 3단계 행정단위에 부여하고 있다. 연방경찰(RCMP)은 「**부총리겸 연방공안및비상기획부(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 : PSEPC)장관**」 소속의 경찰청장(Commissioner)¹⁰⁶⁾의 지휘를 받는다. 연방공안및비상기획부는 자연재해에서부터 범죄와 對테러정책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州정부단위에서의 경찰행정은 州(혹은 準州) 공안부장관¹⁰⁷⁾ 소관이다.

<그림 11> 캐나다 연방공안 및 비상기획부 조직도



105) Seagrave, Jayne, Introduction to Policing in Canada, 1997, p. 31.

106) 2006년 4월말 현재, 연방경찰청장은 Giuliano Zaccardelli(1947년 10월생)이다. 동인은 2000년 9월에 제20대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70년 9월에 연방경찰에 입문하였다.

107) British Columbia州의 경우,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olicitor Gener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캐나다 국립(연방)경찰인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는 연방경찰이면서(National), 州경찰(provincial)이면서 또 지역경찰(Municipal) 조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의 경찰제도보다도 특이하다.¹⁰⁸⁾

【RCMP Act】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책임은 연방경찰청장에게 속하는 바, 그를 보좌하는 4명의 본부 次長(Deputy Commissioner)과¹⁰⁹⁾ 4개 연방경찰 권역을 맡고 있는 次長들이 있다. 그리고 10개 州와 3개 準州에 지역본부(Division)가 설치되어 있다. RCMP는 캐나다를 크게 4분하고 있는 바,

- 대서양지역(Newfoundland와 Labrador, Edward Island, Nova Scotia, New Brusswick)
- 중부지역(Quebec, Ontario)
- 북서부지역(Manitoba, Saskatchewan, Alberta, Nunavut, Northwest Territoies)
- 태평양지역(British Columbia, Yukon Territory) 등이다.

연방경찰은 모든 州와 準州에서 마약범죄통제법, 인디언法(the Indian Act), 세금 및 물품세, 이민 및 여권법,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연방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¹¹⁰⁾ 캐나다法을 집행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평화·질서 그리고 안전을 유지할 임무를 맡고 있다.¹¹¹⁾ 구체적으로 보면, 범죄예방 및 연방법위반에 대한 조사, 계약을 맺은 州와 準州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범죄예방, 수사 그리고 법령과 질서의 유지, 요인에 대한 경호 그리고 다른 연방법집행기관에 수사지원 등이다. Ottawa에 있는 연방의회 청사와 같은 연방재산도 보호한다.

108) Seagrave, 1997, p. 39.

109) Deputy Commissioner National Police Service, Deputy Commissioner Corporate Management and Comptrollership, Deputy Commissioner Strategic Direction, Deputy Commissioner Operations 등이다.

110) in: <http://www.rcmp-grc.gc.ca/recruiting/postings-e.htm>

111) Seagrave, 1997, p. 35.

연방경찰은 10개 주와 3개의 준주에 관할권이 있다. 단지 Ontario주와 Quebec주(non-contract divisions)에서는 지방자치경찰과 주경찰차원의 관할권이 없다.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은 8개주와 3개 준주에서 연방경찰은 주경찰활동(온타리오주 및 퀘벡주 제외)을 제공하고 있다.¹¹²⁾ 많은 주들이 RCMP와 계약을 맺고, 지역단위의 경찰활동을 맡아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201개 자치단체들과 계약을 맺고 경찰력을 제공(파견)하고 있다. 결국 연방경찰은 대부분의 캐나다 지역에서 주경찰과 지방자치체 경찰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2002년 6월 15일 현재 캐나다 전체 경찰관의 숫자는 58,414명이며, 이중 연방경찰관은 15,343명, 주경찰(Ontario와¹¹³⁾ Quebec주) 및 자치체 경찰은 43,071명이다. 따라 연방경찰 對 주·자치경찰의 비율은 1:3정도이다.¹¹⁴⁾

<표 20> 캐나다에서 규모가 큰 경찰조직들

경찰관서	경찰관숫자	비 고
연방경찰(RCMP)	15,343명	2002년 12월 현재
Toronto광역경찰	5,155명	2001년 12월 현재
Ontario주경찰(OPP)	4,096명	2002년 12월 현재, 지방자치경찰에 배속된 1,206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임.
Quebec주경찰(QPP)	4,523명	2002년 12월 현재
Montreal도시지역경찰	4,082명	2001년 12월 현재
Vancouver市경찰	1,126명	2003년 1월 현재

112) Seagrave, 1997, p. 39.

113) Ontario주경찰(OPP)은 지방자치단체(Municipal)와 계약을 맺고, 1261명의 주경찰관을 지방자치체 경찰로 파견 근무시키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체 경찰관 숫자에 포함되었다.

114)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21.

3) 지방경찰 조직

가.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은 지방경찰

2001년 현재, 캐나다에는 603개의 자치체 경찰조직이 있는 바, 그 중에서 201개 자치단체는 연방경찰과, 85개는 Ontario州경찰과 계약을 맺은 경우(contract divisions)이다. 연방경찰은 Newfoundland & Labrador, Québec과 Ontario州(州경찰은 州內 85개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1,215명의 경찰관을 파견하고 있음)를 제외하고, 계약을 맺은 201개 지방자치단체에 4,036명의 연방경찰관들을 파견한 바 있다.¹¹⁵⁾ 전체 계약 수수액의 70%정도는 관할인구 15,0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이다.¹¹⁶⁾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자치경찰, 州경찰, 연방경찰)들은 전체 캐나다 경찰의 67%를 차지하며, 이들의 예산은 전체 경찰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다.¹¹⁷⁾ 州경찰은 전체 경찰예산의 23%, 연방경찰은 2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Newfoundland and Labrador州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별로 “자치체 경찰”을 두지 않고 있으며,¹¹⁸⁾ 州경찰(The Royal Newfoundland Constabulary-州경찰임) 307명과 연방경찰 472명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Yukon(126명), Northwest Territories(160명), Nunavut(111명)에는 지방자치체 경찰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곳은 모두 연방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연방경찰(RCMP) 파견대(Detachment)와 계약을 맺은 경찰관서는, 경찰관서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계급의 경찰간부에 의하여 지휘를 받는다. 규모가 작은 연방경찰 파견대의 경우, 종종 몇 명 정도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조직도 있다. 이들은 형법, 州법령 그리고 자치법령 뿐만 아니라 마약통제법(Narcotics Control Act)과 같은 연방법을 집행하기도 한다.

115)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2002, p. 17.

116)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21.

117)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2002, p. 17.

118) New Foundland does not have any municipal police forces. 同旨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21.

나. 독자적인 경찰조직을 가진 자치경찰

60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17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non-contract) 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표: 21참조).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32,727명의 경찰관을 자치단체 스스로 채용하고 있다.¹¹⁹⁾ 자치체 경찰들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큰 규모의 자치체 경찰은 Toronto광역경찰(5,155명)과 Montreal광역경찰(4,082명)을 들 수 있다. 독립적인 자치체 경찰들은 주로 Chief Constable이 지휘한다. 경찰관 500명 이상씩 배치된 대규모 지방자치 경찰관서들은 다음과 같다.¹²⁰⁾

<표 21> 캐나다의 대규모 지방자치경찰관서들

	관할인구(2001년기준)	경찰관수(2002년 기준)
Toronto Police	2,562,235명	5,048명
Montreal	1,838,474	4,109
Peel Regional Police	999,146	1,384
Calgary Police	899,285	1,402
Ottawa-Carleton Reg.Pol.	800,525	1,055
York Regional Police	778,000	929
Winnipeg Police	631,675	1,173
Edmonton Police	663,819	1,142
Vancouver Police	573,154	1,126
Durham Regional Police	523,013	757
Quebec Police	513,981	718
Hamilton Regional Police	503,043	718
Waterloo Regional Police	456,767	591
Niagara Regional Police	426,912	623
Halton Regional Police	387,388	489

119)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21.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관들은 전체 경찰관수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20)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13에서 재구성.

2. 수사경찰조직과 기능

1) 연방의 수사경찰

가. 수사경찰조직과 기능

연방경찰청(RCMP)은 「**부총리겸 연방공안및비상기획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외청이다. 연방경찰청장 소속하에 8명의 차장(Deputy Commissioner)들이 있으며, 이중 국립경찰지원담당차장 및 범죄수사정보담당 차장들이 수사경찰 (지원)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4개 지역담당 차장들 소속하에 있는 연방경찰들은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수사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국립경찰지원서비스 담당 次長(Deputy Commissioner National Police Services)하에는

- ▷ 법과학부(연방경찰 법과학연구소 업무, Forensic Laboratory Services),
- ▷ 수사자료 및 감식자료지원부(Information and Identification Services),
- ▷ 과학수사지원부(Technical Operations) 등이 설치되어 있다.

즉 법과학부에는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료, 지식 그리고 기술적 수단들을 500여개의 각급 법집행 기관들에게 제공한다. 즉 경찰기관(온타리오 주 및 퀘벡주는 자체 법과학연구소가 설치됨), 법원 그리고 정부의 他유관들을 지원한다. 범죄현장 증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며, 법정에서 법과학적 증거제출, 연구, 새롭고 발전된 법과학적 방법론들을 연구한다.¹²¹⁾

과학수사지원부에서는 오디오/비디오증거분석, 범죄분석,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폭발 물데이터센터, 性범죄자자료센터(National Sex Offender Registry), 기술보안 및 하이테

121) http://www.rcmp-grc.gc.ca/fls/home_htm(2006년 4월 24일 검색)

크범죄, 물리적·전자감시 및 보안, 컴퓨터범죄 및 보안, 범죄행동분석(ViCLAS), 통신 감청, 경찰무장차량에 대한 기술적 지원, 경찰작전을 위한 항공기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²²⁾

범죄정보지원담당 次長(Deputy Commissioner Operations) 소속하에는

- ▷ 자치경찰·계약경찰 및 원주민경찰 지원부,
- ▷ 범죄정보부(Crime Intelligence Directorate)
- ▷ 범죄정보지원부(Crime Intelligence Service Canada)가 설치되어 있다.

즉 범죄정보부에서는 연방경찰이 조직범죄, 重범죄, 국가안보와 관련된 영역(national security dimension in Canada)의 범죄 혹은 캐나다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범죄를 수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죄자료 및 범죄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¹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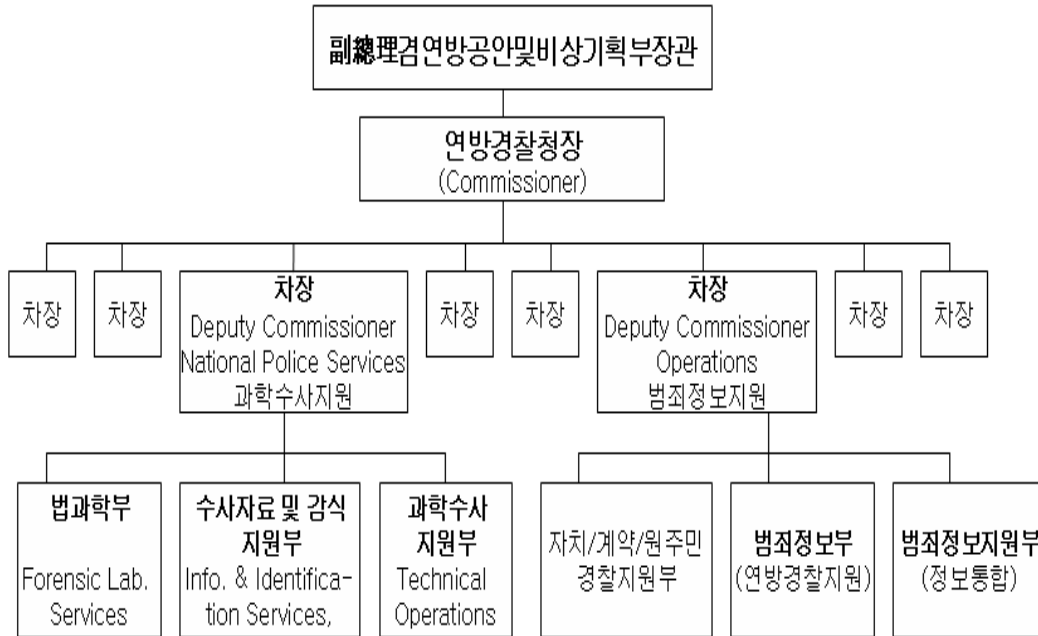
범죄정보지원부에서는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조직범죄 및 다른 심각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법집행기관(Canadian law enforcement agencies)들의 범죄관련 정보들을 용이하게 통합(Unite)하기 위한 조직이다. 오타와에 본부를 두고, 각주별로 10개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연방, 주 및 자치단체 소속 법집행기관들은 범죄정보의 수집, 대조, 평가, 분석 그리고 배포함에 있어서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협력한다.¹²⁴⁾

122) http://www.rcmp-grc.gc.ca/techops/index_e.htm(2006년 4월 24일 검색)

123) http://www.rcmp-grc.gc.ca/crimint/ci_main_e.htm(2006년 4월 24일 검색)

124) http://www.cisc.gc.ca/about/about_cisc_e.htm (2006년 4월 24일 검색)

<그림 12> 캐나다 연방수사경찰조직



나. 과학수사 지원시설

- 연방경찰청 산하 법과학연구소

8명의 차장(Deputy Commissioner)들 중, 소위 국립경찰서비스(National Police Services)를 담당하는 次長 소속하에 법과학연구소(혹은 과학수사연구소, Forensic Laboratory Services)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연방경찰청 산하 법과학연구소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125)

同연구소는 연방경찰이 국가경찰 차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통합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료와 지식 그리고 기술적 수단을 법집행기관들에게 제공한다.

125) http://www.rcmp-grc.gc.ca/fls/intro_e.htm(2005년 12월 08일 검색)

법과학연구소는 캐나다 경찰당국, 법원 그리고 대부분의 州정부기관들(퀘벡, 온타리오州의 경우에는 자체 州법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에게 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과학연구소의 분석 및 조사결과들은 대부분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각종 보고서들이 작성되며, 취득된 결과들과 이러한 결론들에 의거해서 전문가의 법정 증언이 이루어진다. 각종 연구들을 통하여 새롭고 발전된 법과학적 접근방법들이 개발된다.

법과학연구소의 감정서비스들은 대체로 370여명의 법과학자들, 기술자들 그리고 행정 직원들에 의해서 제공된다. 이러한 감정서비스들은 캐나다 전역의 6군데 지역에 설치된 분소(Vancouver, Edmonton, Regina, Winnipeg, Ottawa, and Halifax)들을 통하여 제공된다. 수사관들과의 최초 접촉은 법과학연구소의 사건접수부서(Case Receipt Unit)와 이루어진다. 국립DNA 데이터뱅크는 Ottawa에 소재하고 있다. 유전자정보은행이 연방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연방경찰의 각 지역 법과학연구소는 “ISO 17025”라는 국제적 기준의 품질인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절차는 캐나다의 인증위원회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문화된 감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同연구소는 팀(Team)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과학연구소의 감정서비스는 다양한 범위의 과학적 원리들에 근거해서 최첨단의 기술력(state-of-the-art)으로 법과학적 감정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감정분야는 생물학, 위조서류감정, 화학, 사건접수부, 증거복원, 폭발물분석, 무기 및 흔적증거(타어흔 등) 분석, 독성학적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벤쿠버경찰청 사례

가. 수사경찰조직과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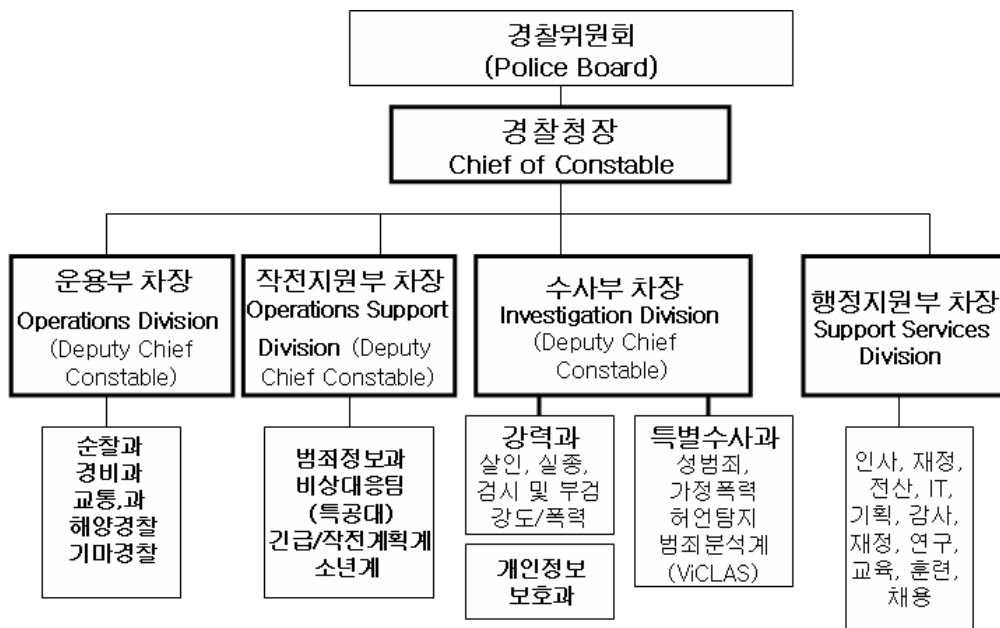
벤쿠버市 경찰위원회(Police Board, 위원장: 벤쿠버시장 포함 7인 위원) 산하에 경찰청(청장, Chief Constable) 을 설치하였다. 경찰청조직은 크게 4부서로 나뉘어지는 바,

운용부(Operations Division: 방법순찰, 교통, 경비, 등), 작전지원부(Operations Support Division:범죄정보, 특공대, 비상및작전, 소년계), 수사부(Investigation Division) 그리고 행정지원부(Support Services Division) 등이다.¹²⁶⁾

2001년 기준으로 관할인구는 573,154명이고, 경찰관수(2002년 기준)는 1,126명이며, 일반 행정직원(Civilian)은 350명 정도이다. 밴쿠버市 경찰청 예산은 市전체 예산의 20-25% 정도를 차지한다. 2004년도 市예산은 5억 달러(캐나다달러)이며, 이중 경찰예산은 1억 5천만 달러이다.¹²⁷⁾

부서별 경찰관 배치비율에 따르면, 방법경찰은 717명(63.4%), 수사경찰 265명(23.5%),¹²⁸⁾ 교통과 78명(6.9%) 그리고 행정지원부서는 46명(4%) 기타 1.1%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경찰의 비율이 한국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밴쿠버경찰청 조직(수사경찰)



126) <http://vancouver.ca/police/organization/index.html>(2006년 4월 24일 검색)

127) 캐나다 1달러를 900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1,350억원 규모이다.

128) 작전지원부 인원을 포함한 것임.

수사경찰조직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 강력과 : 살인범죄, 실종사건, 부검 및 검시, 강도및 폭력계
- ▷ 특별수사과 : 性범죄수사팀, 가정폭력담당, 거짓말탐지기반, 범죄분석계(ViCLAS),
- ▷ 개인정보보호과,
- ▷ 풍속및마약과 : 범죄신고, 마약계, 풍속계, 도박장담당
- ▷ 과학수사지원과 : 경제범죄수사(컴퓨터범죄수사포함), 과학수사계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최근에 작전지원부서(Operations Support Division)를 강화하면서, 이전에 수사부서에 소속된 몇몇 부서를 이관하였다. 同부서에는 범죄정보과, 비상대응팀, 비상및작전계획(집회시위포함), 소년계가 설치되어 있다.¹²⁹⁾ 범죄정보과(Criminal Intelligence Section)에서는 조직범죄, 환경범죄(오존, 유독성물질), 불법마약거래, 인신매매, 돈세탁, 사이버범죄, 범죄조직의 위장사업, 테러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경찰관의 계급은 Chief of Police, Deputy Chief of Police, Inspector, Sergeant, Constable 등 5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계급별 경찰관 비율에 의하면, 대체로 순경-경장급 85.5%, 순경-경위급까지는 약 96.5% 정도이다.

<표 22> 밴쿠버경찰의 계급별 경찰관수 및 비율

보직명칭	계급 명칭	한국과 비교	계급별비율
경찰청장	Chief Constable	1(경무관급)	
차장	Deputy Chief Constable	3(총경급)	
과장/계장급	Inspectors	35(경감, 경정급)	3.1%
반장/팀장	Sergeant	124(경위, 경사급)	11.0%
순경, 경장급	Constable	963(순경, 경장급)	85.5%
합 계		1,126명	

129) <http://vancouver.ca/police/OpsSupp/index.htm>(2006년 4월 24일 검색)

나. 과학수사 지원시설 등

(1) 과학수사 지원시설

경찰청 자체적으로 감정·분석할 수 있는 대상은 지문분석 및 총기흔, 타이어흔, 공기흔(tool mark)분석이 가능하다. 의학적, 생물학적 분석 대상들은 인근에 소재한 연방경찰 “E”지역대 산하 법과학연구소에 의뢰한다.

㉠ 지문채취 시설 및 감정실

경찰청 내에 설치된 지문채취 시설 및 감정실에서는 자외선을 이용한 잠재지문확인 및 촬영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문채취를 위한 기체법, 액체법, 고체법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 용의자 사진촬영실

용의자 사진촬영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바, 同 촬영실의 규모 및 시설은 웬만한 Studio를 연상케 한다. 이곳에서는 범죄사건 입건단계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는 동향이다. 따라서 동일인이 다른 사건에서 체포되었을 때에만 지문대조를 통한 신원확인 가능하다.

㉢ 총기(Firearm) 분석실

Firearm분석실에는 2명의 고참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1994년부터 同부서에 근무중이다. 신참직원 1명은 2000년 2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理學士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Bachelor Science Degree). 총기분석 및 특수장비를 촬영하였으며, 박물관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한 총기류를 보관하고 있다.

㉔ 증거물보관실

외근 순찰경찰관들이 초동조치 후 송부한 증거물은 건물복도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는 바, 자물쇠의 색깔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록, 노랑, 빨강(소방 및 화재관련) 등이다. 특히 중요범죄 관련한 증거물을 별도의 특수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바, 위생 및 오염, 감염방지가 되고 있다. 피해자유품 및 피의자 사건관련 증거물을 별도의 방실에 분리보관하고 있다. 마치 대형특수 냉장고를 연상케 하고 있다. 사건현장에 임장하는 과학수사계 직원들이 착용하는 가운, 버선, 고무장갑, 마스크 등을 입수한 바 있다.

㉕ 현장출동용 차량 및 탑재된 감식장비 세트

현장출동용 감식반 차량 전면 촬영, 구체적인 장비보관함도 촬영하였으며, 현장출동용 차량은 3대를 운용한다. 근무조마다 1대씩 배정되어 있다. 기타 중요한 증거물분석(독극물분석, 이화학적 분석, DNA분석 등)은 연방경찰의 벤쿠버지부("E" Division)의 과학실험실(RCMP Crime Lab)을 이용한다. 그런데, 감정 및 분석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2-3주정도 길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신속한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벤쿠버경찰청 수사부에서는 2명의 검시관(Medical Examiner)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건에 도움을 받고 있다.

(2) 과학수사 부서의 근무방식

벤쿠버경찰청 과학수사계(Forensic Identification Unit)에는 계장 1명을¹³⁰⁾ 포함하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의 교육생이 배치되어 있다. 同부서는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관계는 24시간 교대제 근무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근무체계에 따르면, 개별경찰관은 "4일 근무→4일 휴무"하는 시스템이다. 2개팀으로 나뉘어(1반, 2반)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방식인 바, 예를 들면 1반이 4일 근무하는 동안, 2반은 4일 동안 휴무하는 것이다.

130) George Wood 경사(Chief)는 28년 경찰경력에 同부서 책임자로 5년간 근무 중이다.

- ▶ 주간근무(Days 07:00-18:00),
- ▶ 저녁근무(15:00-21:00),
- ▶ 심야근무(16:00-03:00)로 1일 8명이 3개 근무조(4, 3, 1)로 세분하여 시간차를 두고 번갈아 가면서 근무한다. 하루 8명이 근무하는 바, 晝間 근무자 4명, 저녁 근무자 3명, 深夜 근무자 1명이다. 4일마다 근무주기가 바뀐다.

A 경찰관의 경우, 4일간 주간근무→4일간 휴무→4일간 주간근무→4일간 휴무→4일간 저녁근무→4일간 휴무→4일간 저녁근무→4일간 휴무.....순이다.

<표 23> 벤쿠버경찰청 과학수사부서 “A”경찰관 근무사례

구체적인 경우, 1반 소속 8명의 경찰관(202, 1002, 1084, 1184, 1253, 1284 1354, 1444)들은	
▷ 6월 30일- 7월3일 주간근무(D)	○ 7월 4일- 7일 휴무
▷ 7월 8일- 11일 주간근무	○ 7월 12일-15일 휴무
▶ 7월 16일-19일 저녁근무	○ 7월 20일-23일 휴무
▶ 7월 24일-27일 저녁근무	○ 7월 28일-31일 휴무
▷ 8월 1일- 4일 주간근무	○ 8월 5일- 8일 휴무
▷ 8월 9일-12일 주간근무	○ 8월 13일-16일 휴무
▶ 8월 17일-20일 저녁근무	○ 8월 21일-24일 휴무
▶ 8월 25일-28일 저녁근무	○ 8월 29일-9월1일 휴무
▶ 9월 2일- 5일 저녁근무	○ 9월 6일- 9일 휴무
▶ 9월 10일-13일 저녁근무	○ 9월 14일-17일 휴무
▷ 9월 18일-21일 주간근무	○ 9월 22일-25일 휴무
▷ 9월 26일-29일 주간근무	○ 9월 30일-10월3일 휴무
■ 10월 4일-7일 심야근무	○ 10월 8일-11일 휴무
■ 10월 12일-15일 심야근무	○10월 16일-19일 휴무

3) 경찰과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

경찰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중요한 (Stakeholder)역할을 한다. 경찰에 배정되는 예산 규모의 크기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 쪽으로 절차가 진행될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재량행사를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 기관 구성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경찰은 보통 왕립기소관(Crown Attorney: 검찰)에¹³¹⁾ 대해서는 밀접한 관련성(affinity)을 맺고 있지만, 법원 쪽으로는 범위가 좁다.¹³²⁾ 경찰은 범죄자에 대한 起訴와 刑罰宣告에 딱 들어맞는 정보의 대부분을 수집하는 기관을 대표한다. 그래서 경찰의 역할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역할과는 다르게, 시민들(public)과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자주 접촉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공동체에서 법과 질서를 대표한다.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왕립기소관(Crown Attorney)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교정기관 대표자들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¹³³⁾

왕립기소관(Crown Attorney, 검찰 혹은 기소관: prosecutor)는 미국의 검찰과는 달리, 수사기능을 갖지 않는 법원의 공무원이다.¹³⁴⁾ 캐나다에서 범죄수사는 경찰의 역할이다. 수사결과가 검찰청에 소송서류로 간략히 제출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소행위는 수사의 완전성, 공정성 그리고 효과성에 달려 있다.

경찰과 왕립기소관은 긍정적인 협력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의존적인 관계(mutual dependency)를 맺고 있다. 수사과정 중 다양한 상황에서, 경찰이 왕립기소관으로부터 자문(advice)을 구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복잡한 사건 수사인 경우이다.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그 수사결과를 놓고 왕립기소관에게 起訴쪽으로 절차가 진행될 지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게 된다. 이러한 실무관행들은 성공적인 법집행을 정당하게 추구함

131) 캐나다의 경우, 영국식 형사사법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한국의 검찰과 비교했을 때, Crown Attorney는 기소(공소)업무에 치중하기 때문에, 왕립기소관이라는 표현을 본논문에서는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132) Dantzker/Mitchell, 1998, p. 28.

133) Dantzker/Mitchell, 1998, p. 29.

134) Dantzker/Mitchell, 1998, p. 29. “..... The Crown Attorney is an officer of the court who, unlike his American counterpart, does not have an investigative function.”

에 있어서는 가치롭다. 그러나 경찰은 왕립기소관이 경찰과 형성된 친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왕립기소관이 경찰을 위해서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다고 결론을 내리서는 안 된다.

왕립기소관이 경찰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경찰에게는 왕립기소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왕립기소관의 역할은 범죄혐의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有罪의 심증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적인 일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왕립기소관은 피고인의 권리들이 재판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존중되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과 왕립기소관들은 보통 兩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밀접한 共生관계에서 일한다. 그들의 관련 역할 혹은 시스템 내에 있는 다른 관여자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잠재성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변호인은 왕립기소관이 경찰에 의하여 혹은 경찰입장에 의해서 흡수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관에 대한 起訴는 거의 항상 他관할 왕립기소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간의 건전하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은 그들의 관련 역할에 대한 완전성을 훼손함이 없이, 그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¹³⁵⁾

검찰청과 경찰간에 일정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기소관이 주장하곤 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중요한 사건들을 예외로 하고, 이것은 거의 진실이 아니다. 대체로, 경찰과 기소관이 의사소통을 하는 유일한 시간은 경찰이 사건수사를 종료(혹은 경찰관이 종료했다고 믿을 때)한 이후 그리고 기소책임을 맡은 기소관에게 서류를 제출한 이후이다. 혹은 경찰관이 청문이나 공판에서 증인선서 일정이 잡혀있을 때이다.

만약에 그 사건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그때에는 기소관과 경찰간에 의사소통이 있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종종 만족스러운 대화가 아니다.

기소관은 경찰의 수사 혹은 법정에서 필요하게 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135) Dantzker/Mitchell, 1998, p. 29.

경찰의 정확성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반대로 경찰은, 기소관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를 실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용의자가 범죄현장에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사건들- 즉 “총에서 연기가 막 나는”-과 유죄의 심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본질적이고 보충적인 증거들(목격자, 물리적 증거)들이 있는 사건들만을 기소하려 한다고 불평을 한다. 상대방에 대한 兩당사자들의 비판은 유용해 보이기도 한다.¹³⁶⁾

3. 수사전문화 교육동향-신규 및 재교육을 중심으로

1) 경찰관 선발 및 수사부서 배치

훌륭한 경찰관은 상식을 갖고, 성숙하게 판단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¹³⁷⁾ 전통적인 선발기준은 신체적인 요소들, 즉 신장, 체중, 연령 그리고 직업에 대한 비전 등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기초필기시험(독해, 문법 및 작문실력 등)을¹³⁸⁾ 포함하여

구두시험(면접),

거짓말탐지기(Polygraph) Test,

특별한 전문영역 테스트,

인지능력 테스트,

136) Dantzker/Mitchell, 1998, p. 31.

137) Dantzker/Mitchell, 1998, p. 163. G. M. Pugh, “The good police officer: Qualities, roles and concepts”, in: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4, 1986, pp. 1-5.

138) 벤쿠버경찰청의 경우, 필기시험은 2시간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者로서의 기본적인 영문법, 철자, 작문실력, 내용이해 및 수학시험이다. 그리고 4지 선다형과 주관식 논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리테스트,

배경조사(범죄경력 포함),

신체적 민첩성,

의학적 검사(시력, 청력 등),

범죄경력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¹³⁹⁾ 운전면허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연방경찰과 밴쿠버경찰). 한국과는 달리 필기시험에서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론 교과목을 테스트하지 않는다.

교육경력(지원자의 학력수준)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경우(Quebec州 전문대학이상, Community College의 학력조건)를 제외하고 대부분 고등학교졸업(12년 교육 수료) 이상인 者를 지원요건으로 한다.¹⁴⁰⁾ 그런데 실제로 연방경찰에 충원되는 경찰관의 60-70%는 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¹⁾ 지원자들 중에는 사회학이나 범죄학 전공자들이 많으며, 다수의 지원자들은 법학을 전공하거나 혹은 대학원 졸업자들도 많다고 한다.

지원연령은 최저 연령은 18-21세, 최고연령은 35-65세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온타리오주경찰의 경우 18-65세까지 경찰직에 지원할 수 있다.¹⁴²⁾ 밴쿠버경찰청의 경우, 19세 이상이며, 상한선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방경찰의 경우도 동일하다.

체격조건(신장, 몸무게, 시력)은 대체로 최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이나 여성의 경우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¹⁴³⁾ 체력검정은 이른 바, Police Officer's Physical Abilities Test(POPAT)의 경우 4분 15초 이내, 2.4km장거리 달리기를 12분 이내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다. 同시스템은 Justice Institute of British

139) Dantzker/Mitchell, 1998, p. 163.

140) Seagrave, 1997, p. 75. 그리고 밴쿠버경찰청의 경우, 대학에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者, 온타리오주 경찰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者를 지원요건으로 한다.

141) Dantzker/Mitchell, 1998, p. 163.

142) in:<http://www.gov.on.ca/opp/recruit/english/oppbound.htm>

143) Seagrave, 1997, p. 75.

Columbia에서 체력, 건강 그리고 신체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고안, 표준화시킨 제도이다. 2.4km달리기를 비롯하여, 일정한 코스 안에 장애물과 측정도구를 배치해놓고 밀고, 당기기, 끌어올리기, 장애물 뛰어넘기, 구부러져 땅에 누워있는 물체 바로 세우기, 45.5kg짜리 사람모형을 가슴까지 끌어안기, 계단 뛰어 오르내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州에 따라서는 100m달리기, 1분 이내에 팔 굽혀 펴기·앉았다 일어서기 최저횟수, 36kg짜리 사람모형 15m 나르기 등 다양한 종목들이 채택되어 있다.

입직단계에서 별도로 수사경찰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 일반경찰로 선발하며, 임용 후에 일정기간 동안 순찰부서에서 근무토록 한다. 그 후 본인의 능력, 적성 등에 따라서 수사경찰을 지원할 수 있다. 수사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수사전문화 교육과정은 주로 연방경찰대학, 연방경찰학교, 지방단위 경찰학교 등에서 실시된다. 개별자치 단체 경찰은 규모가 작아서 독자적인 교육 시설을 운영하기 보다는 연방경찰에 위탁하고 있다. 연방경찰대학(Canadian Police College)은 재교육 및 전문화 교육을 담당하며, 캠퍼스는 Ottawa市에 소재하며, 연방경찰학교(Training Academy)는 신규경찰관 교육기관으로서 Saskatchewan州 Regina市에 소재하고 있다.

2) 연방경찰의 수사직무 교육

가. 신규입직시 수사관련 교육

본항에서는 연방경찰의 순경급 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연방경찰(RCMP)의 순경급 신규 교육과정은 22주(weeks)이다. 同기간 수료 후에 경찰관으로 임명을 받고, 6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Ontario州의 순경급 기본교육은 17주이며, 시보기간은 12개월이며, 州경찰(OPP)로서, 지방자치경찰에 배속되어 근무한다.

연방경찰 순경급 기본교육의 주요 내용은 문서작성, 응급처치, 피의자호송, 무전기사용, 경찰견관리, 범죄수사분야(현장보존, 범죄수사 실험실 운용, 지문채취, 사진촬영기법,

화재현장 수사 등), 호신술, 경찰역사, 법률분야(형법 및 연방법규), 추적운전기법, 사격술 및 총기류 조작, 체력단련, 수영, 인간관계, 문화적 다양성, 인간행동과 경찰개입 등에 관한 내용이다(표: 24 참조).¹⁴⁴⁾

<표 24> 연방경찰 순경급 기본교육내용

주요 교육분야	세부내용
Operational Training	Practical training, Report writing, First Aid, Handling of Prisoners, Telecommunications, Canadian Police Information Center, Typing, Police service dogs, Contingency planning, officer survival
Identification services	Bombs and infernal devices, Crime Scene protection, Crime detection laboratories, Plan drawing, Fingerprinting, Photography, Personal descriptions, Identification services, Fire scene investigations
Self-defence	
Foot drill	
History of Police and RCMP	Police idea, Tradition
Law	Criminal Code, Contacts and informants, Federal statutes, Official directives
Driver Training	Driving, Traffic lectures, Point duty, Collision investigations
Firearms	Firearms practice, Care and handling of weapons, Shooting decisions, Safety lectures, Gas training
Physical training	Physical training, Personal performance test, Fitness field day test, Challenge Circuits, PT lectures, Organized sports, Fitness and nutrition, lifestyle development
Swimming	Swimming and lifesaving techniques,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Human relations	Police function, Effective presentations
Cross cultural	Cultural awareness, Cultures in conflict, Development and discrimination, Multiculturalism, Policing of minority groups
Human behaviour and Police intervention	Human interactions/relations, Problem solving, Intervention and defusion, The Interview situation, Theory of stress

144) Seagrave, 1997, p. 81.

나. 수사직무 전문화교육

(1) 연방경찰대학(Canadian Police College at Ottawa)

연방경찰대학 경찰학부(Police Science School)는 경찰관들에게 전문화된 실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컴퓨터범죄 수사관들과 폭발물, 교통사고 및 범의감식전문가들이 그들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배워 완전하게 익히기 위하여 同경찰학부에 입학하고 있다. 同과정은 캐나다 경찰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찰관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명성이 높은 교관진, 소수정예, 우수한 교관/학생들, 훌륭한 시설 그리고 실천위주의 경험학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구체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¹⁴⁵⁾

(가) 운용중인 수사전문화교육과정

- 폭발물처리, 교통사고조사,
- 수사전문화과정(중요사건관리/수사, 정보 분석, 위기상황, 경찰보안지도과정, ViCLAS과정, 거짓말탐지기과정),
- 범의감식(범의감식과정, 혈흔감식, 지문분류),
- 컴퓨터이용 범죄수사기법(technological crime learning institute, 컴퓨터상의 수색 및 압수, 인터넷압수, 네트워크를 위한 수사기법, 사이버범죄),
- 원격교육프로그램, 연구활동 등이다.

(나) 범의감식 전문화교육과정

범의감식전문화 교육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⁴⁶⁾

145) http://www.cpc.gc.ca/scienc_e.html(2005년 12월 13일 검색)

146) http://www.cpc.gc.ca/sciences/ficour_e.htm

① 법의감식분야(Forensic Identification: FIC)

同교육과정은 10년 정도 경찰경력이 있는 者를 대상으로, 33일간(월-금, 7주) 20명에게 실시된다. 同과정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증거를 인식, 수집, 조사, 촬영, 보존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감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킨다.

i) 전교육: 교육과정에 등록된 후, 경찰관들은 CD ROM으로 된 사전 훈련프로그램(사진학입문, 지문과 사진촬영권한들, 근무지 위험요인들 정보시스템-W.H.M.I.S, 물리적 증거의 유형들)을 수령하게 된다. 반드시 미리 법의감식과정 입교前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학습해야 하며, 지원자들은 입학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¹⁴⁷⁾

ii) 주요 교육내용¹⁴⁸⁾

- 지문감식업무(Fingerprints, 양적, 질적 마찰용선 분석): 마찰, 피부구조, 지문패턴, 인식지문비교, 지문분석리포트, 장문(掌紋)비교.
- 사진촬영기법(Photography): 필름의 적절한 노출, 플래쉬 사용한 촬영, 디지털 이미지(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포함)활용, 복사입문, 범죄현장촬영, 지문촬영, 작은 물체 촬영, 확대촬영, 음화(陰畫)의 평가, 필터사용, 원근투시법활용, 법의광선(자외선 등).
- 범죄현장감식(Crime Scene): 분말 및 화학약품, 현장약도, 물리적 증거, 2차원적 흔적, 3차원적 증거복원, 자동차 및 타이어흔적, 범죄현장 접근 및 진행, DNA 증거, 비디오카메라입문, 혈흔패턴인식, Criminal Profiling, Virtual Reality(가상현실), 주요사건 발표, 법의병리학.
- 전문감정가의 조언(Expert Advice): 비교차트, 전문감정 준비 및 발표, 모의재판. 교육종료시점에는 지문대조실무, 사진촬영이론, 범죄현장감식이론 및 범죄현장실무에 관한 내용으로 시험(70점 이상)을 치러야 한다.

한편, 고급과정(Senior Forensic Identification)은 법의감식 기본과정을 이수한 者를

147)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fic_e.htm.

148)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fic_e.htm.

대상으로 현장 감식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경찰관들에게 10일간의 추가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¹⁴⁹⁾ 同과정의 목적은 증거의 인식, 수집, 조사 그리고 제출에 관한 감식전문가로서의 기량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다. 법의감식 전문가들과 현장의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기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한 과정이다. 감식현장에서 최근의 새로운 기법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다.

교육내용은 법인류학, 법곤충학, 법의타이어흔감식, 법치과학, 지문학, 지문과 물리적 증거에 관한 新기법 혈흔패턴의 이해, 선별된 주제들이다.

기본 감식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그와 동등한 교육(사진촬영, 지문감식,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증거에 대한 수집·감식·보존 그리고 제출을 포함한 현장감식 등)을 수료한 者를 대상으로 하며, 현장감식전문가로서 3-10년정도 정식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교육생들은 현장(젖은 잔디, 진흙 등)에 나갈 때에는 특수한 복장을 해야 하며, 1개반은 보통 20명 정원이다.¹⁵⁰⁾

② 혈흔감식과정

기본혈흔패턴 인식(Basic Bloodstain Pattern Recognition: BBPRC) 과정인데, 5일간 18명씩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법의감식 기본과정을 이수한 者를 대상으로 한다. 정식 현장감식 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者를 교육시킨다.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잔류 혈흔의 모든 형태를 전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법의감식 전문가 양성과정이다.¹⁵¹⁾ 교육 내용은 혈흔패턴이론, 혈흔패턴의 촬영, 투사된 혈흔패턴의 분석, 사건평가, 범죄현장의 再구성, 실습, 혈흔분석에 관한 기본수학 및 물리학개론, 혈흔패턴에 관한 컴퓨터분석 입문, 실습훈련: 실험 및 모의범죄현장, 필기 및 실기시험 등이다.

149)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sfic_e.htm.

150)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sfic_e.htm.

151)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bbprc_e.htm

③ 지문분류과정(Henry Fingerprint Classification: HFCC)

Henry式 분류방식을 사용하여 지문을 분류하기 위하여 고용된 혹은 고용예정인 者들을 위하여 제공된 프로그램으로서, 5일 동안 실시된다. 지문이론, 헨리식 지문분류법 그리고 지문융선학(ridgeology) 등이 교육된다.¹⁵²⁾

이외에도 연방경찰에서는 법의감식 초보자 훈련프로그램(Forensic Identification Apprentice Training Program)을 통하여, 同과정을 이수한 者에게 「공인법의감식전문가(Certified Forensic Identification Specialists)」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¹⁵³⁾

(다) 법의감식 전문가양성 훈련 프로그램

연방경찰대학 법의감식연구센터(Forensic Identification Research Services)에서는 48개월 과정의 법의감식 초보자훈련과정을 통해 인증된 “법의감식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¹⁵⁴⁾ 同연구센터는 감식기법과 장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다. 연방경찰의 법의감식훈련프로그램(Forensic Identification Apprentice Training Program)은 법과학적 수사에 있어서 능력있는 신뢰할만한 실무가들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그리고 경험을 경찰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同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경찰관들에게는 「법의감식전문가」라는 자격증을 부여받는다. 「법의감식전문가」들은 아주 뛰어난 수준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다. 이러한 전문가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생들은 반드시 그들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평가항목에 포함된 검증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연구, 테스트 그리고 과학적 자료들의 평가
- 최근의 지문자동확인시스템에 부응할 수 있는 지문패턴의 확인

152)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hfcc_e.htm

153) http://www.rcmp-grc.gc.ca/firs/flatp_e.htm.

154) http://www.rcmp.ca/firs/flatp_e.htm. 법의감식 초보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Forensic Identification Apprentice Training Program)은 연방경찰에서 프로그램 참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기술, 기법, 지식, 경험을 익히게 하여 법과학 및 법의감식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 범죄현장분석
- 분석할 모든 형태의 범의감식적 증거를 수색하고, 이해하고 발견하기
- 증거추적을 위하여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으로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현출하기
- 지문증거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비교하고 확인하기
- 물리적 증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교하고 확인하기
- 사진촬영 및 측정을 통하여 증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 법과학적 실험분석을 위하여 증거를 수색하고 인식하고 발견하기
- 기술적 증거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 증거서로서 제출될 수 있도록 차트, 그림 그리고 사진형태로 증거를 제시할 준비하기
- 지문과 물리적 증거를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기.

公認된 연방경찰의 범의감식전문가들은 그들의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게 된다. 전문가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여 「공인범의감식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교육생들은 그들의 성취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만하다.¹⁵⁵⁾

<표 25> 캐나다 연방경찰의 범의감식전문가 양성과정(48개월)¹⁵⁶⁾

Pre-Course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7개월차
· 범의감식직무에 흥미 혹은 직업부합성 여부 판단 · 후보자사전 확인 · 3주간 적합성 평가 · 승인취득 및 조건송부	· 훈련기간시작, 할당된 감식 부서로 효과 적인 배치 · 부과된 교재연구 시작 · 지문대조훈련 시작 · 부과된 다른 훈련/절차개시	· 지문대조과정 · 다른 수업, 실습 및 훈련계속 · 감독자임장하에 搜查개시 · 실험실에 친숙 하기(교육실시 1개월과 자격 심사 기간 중 어느때나)	· 1차시험 실시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장하에 搜查계속 · 연구프로젝트 개시(교육개시 1개월에서 자격심사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최소한 5개 프로젝트완성)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장하에 搜查계속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장하에 搜查계속	· 2차 시험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장하에 搜查계속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장하에 搜查계속

155) http://www.rcmp.ca/firs/fiatp_e.htm.

156) 필자가 캐나다 연방경찰 ViCLAS 전문수사관을 통하여 입수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

8개월차	9개월차	10개월차	11개월차	12/13개월차	14-20개월차	14-48개월차	On-Going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장에 捜査 계속	· 3차 시험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장에 捜査 계속	· 지문대조과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장에 捜査 계속	· 지문대조 최종 시험 · 자격심사요청 · 자격심사를 위한 준비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장에 捜査 계속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장에 捜査 계속 · 자격심사 실시	· 필요하다면, 처음 시도한지 6개월 이내에 자격심사 반복 · 필요할 때, 추가수업, 실습과 훈련 실시 · 감독자의 임장에 수사실행 계속	· 추가적인 필요한 법의감식 훈련 완성, · 경험있는 법의감식전문가의 지도하에 사건수사 실행 · 승진절차 진행	· 모든 법의감식 요원들을 위하여 계속적인 학습을 강하게 격려하기, · 추천된 과정을 위한 FIAT 프로그램 가이드 참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 훈련(Modular Training)

일단 개인이 수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가능한 교육생인지 확정된다면, 그들은 CD-ROM 상에 있는 기본교육에 관한 패키지를 수령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듈(Module)은 필수적·실무적인 것과 연구과제들을 읽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지문과 사진 증거에 관한 권한들 (Authorities Fingerprint and Photograph)
- 흑백필름(Black and White Film)
- 사진기 렌즈(The Lens)
- 조명에 관한 이론(Theory of Light)
- 35mm 카메라에 대한 소개(Introduction to the 35mm Camera)
- 현장의 깊이(Depth of Field)
- 디지털 이미징(Digital Imaging)
- 물적 증거의 유형들(Types of Physical Evidence)
- 작업장의 위험한 물체들에 관한 정보(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② 지문(指紋)에 관한 이론(Fingerprint Theory)

同교육은 자동분류시스템(Printrak)에 기반을 둔 지문유형인식을 제공한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주제들도 교육의 대상이다.

· 마찰융선분석(Friction Ridge Analysis)

이 교육은 量的/質的 마찰 융선을 분석하는 것이다. 각각의 학생들은 적어도 한 지문을 분석하고 확인하도록 요구되어질 것이다. 사용된 과정과 도달한 의견은 타 학생들과 교육관들 앞에서 설명해야하며,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찰융선분석에 관한 양적/질적 방법은 난해한 지문을 검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방법으로서 가르쳐질 것이다.

· 지문 대조(Fingerprint Comparisons)

- | | |
|--------------------------------------|--|
| • 지문의 역사
(Fingerprint History) | • 피부조직(Structure of the Skin) |
| • 능선학(Ridgeology) | • 다공검사법(poroscopy) |
| • 땀의 구성
(Compositon of the sweat) | •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측정
(Digit Determination) |
| • 지문대조
(Fingerprint Comparision) | • 보고서 작성(Report Writing) |

심사를 받을 때, 개별 교육생들은 모의범죄현장에 남겨져 있던 지문 10개 중 최소한 7개를 정확하게 식별해 낼 수 있도록 요구되어진다. 모의(模擬)범죄현장의 지문들은 30개의 잠재지문들 중 하나만 채집해내도록 요구된다. 이 대조심사에 대한 준비로서, 각 교육생들은 최소한 모의범죄현장의 100개의 지문들을 찾고, 비교하여 정확하게 식별해 내야 한다. 교육생들의 교육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모니터링 되며, 대조시험과 함께 완결된다.

③ 사진에 관한 이론(Photographic Theory)

사진이론은 다음과 같은 주제아래 교육이 이루어진다.

- | | | |
|---|------------------------------------|--|
| • 사진 화학물질
(Photographic chemicals) | • 복사하기(Copying) | • 필름의 관리와 보관
(Care and handling of films) |
| • 디지털 이미징
(Digital Imaging) | • 사진컬러의 온도
(Colour temperature) | • B&W 여과법
(B&W Filtration) |
| • 부정적인 평가
(Negative evaluation) | • 사진기 누르는 과정
(Push Processing) | • 플래쉬 조명
(Flash illumination) |
| • 작은 물체의 사진촬영
(Small Object Photography) | • 야간사진촬영
(Night Photography) | • 증거물의 사진촬영
(Evidential photography) |
| • 자외선 · 적외선 사진촬영
(Ultraviolet and Infrared
Photography) | • 노출 측정기
(Exposure Meters) | • 투시화법(Perspective) |

④ 사진촬영 실습(Practical Photography)

개별 교육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진도구와 기법들에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진 일련의 실무적인 연습을 완수해야 한다(75%). 이러한 임무뿐만 아니라, 각교육생들은 실제적인 범죄현장조사 기간 동안 필요한 5가지의 사진기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진촬영들은 적절한 노출량(exposure), 구성(compositon), 처리과정(processing), 청결(cleanliness)에 대해 평가한다(25%).

⑤ 범죄현장에 관한 이론(Crime Scene Theory)

각 교육생들은 범죄현장이론에 관한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되어진다. 각 강의들을 통하여 교육생들에게는 범죄현장조사에서 법의학 감식수사관에 의해 행해진 다양한 기법들이 제공된다.

- 법적 · 과학적 연계(Legal and scientific implications)

- 증거 도표들(Evidence charts)
- 사체에 관한 신원확인(Identification of the deceased)
- 범죄현장의 위생과 보전(Crime scene health and safety)
- 파우더와 화학물질을 이용한 지문감별(Detection of fingerprints-powers and chemicals)
- 사체의 지문채취와 적절한 관리(Fingerprinting and proper handling of cadavers)
- 거시적인 사진촬영의 소개(Introduction to macro photography)
- 자동차 타이어 대조와 식별(Vehicle tire comparison and identification)
- 증거물의 탐색 · 인식 · 수집 · 관리(Search, recognition, collection and handling of exhibits)
- 2차원 · 3차원적 흔적들의 발견과 식별(Recovery and identification of two and three-dimensional impressions)
- 범죄현장의 보호와 기록(Protection and recording of the scene)
- 감정가의 증언에 관한 소개(Presentation of expert evidence)
- 지문사진촬영(Fingerprint photography)
- 혈흔유형해석(Bloodstain pattern interpretation)
- 물은 자국(Bite marks)
- 계획 설계(Scale plan drawing)
- 범죄현장비디오 입문(Introduction to crime scene video)
- DNA의 채집과 처리과정(DNA Collection and Processing)

(2) 연방경찰학교(Training Academy)

12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캐나다 연방경찰(RCMP)은 수사경찰관들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1994년부터 연방경찰학교(Training Academy at Depot Division in

Regina, Saskatchewan)에서 캐나다법집행관훈련(Canadian Law Enforcement Training Unit: CLET) 프로그램을 운용 중에 있다.¹⁵⁷⁾ 현재까지 5,000여명의 연방, 州 및 지방자치체 경찰관들이 관련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심지어는 스페인, 하이티, 미국 경찰관들까지 교육을 받고 있다. 호주를 비롯한 미국의 다양한 법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¹⁵⁸⁾

일반법집행과정(General Law Enforcement Courses),¹⁵⁹⁾

토착원주민(인디언)대상 경찰활동과정(Aboriginal Policing Courses),

전문운전훈련과정(Driver Training Courses),

무기사용훈련과정(Firearms Courses),

방어전술과정(Defensive Tactics Courses),

연습 및 훈련과정(Drill and Tactical Training Courses),

전입자 기술훈련과정(Transferable Skills Courses),

집중화된 훈련과정(Centralized Training Courses)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집중화된 훈련과정에 포함된 법과학 전문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면, 기본법의감식, 고급법의감식, 법인터뷰기법들, 혈흔패턴인식, 범죄현장 비디오촬영, 형광 기계활용법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3) 벤쿠버경찰의 수사교육

British Columbia州 경찰학교(Police Academy)에서는 州內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지 않은 11개 지방자치경찰관서의 경찰관 신규 및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벤쿠버경찰청 소속 신규임용 경찰관들은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다. 캐나다에서 제일 장기간 교육을 실

157) 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l/crs_e.htm.

158) 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l/crs_e.htm#Forensic.

159) 법집행수사과정 I, II, 사기범죄수사, 화재범죄 범죄수사, 인터넷범죄수사 등이다.

시하고 있는 바, 순경급 신규 교육과정(35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교육과정(Block I) 11week, Police Academy에서 이론교육

2단계 교육과정(Block II) 관서실습과정(해당경찰관서, 수사, 순찰, 교통부서)

3단계 교육과정(Block III) 13-17week(Police Academy) 이론 심화교육을 통하여 자
질을 인증받고(Qualified)

4단계 試補기간(12-18개월)을 종료한 後에 정식경찰관으로 자격을 인정받는다
(Certified).

주요 교육분야는 법률(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연방법규)분야 15.6%, 범죄수사
및 순찰기법분야 16.6%, 의사소통기법, 피의자체포관련 내용, 추적운전연습, 도로교통법
규 및 사고조사요령, 사격술 및 화기류조작, 체력단련 등이다. 구체적인 수업량과 교과
목 등은 (표: 26)에 소개되어 있다.

<표 26> 캐나다 밴쿠버경찰청 순경급 기본교육내용

교육 분야	1단계기초이론 (Block I)	2단계 관서실습	3단계 심화교육 (Block III)
Legal Studies	71시간		52시간
Investigation & Patrol	57시간		75시간
Communication Skills	48시간		62시간
Arrest & Control	42시간		29시간
Driver Training	47시간		21시간
Firearms	42시간		28시간
Fitness & Drill	34시간		42시간
Traffic Studies	37시간		34시간
행정, 시험 등	21시간		38시간
합 계	411시간		381시간

<표 27> 캐나다 벤쿠버경찰청 순경급 기본교육 상세내용 및 수업시간

법률분야 Legal Studies	Block I 세부내용	시간	BlockIII 세부내용	시간
1	Introduction to Law,	2	Entrance Exam	2
2	Introduction to Policing,	2	Fraud/Forgery	4
3	Reasonable Grounds	3	Sex Offences	2
4	Powers of Arrest	10	Weapons	5
5	Compelling Court Appearance	2	Liquor Act	2
6	Printing/Photography	1	Court Orders	3
7	Powers of Arrest Exam	2	Search Warrants	10
8	Search & Seizure	12	Mid-term Exam	2
9	Search & Seizure Exam	2	Police Act	3
10	Right to Counsel & Statements	4	Homicide	2
11	Use of Force	3	Defence	2
12	Criminal Procedure	5	Evidence	4
13	Mid-term	2	Court Preparation	2
14	Offences Against the Person	5	Final Exam	2
15	Domestics,	3	Court Day	7
16	Offences Against Property,	5		
17	Control Drug Substance Act	2		
18	Young Offenders Act	2		
19	Police Officer Centered Offences	2		
20	Final Exam	2		

범죄수사 및 순찰분야 Investigation & Patrol	Block I 세부내용	시간	Block III 세부내용	시간
1	Introduction to Patrol	1	Credit Cards	2
2	Contact/Cover/FieldInterview	3	Informants	3
3	Photo Line-ups	1	Police Dogs	2
4	Prisoner Transport	1	Cell Phone Fraud	2
5	Family Violence	3	Sexual Assault	2
6	Family Violence Tactics	2	Bomb Calls	2
7	Unknown Risk Vehicle Stops	2	Ident Science	3
8	Crime Scene Protection	3	Morality/Prostitution	3
9	Stolen Autos	2	Asian Crimes	2
10	Robbery & Home Invasion	2	Outlaw Motorcycle Gangs	2
11	Sudden Death & Investigations	4	Forensic Labs	4
12	High Risk Vehicle Stops- Code 5	1	Death Investigation	3
13	Building Search/High Risk Arrest	3	Hostage Negotiations	2
14	High Risk Veh./ Building Search-Code 5	7	FATS	5
15	Drug	3	Simulations	24
16	Morality/Sex Trade	1	Youth Gangs	4
17	CPIC	3	Hazmat	7
18	Simulations	12	Quiz & Exam	3
19	Police Dogs	1		
20	Quiz & Exam	2		

직업과 의사소통 Professionalism & Communication Skills	Block I 세부내용	시간	Block III 세부내용	시간
1	Introduction	2	Block II Review	1
2	Police Radio	1	POP	2
3	Police Notebook	1	Hate Bias	2
4	Ethics	4	Policing Public Disorder	2
5	Power Crimes	1	Harassment	4
6	Public Contact	1	Diversity Projects	7
7	Problem Premises	1	Schizophrenial	2
8	Crime Scene Protection	3	Elder Abuse	2
9	Family Violence	3	Suicide Prevention	2
10	Community Based Policing	3	Conflict Resolution	4
11	Investigation Reports	3	Child Abuse	4
12	Diversity	4	Interviewing Skills	14
13	Communicable Diseases	2	POP Presentations	2
14	ViCLAS	2	Mental Illness	3
15	Public Contact	1	Stress Management	3
16	Comp Tacs	3	Police and Leadership	3
17	Comp Tacs Sims	5		
18	Quiz	2		
19	Interview	2		
20	FATS/Statements	4		

체포와 통제 Arrest &Control	Block I 세부내용	시간	Block III 세부내용	시간
1	Force Options Theory	2	Arm Levers/Stuns	3
2	Balance and Stance	1	Handcuff/Search- I	2
3	Arm Levers	2	Throw /Take downs	2
4	Arm Levers	2	Pressure Point Compliance	1
5	Handcuff/Search-1	2	Ground Fighting	2
6	Handcuff/Search-2	2	Ground Fighting	2
7	Wrists and Hands	1	Baton	2
8	Pressure Point	2	LNR	2
9	Close Quarter Confrontation	4	Positional Asphyxia	1
10	Stuns	1	OC Spray	1
11	Take Downs	2	Handgun Retention	2
12	Ground Fighting - I	2	Multiple Assailants	3
13	Ground Fighting- II	2	confront. Situation	4
14	Baton- I	2	Edged Weapons	2
15	Baton- II	2		
16	LNR- I	2		
17	LNR- II	2		
18	OC -Spray	2		
19	Edged Weapons	4		
20	Handgun Retention	3		

사격, 총기훈련 Firearms Training	Block I 세부내용	시간	비 고
1	Safety	1.5	
2	Handgun/Ammunition Orientation	1.5	
3	Nomenclature /Pistol Function Test	1.5	
4	Administrative Loading/Unloading	1	
5	Four Points of Marksmanship	2	
6	Cleaning/Maintenance	1	
7	Legal and Practical Applications	1.5	
8	Conditions of Carry/Draw and Holster	1.5	
9	Reloading	1.5	
	Skills Practice	4.5	close distance, reloading, moving
10	Stoppage	1.5	
	Skills Practice	3	distance, barricades
11	Pistol Inspection/Function Test	1	
	Skills Practice	5.5	close quarter, one handed, distance, flashing, body armour
	Skills Practice	5	Prov. C.O.F. timed stage practice
12	Mental /Phsyca Conditioning	2	
	Skills Practice	3.5	Prov. COP timed
	Testing	2	written exam/pistol inspection/function test
	Qualification-Prov.C.O.F.X2	1	

추적운전 Driver Training	Block I 세부내용	시간	Block III 세부내용	시간
1	Introduction-Road Sense Driving	7	Driving-Track	21
2	Drive with Fitness	7		
3	Vehicle Dynamics & Control	2		
4	Pertrip & Orientation	1		
5	Steering and Braking	2		
6	Skills Practice	3		
7	Response Course-Practice	3		
8	Emergency Vehicle Equipment	2		
9	Skills Practice	2		
10	Decision & Reaction	2		
11	Skills Practice	2		
12	Backing, Turing & Parking	2		
13	Skills Practice	3		
14	Qualifying	4		

4. 소 결

캐나다는 전형적인 연방경찰 및 자치경찰 체제이다. 특이한 것은 연방정부와 상당수의 자치단체간들이 契約을 통하여 연방경찰관을 파견받아서 당해 자치단체에 근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수사업무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의 관할사항이다. 그러나 국도가 광대하고 자치경찰조직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공조수사가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연방경찰의 관할사항은 주로 범죄예방 및 聯邦法위반에 대한 조사, 계약을 맺은 州와 準州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범죄예방, 수사 그리고 법령과 질서의 유지, 요인에 대한 경호 그리고 다른 연방법집행기관에 수사지원 등이다. Ottawa에 있는 연방의회 청사와 같은 연방재산도 보호한다.

연방의 수사경찰은 주로 과학수사지원(범죄수사자료 및 감식), 범죄정보(조직범죄, 重범죄 혹은 국가안보)지원 및 통합업무(unite)들을 담당하고 있다. 일선 수사경찰 조직 가운데, 범죄정보부서(Criminal Intelligence Section, 조직범죄, 환경범죄, 마약거래, 인신매매, 돈세탁, 사이버범죄, 범죄조직의 위장사업, 테러관련 정보취급)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캐나다의 형사사법제도는 영국의 영향을 강하고 받았는 바,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경찰과 왕립기소관(검찰기능)과의 관계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Crown Attorney”이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기능과 역할이 분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은 법과학연구소가 연방경찰 직속기관이라는 점은 시사점이 많다. 또한 개별경찰관서에 설치된 과학수사부서 및 다양한 과학수사지원 시설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과학수사부서의 규모 역시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일선 자치경찰에서는 범죄증거분석 대상물 가운데 화학적·생물학적·의학적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연방경찰의 과학수사실험실(Crime Lab)에 의뢰하고 있다.

벤쿠버경찰청의 과학수사부서의 근무패턴(4일 근무-4일 휴무, 4개 근무팀)은 향후 한

국의 일선서 과학수사계 근무패턴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듯 싶다.

경찰관들은 신규 임용된 후, 일정기간 순찰부서 등에서 근무한 후 개별경찰관의 능력, 적성, 선택에 따라서 수사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수사부서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화교육(再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수사직무교육은 주로 연방경찰학교, 연방경찰대학, 지방경찰학교 등에서 실시되며, 다양하고 심도있는 “전문화 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되어 있다.

경찰관 신규입직 교육과정은 대체로 24-35주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동일교육과정에서 수사직무 관련 기초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제5절 일 본

1. 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사경찰의 전문성 제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 인권보장적 수사절차의 확립 등을 위한 쇄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장은 이러한 쇄신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론의 하나인 각국의 수사경찰제도에 대한 비교법제적 연구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사경찰의 쇄신을 위한 시사점을 각국의 수사경찰제도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수사경찰이 선진적인 수사경찰로서 거듭나기 위해 지향해야할 큰 방향성은 수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인권보장적 수사절차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제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러한 방향성을 전제로 이에 부합하는 법제도나 시책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여기에서는 우선 일본 수사경찰의 개혁과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수사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 이후의 수사경찰의

개혁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독자적 수사권 부여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수사경찰에 타산지석으로 참고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사경찰제도의 전체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사경찰의 조직구조, 인사 운영 및 교육체제 등을 세부목차로 하여 일본 수사경찰에 대하여 살펴보되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주목되는 제도나 시책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도록 한다.

2. 수사경찰의 개혁과 발전과정

1) 경찰수사권의 독립과 수사경찰의 조직정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군총사령부는 일본의 정치·행정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검찰과 경찰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단행하게 된다. 그 개혁의 큰 방향은 경찰조직의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검찰조직을 이전의 수사주재자의 지위에서 공소유지에 주력하게 하고, 대신 경찰을 주된 수사기관으로 하는 영미식의 형사사법제도를 이식하는데 있었다.

당시 연합국군총사령부는 전후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전면개정에 즈음하여 ① 구범의 형태는 검찰권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중앙집권화를 초래하는 것이며, ②검찰을 수사의 중핵으로 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실정에 반한다, ③구범 하의 실정을 보면 검사의 지휘·명령은 철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했으며, 또한 ④지휘·명령을 위반했을 때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명확하지 못했다고 하여 구범 하의 제도와 운용실태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범죄수사의 제1차적 책임을 경찰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찰 자체도 형사경찰의 쇠신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사권의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사법성은 연합국군 총사령부의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면 범죄수사활동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사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책임을

의 소재가 불명확해 진다, 여론의 대세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의 재야법조도 경찰에 의한 직권남용, 인권유린을 제거하고, 독직사건, 사회적 중대사건 등의 적정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의한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합국군총사령부는 결국 전술한 이유에 더하여, 검찰의 지휘, 명령 하에서 두는 것은 경찰의 민주화, 지방분권화의 길을 막으며, 오히려 경찰의 수사책임을 명확히 하면 책무에 상응하는 실력이 양성되어 인권유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형사소송법상의 검경관계를 설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이 1948년 7월 5일에 제2국회에서 가결되어 현행형사소송법이 제정되었으며, 194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현행 일본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지 않고, 제1차적 본래적 수사책임을 경찰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수사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설정하였다. 다만 수사의 적정화 및 효율화 그리고 적절한 공소권 행사를 기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 의한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지휘 및 지시의 권한을 인정하였다.¹⁶⁰⁾

한편 국가지방경찰본부는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맞아 체제의 정비를 행하며, 패전전에 있어서는 내무성 경보국 방법과에 속한 하나의 계에 불과했던 수사부문을 일거에 본부 형사부로 승격시켜, 그 밑에 수사과와 감식과 및 범죄통계과의 3개과를 신설하였다¹⁶¹⁾. 아울러 감식과의 부속기관으로 과학수사연구소(현재의 과학경찰연구소의 전신)를 설치하여 과학수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패전전의 사법성훈령의 형태로 정해져 범죄수사의 일반준칙을 규정하였던 ‘사법경찰직무규범’이 폐지되고, 국가지방경찰본부장관의 훈령으로서 ‘범죄수사규범’이 제정되어 194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¹⁶²⁾. 경찰이 독립한 수사주체로 된 새로운 제도 하

160) 이러한 개혁은 경찰이 지방분권화되었음에도 검찰동일체의 원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통일적 국가기관인 검사가 구법하와 마찬가지로 사법경찰을 전면적으로 지휘하는 된다면 경찰민주화의 정신에 반하는 결과로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구법하에 있어서도 실제 운용면에서는 검사의 지휘명령은 그다지 철저히 못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범죄수사의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했다는 반성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고 있다. 宮下明義, 新刑事訴訟法逐條解説Ⅱ, 司法警察研究會公安發行所, 1949, 24면이하.

161) 國松孝次, 刑事警察の歴史と今後のあり方, 講座 日本の警察(第2卷 刑事警察), 立花書房, 1993, 7면.

에서는 경찰이 행하는 수사에 대하여 직무규범에 대하여는 당연히 경찰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후 일본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영미식, 특히 미국식의 당사자주의와 공판 중심주의를 도입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 검사의 공소관으로서의 소추활동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던 귀결이며, 또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의해 지배되던 패전전의 형사절차에 대한 반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2) 수사권독립 이후의 수사경찰의 위기와 그 극복과정

전후의 형사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에 의하여 경찰이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주역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검경관계가 구축되었으나, 이러한 관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전후의 열악한 치안정세에 더하여 수사간부의 지휘능력의 결여, 수사교육의 미흡 등 경찰의 수사능력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또한 재판관에게 독자적으로 체포장의 발부를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이 체포장의 청구에 있어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으로써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이전부터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의한 경찰중심 수사체제에 비판적이었던 검찰이 형벌권의 적정한 운용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명목하에 패전전의 검찰중심 수사제도를 부활하겠다는 주장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경찰이 가진 제1차 수사권에 가능한 한 제약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¹⁶²⁾

현행 형사소송법이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자주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총사령부의 점령이 종결됨과 동시에 점령정책의 재검토의 일환으로서

162) 1949년(昭和24年)의 ‘犯罪搜查規範’은 응급적으로 제정되어 그 내용에 있어서 불충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곧 재검토되어 이듬해인 1950년 4월 개정된 범죄수사규범이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서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1953년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및 1954년의 경찰법 전면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현행의 ‘犯罪搜查規範(1957년 7월 11일 國家公安委員會規則 제2호)’이 제정되었다.

163) 새로운 검경관계의 정립이후 양자의 갈등이 가장 가시화된 예로는 1952년 7월 21일 파괴활동방지법(법률제240호)의 공포·시행과 관련된 검경대립과 1953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을 들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전면적 개정이 논의되었으며, 1953년 8월 7일에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법률제172호)이 이루어졌다(동년 11월 9일 시행). 이 개정에 있어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도 약간의 개정이 수반되었다.

당시 동시 진행적으로 행해졌던 경찰법 개정작업이 행해지면 종래의 이원적인 제도에서 도도부현경찰로 일원화되어 경찰권이 강화되므로 검찰에 의한 체크를 강화하려는 검찰 측의 움직임이 있었다. 즉 1953년 2월 법무대신은 법제심의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에 관하여 자문을 행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93조의 일반적 지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199조의 사법경찰직원에 의한 체포장의 청구시 검사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자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법제심의회의 회신에 기초하여 형사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은 1953년 2월 제15회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중의원의 해산으로 심의되지 못했으며, 동년 7월 제16회 특별국회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가한 제193조의 개정안이 다시 제출되었다.

이 정부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경찰의 제1차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며, 수사의 실권을 제이차 세계대전 이전과 같이 검사에게 넘기려는 것이라며 경찰 측이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이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서는 입장이 양분되어 격렬한 공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검사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일반적 지시(형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에 대한 일부수정, 즉 개정 전에 “일반적 지시와 공소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수사의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준칙을 함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수사의 적정을 위해 그 외 공소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적인 준칙을 정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개정되었다. 제193조의 개정은 1953년 7월 3일 제16회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제심의회의 답신에 기초하였던 개정에 관한 정부안대로 성립한 것이지만, 중의원 법무위원회는 “검사가 정한 一般的 指示를 행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이 미리 긴밀하게 연락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정부는 바란다. 상기 일반적 지시에 의해 개개의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는 부대결의를 덧붙임으로써 개정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둘째, 경찰의 체포장의 남용방지에 관한 조치로서 개정전의 사법경찰원에게 부여되었

던 체포장 청구권을 경부 이상의 사법경찰원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체포장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경찰원은 체포장을 청구할 때 미리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었던 당초의 정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가 법관에 의한 체크가 있으면 청구의 남발은 방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당초의 정부안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가결한 것이다.¹⁶⁴⁾

한편 경찰의 조직 면에 있어서도 1954년에 구경찰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지역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경찰이 경찰사무를 분담한다는 이원화된 제도가 폐지되고, 경찰의 기본적인 단위를 도도부현으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경찰이 도도부현경찰의 사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경찰법이 성립되었다. 이 전면 개정은 구경찰법의 경찰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면서 능률성과 치안책임의 명확화의 요청을 배려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¹⁶⁵⁾

3) 수사경찰의 쇄신과 발전

전술한 바와 같이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중책을 맡게 된 수사경찰이 열악한 치안정세, 수사간부의 지휘능력의 결여, 수사교육의 미흡, 수사권한의 남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자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수사경찰의 비전문성과 인권침해적 수사현실에 대한 외부평가는 결국 경찰수사권에 대한 재정비의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고, 자칫 수사경찰의 위상이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1953년 국회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속에 경찰수사의 독자성이 지켜지게 되자, 일본경찰은 이를 구태에 대한 반성과 수사경찰의 개혁을 위한 원동력을 활용하게 된다.

그 이후 일본경찰이 수사경찰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1954년 새롭게 전면개정된 현행 경찰법의 시행에 따른 도도부현경찰 단위의 광역자치경찰제로의 재편과 더불어 범인체포 등의 범죄수사활동은 모두 도도부현에 단체위임되어 도도부현경찰의 책임하에서 행해지는 사무로 정비되었다. 또한 국가의 경찰

164) 横井大三, 改正刑訴訟法の經過, 改正刑事訴訟法(刑法雜誌別冊), 有斐閣, 1953, 110~111면.

165) 末井誠史·島根悟, 旧警察法下の警察, 講座日本の警察(第1卷 警察總論), 立花書房, 1993, 54면.

기관으로서 새롭게 창설된 「경찰청」은 범죄수사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이나 범죄 감식, 범죄통계 등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운영해야 할 수사업무나 각 도도부현경찰간 수사활동의 조정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경찰법에 따른 경찰조직의 광역자치경찰 단위로의 재편은 구경찰법 하에서 문제시되었던 수사활동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시정하여 경찰의 수사력 강화를 도모하는 기반이 되었다.

가. 「형사경찰강화대책요강」의 제정 등

패전 직후 혼란기에 나타났던 범죄의 다발현상은 10년 정도를 경과하자 진정화되었으나, 고도경제성장과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수반하여 범죄의 도시집중화 경향이 강화되었고, 생활권의 확대에 수반한 범죄의 광역화 경향이나 범행수단의 흉폭화·교묘화 등의 경향이 현저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경향의 변화에 비하여 수사경찰의 수사기법이나 역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1953년 5월 참의원 지방행정위원회에서 흉악범죄의 조기해결과 수사경찰의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극히 이례적인 「형사경찰에 관한 결의」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는 특히 초동수사활동의 결함, 수사장비 활용의 불충분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청에서는 1953년 5월 25일 「형사경찰강화대책요강」을 제정하여 수사경찰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요강에서는 특히 범죄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사에 전종하는 경찰관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보아 형사분야의 교육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경부(경감)이하의 수사경찰관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구경찰학교에 경부보(경위), 순사부장(경사)의 수사전문교육코스(소위 '형사학교')를 신설하고, 경부보 이하의 모든 수사경찰관은 이 전문과정을 수료한 자로 충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위수사간부로서 필요한 수사의 지휘 및 관리 기타 고도의 전문적 기술에 관한 연수를 위해 1967년 경찰대학교에 「특별수사간부연수소」를 개설하였으며, 이 이외에도 수사체제의 정비를 위해 특히 초동수사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1965년에 수사경

찰관 4,900명을 대대적으로 증원하였다.

나. 「형사경찰쇄신강화대책요강」의 제정·시행 (1970년)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수반된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범죄의 광역화, 스피드화가 더 한층 가속화되었고,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조직적 범죄의 출현과 소년범죄의 증가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형법범의 검거율도 1965년 이후 연속해서 감소되어 1969년에는 그 검거율이 5년전에 비하여 10%이상 떨어진 53.8%대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범죄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1970년 10월 새롭게 「형사경찰쇄신강화대책요강」을 제정하였다. 이 요강에 기초하여 모든 도도부현경찰에 「기동수사대」를 설치완료하였으며, 「특수사건 전담수사계」와 「감식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수사의 정보화가 추진되어 지명수배피의자에 관한 정보의 조회업무를 비롯한 컴퓨터를 활용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 시작되었다(1974년).

다. 「형사경찰강화종합대책요강」의 제정·시행 (1980년)

정보화사회의 진전, 고학력사회의 도래 등의 사회구조의 변화와 국민의식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사건이나 대형 기업범죄 등의 주요 지능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중요지능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를 비롯하여 광역범죄, 국제범죄, 컴퓨터범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수사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1980년 10월 「형사경찰강화종합대책요강」을 제정하였다. 이 요강은 ①중요지능범죄 수사력의 강화, ②광역범죄 수사력의 강화, ③과학수사력의 강화, ④우수한 수사관의 육성과 지휘능력의 향상이라는 4개의 기본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강에 의거, 중요지능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도도부현경찰의 지

능범계 수사요원의 증원이 이루어졌으며, 대도시권 경찰본부(지방경찰청)에 「기업범죄 특수수사반」과 「고소·고발사건처리센터」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형기업범죄나 중수뢰사건 등 중요지능범죄의 지속적인 적발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 시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1964년에 제정되었던 「광역중요사건 특별수사요강」을 정비하여 1981년에 「광역중요사건수사요강」을 새로이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정사건제도, 준지정사건제도 및 등록사건제도를 정리·통합하였다. 1985년에는 경찰대학교에 「국제수사연구소」를 신설하였다.

과학수사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1983년에는 「지문자동식별시스템」이 실용화되어 범죄현장에 유류된 지문의 조회나 체포된 피의자의 신원확인 및 여죄확인 등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전국의 감정기술직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연수를 행하기 위해 1983년 4월 경찰청 과학경찰연구소에 범고학연수소를 설립하였다. 또한 1986년에는 경찰청에 「감식자료센터」가 설치되었다.

한편 이 시기를 전후하여 패전 이후 수사경찰을 지탱해온 인적자원인 베테랑형사들의 대대적인 정년사태가 예상되자 수사경찰관의 후임자 양성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사관으로서 뛰어난 소질과 열의를 가진 자를 조기에 등용하기 위해 수사관의 선발기준을 정한 「형사선고요강준칙(刑事選考要綱準則)」과 도도부현의 경찰학교에서의 신입형사교육 커리큘럼인 정한 「형사임용교양기준」등이 이에 해당한다(자세한 내용은 수사경찰의 교육부분에서 후술).

라. 「형사경찰총실강화대책요강」의 제정·시행 (1986년)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중반경부터 일본에서는 범죄의 질적 변화는 물론 컴퓨터범죄의 본격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식품에 독극물을 투입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외국인범죄나 일본인에 의한 국제성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탐문수사나 장물수사를 단서로 하는 범인검거가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등 수사 활동이 점차 곤란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과거의 중요사건에 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속출하면서 자백의 임의성과 신용성 등 증거능력의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재판실무가 정착됨에 따라 수사경찰이 더욱 치밀한 수사를 수행해야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그리고 1985년 1월 조직폭력단인 소위 야쿠자 사이의 격렬한 세력타툼사건(야마구치파(山口組)와 일화회(一和會) 사이의 세력다툼)이 발생하자 조직폭력단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기도 했다.

이러한 정세를 바탕으로 일본경찰은 1980년에 제정되었던 위 요강을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1986년 10월 「형사경찰충실강화대책요강」을 제정하였다.

이 요강에 의해 수사관의 육성책으로서 종래 강의형식의 수업 중심이었던 수사교육을 보완하여 우수한 수사기술을 보유한 베테랑수사관이 수사경험이 비교적 일천한 수사관에게 실지훈련을 통해 직접 수사기술을 전수하는 멘투멘방식의 실천교육을 도입하였고, 동시에 우수한 수사간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6개월에서 1년정도 실무를 통해 연수를 실시하는 「장기실무연수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증거관계의 음미·검토를 철저히 하기 위해 사건을 지휘하는 상급간부가 「수사관계검토회」를 개최하도록 조치하였고, 조사관 등의 법정증언을 위한 출석이나 기소 후 보충수사의 증가에 대응하며 공판결과에 대하여 경찰이 책임을 지는 책임수사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전국의 경찰본부에 「형사사건 공판연락계」를 설치하였다.

과학수사역량의 강화 측면에서도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는 각종 감식자료를 미리 수집·분석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 데이터와 현장자료의 분석데이터를 조합함으로써 얻어지는 자료를 일선 수사경찰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6년 4월 경찰청 감식과에 「감식자료센터」가 설치되었다.

이 이외에도 급증하는 자동차이용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1980년 요강에 기초하여 연구개발을 시작했던 「자동차번호자동판독시스템」을 완성하여 1986년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범죄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수사지원시스템을 개발정비해 나갔다.

다. 사건해결에 강한 수사경찰의 확립 (1989년 이후)

앞에서 살펴본 요강들은 기본적으로 수사경찰분야의 시책실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성격의 것이지만, 1988년 8월부터 1989년 6월에 걸쳐 발생한 연쇄여아유괴사건을 계기로 수사력의 강화는 단순히 수사경찰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체 경찰조직의 중요한 과제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그 결과 1989년 5월 경찰청 차장통달(通達)로 발한 「사건에 강한 경찰확립방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하여」를 통해 경찰청 및 각 도도부현경찰에 「사건에 강한 경찰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같은해 11월에는 경찰청의 종합대책위원회에서 검토·정리한 내용을 집약한 「사건에 강한 경찰확립의 위한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 지침에 기초하여 1990년 5월 「중요사건등 수사본부운영요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에 광역적 수사훈련이 실시되고, 「피의자사진검색시스템」¹⁶⁶⁾의 운용도 개시되었다. 또한 1991년에는 범죄수범화상정보검색시스템의 운용을 개시하였고, 수사경찰관에 대한 사기고양책으로서 무선호출기 지급제도이나 수사차량용 렌트카대여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3. 수사기관의 종류 및 수사경찰의 지위·역할

여기서는 일본 수사경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형사절차상 수사기관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이 가운데 수사경찰은 형사절차상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66) 도도부현경찰에서 촬영한 피의자사진을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경찰서 등에서 피의자 사진을 신속하게 입수함으로써 범죄의 광역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1) 수사기관의 종류

일본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사법경찰직원, 검찰관(주, 검사), 검찰사무관의 3종류로 대별된다.

가. 사법경찰직원

일본의 경우 사법경찰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총칭하여 사법경찰직원¹⁶⁷⁾이라 칭하며, 횡적으로는 수사를 담당하는 사항이 일반적인가 한정적인가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분되고, 종적으로는 사법경찰원과 사법순사로 구분된다. 사법경찰원이 책임자로서 수사를 실행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법순사는 사법경찰원을 보조하여 사실행위적 수사를 실시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관계이다.

일반사법경찰직원인 경찰관의 경우, 그 계급은 경찰청장관(‘경찰청장’에 해당)을 제외하고 警視總監(치안정감)·警視監(치안감)·警視長(경무관)·警視正(총경)·警視(경정)·警部(경감)·警部補(경위)·巡查部長(경사)·巡查(경장·순경)의 9계급이 있으며, 이 가운데 순사부장 이상의 경찰관은 사법경찰원에 해당하고, 최하위 계급인 순사만이 원칙적으로 사법순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법순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전체 경찰관 중 사법순사가 30% 정도, 사법경찰원이 70%를 점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과 비교되는 부분이다(<표 28> 참조).

167) 사법경찰직원이란 사법경찰원 및 사법순사의 총칭으로 관명이나 직명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 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표시하는 명칭이다.

<표 28> 경찰관의 계급별 정원비율(한일비교)

한 국			일 본		
경무관, 총경(0.5%)	15.0%	사법경찰관	사법경찰원	69.1%	경시정이상 (0.9%)
경 정 (1.4%)					경 시 (2.7%)
경 감 (3.2%)					경 부 (6.9%)
경 위 (10.0%)					경부보 (28.9%)
경 사 (15.7%)	85.0%	사법경찰리	사법순사	30.9%	순사부장 (29.9%)
경 장 (31.9%)					순 사 (30.8%)
순 경 (37.5%)					

주) 2004년도 기준(한국 경찰백서, 일본 경찰백서 및 경찰법시행규칙의 정원기준 참조).

나. 검찰관과 검찰사무관

현행법상 검찰수사의 주체로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이 있다. 검찰관은 제2차적 수사 기관이지만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구류청구권, 변사체검시권, 증인심문청구권 등 사법경찰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의 또 다른 수사주체인 검찰사무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의 보조자이다(제191조 2항). 즉 검찰사무관이 스스로 수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행해야 하며, 또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수사하여야 한다. 폐전 이후 새로운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독자적 수사인력 확보라는 의도 하에 도입된 검찰사무관제도는 상관의 명을 받아 검찰청의 사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수사상 검사를 보좌하는 제도이다. 검찰사무관의 구체적인 수사권한은 사법경찰원보다는 약하고 사법순사보다는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29> 참조).

<표 29> 수사주체별 수사권한의 비교

구 분	검 사	사법경찰원	검찰사무관	사법순사
구류장(구속영장)청구권	○	×	×	×
증인신문청구권	○	×	×	×
변사체검시권	○	×	×	×
통신방수(감청)영장의 청구권	○	○	×	×
통상체포장의 청구권	○	○	×	×
체포피의자에 대한 석방권	○	○	×	×
고소·고발·자수사건의 수리	○	○	×	×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	○	○	○	×
감정유치·감정처분허가장 청구권	○	○	○	×
압수물의 대가보관·(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	○	○	×
압수물의 보관·폐기	○	○	○	○
긴급체포 및 사후영장청구권	○	○	○	○
영장없는 압수·수색·검증	○	○	○	○
피의자·참고인의 조사	○	○	○	○
공무소·공사단체에의 조회	○	○	○	○

2) 수사경찰의 지위·역할

가. 제1차적 수사기관

일본형사소송법 제189조는 제1항에서 경찰관이 '사법경찰직원'으로서 직무를 행하는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2항에서 "사법경찰직원은 범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경찰에 해당하는 사법경찰직원, 즉 사법경찰원 및 사법순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체적인 범죄수사의 권한에 있어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공히 범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제1차적 수사기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하여 검찰관의 수사에 관하여는 제191조 제1항에서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는 모든 범죄에 관하여 그것을 인지한 경우에 수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관에 대하여는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현행 일본의 수사체계는 경찰이 제1차적인 본래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후에 당해사건에 대한 제2차적인 보충적 수사를 담당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나. 구체적 수사권한

일본의 경우, 수사경찰이 개별사건의 수사에 있어 검사의 개입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하의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1) 대인영장 청구권 및 피의자석방권 등

일본형사소송법상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통상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사법순사를 포함한 사법경찰직원 모두에게 위 3가지 체포권한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¹⁶⁸⁾

경찰에 의한 통상체포에 있어 법관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경부(경감) 이상의 경찰관인 사법경찰원에게 부여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 긴급체포 후의 법관에 대한 사후적인 체포영장 청구에는 이러한 계급에 따른 자격제한이 없고, 사법순사를 포함한 모든 사법경찰직원이 청구할 수 있다(제210조 1항).¹⁶⁹⁾

경찰이 체포한 후 더 이상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독자적인 판단에

168) 한편 일본의 경우 경찰수사단계의 구속은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으며, 구속영장(일본어로는 구류장)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어 있다.

169) 다만 경찰실무적으로는 긴급체포후의 사후적인 영장청구는 가능하면 경부 이상의 경찰관 또는 당해 체포를 행한 경찰관이 청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범죄수사규범 제120조 1항 참조).

의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신구속은 법관에 대한 경찰의 직접적인 영장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¹⁷⁰⁾ 또한 당해 인신구속피의자에 대한 석방여부도 경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¹⁷¹⁾

(2) 대물영장 청구권 및 압수물 처리권한 등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관의 영장을 받아 압수, 수색, 검증, 통신방수(감청), 감정에 수반된 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물적 강제처분에 필요한 모든 영장은 경찰이 직접 재판관에게 청구하는 것이며 검사의 지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다만 영장청구에 있어 계급에 따른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바,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에 대한 청구권은 사법경찰원, 즉 순사부장(경사)이상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제218조 1항, 제224조 1항, 제225조 2항), 통신방수(감청)영장의 청구권은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지정한 경시(경정)이상의 사법경찰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범죄수사를위한통신방수에관한법률 제4조 1항).¹⁷²⁾

사법경찰직원 즉 사법경찰원 및 사법순사는 임의제출물에 대한 영치(제221조)와 압수물의 보관 및 폐기를 할 수 있으며(제222조 제1항), 사법경찰원은 검찰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처분을 행할 수 있다(동조 단서).¹⁷³⁾

170) 또한 사법경찰원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 관한 감정을 위한 감정유치장을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224조 1항).

171) 한국경찰의 경우, 실무상 현행법체포된 피의자를 제외한 인신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하여 미리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고 있으며(한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6조 1항), 또한 석방한 후에도 재차 사후적으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동조 3항). 한편 현행법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사전지휘없이 석방하고 있으며, 다만 석방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동규칙 제32조).

172) 한편 통신방수(감청)영장의 청구권은 검찰관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는 바, 즉 검사총장이 지정한 검사에 한하여 청구권이 인정되어 있다(범죄수사를위한통신방수에관한법률 제4조 1항).

(3) 기 타

이 이외에 사법경찰은 일반적인 임의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다(제197조 1항).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제198조, 제223조), 실무상 출석을 요구하는 한 수단으로서 임의동행이 활용되기도 한다. 공무소 및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실에 대한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198조 2항), 이 때 조회를 의뢰받은 해당기관은 보고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학식경험자에게 감정·통역·번역을 촉탁할 수 있다(제223조 1항). 이러한 처분들은 사법경찰직원 즉 모든 경찰관에게 명문으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4. 수사경찰의 조직체계

일본경찰은 국가경찰인 경찰청(1)과 자치경찰인 도도부현경찰(47개)로 이분화되어 있다. 수사사무에 관하여 보자면, 경찰청은 입안, 기획, 관리 등을 담당하며, 예컨대 한국 경찰청의 특수수사대와 같이 실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조직은 두고 있지 않다. 일본경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자치경찰인 도도부현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치경찰인 도도부현경찰의 수사조직은 한국의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경찰본부」(단, 동경도의 경우는 「경시청」) 내의 수사담당부서와 산하 경찰서의 수사조직이 양대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일본 자치경찰의 수사조직은 경찰서 중심의 수사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경찰본부(지방경찰청)를 중심으로 수사조직이 편성되어 있다는 상대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은 지방경찰청 내에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력규모도 매우 왜소함에 반하여, 일본은 경찰본부 내에 매우 세분화, 전문화시킨 수사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막대한 수사인력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경찰의 수사조직의 부서편성 및 인력배정의 개요는 대략 아래와 같다.

173) 한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의 범규상 압수물의 보관 및 폐기처분은 검사의 지휘를 요하지 않으나, 일본과는 달리 그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한국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9조 및 제130조). 또한 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에 관하여는 검사의 사전지휘가 있어야만 사법경찰관이 그 처분을 행할 수 있다(동법 제219조 및 제132조 내지 제13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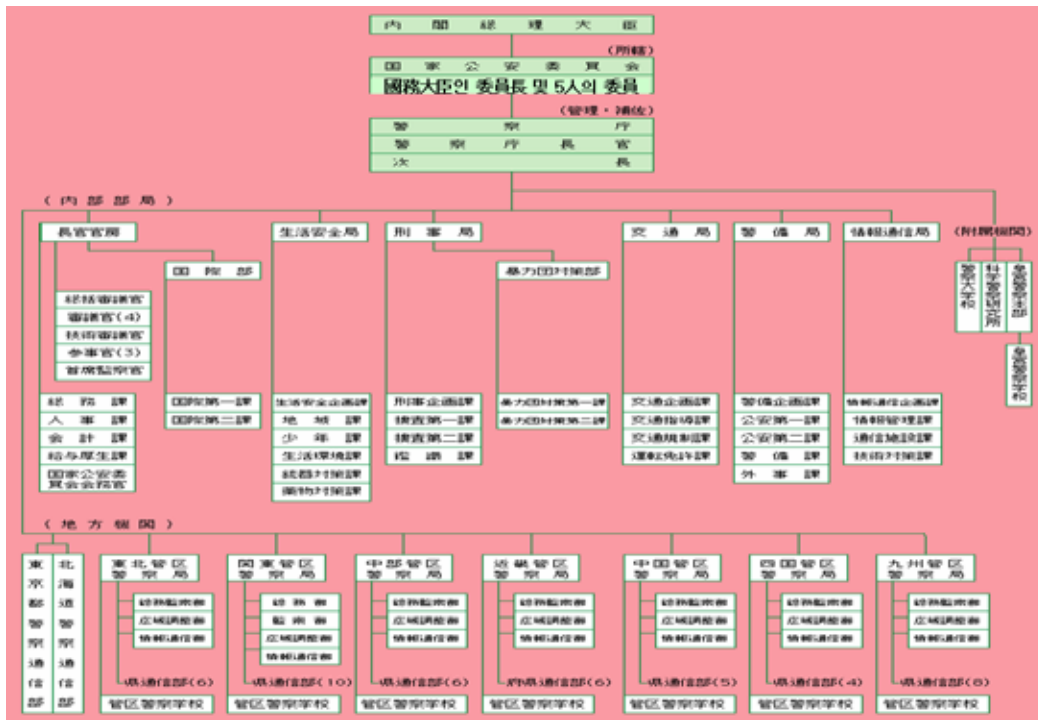
1) 국가경찰의 수사조직

가. 경찰청의 수사조직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된 부서로서 형사국을 두고 있으나, 형사국은 기획·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을 수사하지는 않는다. 형사국은 형사기획과, 수사1과, 수사2과, 감식과의 4개과와 폭력단대책부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수사1과는 살인·강도·폭력·절도 등의 일반범죄, 수사2과는 지능범이나 선거사범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폭력단대책부는 지정폭력단에 관한 정보수집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의 경우, 일반형범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형사국과 별도로 특별범위외의 범죄수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생활안전국은 생활안전기획과, 소년과, 지역과, 생활환경과, 총기대책과, 약물대책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4> 국가경찰(경찰청)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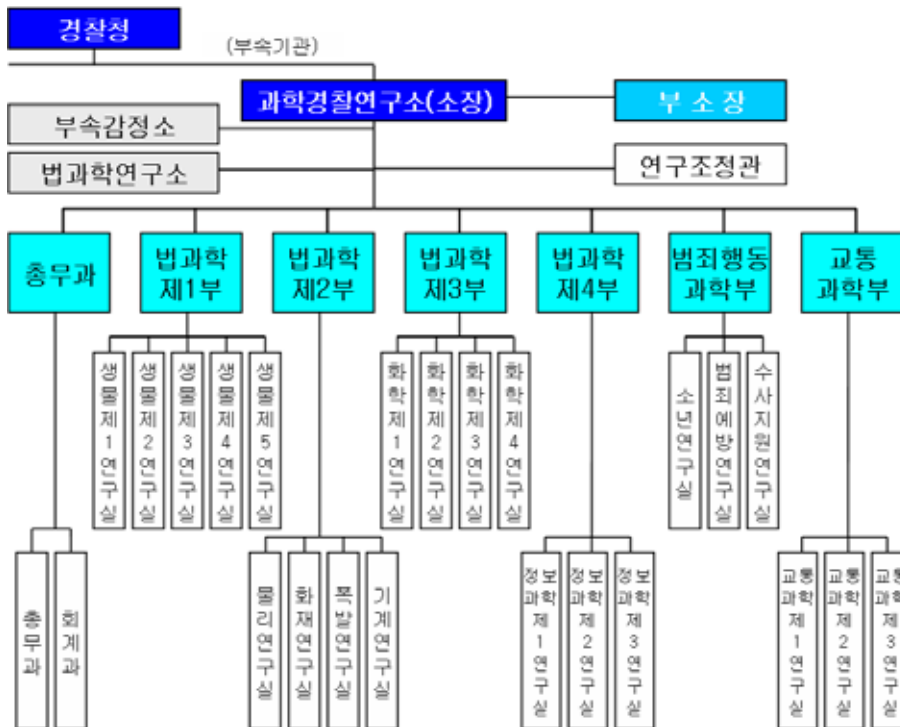
나. 과학경찰연구소

한편 국가경찰인 경찰청에는 과학수사에 관한 기초연구 및 실무연수를 위하여 과학경찰연구소(1)가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과학경찰연구소에는 법과학제1부, 법과학제2부, 법과학제3부, 법과학제4부, 범죄행동과학부, 교통과학부의 6개의 부와 총무과를 두고 있으며, 부속감정소와 법과학연구소를 두고 있다. 6개의 각 부 밑에는 총 21개의 실을 두고 있다(<그림 15> 참조).

동 연구소는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이나 장비의 개발 등 과학수사에 관한 연구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경찰에 소속된 감정기술직원을 대상으로 전문분야별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수사에 관한 연구·실험 및 이를 응용한 감정·검사, 범죄의 방지 및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연구·실험 및 교통사고의 방지 및 기타 교통경찰에 관한 연구·실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위해 생물학, 의학, 화학, 약리학, 물리학, 농학, 공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연구원들이 각각의 전문부문에 배치되어 있다. 감정기술의 확립과 감정기재의 개발, 소년비행의 분석·해명, 범죄방지대책,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구 등의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편 실제 사건에 대한 감정업무는 후술하는 각 도도부현경찰마다 설치되어 있는 총 47개의 과학수사연구소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고도의 감정기술이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과학경찰연구소에서 직접 감정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도도부현경찰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에서 감정을 촉탁한 사건에 대하여도 감정과 검사를 행하기도 한다.

<그림15> 일본과학경찰연구소의 조직도



2) 자치경찰의 수사조직

가. 경시청 및 도부현경찰본부

한국의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일본의 경시청 및 도부현경찰본부에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주된 부서로서 형사부와 생활안전부의 2개 부서가 있다. 다만 동경도를 관할하는 경시청은 수사부서에 속하는 조직범죄대책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 형사부는 일반형 범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마약·총포·도검·소년·사이버범죄 등 특별범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도도부현경찰의 범죄수사 주무부서인 형사부의 조직체제 및 인적규모는 도도부현경

찰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예컨대 일본의 수도인 동경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시청의 경우, 형사부는 수사1과(살인, 강도), 수사2과(지능범, 선거위반), 수사3과(절도범), 수사4과(폭력단범죄), 폭력단대책과, 감식과의 6개의 課와 기동수사대(흉악범죄의 초동수사), 국제수사대(외국인범죄), 수사공조대(타 경찰본부와의 수사협력업무 담당)의 3개의 隊를 두고 있다.

또한 형사부에는 과학수사연구소(전국적으로는 47개)가 부치되어 있으며, 감식과에서 수집해온 현장증거에 대한 감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경찰인 경찰청에 부속기관으로서 과학경찰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자치경찰인 경시청 및 46개 경찰본부의 형사부에 각각 과학수사연구소(47)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경시청 수사1과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장(총경) 지휘 하에 참모장으로서 범죄현장을 지휘하는 이사관(경정)과 사건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8인의 관리관(경정)이 있다. 특수범수사1계(유괴사건이나 항공기납치사건), 특수범수사2계(기업상대 공갈사건), 強行犯수사1계(과사무를 담당)에서 10계까지(2계는 미제사건, 3계에서 10계는 살인사건 등 강력범사건을 담당), 화재범수사계, 強盜犯수사1계, 強盜犯수사2계의 도합 15개의 계가 설치되어 있다. 각 계는 계장(경감) 밑에 2명의 반장(경위)과 각 5명의 반원(경사이하) 등 통상 13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형사부 수사1과에만 150여명의 수사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경시청 전체적으로는 1,500명 내외의 수사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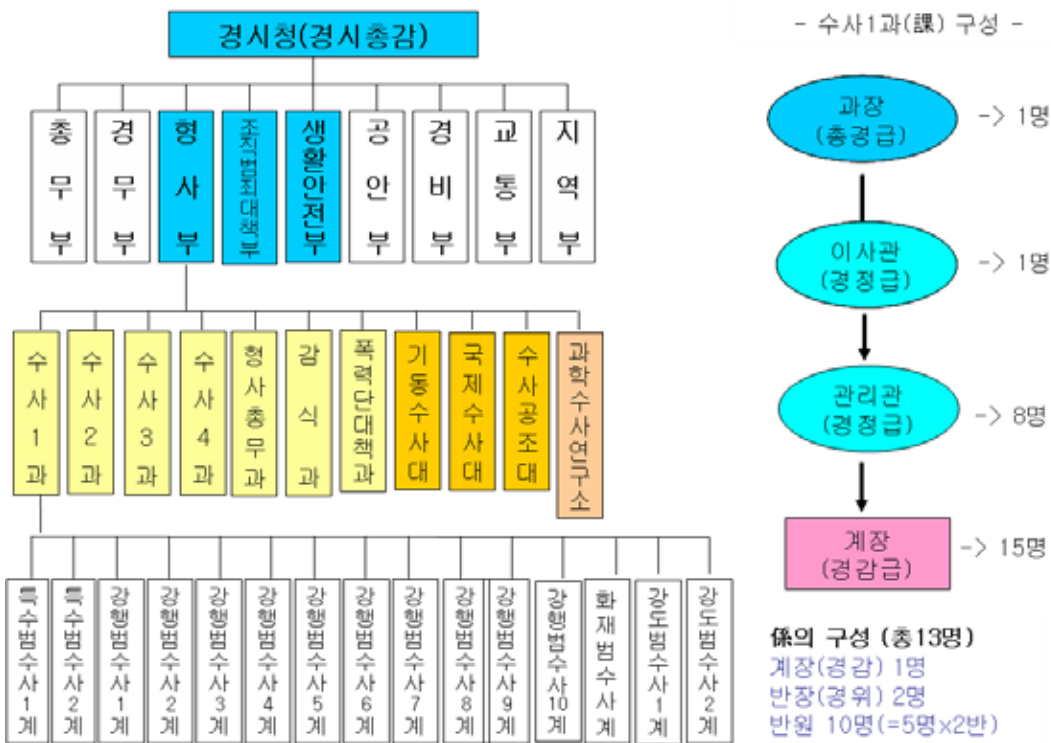
이와 같이 경찰본부 내에 많은 수의 수사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지방경찰청 단위의 수사규모가 상대적으로 왜소한 우리나라와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경시청과 도부현경찰본부 중심의 수사체제를 구축하여 다수의 수사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경찰청 단위의 수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 경찰과는 크게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경찰본부 내에 세분화된 수사부서를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광역적인 수사를 펼치고 또한 수사경찰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경찰본부에 근무하는 수

사경찰관들은 장기간 동일부서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소위 전문 분야별로 베테랑 경찰관들을 양성하고 있다.

조직적·광역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수사체제를 구축하고, 특수한 범죄유형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본의 수사조직체제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6> 자치경찰의 광역수사조직 (예:경시청)



나. 경찰서

도도부현경찰(47)에는 각 지역을 분할하여 관리하는 하부기관으로서 경찰서(1,269)가

설치되어 있다. 전국 경찰서의 수는 1,269개로 평균적인 관할하는 면적 및 인구가 한국의 경찰서의 절반 정도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1개 경찰서 당 소속 직원수도 이삼백명 안팎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경찰서는 일반적으로 형사과, 생활안전과, 지역과, 경비과, 교통과 및 총무과(또는 경무과)를 두고 있다. 경찰본부 단위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의 중요한 범죄수사부서는 형사과이나 생활안전과, 교통과 등도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형사과에는 일반적으로 살인 등의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강행범계(強行犯係)를 비롯하여, 폭력단범죄를 담당하는 폭력범계, 지능범 및 선거사범을 담당하는 지능범계, 절도범을 담당하는 도범계가 있다. 또한 현장감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감식계 및 범죄수사의 인계·인수를 담당하는 인계수사계와 검찰과의 청구역할을 담당하는 司法係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찰서 단위에도 주된 수사부서로서 형사과를 두고 있으나, 대도시에 소재한 1급지 경찰서의 경우 형사계와 조사계의 직접 수사인원만 100명 이상에 달하기도 하는 한국의 경찰서와 비교하면, 그 인적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하여 경찰본부(지방경찰청) 단위에 상대적으로 수사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의 경우, 경찰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는 형사범 사건을 처리함에 비하여, 경찰본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수사력이 요구되는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업무분담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분담체제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발신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신고를 접수한 교번이나 주재소의 지역경찰관이 우선 현장으로 출동한 후 현장보존조치를 취한다. 이후 경찰서 형사과의 당직반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동시에 경찰본부 소속의 기동수사대가 사건현장으로 급파된다. 형사과 당직반은 신고자나 현장주변의 배회자 등에 대한 탐문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감식전문가 있을 경우에는 초동적인 감식을 행하기도 한다. 통상 본격적인 현장감식은 기동수사대가 도착한 후에 그 주도권을 쥐고 진행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살인사건의 8할 정도는 사건 발생 직후 초동수사단계에서 범인이 확정되고 있다. 따라서 수일 이내에 범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본부가 설치된다. 수사본부의 책임자는 통상 경찰본부 단위의 형사부장이 맡게 되며(부분부장은 경찰본부의 형사과장과 관할경찰서장 2명), 수사 인력은 살인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본부 형사부 수사1과 소속 수사관과 관할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수사본부는 수사반, 예비반, 감식반, 서무반의 편제를 이루며, 이 중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반은 적정 개수의 조로 편성된다. 이 경우 각 조는 2명 편제이며, 경찰본부 살인사건수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수사1과 소속 수사관 1명과 지역정보에 밝은 관할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관 1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일본 수사경찰의 경우, 현장감식 단계에서는 물론, 피의자가 곧바로 특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청 단위의 전문수사인력이 투입되어 관할경찰서 소속의 수사경찰의 지역정보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찰서의 하부조직으로 교번(총 6,623개) 및 주재소(총 8,070개)가 지역말단까지 설치되어 순찰 등의 범죄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이 주된 임무이나 범죄발생시의 초동조치에 관여하고 있다.

5. 수사경찰의 인사관리 및 교육

1) 채용 및 인사

가. 경찰관의 채용 및 승진

경찰관의 채용방식을 보면, 각 도도부현경찰본부가 지방공무원으로서 채용하는 경우와 경찰청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채용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우선 지방공무원의 채용방식을 보면, 각 도도부현의 경찰관 채용시험으로 임용되는 경찰관은 모두 순사로 입직한다는 점에 공통되나, 대졸과 고졸이하의 학력구분에 따라 채용 후 교육기간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복무연한 등에 차등을 두고 있다. 즉 대졸

입직자의 경우는 고졸입직자에 비하여 최초임용시 교육기간이 짧고, 또한 순사부장 및 경부보 승진을 위한 최저복무연한이 각 2년과 1년으로 고졸입직자(4년과 3년)보다 합하여 4년이 단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의 채용방식에는 국가Ⅰ종시험과 국가Ⅱ종시험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각 우리나라의 행정고시와 7급공무원채용시험에 비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가Ⅰ종시험은 전통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행정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⁴⁾ 국가Ⅱ종시험은 1986년부터 도입된 채용체도로 매년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 약 2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⁷⁵⁾

경찰관의 승진에 대하여는 국가Ⅰ종시험 및 국가Ⅱ종시험에 의해 채용되는 국가공무원과 도도부현경찰의 자체선발로 채용되는 지방경찰관에 따라 각각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국가Ⅰ종으로 채용된 국가경찰관의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근무연한이 경과함에 따라 승진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국가Ⅰ종시험으로 채용된 경찰관의 경우는 최초 임용시 경부보로 출발하여, 1년 후에 경부, 2년 6개월 후에 경시, 8년 후에는 경시정으로 승진하며, 최종적으로는 거의 예외 없이 경시감까지 승진하게 된다. 또한 국가Ⅱ종시험으로 채용된 경찰관의 경우도 순사부장에서 출발하여 3년 후에는 경부보, 4년 후에는 경부, 6년 6개월 후에는 경시로 승진하며, 최종적으로 경시정이나 경시장까지 승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⁷⁶⁾

지방경찰관의 경우는 최초임용시 모두 순사로 출발하는 점에서 공통이나, 이후 승진에 있어서는 대학졸업 학력자와 고졸이하의 학력자를 이분하여 각각 최초 승진연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졸업자는 순사 임용후 순사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2년, 순사부장에서 경부보 승진을 위해 1년의 근무연한이 필요함에 비해, 고졸자는 순사부장

174) 국가Ⅰ종시험은 매년 20명 전후를 선발하고 있으며, 총원은 대략 5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日本辯護士連合會編, 檢證 日本の警察, 日本評論社, 253면.

175) 일본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jp>) 채용안내 사이트. 참고로 일본경찰청은 지방경찰관의 채용상황과는 달리 국가Ⅰ종시험 및 국가Ⅱ종시험의 경쟁률이나 채용인원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기는 힘든 형편이다.

176) 久保博司, 警察のことがわかる事典, 日本實業出版者, 2001, 158~161면.

승진시 4년, 경부보 승진을 위해서 3년이 각각 소요된다.

일본의 지방경찰관의 승진임용은 전통적으로 시험승진임용(일반시험 및 특별시험의 두 가지가 있음)과 근속년수 및 근무성적에 기초한 실무경험 위주의 선고승진임용의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이는 1984년 경찰청이 ‘도도부현경찰관 승임기준요강’을 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승진임용기준을 제시하면서 정착되었던 승진임용제도이며, 동 요강 실시 전후의 상황을 보면 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이 대략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여 승진임용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 수사경찰의 선발과 관리

일본의 경우, 수사경찰관은 일반경찰관과 분리되어 채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경찰관 채용을 통해 경찰로 입직한 자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발탁하여 수사부서에 근무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타 부서와의 인사교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수사경찰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사를 관리하는 이른바 수사경과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경우, 근무배치시에 자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되는 자가 선발되게 되고, 또한 일단 수사부서에 배치된 이후에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특히 경시청이나 경찰본부 단위의 광역수사부서의 경우, 동일부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수사경찰관이 적지 않게 포진되어 있다. 소위 베테랑형사로 불리는 이들은 재산범, 강력범, 절도범 등의 영역별로 세분화된 개별 수사부서에서 관할구역인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취급함으로써 특정한 범죄수사 영역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운영방식은 수사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해 1980년에 제정된 「형사경찰강화종합대책요강」에 의거, 수사관으로서 뛰어난 소질과 열의를 가진 자를 조기에 등용하기 위해 수사관의 선발기준을 정한 「형사선고요강준칙(刑事選考要綱準則)」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수사경찰에 대하여 근무성적에 기초한 능력 및 실적 위주의 제도인 선발승진임용은 1989년에 발해진 경찰청의 '사건에 강한 경찰의 확립을 위한 승임, 교육제도의 개선실시요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 제도로 승진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교육체계

가. 개 요

(1) 경찰교육기관

경찰청 부속기관인 경찰대학교(1개), 관구경찰국 부설의 관구경찰학교(7개), 황궁경찰본부 부설의 황궁경찰학교(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시청 및 각 도부현경찰본부에 총 47개의 경찰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경찰대학교는 경찰분야 학술연구에 관한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며,¹⁷⁷⁾ 대학부설기관으로 특별수사간부연수소, 국제수사연수소, 재무수사연수센터, 경찰정책연구센터, 경찰정보통신연구센터, 부속경찰정보통신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경찰교육기관은 대략적으로 보면 경찰대학교, 관구경찰학교, 도도부현 경찰학교의 3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각각 상급관리직 경찰관, 중간관리직 경찰관, 하위직 경찰관의 신입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 경찰관 교육체계

일본의 경찰관 교육체계를 교육기관별로 보면, 우선 경찰대학교의 경우, 소속장임용예정자, 경부승진임용자, 과장보좌승임자, 국가공무원채용1종시험합격자, 기타 간부경찰

177) 경찰대학교가 1948년 창간하여 현재 매일 정기발간하고 있는 「경찰학논집」은 경찰분야에 대한 권위 있는 학술지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한편 경찰대학교의 총 정원의 60% 정도는 교수 및 연구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 등을 대상으로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기능 등의 실무능력 및 지도·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각 관구경찰학교는 순사부장 및 경부보 승진임용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황궁경찰학교는 황궁경찰관으로 채용된 신입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가2종시험합격자에 대한 초임간부과, 일반직원계장임용과, 일반직원주임임용과, 수사분야에 대한 전과(專科) 등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학교는 경시청 및 각 도부현경찰본부에서 채용되는 경찰관(순사,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입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수사분야의 교육·연구

(1) 수사분야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수사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경찰대학교 부설기관으로 「특별수사간부연수소」, 「국제수사연수소」, 「재무수사연수센터」의 3개의 전문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특별수사간부연수소에서는 상급의 수사간부로서 필요한 수사의 지휘 및 관리 기타 고도의 전문기술에 관한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1967년에 설치되었다. 경부임용과를 졸업한 후 일정한 수사실무경험을 거친 자로서, 각 도도부현경찰본부에 있어서 장래 수사담당부과장으로서 적격성을 갖춘 자를 교육이수대상자로 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의 초빙강연, 실지연구답사, 해외연수 및 과제연구논문의 작성과 소수인원에 의한 참여식 수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4개월반이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국제수사연수소에서는 일본인경찰관 및 외국인연수원에 대하여 국제범죄수사, 국제수사공조, 기타 국제적인 경찰활동에 관한 학술연수 및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1985년 4월에 설치되었다. 급증하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에 종사하는 경찰관에게 외국어는 물론 출입국관리, 국제수사공조, 형사절차 등에 관한 조약, 국내외의 법제 등 폭넓은 분야의 지식을 함양시키고 있으며, 국제범죄수사에 관한 실무연수, 어학연수, 해외연수를 실

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연수원에 대하여는 일본의 경찰운영, 교번 및 주재소 제도, 수사수법, 범죄감식 등의 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전수요구에 부응하여, 국제협력사업단(JICA)과 공동으로 각종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도모하고 있다.

재무수사연수센터에서는 재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사에 관한 학술연수 및 조사연구를 위해 2003년 4월에 새롭게 설치된 조직이다. 전국경찰의 재무수사 사례연구, 금융기업활동,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외의 관계기관, 학회, 연구기관 등과의 정보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동 연수센터는 고도의 재무수사력을 가진 수사원을 육성하기 위해¹⁷⁸⁾ ①「재무수사증급과정」(경부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부기 2급을 취득하게 하는 등 재무수사원을 육성하는 과정), ②「재무수사상급과정」(경부보·순사부장을 대상으로 하며 부기 1급을 취득하게 하는 등 상급의 재무수사원을 육성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지휘관을 육성하기 위한 ③「재무수사지휘과정」(경시, 경부를 대상으로 하며 재무수사지휘에 필요한 재무수사지식의 함양시키는 과정), 재무수사전문관의 전문지식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④「재무수사관과정」(특채선발된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수사관인 「재무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며 최신의 전문적인 재무수사기법을 교육하는 과정)등의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¹⁷⁹⁾

특히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특채선발하여 수사관으로 활용하는 제도인 「재무수사관제도」는 주목되는 부분이다. 재무수사관으로 특채된 자는 2002년 4월 1일 현재 총 46명에 달한다. 계급별로 보면 경부 17명, 경부보 21명, 순사부장 8명이 있으며, 자격별로는 공인회계사 자격보유자 16명, 공인회계사보 자격보유자 3명, 세리사 자격보유자 12명, 기타 은행원 등이 15명이다.

178) 2004년말 현재 재무수사과정의 교수진은 주임교수 1명, 교수 2명,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재무수사관인 조교수 2명이 배치되어 있다.

179) 구체적인 수업내용은, 상법의 기초지식(회사의 활동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규범인 상법의 기초지식을 취득), 수사실무(수사원의 필수인 형사소송법(특히 수사부분)과 재무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수사서류의 작성방법), 지능·폭력(재무수사를 필요로 하는 중요범죄의 수사요령을 범죄유형별로 사례분석), 재무수사의 실무(강의와 사례학습(Case study)를 통하여 부기와 재무분석의 지식을 실제의 사건수사에 응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능력의 양성), 컴퓨터수사교육 및 경리실무, 기타 직무윤리, 특강, 학외 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과학수사분야의 교육·연구

과학수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과학경찰연구소를 설치하는 한편, 경시청 및 각 도부현경찰본부 형사부 산하에 과학수사연구소(총 47개소)를 설치하여 일선수사현장의 요청에 따른 감식업무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각 도도부현경찰 형사부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수사연구소에는 소속 전문연구원만 대략 20~30명 정도에 달한다.

(3) 수사경찰관 교육의 강화

또한 수사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수습시키기 위하여 모든 경찰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훈련과정인 전과(專科)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교육기관의 신입자, 승진임용자에 대한 교육에 있어 수사관련 법률지식(형법 및 형사소송법) 및 실무에 대한 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최근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현재 각 교육기관에서 분산 실시되고 있는 전과(專科)과정을 경찰대학교에서 통합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사분야에 대한 교육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부보·순사부장의 승진임용 기본교육시 수사교육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분을 기존의 수사, 생활안전, 교통, 경비, 지역의 5개에서 수사, 지역, 교통으로 축소시켜 집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교육 체제확립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수사전문교관 양성체제의 확립한다는 취지하에 경찰대학교에서 관구경찰학교의 교관으로 근무할 자(경부·경부보)를 양성하기 위해 교관양성과정(1개월)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대학교 총원 약 170명 중 약 120명을 교수 및 연구직으로 구성하는 등 교육·연구역량 강화하고 있다.

6. 주요 제도 및 시책

이상에서 일본 수사경찰의 발전과정을 비롯하여 조직 및 인사·교육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수사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라 수사경찰의 발전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주요 제도나 시책을 정리하는 것으로 소결에 갈음하고자 한다.

1) 광역수사체제의 확립

가. 경찰본부 단위의 수사역량 강화

제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이 광역수사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있다는 수사조직상의 특징이다. 일본 수사경찰의 경우, 우리 나라의 지방경찰청에 상응하는 경시청 및 각 도부현경찰본부 내에 방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수사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

경시청 및 각 도부현경찰본부에는 일반형법범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특별형법범사건을 담당하는 생활안전부가 수사주무부서로서 기능을 분리하여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각의 부 밑에 구체적인 범죄유형별로 사건을 전담하는 많은 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조직체제가 일본 수사경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지방경찰청 단위의 수사조직이 상대적으로 왜소한 반면 경찰서 단위의 수사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한국경찰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¹⁸⁰⁾

나. 광역범죄에 대한 자치경찰간의 공조 강화

사회의 각 영역별 경계가 무너짐에 따라 범죄의 광역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국을 무대로 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일환으로 각 도도부현경찰 상호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2개 이상의 도도부현경찰의 관할에 걸치는 중요한 광역범죄에 대

180) 최근 한국 수사경찰은 지방경찰청 소속하에 있는 광역수사대의 인력을 확충시키고 있으나, 광역수사대의 경우에는 현재 부서별로 담당사건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못해 특정범죄 유형별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는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하여는 범죄발생시 관계 도도부현경찰이 협력하여 수사사항을 분담하거나 기타 수사방침을 조정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수사의 지휘계통을 일원화하고 관계 도도부현경찰이 하나의 팀으로 되어 수사하는 합동수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청이나 관계 도도부현경찰이 수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수사정보종합전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조건, 교통망의 상황 등의 측면에서 지역적 일체성이 강한 도도부현 경계부근의 구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수사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복수의 도도부현경찰의 수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1개 구역에 설치되어 있다. 살인·강도 등의 흉악사건이나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특이한 절도사건 등의 초동수사를 담당함으로써 초동수사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1989년에는 각 도도부현경찰의 기동수사대에 유괴사건이나 인질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기술과 광역적인 기동수사력을 보유한 「광역기동수사반」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베테랑형사의 양성을 통한 수사전문성의 확보

일본 수사경찰의 경우, 특정부서에 배속된 수사관들을 동일부서에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게 함으로써 특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전문화를 기하고 있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도부현경찰 단위의 광역수사체제를 통해 조직적·광역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계별로 담당사건의 유형을 전문화·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인 범죄유형별로 구분된 특정수사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시청이나 경찰본부 단위의 광역수사부서의 경우, 동일부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수사경찰관이 적지 않게 포진되어 있다. 소위 베테랑형사로 불리는 이들은 재산범, 강력범, 절도범 등의 영역별로 세분화된 개별 수사부서에서 관할구역인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취급함으로써 특정한 범죄수사 영역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수사분야의 세부적인 분화시스템과 장기근무방식 등은 관할구역에 대한 범죄정보나 특정범죄분야의 수사에 정통한 소위 베테랑형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과학수사의 강화

가. 경찰직속의 과학경찰연구소·과학수사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인력의 확충

과학수사의 초석을 이루는 과학경찰연구소(1)가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경시청 및 각 도부현경찰본부의 형사부에 과학수사연구소(47)가 각각 부치되어 있어 과학수사에 대한 지원기반이 강화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경찰청 소속기관이 아닌 행정자치부 직속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은 일본과 차이나는 부분이다.

각 광역자치경찰별로 설치되어 있는 과학수사연구소에는 석박사급의 구성된 전문연구원을 다수 확보해두고 있다. 인적·물적 지원체제를 충분히 구비하여 일선수사현장의 감정수요에 대한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나. 수사정보시스템의 개발·활용 및 감정전문요원의 육성

자동차번호자동판독시스템이나 지문자동식별시스템, 장문자동식별시스템 등 각종 범죄정보시스템을 활용함은 물론 감식·감정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응용을 위해 감식기자재를 개발·정비하고 있으며, 현장감식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기동감식대 및 현장과학검사반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 설치된 감식자료센터에서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품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해두고 있어, 일선 수사경찰에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미세한 분량의 자료와 비교조회하여 자료의 성질을 해명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과학경찰연구소의 법과학연구소에서는 일선 감정요원을 대상으로 법의학, 화학, 공학, 지문, 사진, 족흔적 등의 전문분야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4) 변사체검시 전문요원의 양성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변사체검시를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사법경찰원에게 검시의 처분을 대행(소위 대행검시)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사체검시의 대상인 ‘변사체’란 사인이 범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가 명백하지 않은 사체를 의미하므로 예컨대 사인이 ①범죄에 의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와 ②범죄에 의한 것이 명백한 경우¹⁸¹⁾에는 변사체검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①의 경우에는 사인의 확인이나 신원조회 등을 위한 경찰재량의 소위 행정검시가 행해지며, ②의 경우에는 변사체검시를 행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상 검증·감정 또는 실황조사를 행하게 된다.¹⁸²⁾

우리 나라의 경우는 변사체검시에 관하여 일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행정검시에 해당하는 사건마저도 실무상 대부분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어 대조적인 운용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경찰은 이러한 실무적인 운용상황을 바탕으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판명을 위해 전문가를 배치·활용하는 ‘검시관(형사조사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는

181) 범죄에 의해 사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변사체검시(사법검시)의 대상이 된다는 수사의 개시단계에 있어 검사의 통제를 확대하려는 소수의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행법의 취지에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행검시가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松尾浩也, 앞의 책, 94면 참조).

182) 실무상 경찰에서 취급하는 사체 중 실제 변사체검시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다소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나 1972년도에 경찰이 인지한¹⁾ 약 43,000건의 사체처리상황을 보면, 이 가운데 변사체검시를 행한 비율은 5.05%(검사가 직접 검시한 경우가 0.05%, 대행검시가 5.0%)이며, 범죄에 의한 것이 명백하여 경찰이 곧바로 수사상 검증이나 실황조사를 행하는 경우가 8.8%, 나머지 86.1%는 행정검시로 처리되었다는 자료를 통해 이러한 실무상의 처리관행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959년 9월 14일자 경찰청차장통달 ‘검시관의 설치에 관하여’에 의거한 것이며, 각 도도 부현경찰본부 단위에 10년 이상 수사경험을 가진 경시(경정)이상의 경찰관 가운데 원칙적으로 학교교육법에 정해진 대학의 법의학교실 또는 과학경찰연구소에서 소정의 법의학과정을 연수한 자를 임명하여 검시나 사법해부에 입회시키고 있다.

5) 사법순사의 수사권한

사법순사의 인적 구성 및 비율 그리고 법적 수사권한에 있어서의 특징이다. 사법경찰리가 전체 경찰관의 85.0%를 차지하고 있는 경사·경장·순경의 3계급이 해당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사법순사는 최하위 계급인 순사만이 해당되며, 전체경찰관의 30%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사법순사에게는 수사에 있어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으며(제189조 1항), 긴급체포,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검증(제220조), 각종영장의 집행(제199조 1항, 제218조),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제198조, 제223조), 압수물에 관한 처분(제222조 1항), 공무소등에의 조회(제198조 2항)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요청되는 강제수사 및 임의수사의 권한이 명문으로 인정되어 있다.

사법경찰리의 인적 비율이 전체 경찰관의 85% 가량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이나 참고인조사 등의 임의수사에 있어서조차 법률상 명문규정이 없어 그 권한행사의 당부에 대하여 시비가 있는 우리 나라와는 대비되는 점이다.

6) 전문기능보유자의 특채제도 활용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책의 하나로서 주목되는 것이 수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제도이다. 199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현재 재무수사분야와 국제수사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무수사분야에서는 재무제표의 복원, 사용처불명 금액의 해명 등을 통해 대규모기업

범죄나 경제범죄, 증수뢰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의 입증이나 폭력단의 자금원 분석 업무 등에 활용하고, 국제수사분야에서는 특정 외국어에 능통한 수사관을 채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조사나 국제범죄수사에 관한 연락·조정 등의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재무수사관의 채용자격요건으로는 공인회계사(재무서류의 감사 및 증명, 재무서류의 작성, 재무상담, 세리사업무), 회계사보(공인회계사의 보조업무, 재무서류의 작성, 재무상담), 세리사(세무신고절차의 대리, 세무서류의 작성, 세무상담, 재무서류의 작성, 회계장부의 기재 대행), 국세사찰관 또는 국세조사관 등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특채된 수사관들은 원칙적으로 경부보(경위) 이상의 계급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급여는 전직 경력을 상응한 수준을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수사에 종사함은 물론 현장교육이나 학교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승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 소속부서에서의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무수사관으로 특채된 자는 2002년 4월 1일 현재 총 46명에 달한다. 계급별로 보면 경부 17명, 경부보 21명, 순사부장 8명이 있으며, 자격별로는 공인회계사 자격보유자 16명, 공인회계사보 자격보유자 3명, 세리사 자격보유자 12명, 기타 은행원 등이 15명이다.

7) 수사경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용

일본의 경우, 우수한 수사관의 선발 및 교육 등을 위해 「형사선고요강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사관의 선발은 각 도도부현경찰별로 설치되어 있는 「형사선고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임용교양기준」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임용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용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임용교육 기간 중의 성적,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임자를 결정하여 「형사적임자명부」에 등재하고, 소속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수사실무경험이 없는 순사 및 순사부장에 해당하는 경찰관을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위 명부에 등재된 자를 순차적으로 임용함으로써 선발·교육·임용의 일체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수사경찰의 경우에 타 부서와의 인사교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수사경찰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사를 관리하는 이른바 수사경과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경우, 근무배치시에 자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되는 자가 선발되게 되고, 또한 일단 수사부서에 배치된 이후에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이러한 수사경찰에 대한 엄격한 인사운영 방식은 수사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8) 수사분야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수사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다수의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구경찰학교나 도도부현의 경찰학교 등 각급 경찰교육기관에서 수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수사교육을 위해 경찰대학교 부설기관으로 「특별수사간부연수소」, 「국제수사연수소」, 「재무수사연수센터」의 3개의 수사분야 전문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특기할만 하다.

9) 「보도협정제도」의 운영

보도협정제도란, 언론보도기관의 취재·보도에 의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괴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는 취재와 보도를 자제한다는 내용의 협정으로 각 언론사와 경찰 사이에 맺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협정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사와 경찰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사를 위해 협력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1960년 경시청 관내에서 발생한 유아유괴사건에 있어 피해보도를 본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 직후 일본신문협회는 인질의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사건에 대한 보도협정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으

며, 이후 1980년 일본신문협회는 ‘유괴보도 취급방침’을 정하여 보도협정제도의 운영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1970년에는 경찰과 일본민간방송연맹 사이에 보도협정이 체결되었고, 1980년에는 경찰관 일본잡지협회 사이에도 보도협정이 체결되었다.

제4장 수사경찰의 발전방안 제시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서두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인 수사경찰의 전문성 및 업무공정성, 그리고 인권보장성을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수사경찰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상황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세부적으로는 수사경찰의 조직운영적 측면, 인사 및 교육의 측면, 인권보장적 수사절차 구현의 측면 등으로 구분하고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 주요 각국의 수사경찰의 조직체제, 인사관리 및 교육체계 등에 대한 비교법제적 검토를 통해 한국 수사경찰에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확인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실태분석 및 비교법제 연구를 바탕으로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인권보장적 수사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수사경찰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1절 수사경찰의 전문성 제고방안

1. 수사경찰의 조직체제 개선방안

1) 본청 또는 지방청 중심의 수사체제 구축

선진 외국경찰제도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방수사국 또는 중앙수사국을 설치하여 국제성범죄, 조직범죄, 광역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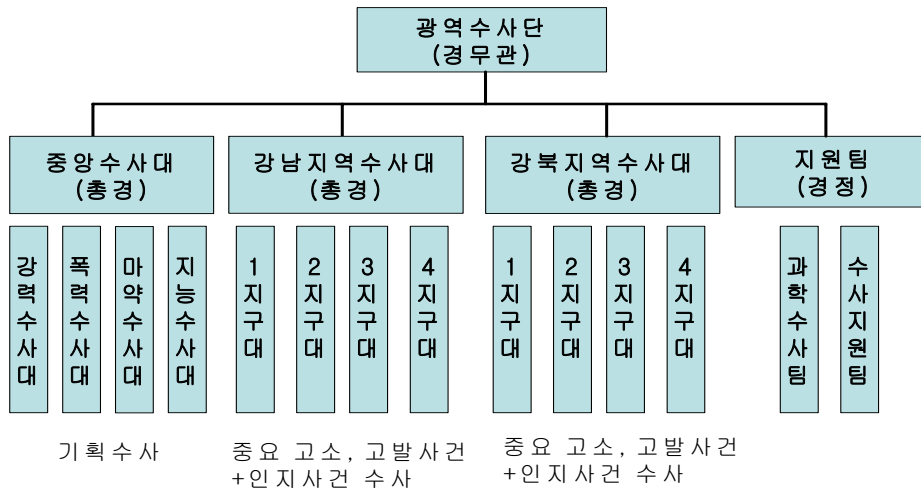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제는 광역범죄와 전문적 범죄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청에서는 범죄첩보의 수집, 분석, 배포기능을 강화하고 외사국이 담당하는 외사수사 중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적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수사국으로 통합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 수사국 내에서도 지능범죄수사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므로 지능범죄 분야별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능범죄수사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와 특수수사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약수사과, 지능범죄수사과, 수사과, 형사과에서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연구 및 수사기법개발팀을 신설하여 수사지원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2) 광역수사대의 확대개편 추진

경찰서 중심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광역수사대를 각 지방청의 실정에 맞게 조직을 확대하고 승격시키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 즉 경찰서의 수사인력을 일부 흡수하고 지방청내의 수사인력을 통합하여 광역수사대를 광역수사단으로 승격하고 서울청의 경우 단장을 경무관으로 보임하고 중앙수사대와 지역수사대를 설치한다. 중앙수사대는 기획수사에 치중하도록 하고 지역수사대는 관할지역에 발생하는 중요 고발, 고소사건과 인지사건 수사를 담당토록 한다.

중앙수사대는 강력, 폭력, 마약, 지능수사대를 설치하고 강력수사대의 수사팀의 경우에도 지방청단위에 필요한 살인팀(미제사건 및 수사본부사건 담당), 강도팀(연쇄강도 및 흉악사건 담당), 약취유인팀, 방화팀을 두고 폭력수사대는 절도팀(다액절도 사건, 장물사건, 차량절도 및 수출 등), 성폭력팀(강간, 아동성폭력, 기업형 윤락행위 등), 조직폭력팀, 문화재사범팀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우에는 부동산팀(기획부동산, 부동산사기, 부동산투기사범, 분양사기 등), 공공지능팀(뇌물수수, 선거사범, 개인정보침해), 금융범죄팀(신용카드범죄, 유사수신행위, 불법대부업, 채권추심, 보험범죄), 건축환경팀(건축, 유사회발유 제조판매, 환경오염배출), 보건·위생팀(의료사고, 불량식품 밀수·제조) 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으로는 사이버수사대의 경우에도 광역수사대에 흡수하여 수사대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3) 민생사범 수사위주의 경찰서 수사체제 운영

선진 외국의 경우에 조직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하여는 연방수사국, 주수사국, 중앙수사국 등이 담당하고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미사건 위주의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청의 광역수사대가 광역수사단으로 승격되는 것을 전제로 경찰서의 수사인력을 대폭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종별팀제로 인하여 팀간 업무량의 불균형과 기획수사기능의 약화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찰서에서는 최종별 업무분장이 아니라 종전대로 단서별 업무분장을 적용하고, 확대 개편된 광역수사대는 최종별 또는 범죄유형별 업무분장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는 광역수사대(단)가 담당하고 통상적인 고소, 고발, 현행범 사건의 수사와 절도, 폭력 및 일반적인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경찰청 이관추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앞서 살펴본 선진외국의 경우에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청 산하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 국립과학연구소는 소속과 감독의 이원화로 인하여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힘들며 이는 곧 경찰의 수사력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청 및 경찰서의 초동수사와 국과수 증거물 감정업무와의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으로 소속을 이관하여 예산편성과 인력보강에 경찰청이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으로 이관을 추진하더라도 감정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사와 관련한 경찰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국과수의 이관과 함께 유전자은행의 조속한 설치를 통하여 성범죄와 연쇄범죄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갖춰야 하겠다.

5) 범죄분석팀의 설치와 공조수사체제의 구축

범죄의 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무동기 살인, 연쇄 성폭력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링과 같은 범죄분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범죄학, 심리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들을 범죄분석관으로 채용하고 모든 지방청에 범죄분석팀을 설치하여 관할내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등의 사건 등을 취합, 상호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의 과학수사요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 입장토록 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범행시간 및 장소에 관련된 사항,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 범행수법과 관련된 사항, 인상착의 등 가해자와 관련된 사항, 범행도구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범죄분석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청 감식요원과 분석요원이 같이 현장에 나가는 것도 적합한 방안일 것이다.

이처럼 광역성, 연쇄성 범죄에 대한 판단을 지방청 과학수사계 범죄분석팀에 맡기고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경우 형사(수사)과장은 지방경찰청장의 결재를 받아 광역

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범죄발생지 경찰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개 이상의 지방청관할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지방청간에 협의 또는 경찰청이 직접 전담지방청을 지정하여 중복수사를 방지하는 등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하겠다. 또한 현재와 같은 지나친 실적경쟁과 공명심에 의한 단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성 또는 연쇄성이 인정되는 사건수사과정에서 범인검거에 필요한 수사정보를 지득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수사요원 또는 타 수사팀과 공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무리 범인검거를 하였더라도 특진 또는 포상에서 제외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2. 수사경찰의 인력관리 개선방안

1)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수사요원 선발과정의 적정성 확보

사이버, 범죄심리, 법의감식 분야 등 특수한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수사요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보다 현재와 같이 동일한 입직경로를 통해 들어온 경찰관들중에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선 선발, 후 교육의 체계는 수사경과제의 시행과 맞물려 엄격한 심사를 통한 선발과 부적격자의 원활한 퇴출이라는 인사관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수사요원 선발이 강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입교육을 수료한 자 중에서 우수성적자를 수사요원 후보자로 지정하여 추가의 수사교육을 연속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일선 비수사부서 근무자 중 희망자 또는 추천받은 자에 대하여 미리 수사요원양성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후 성적우수자 또는 일정 성적 이상을 획득한 자를 수사부서에 배치하는 방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요원을 선발하고 다만 1년 동안은 시보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성적과 근무적응능력을 평가하여 퇴출 또는 정식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과 선발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수사요원양성과정을 재교육차원이 아닌 수사요원선발과정으로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2) 폐쇄적 모델에서 개방적 모델로의 수사경과제 전환

수사경과제가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비적격자에 대한 퇴출의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수사경과제가 추구하는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폐쇄적 인사관리 형태가 아닌 개방적 인사관리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문 수사관 인증제’를 ‘수사관 인증제’로 대체하고 일정경력과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찰관에 대하여 ‘수사경과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사경과를 부여하며 수당 등 보수 및 인사상의 혜택을 확실하게 부여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수사요원들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타 부서 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수사경과제는 수사경력자의 유출억제를 통한 전문성의 추구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유능한 수사인력의 유입을 억제하고 수사경찰의 정체성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향후 3-5년간 정기인사 이전에 일반경과자들 중에서 수사부서 근무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경과자 중 전출희망자의 수를 파악하여 상호간에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3) 수사요원 인사관리시스템 내실화

수사관의 선발과 교육 등에 있어 수사경과제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고 경찰관서장에 의한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수사과(형사과) 산하에 인사관리팀을 설치하여 선발, 교육, 부서배치 및 이동 등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경찰의 내부적 독립성을 신장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결합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남용 시비와 경찰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부당한 청탁에도 수사관이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

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궁극적으로는 수사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경찰서에서 지방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인사관리팀의 역할은 인사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청 단위의 수사인력현황을 파악하고 단계별 수사교육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서열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지정하고, 수사관 개인별 파일을 기록·관리하여 수사관의 수사경력 및 근무부서, 전문 수사분야, 수사교육 이수현황, 전문수사관 인증 여부, 수사관련 칼럼 등 기고여부, 수사관련 강의경력, 수사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여부, 특진 등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유능한 수사관의 적재적소 배치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인사관리시스템은 장기적으로는 종합성과 평가시스템(BSC)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4) 평가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심사승진비율의 상향조정

현재와 같이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의 비율을 동일하게 배정하는 것은 수사업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수사부서간에도 업무량의 차이로 인하여 근무에 충실한 경찰관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험승진의 비율을 20-30% 정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근무평정체제로는 곤란하며 인사권자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그에 대한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성과평가시스템을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과 연계하여 모든 수사관의 직무성과를 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부 평가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수사관이 처리한 업무량(사건 처리건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참고인진술조서 작성건수 등), 업무수행능력(범인검거건수, 포상유무, 사건의 난이도, 공조수사여부, 피해자구호여부, 구속영장신청건수(기각률 반영), 유죄선고율), 근무태도, 민원발생(진정, 이의제기 등)건수 등으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부가하여 2004년부터 인원이 대폭 늘어난 특별승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특별승진 인원을 축소하고 대신에 단일사건보다는 장기간에 대한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특진 또는 심사승진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3. 수사경찰의 교육체계 개선방안

1) 수사교육원의 신설

4,000 여명의 수사교육을 담당하는 수사보안연수소의 교수 및 행정인력, 교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내실있는 수사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주로 1-3주의 단기간의 교육에 그치는 실정이다. 아울러 경찰종합학교에서 수사요원양성과정도 운영되고 있어 양성과정과 전문화과정의 상호 연계성과 체계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수사보안연수소를 확대개편하는 가칭 ‘수사교육원’을 신설하여 과학수사, 사이버, 마약, 진술녹화, 범죄분석, 피해아동조사와 관련한 수사실습장을 설치하고 수사요원양성과정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수사관들을 교수로 활용하여 교육과 현장이 연계되도록 해야 하겠다.

수사교육원신설이 어렵거나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청별로 형사직무 학교를 설치하여 전문성이 덜 요구되고 단기간의 교육으로 충분한 분야(범죄정보시스템분석, 과학수사기법, 현장감식, 선거범죄수사, 여성폭력예방수사 등)는 지방청별로 전문수사관들을 교수로 활용하고 수사보안연수소는 장기교육 또는 전문화과정에 치중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2) 총경급을 대상으로 한 ‘최고 수사지휘과정’의 신설

현재처럼 수사경과를 경정까지만 부여하고 비수사경과 출신자도 총경부터는 자유롭게 경찰서장이나 수사부서의 지휘책임자가 될 수 있는 체제에서는 출신경과에 따라 현재보다 한층 더 지휘관들의 수사지휘능력의 불균형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사구조개혁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총경급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총경급을 대상으로 한 경찰대학의 ‘치안정책과정’을 ‘최고 수사지휘과정’으로 전환하여 형사절차 및 범죄수사 관련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경찰서장의 현장 수사지휘능력을 고양하도록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비수사경과 출신과 수사경력이 부족한 자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된다.

3) 수사요원의 간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수사요원의 간부화가 이뤄졌으나 우리는 아직도 비간부급인 사법경찰리가 수사의 중심주체가 되고 있으며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들은 수사팀장 또는 수사(형사)과장으로서 직접 수사보다는 수사서류의 검토 및 결재 등 수사지휘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토대로 한 고품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는 단지 간부들의 수적 증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간부들이 계급에 맞는 지식과 지휘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실시된 경위 근속승진에 따라 수사팀내에 경위팀장은 물론 경위팀원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위의 역할을 수사실무가로 재평가하고 이들을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지방청 광역수사대 등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찰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세부전공제에 맞춰 범죄수사학 전공 졸업생들은 다양한 수사분야에 대한 지식을 상당부분 습득하였으므로 우선적으로 선발하거나 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경찰인력의 효율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4) 경찰간부에 대한 수사교육의 강화

경찰청이 마련한 수사요원양성과정, 전문화과정, 수사지휘과정의 단계별 교육시스템은 비간부급의 수사요원을 기준으로 구상된 것으로 초급간부로 임직한 수사요원들은 이와 같은 단계별 교육시스템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못한다. 이는 결국 이들에 대한 양성과정과 전문화교육과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요원의 간부화’ 원칙을 전제로 최소 3개월 과정의 수사간부양성과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화과정도 마찬가지로 비간부급과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즉 수사교육원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방청의 형사직

무학교를 활성화하여 입교대상자를 비간부급으로 하고 간부급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수사보안연수소에서 교육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제2절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경찰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수사관이 수사업무를 행함에 있어 우선 그 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수사관의 업무독립성은 검찰 등의 조직 외부로부터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간섭이나 지휘로부터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조직내부의 직속상관이나 여타 기능으로부터의 부당한 지휘, 지시나 청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또한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적인 감시나 통제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1. 수사경찰의 외부적 독립성

1)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사법경찰의 종속성

오늘날 직권주의적 형사소송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륙법계 독일의 경우 형사절차상 실질적인 역할이 수사절차로 이동하고 있다는 인식은 수사기관간의 역할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¹⁸³⁾ 이는 사법경찰의 수사권은 검사의 권한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경찰 자신의 고유한 수사(Strafverfolgung)영역을 부여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경찰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의 수

183) Meyer-Teschendorf, Jus 1981, 189면, Rueping, ZStW 1981, 894면, Knemeyer in FS- Krause, 471면; 자세한 내용은 박노섭, 실체적 진실발견과 수사절차의 의미변화(한국경찰법연구, 제2호, 2004, 30면 이하) 참조

사지휘권에 의하여 사법경찰은 검찰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법경찰의 검사에 대한 수사종속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의 기관화를 여러 측면에서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수사의 업무구조를 단일정점의 독점구조화 하고 있다.¹⁸⁴⁾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부인하지 않는다. 검찰 중심의 수사독점은 경찰의 법률적용 오류의 교정, 수사절차에서의 불법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의 불법행위방지 등을 전제한 수사지휘권 개념은 실무상 수사지휘권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게 인식되고 있는 수사지휘란 “통제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명령의 개념”을 더욱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⁵⁾ 즉, 검사의 수사지휘는 검사의 판단을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이행할 것을 의미하는 상명하복관계에 의한 명령의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 나타난다. 검찰청소속 사법경찰관리 및 경찰청소속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관련된 규정(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검찰청법 제53조)은 ‘수사관(검찰청법제 46조에 의한 검찰청 소속직원)과 경무관 이하의 사법경찰관은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그 지휘방법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찰직원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청 직원에 대한 지휘와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는 건물만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다. 더구나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게는 검사와 의견이 다를 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184) 이상안, 경찰정책론, 346면 이하

185) 여기서 검찰이 의도하는 수사지휘권의 개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현재 규정으로도 사법경찰관의 수사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지휘권의 개념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견해가 우선하도록 검사가 수사를 주재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사전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임의적으로 경찰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지휘는 사법경찰관 스스로 수사를 하게 두며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의미한다”는 수사지휘의 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검·경관계를 우리나라 검·경관계에 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우리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는 ‘의무적 규범성이라는 점에서 독일 형사소송법의 구조자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독일형사소송법 제161조 “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행하거나 경찰관서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경찰관서 또는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촉탁과 위임사항을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검사의 수사지휘가능성으로 해석된다.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검찰청법 제46조).¹⁸⁶⁾

이와 같이 현재 검사의 수사지휘는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개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명령의 개념이며, 이는 수사권의 완전 독점화를 초래하고 있다.¹⁸⁷⁾

이러한 점은 독일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독일검사의 경찰에 대한 법률적 지휘권한은 독일형사소송법 제161조 2문 과 독일법원조직법 제152조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독일법원조직법 제152조에 의하면 ‘경찰은 검사 또는 그 상사의 지시(Anordnungen)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지시(Anordnungen 혹은 Weisung)는 독일형사소송법 제161조 2문의 촉탁(Ersuchen)과 위임(Auftrag)을 말한다.¹⁸⁸⁾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196조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검사의 지휘’를 사용하는 반면에, 독일은 촉탁과 위임(‘Auftrag und Ersuchen’)을 충족시킬 의무’로 설명한다. 여기서 위임(Auftrag) 혹은 촉탁(Ersuchen)을 받은 기관(Behoerde)은 자신의 직무와 권한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시(Weisung)는 경찰이 직무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처분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달될 수 있다.¹⁸⁹⁾ 이것은 지시(Weisung)를 통해 검사는 경찰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는 할 수가 없음을 말한다. 왜냐하면 ‘어떻게(Wie)’의 영역은 경찰의 고유영역인 집행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방법은 전적으로 경찰의 소관이며 검사가 수사방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검사우위의 수사주도권을 인정하는 대륙법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경찰이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또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사법경찰을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

186) 검찰청법 제46조 제4항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보는 수사에 관한 조서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187)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은 이 경우 경찰의 수사상 과오를 시정하고 견제할 마땅한 방법이 사라져 국가적 사회적 막심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종구, 형사사법개혁론, 696면).

188) Knemeyer, NJW 1992, 3131면

189) Knemeyer, 앞의 논문, 3131면 이하

으로도 완전한 상명하복관계로 예측하게 된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 수사는 원칙적으로 수사관사에 의해 주재되고 있으며, 검찰은 현행범수사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찰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관여는, 한국 검찰과 같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여 수행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자체수사력을 보유하지 않은 입장에서 수사절차의 적법성 보장 및 위법수사에 대한 '통제'적 기능에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검사가 수사의 중심이 된다는 법률적인 의미 아래에서 수사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실질적 대등관계에 있으며, 사법경찰은 그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독일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될 때 확연히 드러난다. 합동수사본부설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건발생시 검찰청의 해당부서의 장과 사건발생 경찰서의 장이 사전에 협의한 후 검사, 경찰, 기타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수사팀을 구성하게 된다. 팀구성시 흔히 경찰관의 수사팀장으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검사와 갈등이 예견된다. 왜냐하면 경찰관으로서 Polizeirat(경정급)에 해당하는 계급부터는 검사의 수사관(Ermittlungsbeamter)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검사의 역할은 수사의 진행사항 파악과 그에 따른 법률적인 검토가 주목적이어서 검사가 개별적으로 경찰관 개인에게 지시하는 경우는 없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의 수집은 경찰팀장과 협의하게 되며 그 수사 방법에 대한 결정은 경찰관의 몫이다. 따라서 합동수사팀의 구성은 구조상의 검사가 경찰의 상부구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 협력관계로서 나타난다.¹⁹⁰⁾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은 경찰의 협력이 없어도 자체인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범죄수사를 행할 수 있으며, 다만 사법경찰은 검사의 수사가 힘든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힘든 수사구조이다.

190) 이 내용은 박노섭교수가 독일 검찰청을 실습할 당시 뮌헨검찰청을 소개해주었던 Eckert 부장검사의 설명내용이다.

2)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부당한 관여 문제

검찰중심의 수사업무의 독점적 구조와 무제한적인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사법경찰의 수사권 불인정, 사법경찰관의 판단배제 및 검찰수사지휘영역의 무한정확대로 이어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가조직이념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이것은 자칫 사법경찰에 대하여 검찰의 인격적인 우월주의 의식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아래에서는 검사가 과도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경찰의 임무가 침해되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가. 송치전 수사지휘

검찰은 2001년부터 고소·고발사건 책임수사제 시행지침 제4조(송치전 지휘건의)에 의거하여 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일부 경미한 사건을 제외한 고소·고발 사건 전부에 대해 ‘송치전 지휘’를 받은 후 송치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⁹¹⁾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송치전 수사지휘 제도’는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내실있는 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고 송치전 수사지휘는 중복 수사를 방지하여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일조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연간 80여 만 건에 달하는 경찰접수 고소·고발사건 대부분을 경찰 수사 도중, 이를 검사가 다시 검토함으로써 위에서 말하는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주의 논리에 가깝다. 오히려 송치 전 지휘를 통해 검사가 초동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단계에 개입함으로써, 검사 의견이 경찰 수사에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하여, 실제적 진실발견을 향한 다각적인 수사과정에서 1차 수사 기관의 다양한 관점이 무시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수사와 소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관된 선입견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경찰이 조사를 완료하고 송치서류에 첨부하는 경찰의 송치의견은 더 이상 ‘경찰’의견이 아닌 ‘검찰’의견

191) 대검예규 기획 제308호(2001)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사법 이념을 구현하는 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은 또 하나의 수사기관이자 유일한 소추기관인 검찰에 완전히 종속되어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현행법상 고소사건 처리절차가 실제 검찰→법원으로 진행되는 모델로 변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현행법상 수사오류를 객관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국민들에게서 공정한 수사를 보장받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송치 전 수사지휘제도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검찰은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조항인 형소법 제196조에서 파생한다고 주장하고, 기관 내부규정인 대검 예규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소법 제196조의 부당한 확장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나. 검사의 구속영장청구권 피의자 대면심사와 강제인치

사법경찰이 수사에 대한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는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바탕으로 법률상 근거가 불분명한 강제처분권을 행사해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 중 하나가 충남지방법 김모 경감에 대한 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직접 면담하기 위해 영장 신청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케 한다는 취지로 검사의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최근 들어 실시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일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 면담을 위한 ‘인치’는 검찰과 경찰 양자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법률상 인치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장소에 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기 위하여 경찰서 유치장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에 인치하는 것은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강제인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¹⁹²⁾ 따라 법률에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따

192)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서 사법경찰관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지휘권 행사만으로 피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인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검사면담제도는 일반국민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기 보다는 구속적부여부심사를 검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이용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불응한 경찰관을 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또 얼마 전에는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에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입감하라고 전화로 내린 지휘에 대해 당시 경찰서 상황실장이 공문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검찰은 수사지휘거부로 해석하여 강원지방경찰청 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례들은 국민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대해서 그 적법성 여부 등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고 반드시 따를 것을 종용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권한에 따른 책임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검사 수사지휘권 한계의 명확화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경찰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검찰이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사법경찰을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완전한 상명하복관계로 예속함으로써 사법경찰로 하여금 독자적인 고유영역구축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독점적 수사권을 통해 행사하는 무한한 수사지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원칙과도 배치된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현재 검사가 행사하고 있는 수사지휘는 수사절차상 검사의 객관적 지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 검사는 기소 결정 이후 전적으로 유죄의 입증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소송당사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검사는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해 수사에 대해 선입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즉,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의 객관적의무는 공소제기 이전에 더욱 더 철저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유죄입증과 자백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직접적인 수사기관으로 머물면서 객관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많다.¹⁹³⁾ 더구나 객관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인권옹호의 가능성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수사에서 한걸음 물러나 있어야 하고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개념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통제개념으로 전환되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둘째,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연혁적으로 검찰제도탄생으로 인한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검사제도는 탄생 당시 규문주의에 대한 견제(권한의 균형된 분할)의 일환으로서 검사의 본질을 ‘법률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두었다. 법률의 감시자로서의 지위는 경찰수사에 대한 법적통제를 통하여 인권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이 검찰의 본질과 부합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스스로 직접수사에 중점을 두는 한, 법의 파수꾼으로서 경찰수사를 지휘·통제하고 또한 공판의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성격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정도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검사가 유치장을 감찰하는 권한은 수사지휘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기능으로 볼 때만 성립가능하다.

셋째,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헌법상 권력분립에 의거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전적 권력분립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립된 헌법상 ‘권력분립’의 현대적 의미는 ‘권력의 분리’와 ‘권력상호간 견제와 균형’으로서, 권력이 서로 대등하고 독립적인 국가기관에 배분되면서도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작용상 공동관계(일방적이 아닌 상호간 관여)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기능적 권력분립론). 따라서 검찰과 사법경찰을 단일명령 계층구

193) 2001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현황을 분석해보면 경찰에 대해서는 2436건이 고발되었고, 검찰에 대해서는 698건이 고발접수되어 경찰은 100당(2436/145492명) 1.69건이 발생한 반면, 검찰은 100명당(698/8456명) 8.25건이 발생하여 인원대비 진정사건은 검찰이 경찰보다 오히려 4.8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홍검사의 고문치사사건이다. 검사에 의한 인권침해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검사의 인권옹호를 위한 의무는 최소한 인권침해행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며, 검찰의 인권침해는 바로 인권통제기관의 지위상실을 의미한다.

조 하에 두지 않고 상호 다른 행정조직에 각각 배치하고 있으면서, 수사라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검사의 수사지휘는 검·경 관계에도 ‘힘의 균형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독일검찰은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법무부 산하에 자체 수사관을 보유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없는 현상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경찰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무한정 확대될 수 없는 것이며,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지휘권은 형사소송이념상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와 이를 통한 인권보호차원으로 제한된다.¹⁹⁴⁾ 그러한 의미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는 수사절차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의 일종인 사법적 통제의 개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검찰에서도 검사의 법원통제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사법적 통제란 법원에 의한 통제를 말하는 것으로써 사법권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 즉, 사건화되었을 때에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현실적인 권리침해 또는 의무부과가 종료된 경우에 이에 관한 당사자의 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법성 판단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모든 행위를 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넘는 것이며 그것은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립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바가 있다.¹⁹⁵⁾

따라서 현행법내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독일내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행사와 같이 경찰의 고유영역인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에 관한 ‘수사방법’은 전적으로 경찰의 소관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검사는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준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¹⁹⁶⁾

이와 같이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제한 할 경우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분배되어 수사권의 독점화는 완화될 것이다. 수사의 분권화는 수사경찰의 독창적인 수사기획과 인지

19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송치전 지휘제도, 종합사무감사 등의 검찰권행사는 현행법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지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195) 사법개혁위원회 제18차 회의자료(2004. 7.21).

196) 사법경찰의 수사행위에 의해 인권이 침해될 경우를 더욱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통제를 통한 인권보호보다는 녹음·녹화제도 도입 혹은 변호인 참여를 통한 수사절차의 투명화와 피의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이 더 효과적이다.

능력의 향상, 범인 및 증거확보의 획기적 방법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 않고 수사경찰이 기계 부속품 같은 역할에 한정되면 경찰의 독창적 수사능력 향상은 퇴화되어 소멸하거나 질식되어 재생산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¹⁹⁷⁾

현행법유지하에서 제한된 수사지휘권을 검사가 행사할 경우 독일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별칙((RiStBVA Anlage A)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우선 검사는 “검사의 지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담당 사법경찰관(Polizeibeamte)이 정해지지 않는 한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수 명의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권 하에 있는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그 행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남용을 방지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구두’에 의하기보다는 ‘서면’으로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하면 수사경찰의 독자성은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를 기초로 한 고유영역의 부여와 동시에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사법적 통제로 한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¹⁹⁸⁾

2. 경찰수사관의 내부적 업무독립성 확보

수사경찰은 수사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계층제적 수사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공정한 수사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사경찰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경찰 내부적 요인으로서 수사경찰의 신분보장과 상사의 수사지휘권 그리고 조직체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검사와는 달리 수사경찰의 경우 소신 있는 사법적 결정을 담보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197) 이상안, 앞의 논문, 348면 이하

198) 또한 사법경찰관의 송치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함과 동시에 검사의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지휘 개선상 혹은 다른 상사의 청탁이 있는 경우 경미한 청탁이라 할지라도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사경찰이 외압을 극복할 수 있는 신분보장, 외압 자체를 억제하는 수사지휘권행사의 제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압력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조직구조개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¹⁹⁹⁾

1) 수사경찰의 신분보장

가. 수사요원 인사관리시스템 내실화

수사경찰의 독자성을 제약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교류 등을 통한 경찰관서장의 인사관리다. 설문결과 직원들이 상사의 외압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로 ‘승진이나 보직 등 인사문제(15.9%)’ 혹은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 괴롭힘을 당할 우려(13.5%)’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인사 및 징계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첫째, 수사관의 선발과 교육 등에 대하여 수사경과제의 기본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경찰관서장에 의한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억제하도록 지방경찰청 수사과(형사과) 산하에 인사관리팀을 설치하여 선발, 교육, 부서배치 및 이동 등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서에서는 인사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청 단위의 수사인력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 파일을 기록·관리하여 수사관의 수사경력 및 근무부서, 전문 수사분야, 수사교육 이수현황, 전문수사관 자격획득 여부, 수사관련 칼럼 등 기고여부, 수사관련 강의경력, 전문자격증 소지여부, 특진 등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종합성과평가시스템(BSC)과도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근무평가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인사권자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세부 항목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성과평가시스템을 범죄정보관리시

199) 이러한 방안 중에는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것도 있으며 또한 수정·보완해야할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스팀(CIMS)과 연계하여 모든 수사관의 직무성과를 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⁰⁰⁾ 또한 다면평가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상급자에 대한 다면평가항목에 ‘부당한 지휘’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킴으로서 수사조직상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상호평가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관서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서장이 인사권과 징계권을 동시에 행사함으로써 수사지휘권의 강화를 통한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수사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독자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 권한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앞에서 제시한 지방청 산하 인력관리팀 설치와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사경찰의 간부화를 추진해야 한다. 수사경찰의 간부화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행하여야 하는 수사경찰의 주요 위치는 바로 ‘현장’이라는 관점 하에서 현장 활동자를 전원 간부화하여 책임과 권한 그리고 판단능력을 향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사법경찰리인 비간부급이 수사의 중심주체가 되고 있으며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들은 수사팀장 또는 수사(형사)과장으로서 직접 수사보다는 수사서류의 검토 및 결재, 사건지휘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어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경위 급속승진실시와 더불어 경위팀원이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위의 역할을 수사실무가로 재평가하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지방청 광역수사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점차적으로 강력범죄수사팀에도 늘려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수사경찰의 간부화를 이미 단행하였다.

200) 세부 평가항목에 들어가 내용들은 수사관이 처리한 업무량(사건처리건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작성건수 등), 업무수행능력(범인검거건수, 포상유무, 사건의 난이도, 공조수사여부, 피해자구호 여부, 구속영장신청건수(기각률 고려), 유죄선고율), 근무태도, 민원발생(진정, 이의제기 등) 여부 등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수사지휘권의 한계설정

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효과적 활용과 수사절차의 투명화

수사지휘관의 부당한 개입뿐만 아니라 수사관에 의한 자의적 남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사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청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은 사건의 접수, 배당, 관련인의 조사, 강제수사의 여부, 수사관의 검토의견, 송치결과 등이 공개되어 민원인들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과정상의 결과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찰내부적인 시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112 신고 등으로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여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정식 입건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경찰서 민원실에 기록이 되고 현재 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도 기록이 되어 팀장이 사건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사개시이전의 단계인 내사의 경우 외부의 부당한 청탁이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에 더욱 문제시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내사의 개시여부와 그 근거를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⁰¹⁾

나. 수사지휘권자와 통제권자로의 구분과 수사지휘권 제한

수사는 체포 및 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통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한다. 따라서 수사에는 목적달성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행정조직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담보장치가 추가로 확보되어야만 한다. 외압이 실제 사건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외압의 정도별 영향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 수사지휘 계선상에 있는 상사 청탁의 경우, 경미 청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4.1%가 영향을 받는 편이라고 대답했고, 중한 청탁의

201) 경찰수사혁신 로드맵에 의하면 진정, 탄원사건의 경우 내사종결된 사건은 그 사유와 함께 CIMS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경우 15.3%가 영향을 받는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수사지휘권자와 수사통제권자로 구분하고, 그 구분기준을 현장지휘가능성으로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범죄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현장에서 수사권을 지휘할 수 있는 현장책임자(수사팀장 혹은 수사과장)까지는 수사방향 등 구체적 지휘가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갖도록 하고 그 위 상급자에 대해서는 수사의 통제개념 하에서의 수사감독체제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직접적인 수사지휘계선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과 아울러 수사의 독자성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 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휘체계의 단일화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상급자는 오직 직근 하급자인 수사관에게만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원거리에 있는 상급자가 수사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경찰청이 시행하고 있는 수사지휘시 서면지휘를 의무화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경찰청은 상급자가 구속영장신청 등 강제처분여부를 결정하거나 사건에 대해 적용할 법률을 변경하는 경우 혹은 보강수사를 지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여 명시하고, 서면지휘여부를 수사경찰평가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만약 수사지휘관은 이러한 서면지휘내용을 하급자에게 작성하게 한다면 그 효과성은 극히 저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면지휘를 상사다면평가와 연계시킴으로써 수사지휘관이 행하는 부당한 지휘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휘에 대하여 실무자인 수사관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도입된 검사의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과 동일한 취지이다. 앞에서 실시한 ‘상사가 지휘를 가장한 청탁을 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지휘 등 다른 핑계를 들어 거부한다’는 의견이 31.0%였고, ‘상사의 지휘에 따른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이의제기권의 신설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 제도는 부당한 청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인 혹은 피고소인

이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인의의신청제도’와 연계됨으로써 독립성의 기본요건인 수사경찰관의 중립성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중인 민원인 의의신청제도는 민원인이 수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단위에 이의사건조사팀을 설치하여 재수사하는 방안이다. 경찰은 수사구조개혁을 준비하고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송치단계 이전에 잘못된 수사에 대한 경찰내부의 시정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다. 경찰관서장의 부당한 수사지휘 방지

현재 경찰관서장에 의한 수사지휘방식은 지휘범위의 한계, 지휘의 방식, 지휘에 대한 복종의무와 부당한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의 가능여부 등에 대한 일정한 원칙과 근거없이 이뤄지고 있다. 결국 수사지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의 장치로 남용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수사경과제의 실시와 더불어 팀장중심의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여 중요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의 수사지휘는 팀장에게 맡겨 경찰관서장 또는 수사(형사)과장들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수사(형사)과장 및 관서장이 지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제수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지휘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서장이 구두에 의하여 수사담당자를 직접 지휘하는 방식은 차단되어야 한다.

라. 자의적 수사에 대한 통제필요성

다른 한편 수사경찰의 지나친 독립성은 자의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 특히, 인신 구속여부에 대한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경찰수사의 독립성 확보의 근본취지가 공정성을 확보함에 있다는 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독립성은 수사활동의 객관성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속기준의 명확한 지침마련과 수사관개인의 판단에 의한 구속영장신청이 아닌 팀장 또는 수사(형사)과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3. 경찰수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제도의 확충

1) 수사절차에 대한 통지이행 및 이의신청제도의 활성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수사관의 자의적 권한남용이나 지휘관의 부당한 개입이 배제되어야 한다. 즉 사건의 접수, 배당, 관련인의 조사, 강제수사의 여부, 수사관의 검토의견, 송치결과 등이 공개되어 민원인들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과정상의 결과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찰내부 차원의 시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내사와 관련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사이유 및 처리결과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진행 상황 및 결과에 따른 각종의 통지의무에 대한 책임을 수사관 개인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서 자동적으로 우편물이 출력되거나 SMS 문자서비스나 E-mail을 통하여 실시간 통지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을 준비하고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송치단계 이전에 잘못된 수사에 대한 경찰내부의 시정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교통사고조사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민원인이 수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단위에 이의사건조사팀을 설치하여 재수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만 이의 제기사건의 유형을 구분하여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경찰서보다는 지방청 감찰부서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수사의 미진 또는 사건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의사건조사팀에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2) 즉일조사제도의 정착 등

민원인이 최초 경찰서에 방문 고소장 등 접수 후 재방문하여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까지 통상 여러 단계²⁰²⁾를 거치며, 사건관계인의 최초 출석시까지 평균 15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사건배당이나 수사관의 선정 등의 과정, 그리고 에 있어 외부압력이나 내부의 상사에 의한 부당한 사건개입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즉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초기수사에 있어서의 수사 공정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사건배당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외압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제3절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시론

경찰청에서는 그간 수사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인권보호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지난 2005년 10월에는 소위 '1004 프로젝트'를 발표해 경찰수사의 총체적인 인권보장 시책을 정리하여 대내외에 공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간인이 참여하는 인권수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의 움부즈만제도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피의자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인권보장 시책으로서 선진각국에서 주장 내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변호인참여제도를 1999년부터 자주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조사과정을 비디오로 녹음, 녹화는 영상녹화제도를 확대시행하기 위

202) 민원인 방문 ⇒ 민원실 상담·접수기록 ⇒ 수사지원팀 인수(사건번호기록, CIMS입력, 기능별분류, 과장결재) ⇒ 경제팀 서무접수(팀별배당 → 팀장이 조사관 지정 → 서무접수 → Approche 입력 → CIMS입력 → 담당조사관) ⇒ 민원인(기일통지 → 재방문조사)

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인권보장적 수사절차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제도 중 중요한 부분에 관한 시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수사상 인권보호를 위한 규칙제정 및 기구신설 등

1) 불구속 수사원칙의 정착을 위한 영장심사위원회제도 및 「인신구속 가이드라인」의 제정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구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사관 개인의 자의적 판단 또는 감독자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구속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구속건수에 의한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를 폐지하거나 구속영장 신청건수와 기각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완함으로써 실적경쟁이나 포상으로 인한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팀별 책임수사체제를 통하여 팀장 또는 수사(형사)과장의 적극적인 사전검토를 강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영장신청의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당해 수사관서 내의 수사과장나 청문감사관 등 수사와 관련된 부서의 경찰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영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방안도 합리적인 통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조직을 통한 다수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는 영장심사체제가 정착된다면 구속수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당한 외압을 방지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찰수사에 있어 체포나 구속에 관한 객관적인 인신구속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선 수사관서에 배포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불구속 수사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나 검찰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구속영장 발부기준 및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여 내부적인 업무지침으로 사용해왔으며, 최근 2006년도에 들어서

는 이러한 구속기준을 규칙의 형태로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였다.

경찰의 인신구속 기준은 법원이나 검찰의 인신구속기준에 종속될 수 있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경찰의 독자적 구속영장 신청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견해도 예상된다. 하지만, 경찰수사와 검찰수사의 상이한 점이 존재하므로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신청 기준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기준과는 별도의 실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최근 검찰이 제시한 구속영장 청구기준은 지극히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검증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경찰의 인신구속에 관한 세부적이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경찰수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에 있어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검찰의 부당한 영장기각에 대한 견제책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일반 국민의 경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인권보호 경찰직무규칙」의 제정 시행

범죄신고의 접수 및 현장조치 요령에서부터 사건 송치시까지의 경찰수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 직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인권보호 경찰직무규칙」의 제정과 인권보호매뉴얼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경찰청에서는 최근 2006년도에 들어 이러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3) 지방청내 가칭 「인권보호팀」의 신설

지방청에 인권보호팀을 설치하여 평소에는 지방청 단위의 인권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집단 성폭력사건, 윤락여성관련 사건, 장애인 또는 아동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 등은 반드시 지방청에 보고토록 하여 인권보호팀에서 피의사실공표, 가해자 또는 피해

자의 인적사항의 노출, 언론보도, 조사과정의 2차 피해 등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²⁰³⁾.

2. 피의자 조사과정상 인권보장

1) 피의자조사의 현실과 적정화의 필요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게 수사기관이 고문이나 폭행·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가하는 행위는 수사단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전통적인 인권침해의 유형이다. 이러한 침해유형은 결국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자백 등을 획득하기 위해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권인숙 성고문사건, 김근태 고문사건이나 서울지검고문치사사건 등은 모두가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며 신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스스로 생명을 끊거나 수사기관에서 자해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수사기관의 현행 피의자신문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현행법은 이러한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헌법적 차원에서 관련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²⁰⁴⁾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체적인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²⁰⁵⁾ 학설과

203) 범죄수사규칙

제11조(피해자 등과 자료제공자의 보호)

①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 등과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부터 피해자 등에게 후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 그 외의 관계자에게 당해 피해자 등의 성명, 거주지 등을 알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당해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4) 피의자신문의 적정화와 관련하여 보자면, 헌법은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진술거부권(제12조 제2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본문), 고문의 절대적 금지(제12조 제2항), 자백배제법칙 및 보강법칙(제12조 제7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제2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5)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시의 진술거부권 사전고지(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수사상 체포·구속기간의 제한(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2조, 제203조), 제한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의 보장(제34조),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제89조, 제91조, 제200조의5, 제209조, 제213조의2), 전문법칙의 채택(제310조의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제312조 제1항, 제2항), 피의자신문의 주체·절차 및 조서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적법절차규정(제200조, 제241조 내지 245조) 등을 두고 있다.

판례 또한 법해석에 있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²⁰⁶⁾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피의자신문의 현실이 이러한 법의 정신이나 해석에 부응하여 과연 인권옹호에 선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진술거부권의 고지결략, 피의자신문에 관한 구체적 절차규정의 미준수, 폭행·가혹행위나 기망·이익유도 등의 탈법적 피의자신문, 수감이나 포승을 채운 상태에서의 피의자신문, 철야신문 등이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인권침해의 문제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부단히 지적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진정사건의 다수는 여전히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사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피의자신문의 부정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피의자신문과정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의 필요성이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중시되어야 할 형사절차상 가치이며, 피의자신문의 적정화를 위해 녹음·녹화제도를 비롯한 외부감시가 가능한 다양한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2) 피의자조사과정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피의자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방안은 선진외국에서 이미 조사과정의 가시성을 높이고, 사후적으로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발달되어 왔다. 영국의 경우, 1984년에 피의자조사과정을 녹음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비디오

206) 판례도 진술거부권 불고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대법원1992.6.23.판결, 92도68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대법원1990.8.24.판결, 90도1285; 대법원1990.9.25.판결, 90도1586), 불법한 긴급체포 상태 하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대법원2002.6.11.판결, 2000도5701)에 대하여 배제법칙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한바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헌법재판소1992.1.28.결정, 91헌마111), 피의자신문에의 변호인참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대법원2003.11.11.결정, 2003모402). 한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무제한적으로 통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기존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였다(대법원 2004.12.16.판결, 2002도537).

로 녹음·녹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상태이다. 이탈리아와 대만도 녹음·녹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다수의 수사관서에서 실무운영상 이 제도를 이용해왔으며, 일부의 주(州)에서 법률로서 정식으로 피의자조사과정의 녹음·녹화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호주의 경우에는 중대범죄에 한하여, 프랑스의 경우에는 소년사건에 한하여 녹음·녹화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사개추에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이에 대응하여 검찰이 영상녹화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특이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검찰은 기존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그 대체물로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입법안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전개상황 속에서 사개추에서는 핵심쟁점을 떠올랐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않았지만 수사관의 법정증언을 보강하는 증거로 한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은 이러한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두고 있다.

도입배경의 특이성은 논외로 하고, 일단 피의자조사과정의 가시성을 높여 인권보호에 충실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제도도입 자체는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피의자조사과정의 영상녹화제도를 임의적 제도로, 즉 녹화여부를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녹화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형태로 운영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사기관은 녹화제도를 자신의 면전에서 행한 피의자의 자백을 법정에서 명확히 입증시키기 위해서 활용할 것이고,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화제도 도입의 근본취지, 즉 수사절차의 투명화나 가시화를 통해 인권침해적 수사를 방지하자는 측면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개추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4조의4에 수사과정 기록제도를 두고 있는바,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수사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라면 영상녹화제가 필요적 제도로서 결합될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수사기관은 감추고 싶은 피의자신문과정은 절대 녹화하지 않을 것이며, 입증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전과정을 녹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⁰⁷⁾ 이러한 녹화물이 법정에 제출될 경우, 조서로 재판받는 현재보다도 향후 배심원·참심원은 물론

직업법관에게 피고인이 범죄자라는 인식을 강력하게 주게되어 오히려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후퇴하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증거로서의 활용부분에 관한 논쟁은 차지하고, 수사상 인권침해 문제의 중핵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피의자조사과정을 적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영상녹화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선진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의적 녹화제도로서의 개정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권보장적 수사절차의 구현이라는 대명제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피해자와 장애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진술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또는 인권침해의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미한 범죄가 아닌 체포 또는 구속의 강제수사 대상자에 대한 피의자신문도 진술녹화를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됨으로써 무리한 자백요구나 여죄추궁을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조사과정 서면기록제도의 도입 등

조사과정에서 고문·폭행 등을 사용한 자백강요의 문제, 야간신문이나 철야신문의 문제, 밀실신문의 문제 등은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재하는 외국례로서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방안 이외에도 신문시각이나 신문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조사과정의 임의성 여부 등이 공판에서 문제될 경우, 조사과정의 사후확인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조사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현행보다 보다 소상하게 기록하여 보존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조사의 주체와 참여자,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

207) 일본의 경우, 학계나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피의자조사과정의 가시화와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해 녹화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귀결상 당연히 필요적 녹화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면전에서 자백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 인정하는 수준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수사기관 면전에서 자백의 내용까지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유죄를 인정하는 제도를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보인다.

의 개시·중단·종료시간, 조사가 야간까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이유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서면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안이다.²⁰⁸⁾

예컨대 피의자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사기회의 미제공, 밤샘수사, 진료요청에 대한 미조치 등의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신문조서상에 신문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표기하고, 식사 제공의 여부와 휴식시간 등을 표기하고 진료요청 유무와 조치사항을 표기하여 사후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인권보장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타 피의자조사의 절차적 적정화 방안

피의자 조사절차 자체를 적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출석의 요구절차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00조 1항),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동조 2항).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그 사항을 출석요구통지부에 기재하고 있으며(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6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1항), 필요한 경우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02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2항). 또한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도 하나(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6조), 실무상 경찰 및 검찰은 정형화된 출석요구서의 양식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피의사건의 죄명부분(고소·고발·진정사건의 경우는 고소인·고발인·진정인의 성명도 기재)과 출석일시부분 등을 기재하여 발부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피의자가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실정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한편 실무상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위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²⁰⁹⁾, 이 경우에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의 취지를

208) 이동희, 피의자신문의 현황과 개선책, 형사법연구 제20호, 한국형사법학회, 2003, 249면 참조; 이러한 제안은 2004년 하반기에 사개추에서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에 반영되어 있다.

알리도록 그 의무를 규정한 직접적인 법규는 없다²¹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있어서의 불특정범죄와 관련한 행정경찰 목적의 임의동행시에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 체포·구속시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구속의 이유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대비되는 점이라 하겠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72조, 제209조, 제213조의2).

그리고, 진술거부권의 고지절차를 확행하고 그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제12조 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0조 2항). 신문시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²¹¹⁾,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이를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수사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재차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범죄수사규칙 제168조 2항 참조).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미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²¹²⁾.

실무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 양식의 첫면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해당조서에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있을 경우에는

209) 배중대·이상돈, 앞의 책, 213면; 신양균, 앞의 책, 117면; 이재상, 앞의 책, 203면;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156면; 진계호, 앞의 책, 238면은 피의자신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로서 임의수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본문)을 들고 있다. 생각건대 출석요구의 한 태양으로서 임의동행의 방식을 상정한다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규정한 제200조의 1항에서 보다 직접적인 피의자신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210) 신동운, 앞의 책, 128면 및 141면은 현행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및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에서 규정한 동행요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임의동행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11) 이재상, 앞의 책, 210면; 신동운 앞의 책, 141면.

212) 대판 1992.6.23, 92도682. 이에 대한 평석으로는 이재홍,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결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사법행정, 1995.5; 김희옥,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위법수집증거, 고시계 제42권 제8호, 1997.8; 그리고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70선, 홍문사, 2000, 23~30면 참조.

사실상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²¹³⁾. 진술거부권의 불고지나 형식적인 고지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피의자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의 의미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피의자에게 제시하여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²¹⁴⁾²¹⁵⁾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방안

1) 변호인참여제도의 활성화 및 명문화

가. 운용현황

실무상으로 경찰은 현행법이 변호인참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전제로 1999년 6월부터 경찰내부의 업무지침(피의자신문과정의 변호인참여지침)을 통해 실제 피의자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참여를 인정해왔다. 이 지침은 특정사건에 있어서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나 피의자의 법적 권리로서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재량으로서 허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제도시행 이후 2003년말까지 약 4년반동안 총 1,157건의 참여신청이 있었으며,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참여가 허가되었다. 그러나 변호인참여의 활성화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제도시행 원년에 약 반년정도에 걸쳐 총 381건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을 정점으로, 이후 매년 200여건의 참여실적에 그치는 답보상태를 보이

213) 김성돈, 미란다법칙과 위법수사통제방안, 형사법연구 제14호, 2000.12, 10면; 서보학 앞의 논문, 11면; 이재홍, 앞의 논문, 52면.

214) 서보학, 앞의 논문, 11면. 한편 경찰실무상 인신구속피의자에 대한 소위 미란다고지를 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고문치사사건 이후 검찰은 고문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확인서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215) 이재홍, 앞의 논문, 52면은 진술거부권이 현재와 같이 부동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명력을 인정하지 말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서보학, 앞의 논문, 11면은 이 보다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고 있다. 이는 경찰의 연간 송치피의자수에 대비하면 0.01%, 그 가운데 구속송치된 피의자수에 대비하여도 0.2% 정도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²¹⁶⁾

한편 검찰은 피의자조사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2년 10월에 서울지검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 이후 고문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변호인참여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2002년 12월 법무부령으로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하고, 피의자조사에의 변호인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동 준칙 제4조에 기초하여 검찰청은 내부예규를 만들어 변호인참여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구체적인 실시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제한이 가해져 있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을 중지시키거나 진술거부권의 행사 등을 포함한 조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위 대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금후 전면적으로 변호인참여를 허용할 방침임을 표시한바 있다.²¹⁷⁾ 그러나 검찰실무상 현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가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와있지 않다.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변호인참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참여권의 보장 정도는 향후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그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나. 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경찰이 자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피의자신문에 있어서의 변호인참여제도는 경찰통계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2002년 6월말까지 참여가 허가되지 않는 건수는 거의 없었다. 지침의 내용상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16) 경찰의 연간 사건송치건수 및 구속송치건수는 경찰청 발행 '경찰통계연보' 참조.

217) 연합뉴스 2003년 11월 11일자 기사 참조.

그러나 제도의 시행경과를 보면, 당초의 기대와 달리 변호인참여제도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피의자단계의 낮은 변호인선임율을 들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고액의 선임료가 요구되는 사선변호인의 선임 또한 일반인이 쉽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피의자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실제로 체포 직후 핵심적인 피의자신문이 일단락되었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의 시점인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기반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변호인의 참여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체계의 미정립이다. 변호사업계의 실무행태에 비추어보면 변호인참여에 드는 수고와 노력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설사 현 실정에 상응하는 보수를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이러한 보수를 일반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자연스레 참여 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셋째, 참여의 절차면에 있어서도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지·유도하는 절차나 변호인에 대한 사전통지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¹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회와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pro bono publico)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하며, 법률시장의 공급확충과 더불어 현장중심적인 변호활동으로 업무행태가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수사기관의 시혜적 조치로서 인정되고 있는 참여제도를 입법화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화와 관련하여, 최근 사개추는 변호인참여 규정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어렵게 입법화되는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는 사유가 너무 많다는 점은 아쉽다. 증거의 인멸·은닉·조작 등은 물론 공범의 도주나 피해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참여제한이 가능하고(244조의5 1항), 신문중에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변호

218) 경찰의 변호인참여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한 경우에 입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의무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예외요건도 폭이 넓다.

인이 신문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²¹⁹⁾에 변호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조 4항 1문), 또한 변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 내에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조 4항 2문).

게다가 제한할지 여부의 판단주체가 수사기관이므로 수사기관의 부당하게 제한하더라도 준항고나 손해배상 등의 사후적 구제책이 가능할 뿐이며, 이 경우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방안이 판례상 확립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해결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제도도입의 목적인 피의자의 방어권 신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2003년 11월 11일자 대법원의 결정보다도 더 퇴보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제한사유를 축소함과 동시에 위해의 '결과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보다는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등 보다 강화된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당한 시간 내에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경우'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변호인에 대한 신문사실 통지제도 등의 입법화를 통해 참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나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고, 장래적으로는 피의자국선변호의 확충문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수사기관 상근변호사제도의 도입방안²²⁰⁾

피의자단계의 변호인선임율은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식적인 선언규정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신구속피의자에 대한 실질적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서 이미 기소전 단계의 국선변호제도의 시행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여 아직까

219) 변호인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거나 피의자의 진술을 중지시키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220) 가칭 「수사기관 상근변호사제도」의 도입 주장은 필자의 2003년도 학술논문(이동희, 피의자신문의 현황과 개선책, 형사법연구 제20호, 한국형사법학회, 2003)에서 기히 제시하였던 내용임을 밝혀둔다.

지 본격적인 제도시행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전 국선변호제도를 기존의 기소후 국선변호제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여 단지 그 선임시기를 앞당기고 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소후 국선변호제도가 비현실적 보수체계나 변호인의 열의부족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더하여, 기소전 국선변호제도의 시행절차면에 있어서도 피의자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인신구속 초기단계에 그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무상 체포 직후에 거의 필연적으로 피의자신문이 행해지고 있으며, 또한 그 신문과정에서 작성된 조서가 향후 법원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신구속 초기단계의 피의자의 방어권의 적정한 행사는 무엇보다 절실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²²¹⁾. 또한 수사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피의자신문이 행해지며, 위법한 수단을 이용하여 자백을 강요할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그러므로 기소전 국선변호의 요체는 인신구속 초기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우선 인신구속피의자에 대한 기소전 국선변호의 성질을 지닌 제도로서,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상근하면서 변호활동을 하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의 임명에 기초한 중립적이고 공적인 신분을 가진 변호사를 각 수사기관에 상근시켜 인신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의 실질적인 변호 및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가칭 수사기관 상근변호사제도라 명명하고자 한다.

상근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며, 중립성을 가진 제삼의 기관에 소속시켜²²²⁾ 원칙적으로 당해 임무에 전종하도록 하며, 그 보수는 국비 내지는 공적 자금

221)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인권보장은 검사의 수사지휘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피의자를 처음으로 조사하게 되는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변호인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현실적 여건이 조성될 때 비로소 확보된다”는 현직 수사경찰관의 진술한 고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김보준, 경찰수사권 독립과 인권보장, 경찰행정, 1998.8, 25면).

으로 충당한다. 상근변호사의 임무는 인신구속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변호와 위법한 수사에 대한 감시 및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진 공적기관에의 보고를 주된 임무로 하며, 부수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법률적 조언 등을 한다. 구체적인 업무·권한으로는 ①인신구속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변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인치되어 온 피의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접견하며—수사기관은 인신구속피의자를 당해 수사기관에 인치한 시점에 그 사실을 상근변호사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운다—, 피의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를 설명하고 필요한 조언을 하며, ②체포·구속 등의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진 공적기관에 보고하며, ③수사기관으로부터 법률적 자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각 피의자의 기소전 국선변호인으로서 선임되는 것이 아니며, 인신구속 초기단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호활동을 수행함에 그친다. 장래적으로는 기존의 기소후 국선변호인의 선임시기를 앞당겨 두 제도의 공백시기를 메우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통한 수사절차상 변호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자주적으로 ‘당직변호사제도’나 ‘경찰서순회당직접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공적인 제도로 대체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상근변호사제도의 규모, 근무시간, 보수체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도도입과

222) 상근변호사의 소속문제에 관하여 보면, 우선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률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인 한국법률구조공단(KLAC)—2000년도 기준으로 법률구조위원 38명을 포함한 65명의 변호사, 326명의 직원으로 구성—에 소속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공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적 활동에 전종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 특히 한국법률구조공단은 비영리법인이라는 하나 법무부의 감독 하에 있으며, 또한 동 지부 및 출장소의 장은 현역 검사가 겸임하고 있으므로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법률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동법 제19조 이하)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고용된 변호인에게 사명감이나 명예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공적 신분으로부터는 수사기밀의 누설이나 수사방해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상근변호사의 보고에 의해 인권침해사례를 종합적으로 수집·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근변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관리시스템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에서 소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 인적 자원 및 업무량에 관하여 검토해보자. 2002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경찰청(14) 및 경찰서(231), 각 지방검찰청(13) 및 그 지부(40) 등에 각각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1인 내지 2인의 상근변호사를 둔다고 가정하면, 약 400~500명 정도의 변호사로 인적 자원을 충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2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의 등록변호사의 총수는 5,400여명에 이르며, 최근 매년 1,000명 정도의 사법시험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다. 산술적으로 추산하면 늦어도 2010년에는 변호사가 10,000명을 넘게 될 것이므로 인적 자원의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법시험합격자의 급증에 대하여 직업법률가를 중심으로 법률시장의 포화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기능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²²³⁾.

4. 기타 인권보장을 위한 시책 등

1) 여성범죄 전담 여성수사관의 증원

수사(형사)과내에 성범죄 사건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여성수사관들을 대폭 증원, 배치하여 성폭력 범죄 등 여성피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진술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만일 여성수사관들이 여성청소년계에 배치된 경우에는 수사(형사)과의 성범죄사건 수사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수사간부 주도의 수사체계 확립

수사요원의 간부화를 통하여 범죄수사를 사법경찰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주도하도록 하여 고품질의 수사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최종별 책임수사체제에

223) 또한 업무량의 측면을 보면,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피의자수는 연간 15만명 정도로 일일 평균 약 410명 정도이다. 체포 후에 석방되는 피의자도 접견 등의 대상이 되며, 또한 지역이나 시기에 따른 업무량의 편중이 예상되나 운용상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된다.

따라 팀장에게 사건의 배당, 수사서류의 검토, 인사고과의 부여, 구속영장신청 등의 적정성 검토,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죄명, 피해자의 수, 성별,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보호자의 유무, 가족관계, 피해자의 직업, 언론보도 유무 등의 항목이 들어간 인권침해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지방청 인권보호팀에 보고토록 하고 감독소홀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한국 수사경찰은 수사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고 진정한 국가수사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도약할 시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수사경찰은 인력, 조직, 운영, 인권보호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어 수사경찰의 쇄신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수사경찰이 간부중심의 인력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중앙수사국체제를 채택하여 본청과 지방청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서의 경우 민생범죄 수사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권보호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술녹화제를 실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함께 수사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수사교육과 수사요원이 선발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 수사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수사인력 관리와 관련하여 수사부서 기피현상에 따른 유능한 수사인력의 유출의 방지와 최종별 전문수사팀제를 골자로 한 수사경과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사요원 선발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수사경과제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경위 근속승진에 따라 장차 경위계급의 인력이 많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수사간부화라는 장기적 목표아래 관리자가 아닌 수사 실무가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수사간부에 대한 양성 및 전문화교육이 현재와 달리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수사간부연수소를 수사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교수인력을 확충하고 시설을 보강하여 수사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하겠다. 이외에도 특진제도와 시험승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심사승진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근무평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겠다.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재의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제는 범죄의 광역화, 지능화 추세

에 대처하는데 부적합하다. 따라서 경찰서 일부인력과 지방청내의 수사인력을 흡수, 통합하여 광역수사대를 광역수사단으로 확대함으로써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청과 지방청 중심의 광역수사체제를 구축해야 하겠다. 광역수사체제를 통하여 범죄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기능을 활성화하고 범죄분석팀을 설치하여 범죄프로파일링과 함께 연쇄성, 광역성에 대한 판단을 담당하게 하여 지방청의 주도하에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겠다. 현재 경찰서 단위에 적용되는 죄종별 업무분장의 방식은 수사팀간의 업무량의 차이와 기획수사의 약화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 수사인력이 많은 지방청단위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청 단위의 수사부서를 죄종 또는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전문화하고 경찰서는 중요사건수사보다는 민생범죄에 치중함으로써 방법활동과 수사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수사경찰의 운영면에서 수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먼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건의 접수, 배당, 관련인의 조사, 강제수사의 여부, 수사관의 검토의견, 송치결과 등이 공개되어 민원인들이 사건의 진행상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찰내부 차원의 시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의 통지를 SMS 문자서비스나 E-mail을 통하여 자동화하거나 간소화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청의 이의사건 전담조사팀으로 하여금 재수사하도록 해야 하겠다. 아울러 구속 등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의 권한남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찰관서장에 의한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면지휘에 의하도록 하고 팀별 책임수사체제에 따라 팀장이 중심이 되어 사건지휘 및 사건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피의자신문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 성폭력피해자와 장애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술녹화를 의무화하고 피의자에 대하여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하겠다. 또한 피의자신문에 있어 밤샘수사 등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신문조서상에 신문시작시간, 종료시간, 휴식시간, 진료요청여부 및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수사과정의 피의사실공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의 노출, 언론보도, 조사과정의 2차 피해 등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청에 인권보호팀을 설치하여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직접 개입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 전담 여성수사관을 대폭 증원하여 수사(형사)과내에 또는 여성청소년계에 배치하여 성폭력 범죄 등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진술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수사경찰의 쇄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수사경찰의 개혁에 대한 동참의식과 과거의 수사관행에 대한 단절의지가 절실하다. 이와 같은 수사경찰의 쇄신이 가미될 때 수사구조개혁논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 내 >

- 이성용 외11인 공저, 비교경찰론, 수사연구, 2005
- 임준태, 독일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수사연구 2000년 1월호
- 경찰 수사권 체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 2000-02, 치안연구소
- 수사요원 전문화 방안, 연구보고서 96-10, 치안연구소
- 경찰청 발간 2005 및 2006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
- 2005년 과제연구보고서, 제33편, 수사보안연구소
- 경찰대학 116기 액션러닝 보고서
- 윤대표, 경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 경찰수사와의 관계, 참여식 전문직무교육 강의
모음집, 제11기 치안정책과정, 경찰대학
- 장용락, 현행 공조수사체계와 운용방법,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1996. 7.
- 이상원, 형사사법 체계상에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 치안연구소, 2002-2
- 김성수,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 외국 참고문헌 >

1. 독 일

- Lisken/Denniger, Handbuch des Polizeirecht, 3.Aufl. München
- NRW주 의회 위원회보고서, Neuorganisation der Polizeibörden, 2004
- 연방경찰대학 2002년도 보고서

2004년 바이에른 주경찰 직무교육과정표

Heiner Waldheim, Quo vadis Fortbildung in Brandenburg? Die criminal Polizei
2003년 3월호

Muechen Staatsanwaltschaft I, Abteilung XI Wirtschaft) – Geschaeftsordnung der
StA Muechen I vom 01. Jan. 2003.

Bdk-duesseldorf.de

www. bayern. polizei.de

www. pfa.de

www.bkade

2. 프랑스

Le droit de la police, J. Buisson, J. Montreuil, A. Decocq, Litec, 1998

<http://www.interieur.gouv.fr>

http://www.interieur.gouv.fr/rubriques/c/c3_police_nationale/c33_organ

3. 캐나다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Canadian Crime Statistics 2001, 2002.

Dantzker/Mitchell, Understanding Today's Police. Prentice Hall Canada
Career & Technology: Scarborough, Ontario, 1998.

Pugh, G. M., "The good police officer: Qualities, roles and concepts", in: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4, 1986.

Seagrave, Jayne, Introduction to Policing in Canada, 1997.

<http://www.statcan.ca/english/pgdb/demo02.htm>

<http://www.statcan.ca/english/Pgdb/legal15.htm>

<http://www.statcan.ca/english/Pgdb/legal13.htm>;

<http://www.rcmp-grc.gc.ca/recruiting/postings-e.htm>

http://www.rcmp-grc.gc.ca/gls/home_e.htm(2006년 4월 24일 검색)년 4월 24일 검색)

http://www.rcmp-grc.gc.ca/techops/index_e.htm(2006년 4월 24일 검색)

http://www.rcmp-grc.gc.ca/crimint/ci_main_e.htm(2006년 4월 24일 검색)

http://www.cisc.gc.ca/about/about_cisc_e.htm (2006년 4월 24일 검색)

http://www.rcmp-grc.gc.ca/fls/intro_e.htm(2005년 12월 08일 검색)

<http://vancouver.ca/police/organization/index.html>(2006년 4월 24일 검색)

<http://vancouver.ca/police/OpsSupp/index.html>(2006년 4월 24일 검색)

<http://www.gov.on.ca/opp/recruit/english/oppbound.html>

http://www.cpc.gc.ca/scienc_e.html(2005년 12월 13일 검색)

http://www.rcmp.ca/firs/flatp_e.htm.

http://www.cpc.gc.ca/sciences/ficour_e.htm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fic_e.htm.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sfic_e.htm.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bbprc_e.htm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hfcc_e.htm

http://www.rcmp-grc.gc.ca/firs/fiatp_e.htm.

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l/crs_e.htm.

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l/crs_e.htm#Forensic.

4. 미 국

James N. Gilbert, Criminal Investigation(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93)

Michael J. Palmiotto, Criminal Investigation(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1994)

www. oregonia. com. "Unsolved crimes go up as number of detectives goes down" (2005,7)

[www. nyc.gov/html/ypd/html/db/organ.html](http://www.nyc.gov/html/ypd/html/db/organ.html).

5. 일 본

宮下明義, 新刑事訴訟法逐條解說Ⅱ, 司法警察研究會公安發行所, 1949

國松孝次, 刑事警察の歴史と今後のあり方, 講座 日本の警察(第2卷 刑事警察), 立花書房, 1993

横井大三, 改正刑訴法の經過, 改正刑事訴訟法(刑法雜誌別冊), 有斐閣, 1953

末井誠史・島根悟, 旧警察法下の警察, 講座日本の警察(第1卷 警察總論), 立花書房, 1993

日本辯護士連合會編, 檢證 日本の警察, 日本評論社

久保博司, 警察のことがわかる事典, 日本實業出版者, 2001

일본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jp>)

연구보고서 2006-14

수사경찰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

2006년 12월 발행

2006년 12월 인쇄

발행인 : 이 병 진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88번지

인쇄처 : 제이케이컴퍼니

(TEL : (02)3494-0458)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